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2020. 3. 27.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대관

■ 목 차 ■

I.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3
1. 지역문화 정보화 사업의 필요성	3
2. 지역문화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4
제2절 연구 목적	5
1.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5
2. 세부 연구내용	5
제3절 연구의 기간 및 범위	6
1. 연구 기간	6
2. 연구 범위	6
제4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8
1. 연구내용	8
2. 연구수행방법	9
제5절 연구기대효과	10
1.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10
2. 문화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10
II. 환경 분석	11
제1절 지역문화 여건 분석	13
1. 지역문화 정책의 흐름과 이슈	13
2. 지역문화 주요 요소별 현황	18
3. 지역문화 여건분석 종합	26
제2절 정보화 환경 분석	27
1. 정보화의 개념 및 주요 트렌드	27
2. 국가 및 지역정보화의 흐름과 주요 특징	32
제3절 관련 제도 및 계획 환경 분석	40
1. 제도 및 계획 환경 분석 개요	40
2. 법률 분석 ① : 정책 부문	42
3. 법률 분석 ② : 정보화 부문	49
4. 계획 분석 ① : 정책 부문	58
5. 계획 분석 ② : 정보화 부문	62
III. 문화정보화 현황 분석	67
제1절 문화시설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	69
1. 도서관	69
2. 박물관(미술관)	75

3. 문예회관	77
4. 문화원	78
5. 문화재단	80
6. 생활문화센터	81
7. 문화의 집	82
제2절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	84
1. 공연전시	84
2. 교육체험	89
3. 행사축제	93
제3절 인력단체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	99
1-1. 인력 ① : 예술인	99
1-2. 인력 ② : 매개인력	101
1-3. 인력 ③ : 교육인력	105
1-4. 인력 ④ : 전문인력	107
2. 단체	110
제4절 행정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	113
1. 문화 관련 법·조례 제공현황	113
2. 예산 제공현황:① 문화 관련 예산	115
3. 문화 관련 연구보고서 제공현황	117
제5절 통계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	121
1. 승인통계	121
2. 비승인통계	123
제6절 빅데이터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	124
1. 이용자 정보 제공현황	124
2. 소비 지출액 제공현황	126
3. 복지 제공현황	129
IV.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33
제1절 주요기관 관계자 간담회	135
1. 주요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135
2.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139
3. 간담회 주요내용 (요약)	151
제2절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54
1. 설문조사 개요	154
2. 설문조사 결과	156
V. 국내외 사례 분석	175
제1절 국내 사례	177
1. 국내 타 부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례 선정	177
2.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178

3.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185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194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201
6.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	209
7.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214
제2절 국외 사례	224
1. 국외 주요국가 문화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동향 분석	224
2. 유럽연합(EU:European Union)	224
3. 프랑스	231
4. 영국	236
5. 스위스	242
6. 러시아	249
7. 라트비아	254
VI. 기본 방향	259
제1절 종합검토	261
1. 기본방향 도출 개요	261
2. 종합진단 및 시사점	262
제2절 기본방향 및 주요 기능	267
1.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 사업 비전 (안)	267
2.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 사업 목표 (안)	267
3.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 방향	268
4.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지향	269
5.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 추진과제 (안)	270
VII. 구축 방향	271
제1절 지역문화데이터 통합 수집·관리 및 표준화	273
1.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차별화 전략	273
2. 지역문화통합정보 표준분류체계 및 가이드라인 구성	276
3.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BPR/ISP 수립	281
제2절 데이터 기반 분석정보 서비스체계 구축방안	283
1. 지역문화 공간분석체계 구축	283
2. 지역문화정보 분석전담조직 지정	289
제3절 지역문화정보 순환 기반 구축	292
1. 지역문화 정보거버넌스 체계 구축	292
2. 지역문화 정보협약(계약) 시행	295
3. 지역의 문화정보역량 강화	297
제4절 법·제도개선 방안	298
1. 법·제도개선 방안	298
2. 법률안 종합 검토	301

Ⅷ. 추진 계획	303
1. 추진 로드맵 (안)	305
2. 세부 추진 단계	305
참고문헌	308
부록 1. 데이터 입력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313
부록 2.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BPR/ISP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	353
부록 3.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401
부록 4. 해외출장보고서	503

표 목차

표 1-1 연구 범위	7
표 1-2 연구수행방법	9
표 2-1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주요 흐름	15
표 2-2 문재인 정부 지역문화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16
표 2-3 최근 5년간 문화기반시설 현황	18
표 2-4 생활문화시설 수 (2019년, 2017년 비교)	19
표 2-5 방방곡곡 문화공감 및 신나는 예술여행 추진 현황	19
표 2-6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20
표 2-7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20
표 2-8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현황	21
표 2-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현황	21
표 2-1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현황 (2014-2018)	22
표 2-11 정부부처별 보조사업(내역사업) 건 수	24
표 2-12 가트너(Gartner)의 ICT 관련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29
표 2-13 가트너(Gartner)의 ICT 관련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35
표 2-14 지역문화통합정보화 관련 제도 및 계획 목록	41
표 2-15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 구성 및 내용	42
표 2-16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의 정의	47
표 2-17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의 정의	48
표 2-18 국가정보화기본법 주요 조항	50
표 2-19 전자정부법 주요 조항	51
표 2-2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54
표 2-2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55
표 2-22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주요 조항	56
표 2-23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전략 및 국정과제와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58
표 2-24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4대 전략 13대 과제	65
표 3-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도서관	69
표 3-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박물관	75
표 3-3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문예회관	77
표 3-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문화원	78
표 3-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문화재단	80
표 3-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생활문화센터	81

표 3-7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문화의 집	82
표 4-1 외부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내역	135
표 4-2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요약 : 정보관리 현황 및 문제점	151
표 4-3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요약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	151
표 4-4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요약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수집항목	152
표 4-5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요약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방안	152
표 4-6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요약 : 기타 의견	153
표 4-7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종합 : 성공요인과 조치 고려사항	153
표 4-8 설문조사 설계	154
표 4-9 응답 특성- 지자체	155
표 4-10 응답 특성- 문화시설	155
표 4-11 응답 특성- 문화재단	155
표 4-12 정보수집·관리의 목적	157
표 4-13 수집관리 문화정보	157
표 4-14 문화정보별 수집 주기-지자체	158
표 4-15 문화정보별 수집 주기-문화시설	158
표 4-16 문화정보별 수집 주기-문화재단	159
표 4-17 정보관리 방법	160
표 4-18 정보수집관리 애로사항	160
표 4-19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이유	161
표 4-20 수집 정보 제공 여부	162
표 4-21 제공 정보	162
표 4-22 정보 제공 방법	164
표 4-23 외부 제공 정보 입력주체	164
표 4-24 정보 외부 미제공 이유	165
표 4-25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동의 수준	166
표 4-26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찬성 이유	167
표 4-27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반대 이유	167
표 4-28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주체 및 입력주체	168
표 4-29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의향	168
표 4-30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불가 이유	169
표 4-31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업의 주요 고려 사항	169
표 4-32 활용도 높은 문화정보	171
표 5-1 국내 타 부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177
표 5-2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시스템 (학교알리미) 구축, 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추진 경과	179

표 5-3 2018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대상 기관	182
표 5-4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개방 연도별 추진 현황	183
표 5-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현장지원단 지원 상세 내역	183
표 5-6 국가평생학습포털 구축 관련 연혁	187
표 5-7 평생교육정보연계 기관 현황	190
표 5-8 국가평생학습포털 이용 현황	193
표 5-9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이용 현황	193
표 5-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추진 경과	196
표 5-1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추진 경과	203
표 5-1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시기별 업무	204
표 5-1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리체계	211
표 5-14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시스템 체계 및 주요 기능	212
표 5-15 시·도 행정정보화 추진 경과	215
표 5-16 시군구 행정정보화 추진 경과	216
표 6-1 분석 영역별 주요 이슈 진단	262
표 6-2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환경개선 과제	270
표 7-1 중복성 검토 가이드 라인	273
표 7-2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 결과	274
표 7-3 기존 문화관련 시스템 데이터 특징	274
표 7-4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차별화 전략	275
표 7-5 지역문화정보 표준 분류(안)	276
표 7-6 지역문화정보 표준 분류(안) (계속)	277
표 7-7 향토문화표준분류체계	279
표 7-8 지역문화정보 분석전담 조직의 주요 기능	290
표 7-9 시스템 관리운영조직 대안 검토 결과	293
표 7-10 사업별 문화정보협력체계 주요 내용	293
표 7-11 계약 대상별 추진 방안	295
표 7-12 영국 문화부와 문화시설 협약시 성과지표 주요 내용	296
표 7-13 단계별 지역 문화정보 역량강화 전략	297
표 7-14 단계별 지역 문화정보 역량강화 전략	297
표 7-15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98
표 7-16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	301

그림 목차

그림 2-1 지역문화 생태계의 범위와 요소	13
그림 2-2 등록예술인(예술인증명자 기준) 현황	23
그림 2-3 문화이모작 수료생 배출 현황	23
그림 2-4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수료생 배출 현황	24
그림 2-5 2017년 가트너가 제시한 정보기술트랜드의 3가지 테마와 10대 전략기술	28
그림 2-6 세계 주요국의 지능정보화 전략 현황	32
그림 2-7 국가정보화 정책 추진 경과	33
그림 2-8 e 학습터 통합서비스 개념도	37
그림 2-9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구성도	37
그림 2-10 국토정보화 추진 경위	38
그림 2-11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구성도	39
그림 2-1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39
그림 2-13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 가치·목표, 전략 및 핵심과제	61
그림 2-14 전자정부 2020 비전 및 추진전략	62
그림 2-15 정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63
그림 2-16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18-2022 비전, 목표 및 과제	65
그림 3-1 자료제공 방식	70
그림 3-2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메인화면	73
그림 3-3 국가통계포털 도서관 제공 항목	74
그림 3-4 학술정보통계시스템 도서관 제공 항목	74
그림 3-5 자료제공 방식	75
그림 3-6 자료제공 방식	77
그림 3-7 자료제공 방식	79
그림 3-8 자료제공 방식	80
그림 3-9 자료제공 방식	81
그림 3-10 자료제공 방식	83
그림 3-11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자료제공 방식	84
그림 3-1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자료제공 방식	85
그림 3-13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자료제공 방식	85
그림 3-14 지역문화진흥원 프로그램 자료제공 방식	86
그림 3-1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프로그램(공연·전시) 자료제공 방식	87
그림 3-16 문화포털 주요 서비스 안내	87

그림 3-17 서울문화포털 서비스 안내	88
그림 3-18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프로그램 자료제공 방식	88
그림 3-19 문화N티켓 서비스 제공 방식	89
그림 3-20 학교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 자료제공 방식	90
그림 3-21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교육과정 및 일정 자료제공 방식	91
그림 3-22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교육과정 자료제공 방식	91
그림 3-23 서울예술교육 자료제공 방식	92
그림 3-2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육과정 자료제공 방식	93
그림 3-25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축제 자료제공 방식	94
그림 3-2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자료제공 방식	95
그림 3-27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자료제공 방식	95
그림 3-28 한국관광공사 축제 자료제공 방식	96
그림 3-29 대구문화재단 축제 자료제공 방식	96
그림 3-30 경상북도 공공데이터포털시스템 축제 자료제공 방식	97
그림 3-31 서울시 페스티벌in서울 축제 자료제공 방식	97
그림 3-32 서울특별시 행사 및 축제 자료제공 방식	98
그림 3-33 예술인실태조사 자료제공 방식	100
그림 3-34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자료제공 방식	100
그림 3-35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성과분석연구 자료제공 방식	101
그림 3-3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자료제공 방식	102
그림 3-37 문화예술교육사 서비스 제공 방식	103
그림 3-38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 제공 방식	103
그림 3-39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시스템	104
그림 3-40 문화품앗이(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서비스 제공현황	104
그림 3-4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자료제공 방식	105
그림 3-4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방식	106
그림 3-43 아르떼 아카데미 서비스 제공 방식	106
그림 3-44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제공 방식	107
그림 3-45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공 방식	108
그림 3-46 국가도서관통계 전문인력 정보 제공 방식	109
그림 3-47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제공 방식	110
그림 3-48 예술경영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방식	111
그림 3-49 전문예술법인·단체 리스트 제공 방식	111
그림 3-5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비스 제공 방식	112
그림 3-5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제공 방식	113

그림 3-5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 제공 방식	114
그림 3-53 지방재정365 자료 제공 방식	115
그림 3-5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자료 제공 방식	116
그림 3-55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방식	116
그림 3-56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공 방식	118
그림 3-5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련 자료 제공 방식	118
그림 3-58 국가정책연구포털 자료 제공 방식	119
그림 3-59 아르떼 라이브러리 문화 관련 연구보고서 제공 방식	119
그림 3-60 서울문화재단아카이브 자료 제공 방식	120
그림 3-61 국가통계포털 자료 제공 방식	121
그림 3-62 문화센터 서비스 제공 방식	122
그림 3-63 문화예술정보시스템(ACKIS) 서비스 제공 방식	122
그림 3-6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문화 관련 자료 제공 방식	123
그림 3-65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자료 제공 방식	124
그림 3-66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제공 방식	125
그림 3-67 문화비소득공제 자료 제공 방식	126
그림 3-68 네이버 DtaLab 카드사용통계 자료 제공 방식	127
그림 3-69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자료 제공 방식	128
그림 3-70 K-ICT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공유 현황	129
그림 3-71 통합문화이용권 자료 제공 방식	129
그림 3-72 문화빅데이터마켓 자료 제공 방식	130
그림 3-73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자료 제공 방식	131
그림 4-1 주체별 정보관리 여부	156
그림 4-2 주체별 정보제공 여부	161
그림 4-3 상위기관 요청이 많은 정보-문화재단	163
그림 4-4 상위기관 요청이 많은 정보-문화시설	163
그림 4-5 주체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동의 여부	166
그림 4-6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수요 우선순위	170
그림 4-7 문화재단의 정보수요 우선순위	170
그림 4-8 문화시설의 정보수요 우선순위	171
그림 5-1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 메인 화면	178
그림 5-2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추진 체계	181
그림 5-3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업무 흐름도	182
그림 5-4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서비스 구성도	185
그림 5-5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서비스 추진목적	186

그림 5-6 국가평생학습포털의 추진체계	188
그림 5-7 시·도 평생학습정보망 연계체제	189
그림 5-8 국가평생학습포털의 통계자료 제공 메뉴	191
그림 5-9 평생학습계좌제의 기본개념	191
그림 5-10 평생학습계좌제 이용방법	192
그림 5-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성도	194
그림 5-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성도	197
그림 5-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고도화 계획	198
그림 5-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효과	200
그림 5-15 국고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전의 예산 편성 시 문제점	201
그림 5-16 전체 보조금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202
그림 5-1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협의회 구성	204
그림 5-18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 현황	206
그림 5-19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효과	207
그림 5-20 2020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중점과제	208
그림 5-21 국정모니터링시스템 홈페이지	209
그림 5-22 국정모니터링시스템 개념도	210
그림 5-23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210
그림 5-24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부처별 상황판 서비스	213
그림 5-25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추진 로드맵	217
그림 5-26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개요도	218
그림 5-27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개념도	219
그림 5-28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개념도	220
그림 5-29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개요도	221
그림 5-30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시스템 개요도	222
그림 5-31 Compendium 웹사이트 메인화면	224
그림 5-32 Compendium 웹사이트 중 국가별 보고서의 목차구성	225
그림 5-33 Compendium 웹사이트 중 국가별 보고서 검색화면	226
그림 5-34 Compendium 웹사이트 중 분야별 문화지출액의 연도별 변화추이	226
그림 5-35 Compendium 웹사이트 중 여성의 고용비율 현황	227
그림 5-36 Europeana Pro 웹사이트 메인화면	228
그림 5-37 Europeana Collection 웹사이트 메인화면	228
그림 5-38 Europeana Data Model(EDM)의 개념도	229
그림 5-39 Europeana Pinterest 계정의 메인화면	230
그림 5-40 Europeana Strategy 2015-2020	230

그림 5-41 프랑스 문화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랑스 전역의 축제 현황정보	231
그림 5-42 웨상(ouessant) 섬의 웨상의 음악가(musiciennes à ouessant) 축제 정보	231
그림 5-43 장 프랑수아 밀레의 출생지(Maison natale de Jean-François Millet) 정보	232
그림 5-44 라이너 마리아 릴케 도서관(Bibliothèque Rainer Maria Rilke) 정보	232
그림 5-45 프랑스 노르망디 칼바도스 주의 'culturama 축제' 정보	233
그림 5-46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나만의 지도 만들기 서비스	233
그림 5-47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도표·그래프 분석기능	234
그림 5-48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나만의 지도 만들기 서비스	234
그림 5-49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나만의 지도 만들기 서비스	235
그림 5-50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나만의 지도 만들기 서비스	235
그림 5-51 영국 1 Life 홈페이지 메인 화면	236
그림 5-52 영국 1 Life' APP	236
그림 5-53 영국 GLL 홈페이지 메인화면	238
그림 5-54 영국 GLL에서 제공하는 정보제공 서비스 목록	239
그림 5-55 ADR UK 공식 홈페이지	240
그림 5-56 스위스 연방 통계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242
그림 5-57 스위스 연방 통계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243
그림 5-58 스위스 베른 주 Geoportal 사이트의 주요 메뉴	244
그림 5-59 Geoportal 에서 검색한 주요 공공기관들의 위치정보	245
그림 5-60 Geoportal에서 검색한 문화시설(란겐탈 박물관) 정보	245
그림 5-61 Geoportal 에서 검색한 문화시설(베른 극장) 정보	245
그림 5-62 베른 주 내의 지역별 세율 현황	246
그림 5-63 CHF(스위스프랑)을 기준으로 본 베른 주 내의 지역별 순소득 현황	246
그림 5-64 문화유산 정보제공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DenkmapBE)	247
그림 5-65 포털에서 지원 가능한 신청 분야(영화, 문학, 음악 등 11개 분야)	248
그림 5-66 신청 절차 예시(신청자의 거주지 및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선택)	248
그림 5-67 지역 활동 맵 기능	249
그림 5-68 지역 활동 등급 순위표	250
그림 5-69 문화보조금 포털 공식 홈페이지	251
그림 5-70 보조금 제공 프로젝트 목록	251
그림 5-71 문화보조금 신청절차 안내	252
그림 5-72 문화보조금을 제공하는 러시아 내 관련기관 목록	253
그림 5-73 라트비아 kulturas dati (문화 데이터 포털)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254
그림 5-74 라트비아 kulturas dati (문화 데이터 포털) 웹사이트의 문화시설 정보 메뉴	254
그림 5-75 라트비아 kulturas dati (문화 데이터 포털) 웹사이트의 구인정보 메뉴	255

그림 5-76 라트비아 kulturas dati (문화 데이터 포털) 웹사이트의 추천경로 메뉴	255
그림 5-77 국가 문화자본기금(State Culture Capital Fund)의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목록	255
그림 5-78 문화 분야의 공식 통계작성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자료목록(박물관)	256
그림 5-79 라트비아 kulturas Karte APP	257
그림 6-1 기본방향 도출 과정	263
그림 6-2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의 사업지향	269
그림 7-1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의 포지셔닝	275
그림 7-2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웹사이트 메인페이지	279
그림 7-3 BPR/ISP 수립 절차	282
그림 7-4 데이터 기반 지역문화 공간분석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	283
그림 7-5 지역문화 공간분석체계 부문별 필요사항	285
그림 7-6 문화취약지역(2017)과 지역문화지수(2017) 기본도	286
그림 7-7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2017)	286
그림 7-8 국내 작은도서관 분포 비교 (좌-2014, 우-2017)	287
그림 7-9 전국 생활문화센터 (2014, 2017, 2019)	287
그림 7-10 문화취약지역과 작은 도서관(좌) 및 평생학습관(우)의 분포 상관 관계 (2017)	288
그림 7-11 서울지역 문화예산과 문화사업 건수 비교	288
그림 7-12 영국의 ESRC 데이터 연구 센터	291
그림 7-13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조직 구성안	292
그림 7-14 지역문화정보 거버넌스 개념도	294
그림 8-1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추진 로드맵 (안)	305

I

연구 개요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제1절 연구 배경

- ☐ 문화자치 및 분권을 위한 정확하고 시의적인 지역문화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가공·유통을 통해 문화자치 및 분권의 기반 구축
- ☐ 정확하고 적시적인 국민의 문화서비스정보 획득 보장과 지역 및 계층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포용적인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 지역문화 정보화 사업의 필요성

■ 문화자치·분권을 위해 지역문화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가공·유통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는 지역자치·분권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함. 같은 맥락에서 문화 분야 또한 자치와 균형에 입각한 ‘국민 생활 속 문화생활 보장’이 핵심적 정책목표임.
- 문화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권한의 이양, 재정자율성 확보와 더불어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의 생산·관리·유통이 필요함. 즉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 국내정보와 국외 주요 선진사례, 주요 문화자원 등에 관한 원활한 정보획득과 주체 간 쌍방소통이 필수적임.
 - － 하지만 문화예술에 관한 주요 정보가 개별 기관 차원에서 수집·가공되고 있고 이를 원스톱으로 정보공급이 가능한 ‘통합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보획득에 애로가 있음.

■ 국민 생활 속 문화생활 보장은 정확하고 적시적인 정보획득에서 비롯됨.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민 생활 속 문화생활 보장’은 문화·예술 활동과 향유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민의 문화활동·향유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적시적소 정확하고 균등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음.
 - － 즉 ‘국민 생활 속 문화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는 계층·세대·지역 간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시간과 위치에 근거한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화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지역문화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 이상의 이유로 지역문화 관련 정보화 사업이 필요하나,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그 내용적·방법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이에 지역의 문화자원 및 시설, 인력 및 일자리, 공공문화사업, 기타 문화·예술관련 전체적인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 통합정보화시스템(Local Culture & Art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이 필요함.
- 오늘날의 정보화는 단순히 자료의 전자적 입력, 축적 및 전달의 차원을 넘어 정보의 연계·통합, 정보의 분석·가공·활용, 서비스 고도화, 이로 인해 가능한 업무 재설계 등 조직과 업무의 혁신을 유도하는 과정 (Mayer-Schönberger · Lazer, 2007) 임. 따라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 문화 정보화의 실효성과 추진 타당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 일부 정보화사업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활용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등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감사원, 2015; 국회예산정책처, 2010).
- 또한 정보화사업에는 많은 비용과 관계자간의 중장기적 합의·협력이 요구되므로 초기 접근방향과 전략이 적절히 설정되지 않으면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 따라서 기존 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무·조직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드러난 문제 및 잠재적 한계를 파악하여, 관계자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과 조직,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화 방안 및 세부과제를 도출해야 함.

제2절 연구 목적

□ 문화자치문화분권 실현 및 국민의 ‘생활 속 문화여가 향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자율적·자치적 지역문화진흥과 ‘국민 생활 속 문화여가 향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 국내정보와 국외 주요 선진사례, 주요 문화자원 등에 관한 원활한 정보획득과 주체 간 쌍방소통이 필수적임.
- 이에 지역의 문화자원 및 시설, 인력 및 일자리, 공공문화사업, 기타 문화·예술 관련 통계와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그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세부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 분야 정보화사업의 현황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함. 나아가 ‘지역문화통합정보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증하여 정보화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
- (문화 분야 정보화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분석) 자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에 대한 국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
- (정보화사업 관련 유사사례 분석)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국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정보화사례(특히 문화·예술 관련 정보화)를 조사·분석.
- (구축방향 및 과제제안) 단기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의 구축방향과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

제3절 연구의 기간 및 범위

1. 연구 기간

- 2019년 6월 4일 ~ 2020년 3월 31일

2.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 정책추진년도 : 2020~2024년 (5년간)

(2) 공간적 범위

- 전국 (17개 광역시도, 228개 기초 시·군·구 및 행정시)

(3) 내용적 범위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관련 여건 분석

- 지역문화 각종 정보·통계의 종류 및 생산·관리·활용 현황 조사
- 지역문화정보화사업을 둘러싼 내·외부환경 분석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여론 조사
- 법·제도 등 정책 환경 분석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기본 개념 구상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콘셉트 구상
- 기본계획 기본 콘셉트에 입각한 추진전략 및 체계 구상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기본계획

- 지역문화 관련 자원(시설·인력·유무형자원 등) 구성 및 자원수집 방식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관리체계 수립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과 연계될 정책사업 제안

 ‘지역문화 통합정보화시스템’ BPR/ISP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제시 및 기본계획과의 연동을 위한 업무지원

표 1-1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8개 기초자치단체행정시
시간적 범위	연구수행 기간 : 2019년 6월 4일 ~ 2020년 2월 29일 정책추진연도 : 2020년 ~ 2024년 (5년간)
내용적 범위	가.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관련 여건 분석 나.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기본 개념 구상 다.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기본계획 라. ‘지역문화 통합정보화시스템’ BPR/ISP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제시 및 기본계획과의 연동을 위한 업무지원

제4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1. 연구내용

(1)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 관련 거시환경 및 여건 분석

- 지역문화·국민여가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경제·사회·문화·정치·환경 등 제반 거시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도출
- 정보화사업 관련 국내외 트렌드 분석 및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추진 방향과 구축방식 모색
- 문화/지역문화·여가/정보화 등과 관련된 주요 법·제도 분석

(2)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관련 현황조사 및 의견수렴

- 문화·예술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정보화사업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여 통합정보화사업의 의미 도출
 - － 특히 정보화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사례분석 활용
- 문화부분 정보화사업 관련 주요국가 사례분석(현장방문·자료분석)
- 지역문화 관련 정보획득 및 활용,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및 구축방안 등과 관련하여, 국민 및 지역문화여가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및 의견조사 등)

(3)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기본 개념 및 계획 수립

- 지역문화통합정보사업의 기본방향/추진전략 및 체계 구상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 수용될 자원의 종류, 구성 및 수집방식, 구축 및 관리체계 수립, 관련 정책사업 제안 등

(4) 지역문화 통합정보화시스템 BPR/ISP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제시 및 기본계획과의 연동을 위한 업무지원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기획재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년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제안요청서 제시

2. 연구수행방법

표 1-2

연구수행방법

연구진행 점검, 정보화 관련 사업발굴을 위한 총괄협의회 구성	• 각 분야 연구진이 전문분야별 전담연구 진행 •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관련 유관기관 협력 • 전체 연구진과 문체부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포럼, 워크숍 운영
문헌 및 자료 연구	• (문화)정보화를 둘러싼 주요 환경 및 정책여건 분석 • (문화)정보화 관련 법제도 및 국가정책 분석
전문자문단 운영,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여론 수렴	• 관련 기관, 분야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자문단 구성·운영 • 주제별, 지역별 토론회 개최 (문화정책, 정보화 등) • 국민 및 지역문화정보화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실제 적용 가능방안 검토	• 국외 주요 관련 정보화사업 • 국가, 지자체 및 민간 운영 문화정보화사업 조사

제5절 연구기대효과

1.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과정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의 진흥과 국민들의 일상 속 문화활동을 위해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본 연구과제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이자 종합검토 연구로,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활용도가 높은 정보시스템 구축에 활용함. 궁극적으로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BPR/ISP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2. 문화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 시기 문화정책의 핵심 목적은 ‘문화자치·분권’과 ‘국민의 일상생활 속 자유롭고 차별 없는 문화향유’임.
 - － 국민의 일상생활 속 자유롭고 차별 없는 문화와 여가향유는 문화예술/여가 활동에 대한 정보접근성의 보장과 정보비대칭성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 및 시설, 문화여가프로그램, 인력 및 일자리, 기타 문화·예술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생산·관리하고, 국민과 문화정책 관계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제공을 목표로 함.
 - － 아울러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연계로 지역문화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 공감과 협업 유도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기초연구의 수행은 궁극적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임.

II

환경 분석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제1절 지역문화 여건 분석

□ 지역문화의 제반 여건(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통합정보화의 범위 및 추진방향 설정에 활용

1. 지역문화 정책의 흐름과 이슈

(1) 지역문화 정책의 흐름

■ 지역문화의 개념과 범위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함.
- 지역문화정책의 대상과 범위는 크게 공간범위, 지역특성, 자원, 주체 등 4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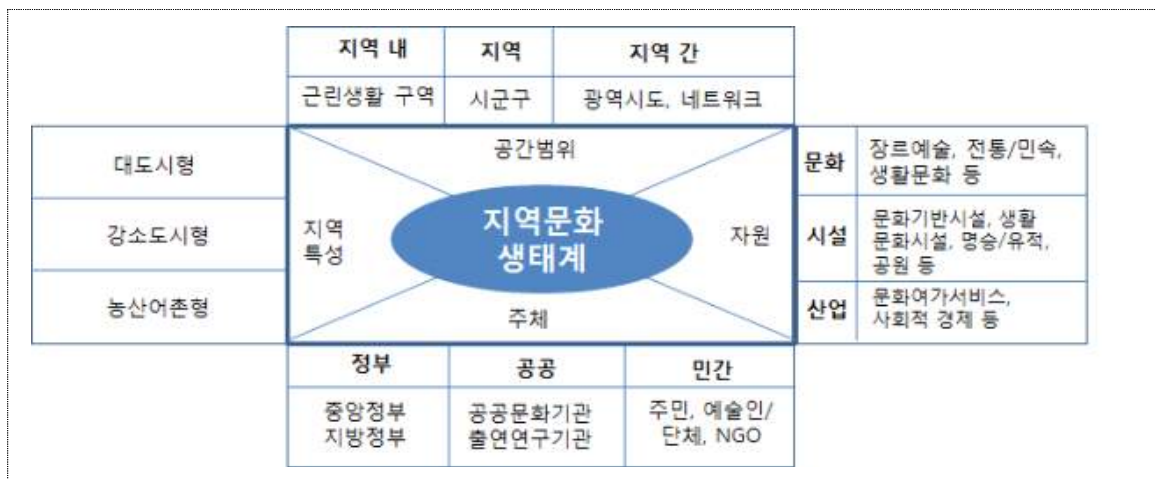


그림 2-1

지역문화 생태계의 범위와 요소

- (공간범위) ‘공간범위’란 공간적 스케일에 관한 것으로, (지역 내) 근린생활구역 < (지역) 시군구 < (지역 간) 광역시도, 네트워크로 계층화할 수 있음.
- (지역특성) 지역의 발생과 발전과정에 따라 그 속성에 다를 수 있는데, 농산어촌형, 강소도시형, 대도시형으로 구분 가능
- (자원)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자원으로 문화(장르예술, 전통/민속, 생활문화 등), 시설(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 등), 산업(문화여가서비스 등) 등이 있음.

- (주체) 주체는 지역문화정책과 연계된 제반 이해관계자로, 정부 및 공공, 민간 영역으로 구분 가능

■ 지역문화정책의 시대적 흐름

- (문민정부 이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전 문화정책은 6공화국 시정 문화복지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는 했지만 주로 공보행정(국민홍보용 문화사업), 전통문화·문화유산 보전을 통한 문화적 주체성 강조가 핵심.
- 문화정책이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그 궤를 같이 하며, 본격화된 것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arm's length) 원칙과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주체라는 '문화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토대로 추진된 점에서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획기적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정책 또한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의 '지역문화의해' 사업은 지역문화 정책의 본격화를 알리는 '서막'이라 할 수 있음. 국민의 정부는 '문화입국(文化立國)'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함. 각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지역문화컨설팅, 지역 특화형 문화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역문화의 해 10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
 - 특히 이른바 '백가쟁명(百家爭鳴)'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의 현안을 파악하고 실효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음. 이 토론회는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에 입각하여 정부의 정책 현안을 풀려고 한 점에서 우리 문화정책사(文化政策史)의 한 획이며, 현재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참여정부 이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사회 전 부분에 걸쳐 '자율, 참여, 분권'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목표로 제시함. 지역문화 정책 또한 그간 다소 이벤트성 단기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문화 기반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비록 당시 국회통과는 좌절되었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참여정부 때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진행된 문화관광부 내 지역문화과의 신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본격 추진,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거점화, 지역 문화산업 및 축제의 육성 등이 대표적인 지역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음.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함께 관련 사업인 '문화도시 조성',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문화정책 본격 추진
 - 2015년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역문화 정책을 계획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 문체부 내 국장급 독립부서(지역문화정책관실)를 신설하여 사

업 영역을 확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함.

표 2-1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주요 흐름

시기	분야별 문화정책의 방향			지역문화 관련 주요정책
	문화기반 확충	문화복지	지역문화	
제5공화국까지	문화시설 확충	-	- 지역문화정책의 인식 - 지역간·계층간 문화격차 해소계획 수립	(1983)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 수립(1980년대 새문화정책 흡수) (1984) 지방문화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제6공화국	국어, 도서관정책, 문화시설 확충	문화복지의 개념 등장, 국민문화향수권 강조	- 문화와 지역의 연계 - 문화의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 추구	(1989)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문민정부	문화시설 확충	문화복지 기본구상 수립	문화복지정책의 심화 발전	(1996) 문화체육부 내 문화복지기획단 설치
국민의 정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유휴공간 활용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건설 10대과제 선정	- 지역문화진흥의 사회적 공론화 및 기반구축 시작 - 지역균형발전과 문화정책의 연계	(1998) 새문화관광정책 발표 (2001) 지역문화의 해 지정(백가쟁명 토론회 개최)
참여정부	기존 공간 리모델링 문화공간 확충	분배적 정의에 입각한 문화복지		(2003)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2003) 문화비전 중장기계획 발표 (200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이명박 정부	근대 산업화 시대 공간 변형으로 문화공간 확충	- 능동적 복지(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 - 바우처제도의 활성화	-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 추구 - 장소기반형 문화정책의 추진	(200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박근혜 정부	- 생활권 중심의 복합문화시설 - 유휴공간 활용	국민 일반의 문화향유권 보장(국민여가활동 보장 등)	-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 문화도시 등 지역전반의 문화적 여건 개선 추구	(2013) 문화융성위 설치, 문화기본법 제정 (201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문재인 정부	- 중장기 문화비전 수립(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 관련 생활SOC 확충	-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추진으로 국민 문화향유권 보장 - 생활권 내 문화확산 노력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및 본격 시행	(2019) 법정 문화도시 지정 (2019)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2023) (2019) 박물관·미술관진흥 중장기 계획 (2019-2023)

■ 문재인 정부의 지역문화 정책

-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핵심 기조는 ‘지역’과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임.

- 문화 분야의 국정목표는 크게 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③ 문화 분야에 대한 자원 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추진임.
- 문화 분야 국정과제 중 지역문화 관련 세부 과제는 총 6대 분야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시적이고 정확한 문화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필요함.
- ①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②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③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④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⑤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⑥ 문화 분야에 대한 자원 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표 2-2

문재인 정부 지역문화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① 국민의 기초 문화 생활 보장	2021년부터 6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80만 명)에게 연간 1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연차별 확대) - 중앙부처·지자체 정책 및 계획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확대 실시, 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 추진
②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 작은영화관, 실버극장 확충 및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 어르신 영상교육 프로그램 확대 △ 콘텐츠 누리터 신설 △ 스토리 아타이브 구축 및 좋은 이야기 기반 콘텐츠·관광상품 개발 지원 추진 * 박물관, 미술관 등 여타 문화기반시설 포괄(포용국가 추진계획과 연계) - 생활문화 동호회 발표 및 교류, 창작 프로젝트 운영 지원 - 예술동아리에 예술 강사 및 마스터클래스, 발표회 등 지원) - 콘텐츠 특화 공공도서관 육성 및 국립세종도서관을 인문·문화예술허브로 특화, 지역별 장서구입 확대 - 콘텐츠 장르별 동네생활밀착 프로그램 운영 - 인력양성을 위한 ‘웹툰 캠퍼스’ 구축, 음악 창작소 내 체험진로탐색 공간 제공, 게임콘텐츠 리터러시 프로그램 강화
③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 (유아) 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창의놀이교육확대 - (아동·청소년)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 18년 시범추진) - (학교) 학교 예술강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장르 다양화 및 지역문화자원 연계 교육 강화 등 사업 다각화,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 및 자율성 강화 - 국민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 - ‘길 위의 인문학’, ‘이야기할머니’, ‘인생나눔교실’ 및 도서관·박물관 문화프로그램 확대, 전통 인문자산의 수집·연구 및 창의적 활용 지원 - 지역의 유희시설을 실용공예 중심의 ‘공예메이커 스페이스(지역공예클러스터)’로 개발 -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에 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랩 조성 - 독서문화 진흥 및 출판문화 활성화 -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속 확충 및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지원
④ 지역 간 문화균형 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 지역문화지수를 문화균형지수로 개선하고,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생활문화센터, 문화재단 등에 배치 - 문화재단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 및 역량강화

	- 지역문화재단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문화재생 사업 지원 대상 사업 확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 원도심 노후 시설 등 추가) 및 당인리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분야별 문화 도시 지정 확대, 문화마을(읍면동 단위) 신규 조성 추진 ▶ 세종시에 추진 중인 국립박물관 단지를 ‘국가 상징 문화 공간’으로 조성 ▶ 다양한 인디문화콘텐츠 지원 및 전통문화 진흥 지원, 교육 및 캠페인, 문화 간 소통상호교류를 위한 사업(무지개다리 사업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 ▶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프로젝트 관련, 국토부·행안부·경찰청·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
⑤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원, 장기적으로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영제 도입·운영 ▶ 문화재 지진대책 추진 및 재난안전 기반 강화, 문화재 일상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재생사업 지원 및 3.1운동 100주년 계기 독립유산 등록문화재 등록 ▶ 문화유산 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 ▶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확대, 종목 지원방식 개편, 전수교육 권한을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활동우수 이수자 등으로 확대 추진 검토 ▶ 영산제 등 등재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 확대 ▶ 무형문화재 진흥 복합단지 조성 및 활동 지원 강화 ▶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가야유적 정비·복원, 세계유산 등재 및 고도 지정 추진, ‘가야유적 복원·정비추진단’ 구성·운영 ▶ 광화문 월대 복원 및 해태상 이전, 서십자각 복원 및 동·서십자각 궁장 복원 ▶ 전통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국민적 향유 확대
⑥ 문화 분야에 대한 자원 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 문화재정 지속 확충 -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생활문화 시대의 정착, 전통 무형문화 진흥 등을 위해 문화 분야 투자자원 대폭 확충 ▶ 양질의 문화매개인력 확충 - 문화예술·인문교육, 문화프로그램 기획, 생활문화 동호회 축진을 통한 일상 문화활동 전문 인력 확충

2. 지역문화 주요 요소별 현황

(1) 지역문화 기반(시설) 현황

■ 문화기반시설

-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25개로 2018년 2,750개에 비해 75개 (2.7% ↑) 증가했음.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2014년 이래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5 2,519개 → ' 19. 2,825개)

표 2-3

최근 5년간 문화기반시설 현황

연도별	합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
'19년	2,825	3	1,096	881	258	255	231	101
'18년	2,750	1	1,043	873	251	251	231	100
'17년	2,657	1	1,010	853	229	236	228	100
'16년	2,595	1	978	826	219	229	228	114
'15년	2,519	1	930	809	202	232	229	116

*자료 :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각 년도

■ 생활문화시설

- 2019년 현재 전국 생활문화시설은 총 7,516개가 있으며, 이 중 작은도서관이 6,735개로 89.6%를 차지 (일부 자료는 2018년 기준)

◆ 생활문화시설이란?

-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해 공동 이용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 집, 생활영상시설(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 영화관), 작은도서관, 지역서점을 포함함.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1호(생활문화시설의 범위) 및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

- 2017년 기준 생활문화시설은 총 6,980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2년 동안 536개 (약 7.7% ↑)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생활문화센터는 2017년 93개소에서 2019년 11월 현재 126개소로 33개 증가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은 6,493개에서 6,735개로 242개가 늘어나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을 견인하는 것으로 확인

표 2-4

생활문화시설 수 (2019년, 2017년 비교)

구분		2019	2017
전체		7,516	6,980
생활문화센터		126	93
평생학습관		475	222
문화의집		101	100
생활영상시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46	46
	작은영화관	33	26
작은도서관		6,735	6,493

* 생활문화센터는 준공되어 실제 운영 중인 곳을 기준

** 2019년 평생학습관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개수는 2018.12월 현재 현황

(2) 문화프로그램 현황¹⁾

■ 지역 공연예술제작 및 소외계층 공연예술 향유기획

-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인 지역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지역 공연예술제작 활성화와 문화소외지역 공연수준 제고를 위해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신나는 예술여행사업 추진
- (방방곡곡 문화공감) 2013년 78개 78개 문예회관에서 시작된 본 사업의 규모는 2018년 182개 지역 479개 문예회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수혜자 또한 2013년 약 6만 명에서 2018년 약 72만 명을 넘어섰음.
- (신나는 예술여행사업) 소외지역·소외계층 문화지원사업인 ‘신나는 예술여행’은 수혜시설(공연횟수)이 2013년 2,127개에서 2018년 5,758개로, 참여공연단체 또한 198개에서 502개로 약 2.5배 증가했음.

표 2-5

방방곡곡 문화공감 및 신나는 예술여행 추진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역	78	129	147	161	182	198
	지원문예회관	78	351	318	438	479	529
	수혜자(명)	61,103	412,733	527,805	654,982	716,318	722,453
	예산액 (백만 원)	2,883	7,983	8,000	15,000	15,000	15,000
신나는 예술여행 (舊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역단체(수혜시설)	2,127	2,001	4,662	3,296	4,773	5,758
	참여공연단체	198	202	527	226	347	502
	공연횟수	2,127	2,001	4,662	3,296	4,773	5,758
	수혜자(명)	535,065	588,994	2,389,111	753,523	839,475	783,579

1)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프로그램 중 전국단위로 규모가 큰 행사 중심으로 정리

	예산액 (백만 원)	9,530	10,000	30,000	20,000	21,119	21,020
--	------------	-------	--------	--------	--------	--------	--------

■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대표적인 전국 단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임.
- 전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문자산을 재해석하고 강연과 탐방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전국 400여개의 도서관에서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맞춘 인문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인문학의 대중화와 일상화에 기여.
- 참여도서관은 2013년 121개 도서관, 2014년 180개 도서관, 2015년 280개 도서관, 2016 년도에는 320개 도서관, 2017년 403개 도서관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18년에는 404개 도서관에서 5,464회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총 136,230명이 참여

표 2-6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참여도서관 수(관)	121	180	340	353	403	404
운영횟수(회)	594	1,538	2,979	3,823	5,030	5,464
참여자수(명)	21,977	48,193	98,530	127,243	138,519	136,230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전국의 공·사립·대학박물관에서 학교 교과과정 과 연계하여, 박물관의 유물을 통해 인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인문학 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임. 2014년 84개관 2,872회에 서 2015년에는 121개관 5,717회, 2016 년에는 124개관, 6,051회, 2017년 120개관, 5,664회, 2018년에는 120개관 5,723회를 운영

표 2-7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참여박물관 수(관)	84	121	124	120	120
운영횟수(회)	2,872	5,717	6,051	5,664	5,723
참여자수(명)	121,707	172,218	183,242	177,498	176,783

■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29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시행

-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지역별 인구비례가 아닌 문화 기반시설 비율을 근거로 공모 시 지역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수도권 편중현상을 줄이고자 지역균등발전에 이바지함.

표 2-8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소계
사업비	31.3억 원	53억 원	20억 원	104.3억 원
신청단체	336팀	561팀	314팀	1,211팀
선정단체	24팀	54팀	27팀	105팀
공연횟수	160회	306회	152회	618회
참여인원	234,262명	305,225명	127,971명	667,458명

- ‘문화가 있는 날-청춘마이크’는 국민의 문예술�접근성 강화를 위해 직접 일상공간으로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버스킹공연임. 2018년 현재 총 194팀이 1,195회 공연을 추진함.

표 2-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소계
사업비	33.5억 원	28억 원	36.5억 원	98억 원
신청단체	629팀	887팀	1,170팀	2,686팀
선정단체	235팀 927명	152팀 510명	194팀 740명	581팀 2,177명
공연횟수	995회	887회	1,195회	3,077회
참여인원	157,608명	126,900명	133,586명	418,094명

■ 문화예술교육-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이 함께 주관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임.
- 2012년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매주 주말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으로 대표적인 지역주민의 문화향유프로그램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지역 연계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연계 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표 2-1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현황 (2014-2018)

세부사업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참여 기관	프로 그램	참여 기관	프로 그램	참여 기관	프로 그램	참여 기관	프로 그램	참여 기관	프로 그램
지역연계사업	415	430	432	432	700	732	684	750	644	666
국공립기관 연계 기관	11	19	12	18	11	22	12	20	11	19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1	8	1	12	1	6	1	6	1	6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58	58	55	55	42	42	23	23	-	-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28	58	28	37	19	19	-	-	-	-
청소년×예술가 프로그램	-	-	-	-	-	-	16	16	22	22
주말예술캠퍼스 프로그램	-	-	-	-	-	-	11	11	11	11
일상의 작가 프로그램	-	-	-	-	-	-	1	8	1	16
가족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	20	20	25	25	10	10	13	13	13	13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9	15	8	8	9	9	9	9	10	10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	12	12	1	6	1	5	1	5	1	6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53	72	46	46	31	31	31	31	21	21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25	25	22	22	24	24	21	21	21	21
아리랑 프로그램	15	15	9	9	10	10	-	-	-	-
통합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1	20	-	-	-	-	-	-	-	-
안산지역 프로그램	1	8	-	-	-	-	-	-	-	-
건축문화 프로그램	1	6	1	38	1	29	1	21	1	23
미디어문화프로그램	22	57	22	50	-	-	-	-	-	-
예술감상교육프로그램	85	85	89	92	95	105	88	101	83	99
총계	757	908	751	850	954	1,044	912	1,035	840	933

(3) 문화예술인력 현황²⁾

■ 전문예술인

- 전문예술인은 전국적인 규모와 정확한 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예술인복지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된 인원으로 그 규모를 파악함. 2019년 현재 누적 등록예술인 수는 68,286명으로 파악됨.

2) 문화예술인력은 전문예술인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유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인력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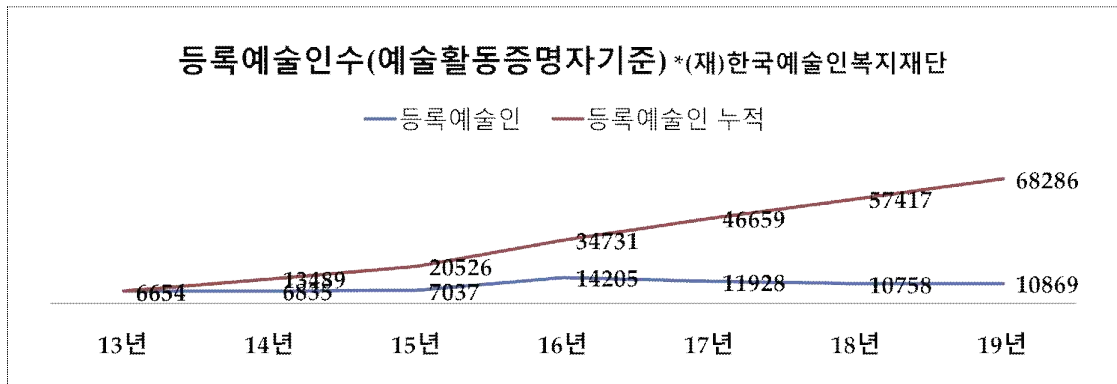


그림 2-2

등록예술인(예술인증명자 기준) 현황

문화이모작

- 문화이모작 사업은 지역 고유의 마을문화 매개인력 발굴을 통해 지역의 문화사업 발굴과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배출인원은 2013년부터 2019년 현재 총 904명(누적인원)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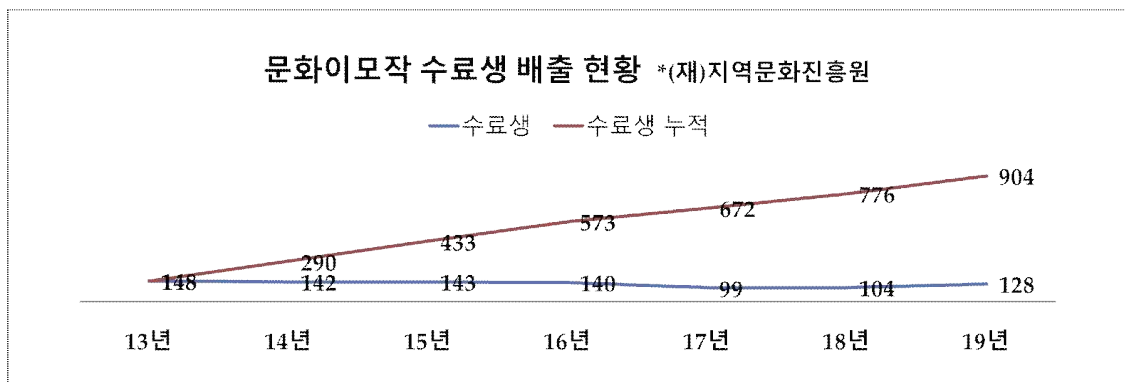


그림 2-3

문화이모작 수료생 배출 현황

지역문화전문인력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기관을 지정·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 이후 매년 5-7개 권역 지역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배출인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943명(누적인원)임.



그림 2-4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수료생 배출 현황

(4)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현황

- '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성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약 3조 81백 억 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77조 9천억 원 중 약 4.9%를 차지
 - 보건복지부가 약 37조 17백억 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사업 예산을 집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6.8조), 고용노동부(6.4조), 국토교통부(6.4조), 환경부(4.7조)에 이어 6번째로 많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집행
 -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 및 관광' 부문 국고보조사업 총액은 4조 6,503억 원이며, 이 중 문화예술 부문 국고보조사업은 1조 8,83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내역사업 수(2019년 9월 현재)는 926건으로 전 부처를 망라하여 가장 많으며, 보조사업 수는 30,068건으로 보건복지부(52,53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문화체육관광부에 비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월등히 많은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역사업건수는 각각 621건, 492건임.
 - 한편 문체부의 보조사업 중 문화예술분야 내역사업건 수는 649건, 보조사업 수는 19,550건에 이룸. 보조사업 1건 당 평균 보조금은 96백만 원에 불과하여 전형적인 소액다건(少額多件)의 형태를 보임.

표 2-11

정부부처별 보조사업(내역사업) 건 수

중앙부처	예산(억 원)	내역사업(건)	보조사업(건)
국회	97	13	15
대법원	302	7	4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9	5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2	14	62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	2	3
기획재정부	4,348	19	1,174
교육부	3,771	77	4,1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458	202	2,919

외교부	830	7	304
통일부	7,742	24	447
법무부	1,720	39	916
국방부	1,258	10	31
행정안전부	16,177	151	8,191
문화체육관광부	38,100	926	30,075
농림축산식품부	68,199	492	23,497
산업통상자원부	23,824	291	5,143
보건복지부	371,693	621	52,537
환경부	47,026	245	9,331
고용노동부	63,945	88	3,543
여성가족부	9,379	119	10,975
국토교통부	63,906	284	5,173
해양수산부	12,867	324	5,952
중소벤처기업부	12,963	120	2,856
국가보훈처	1,660	94	2,009
식품의약품안전처	1,003	27	1,825
국가인권위원회	2	1	12
방송통신위원회	166	14	14
공정거래위원회	13	20	46
금융위원회	90	13	4
국민권익위원회	1	1	9
국세청	40	1	-
방위사업청	25	4	8
경찰청	701	3	31
소방청	491	6	163
문화재청	5,136	93	3,070
농촌진흥청	1,886	66	7,713
산림청	10,755	186	11,198
특허청	708	13	39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6	3	2
새만금개발청	11	2	3
해양경찰청	16	2	6

*자료 :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

3. 지역문화 여건분석 종합

- (시설 및 인프라) 문화기반시설·생활문화시설 등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주요 기관 및 시설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요
- (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은 국고보조 문화예술프로그램 외 지자체, 민간 자체 추진 프로그램 또한 그 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음. 국고보조 문화예술프로그램 또한 지원·관리하는 정부부서와 운영기관이 각기 달라 정보관리에 애로. 따라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인력) 전문 예술인을 비롯한 문화 관련 인력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력관리·교육훈련·일자리 연계 등의 후속사업을 위한 조치 필요
- (문화사업) 문화예술분야 국고보조사업 건수가 많고 전달체계가 복잡하여 관리에 애로. 효율적 보조사업 관리 및 개선을 위해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조치 필요

제2절 정보화 환경 분석

□ 정보화 트렌드, 국가 및 지방정보화의 현황 분석으로 통해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방향 설정

1. 정보화의 개념 및 주요 트렌드

(1) 정보화의 개념과 정보사회의 특징

- 정보화는 특정 분야 또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보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것을 지향하는 상태를 의미함.
- 오늘날 사회 구성요소로서 정보는 전통적 구성요소인 물질, 자본, 노동과 가치의 우열을 다투는 부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보의 생산·축적·분배를 둘러싼 주체 간 갈등과 타협의 과정은 정보화된 사회의 제반 환경을 변모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이른바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는 정보사회는 산업사회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지칭하는 핵심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정보화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해석됨.
-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³⁾는 그 정의와 성격이 이론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정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운영되는 사회를 말하며, 산업사회 이후 새로운 사회의 성격이 무엇보다도 정보통신 기술·산업의 발전에 의해 특징 지워질 수 있다는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임(손영일, 2003).
- 이러한 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해당 시기에 적합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3) 이론가들은 1960년대 이후 사회를 ‘후기산업사회’, ‘후기자본주의사회’, ‘탈근대사회’, ‘제3의 물결’, ‘지식사회’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하였으나, 정보화가 본격화되고 성숙하면서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라는 명칭이 보편화됨.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사회를 정보의 차원에서 직접 규정짓는 정보사회의 개념화는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1960년대 일본에서는 ‘정보사회’가 제목에 포함된 일본어 책자가 발간되고 미래학자 심포지움 등 공식석상에서 ‘정보사회’ 또는 ‘정보화사회(Informatized Society)’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

(2) 정보화 트렌드

■ 정보화 관련 기술트렌드⁴⁾

- 세계 최대 IT 리서치 전략분석 그룹인 가트너(Gartner)는 매년 심포지움 및 IT 엑스포를 통해 향후 주목해야 할 10대 주요전망과 전략기술을 발표
 - － 가트너가 선정한 ‘10대 주요전망 및 전략기술’은 현재 도입 단계를 벗어나 영향력이 확대되어 향후 5년 간 엄청난 혁신 잠재력을 가진 기술을 의미함.
- 가트너의 10대 전략기술은 유형과 성격에 따라 ‘인텔리전트(Intelligent)’, ‘디지털(Digital)’, ‘메시(Mesh)’ 등 3 가지 종류로 구분됨.
 - － (Intelligent)빅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면서 진화하도록 프로그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을 의미
 - － (Digital)디지털과 물리적 세계를 혼합하여 현실세계를 보다 상세하게 묘사하고 풍부한 디지털 서비스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두 세계를 연결함으로써 몰입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창출
 - － (Mesh) 사람과 디지털 비즈니스 간의 모든 연결을 그물망이라고 하며 다양한 장치 콘텐츠 및 서비스가 사람과 연결되어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과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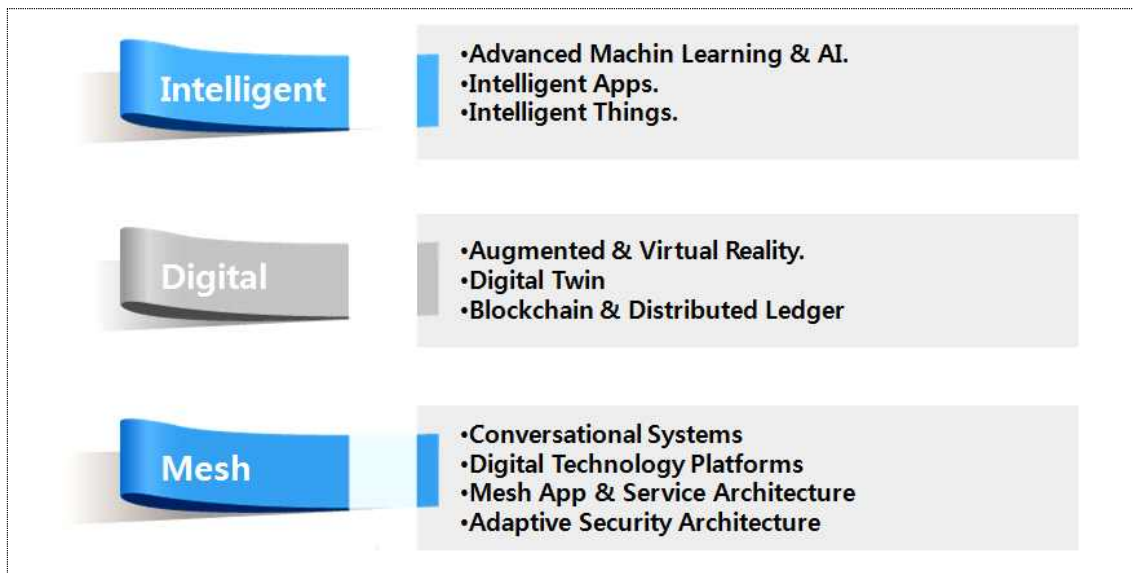


그림 2-5

2017년 가트너가 제시한 정보기술트렌드의 3가지 테마와 10대 전략기술

4)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발췌 · 인용(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ldx=25699&bcldx=17996&parentSeq=17996)
(접속일자 : 2019.4.26.)

표 2-12

가트너(Gartner)의 ICT 관련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구분	트렌드	개념정의 및 주요내용
인텔리전트 (Intelligent)	1. 인공지능과 고급 머신러닝 (AI and Advanced Machine Learning)	응용 AI 및 머신러닝은 기존의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뛰어넘는 개념 이해와 학습이 가능하여 스마트 기계는 머신러닝을 통해 생산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이는 앞으로 스마트기계의 착오율이 5~30%가 되도록 만들어주어 의료 사료 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료 효과성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임.
	2. 지능형 앱 (Intelligent Apps)	AI와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앱 분야를 형성하며 기존 앱의 작업자성능분석, 판매, 마케팅, 보안 부분을 개선하는데 기여함.
	3. 지능형 사물 (Intelligent Things)	지능형 사물이란 응용 AI와 머신러닝을 통해 응용력 없는 프로그래밍 모델의 실행력을 훨씬 넘어서는 물리적인 사물을 말하며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 기기 등이 해당됨.
디지털 (Digital)	4.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사람들 간, 사람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간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는 컴퓨팅 장치를 말함.
	5.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s)	디지털 트윈은 센서 데이터를 통해 상태파악, 변화대응, 운영 개선 및 가치향상을 제공하는 물리적 사물이나 시스템의 동적 소프트웨어 모델을 의미
	6. 블록체인과 분산 장부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s)	분산장부는 네트워크에 속한 모두와 공유된 암호화되고 변경할 수 없는 거래 기록의 리스트이며,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및 기타 토큰과 같은 가치교환거래가 순차적인 블록단위로 분류된 형태의 분산 장부임.
메시 (Mesh)	7. 대화형 시스템 (Conversational Systems)	대화형 시스템이란 사용자의 언어로 기계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고수준의 디자인모델을 뜻함.
	8. 메시 앱 및 서비스 아키텍처 (Mesh App and Service Architecture, MASA)	MASA는 사용자들이 디지털 메시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하는 동안에도 서로 다른 채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며 모바일 앱, 웹 앱, 데스크톱 앱, IoT 앱이 광범위한 백엔드 서비스와 연결돼 사용자는 '하나의 거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구조를 이룸.
	9. 디지털 기술 플랫폼 (Digital Technology Platforms)	디지털 기술 플랫폼은 디지털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본 구성 요소임. 플랫폼 관점은 기술 비전을 안내해주고, 복잡성과 반복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 고정 모델을 제공해 주는 데, 정보 시스템 플랫폼, 고객경험 플랫폼, 분석 및 인텔리전스 플랫폼, IoT 플랫폼, 비즈니스생태계 플랫폼이 대표적임.
	10. 능동형 보안 아키텍처 (Adaptive Security Architecture)	능동형 보안 아키텍처는 사용자와 기업체에게 떠오르는 보안 영역으로서 사용자 혹은 독립체 행동 분석은 개인의 사용 이력이나 다운로드 이력을 분석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비일상적인 행동은 알람이나 자동화된 반응을 유도하여 보안을 유지함.

*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25699&bcidx=17996&parentSeq=17996)

내용을 정리 (접속일자 : 2019.4.26.)

■ 정보화의 新패러다임 - ‘디지털전환’⁵⁾

- 현대 사회는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의 ‘정보화’ 사회를 넘어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
 - － 사람과 사물이 사물인터넷(IoT)과 라우드로 연결(초연결)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하여 지적인 판단까지 수행(지능화)
- 이러한 초연결 지능화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을 초래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대한민국정부, 2019)
- 특히 사회적으로는 기계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지적인 역량을 증강시키면서 편의성이 극대화되어 삶의 질이 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디지털 격차 및 소득·계층 격차 확대, 지능정보기술 또는 기기 과의존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4차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주요 이슈는 ① 블록체인 ② 5G ③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④ 지능형 사물(Intelligent Things) ⑤ 로봇(Robot) ⑥ 엣지 컴퓨터(Edge Computer) ⑦ 디지털 트윈(Digital Twins) ⑧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⑨ 대화형 플랫폼 ⑩ 핀테크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행정안전부, 2019)
 - －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일종의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기반으로 제3자(신뢰를 가진 중앙 등의 관리 기관)를 통한 데이터 관리가 아니라 정보주체들이 직접 구축한 알고리즘 위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 － (5G) 5G는 기존 LTE에 비해 20배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고, 2.5GB 초고화질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망을 의미
 - －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말함. 사물(Things)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처럼 인터넷에 연결되어 활용되는 것과 냉장고, 세탁기, TV와 같은 가전, 동식물, 가구 등을 모두 포함하며, 더 넓게는 장소, 프로세스에 이르는 개념까지도 포함
 - － (지능형 사물) 지능형 사물(Intelligent Things, IIoT)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센서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여 획득한 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해 컴퓨터에 전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말함.
 - － (로봇) 로봇은 외부 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autonomy)으로 동작(manipulation) 하는 기계 장치. 클라우드 플랫폼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5G 기술 등이 연계된 로봇 플랫폼을 기반으로 로봇산업이 급격히 고도화할 것이라 예측

5) 대한민국정부, 2019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와 행정안전부, 2018-2019 지역정보화백서관한 연차보고서에서 발췌·인용

- (엣지컴퓨팅) 엣지컴퓨팅은 정보 처리 및 콘텐츠 수집과 전달이 엔드 포인트(로컬 영역의 지점)와 인접한 곳에서 처리되는 컴퓨팅을 말함. 엣지 컴퓨팅은 메시 네트워킹 및 분산처리와 함께 트래픽과 대기시간을 줄이려는 목적 하에 프로세싱을 로컬에서 처리함.
- (디지털트윈) 디지털트윈은 2017년 가트너가 10대 전략기술로 선정하면 본격적으로 알려진 기술로, 현실의 물리적 실체와 또는 시스템을 가상의 디지털 세계에 그대로 복제(쌍둥이)하여 표현하는 기술을 말함. 디지털트윈은 실물 생산 전, 가상 화면을 이용해 객체의 성능 등을 미리 실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설계, 제조(생산),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의 단계에서 실물의 최적화, 성능관리, 예지 정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디지털 윤리와 개인 정보보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 AI 등의 확산으로 대량의 개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의 수집 결합, 분석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순식간에 처리되는 수준에 이르면서 개인 정보보호가 이슈로 제기
- (대화형 플랫폼) 대화형 플랫폼은 텍스트와 음성을 기반으로 사회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음성 인식 기술의 성장과 AI 기술의 결합을 이용해 자동차, 로봇, 스마트스피커, 스마트폰 등에 탑재함으로써 기기와 사람 간 대화 기반의 상호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핀테크)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와 산업의 변화를 통칭
- 세계 주요국은 국가 경제와 산업 성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 중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국들은 기술 선도를 위해 AI를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을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여 기술개발과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그리고 산업혁신을 위해 제조, 물류, 교통 등 기존 사업에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한 사업고도화 전략을 가속화하여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사회 대응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하고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용적 전략을 추진 중임.
- 세계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한 지능정보화 대응전략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2-6]과 같음.

주요국	주요 전략
 미국	신 미국혁신전략('15) 첨단 제조업, 정밀의학, 첨단 자동차 등 9대 전략 분야 집중 투자, 정부 혁신역량 제고, R&D 투자 등 장기적 경제성장 토대 마련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16) 빅데이터 기술 개발과 의사결정 도구 R&D 지원, 인프라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접근 추구, 빅데이터 인력 확충과 협력 생태계 구축 등을 강조 인공지능 국가 연구개발전략계획('16) 인공지능기술의 필요성 인지,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효과 강화
 영국	UK Digital Strategy('17) 데이터의 개방·활용,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온라인 공공서비스, 사이버 안전 및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조성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17)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혁신, 디지털기반 정부 내부 혁신, 디지털을 통한 서비스 제공방식의 개선
 프랑스	디지털 산업전환 전략('18) 기업·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인프라(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슈퍼컴퓨팅) 확충, 디지털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지원 AI 권고안('18) AI 기술의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 AI 네트워크 구축, AI에 따른 노동 시장, 사회 이슈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구성
 독일	Industry 4.0('11) 제조·공정 가치사슬의 근본적 재구성을 통한 핵심 경쟁력 확보가 목표 Industry 4.0의 실용성과 실행력을 강화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선언(2015) Digital Strategy 2050('16) 디지털 인프라 구축, 창업 활성화,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 디지털 교육 실현 등 디지털 역량 강화, Industry 4.0 촉진, 미래의 일자리 기회 AI Made in Germany('18) 세계 최고의 AI 국가 건설을 목표로 2025년까지 30억 유로 투입 예정
 중국	중국제조 2025('15) 기술집약형 스마트제조업으로 도약을 위해 인터넷·ICT 기술과의 융합을 강조하고 IT, 로봇, 전기차, 바이오, 신소재 등 10대 전략산업을 육성 국가정보화 발전전략 개요('16)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산업 육성과 뒤처진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해 글로벌 정보화 선도를 목표로 전략 추진 인터넷 플러스 AI 3년 행동 실시방안('16) 중국 AI 시장규모 1,000억 원 달성을 위해 AI 기반 제품에 대한 R&D 및 상용화, AI 투자 장려, 표준화,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17) AI를 본격적 국가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혁신적 AI 국가를 목표로 기술·응용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 수립
 일본	Society 5.0('17) 5대 신성장 전략(건강, 이동혁명, 공급망, 도시 인프라, 핀테크) 중심 데이터기반 정책 및 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 개정('17)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호주	2025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18.11.)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7년 내에 온라인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 전체를 2025년까지 디지털화를 완료한다는 계획

*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9 국가정보화를 위한 연차보고서, p.49

그림 2-6

세계 주요국의 지능정보화 전략 현황

2. 국가 및 지역정보화의 흐름과 주요 특징⁶⁾

(1) 국가정보화의 추진경과와 개선점

■ 국가정보화 정책의 추진 경과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정보화를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국가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함. 이후 분야별 고도화 과정을 거치고 연계와 통합, 융합과 확산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으며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⁷⁾.

6) 대한민국정부, 2019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와 행정안전부, 2018-2019 지역정보화백서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요약 정리

7) 대한민국정부, 2019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p.58



*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9 국가정보화를 위한 연차보고서, p.58

그림 2-7 국가정보화 정책 추진 경과

- (1994-2002 : 기반마련 단계) 제도적 기반강화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
 -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 행정, 교육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화를 추진하여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국가전반의 생산성 향상 정책 추진
 - －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및 국민 인터넷 이용 보편화
- (2003-2007 : 분야별 고도화)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및 전자정부 구현
 - － G2B, 물류·항만, 중소기업 정보화등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촉진
 - － 정보화능력의 함양을 위한 정보화교육 기회 확충을 통해 전 국민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 및 보편적 인터넷 접근 환경 마련
 - － 정부업무처리 전자화, 전자민원, 온라인서비스 확대
 - * 인구 백 명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OECD, 2005)
- (2008-2012 : 연계·통합단계) 정보시스템 연계 및 정보자원 통합
 - －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광대역 통합망 구축 등 ICT인프라 고도화
 - － 스마트전자정부 및 정보자원 통합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
 - *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수상 (2010, 2012, 2014)
- (2013~2017 : 융합·확산단계) ICT와 타 분야 융합을 통한 첨단 서비스 실현
 - －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와 전통산업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 － 지능정보사업 도래에 선제적 대응 환경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창업활성화 추진
 - * ITU 정보통신발전지수 2위(2017) 및 ICT 수출액 세계 3위 달성(2017)
- 정부는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18-2022)을 통해 4차산업혁명 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응, 지능화 선도를 통해 지능정보화로의 국가정보화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 － 산업화 추격 (catch up) → 정보화 주도 (Lead) → 지능화선도(Pioneer)를 통해 지능정보화

로의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전환 추진

■ 공공부문 국가정보화의 과제

- 정보시스템 연계·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기관별, 서비스별로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전체 정보시스템 17,311개) 가운데 개별 운영시스템이 75% 차지).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실효적인 연계통합 정책을 통해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추진 필요
 - － 일관된 정보체계 운영을 어렵게 하며 디지털 플랫폼 구축의 핵심인 정보유통·공유 및 데이터 통합분석에 취약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규모가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정보시스템 예산(3.2조 원, 2018) 대비 미미한 수준
 - － 특히 엄격한 가이드라인, 분야별 규제 등 보수적인 법제도적 환경으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제약
- 정보시스템 예산 중 경직성 비용이 56.3%에 달해 지능화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 따라서 정보화기획 및 새로운 기술 용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
 - － 5년 이상된 HW-SW가 70%(10년 이상은 20%)로 정보자원의 노후화는 유지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업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짐.
- 모바일 등 행정서비스 접근 경로는 다양화되었으나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서비스 위주로 맞춤형·지능형 서비스 제공은 아직 제한적이어서 이의 해소가 필요함.

(2) 지역정보화의 추진경과와 과제⁸⁾

■ 지역정보화 정책의 추진 경과

-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으로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면서 정보화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활발해졌음.
- 특히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 분권화가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되면서 지역정보화의 근간이 되는 전자지방정부에 초점을 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능형 정부 및 스마트네이션 추진계획’을 발표함.
 - － 이 계획의 목표는 ‘지능형 정부’를 통한 생애주기별 서비스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8) 행정안전부 (2019), 2018-2019 지역정보화백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그리고 ‘스마트네이션’의 추진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을 사물인터넷과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고 독거노인 스마트케어, 주민안전 강화, 실시간 재해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제공받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추진

- 지역정보화 정책의 추진경과와 주요성과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II - 13]과 같음.

표 2-13	가트너(Gartner)의 ICT 관련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연도	지역정보화 정책과 성과
~ 1990	행정표준관리시스템
1991	주민등록전산화 민원서비스
1993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
1997	제1차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1997-2000)
1998	시·군·구 행정정보화 1단계 구축
2001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시스템, 정보화마을 1차 추진 (21개 마을)
2002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2002-2006),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2003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2004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2005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정부기능분류시스템
2006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2007	U-LIFE 21 기본계획, 공공 I-PIN 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2008	인터넷 지방세종합시스템(위텍스), 사이버침해대응지원시스템, 우수정보시스템
2009	지방자치단체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행정공간정보시스템
2010	UN 공공행정대상 (정보화마을)
2011	자치단체상시모니터링시스템
2014	스마트위텍스
2017	스마트네이션(Smart-Nation) 추진계획, 지역정보화 서비스 수준 진단

*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2018-2019 지역정보화백서, p.63 재인용

■ 지역정보화의 과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추진 중인 지역정보화 사업 수와 예산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대부분이 구축비와 유지보수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정보화 기획 및 4차산업혁명기술과 연계된 새로운 정보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

- 지역정보화는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특성, 지역 공동체의 현안과 추구하는 목표, 지역 공동체의 인적·자원적 구성 등 지역의 독자적·고유적 가치의 반영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지역 발전 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지역이 스스로 정보화를 충실히 추진하고, 국가와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필요

(3) 중앙정부의 지역정보화 관련 추진정책

■ 교육정보화 (교육부)

-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수립) 교육 행·재정 체제의 편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5년 마다 국가 단위에서 교육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지역의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 2018년에 완료된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은 ‘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활용 체제 마련과 인프라 고도화 추진, 정보화를 교육 전반의 영역(유·초·중등, 고등, 평생, 직업·복지)으로 확장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시도 통합 교수·학습서비스 ‘e학습터’ 운영) 2004년 ‘사이버경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에 구축한 사이버 학습 시스템을 시도 통합 교육 서비스로 신규 구축·운영
 - － 기존 사이버 학습이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e학습터는 교실수업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시도교육청이 별개로 운영하던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
 - － 2018년 12월 기준 회원 가입자 수는 23.4만 명으로 학생 22.1만명, 교사 1.3만 명으로 총 학생 수 대비 약 9.8%임. 또한 e 학습터 사이버 학급 개설·이용 학교 수는 3,756개교로, 총 학교 수 대비 40.4%가 이용하고 있음. 학교 급별로는 전체 초등학교의 52%(3,165개교), 중학교의 18%(591개교)가 운영(교육부, 2019). 2019년 현재 회원 수는 31 만 명으로 집계



* 출처 : 교육부, 시도통합 e학습터 현황보고 자료, 2019

그림 2-8 e 학습터 통합서비스 개념도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운영) 지방교육재정 공시 제도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을 공시하는 것임. 이에 교육부는 동 법률을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공시하는 지방교육재정을 통합 비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운영(2015년 12월 개통)

－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는 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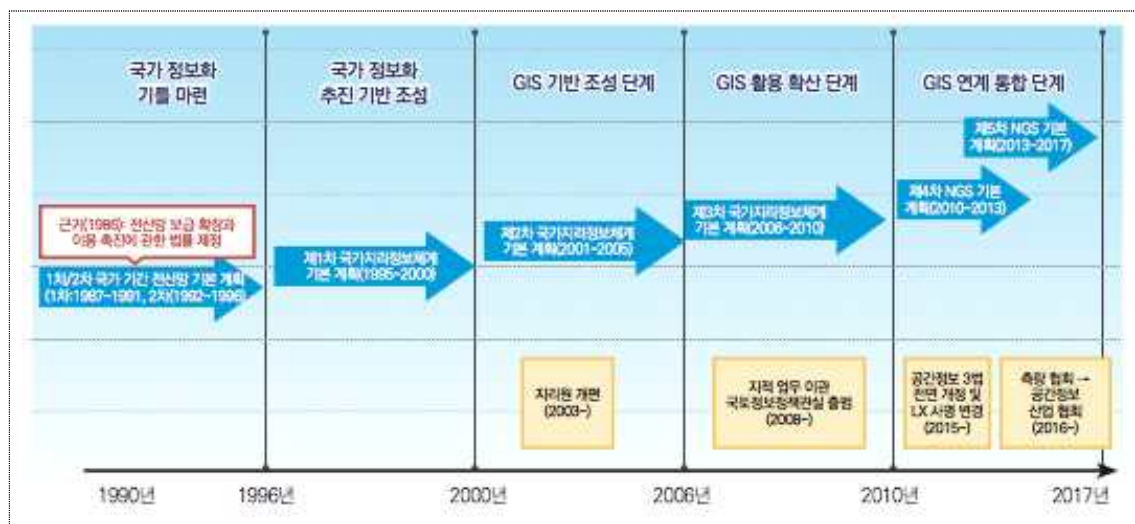


*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시도교육청 재정공시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그림 2-9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구성도

■ 국토정보화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화는 국토공간(지형, 토지, 산림 등) 자체에 대한 정보화와 국토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활동(생산, 소비, 문화, 여가 등)에 대한 정보화를 포괄함.
 - － 구체적인 의미에서 국토정보화를 정의하면 공간정보(spatial information) 또는 지리정보(geographic information)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를 의미
- 우리 정부는 1995년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1995-2000)’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국토정보화를 추진해 왔으며, 2019년 현재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를 시행 중임.



* 출처 : 국토교통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2018)

그림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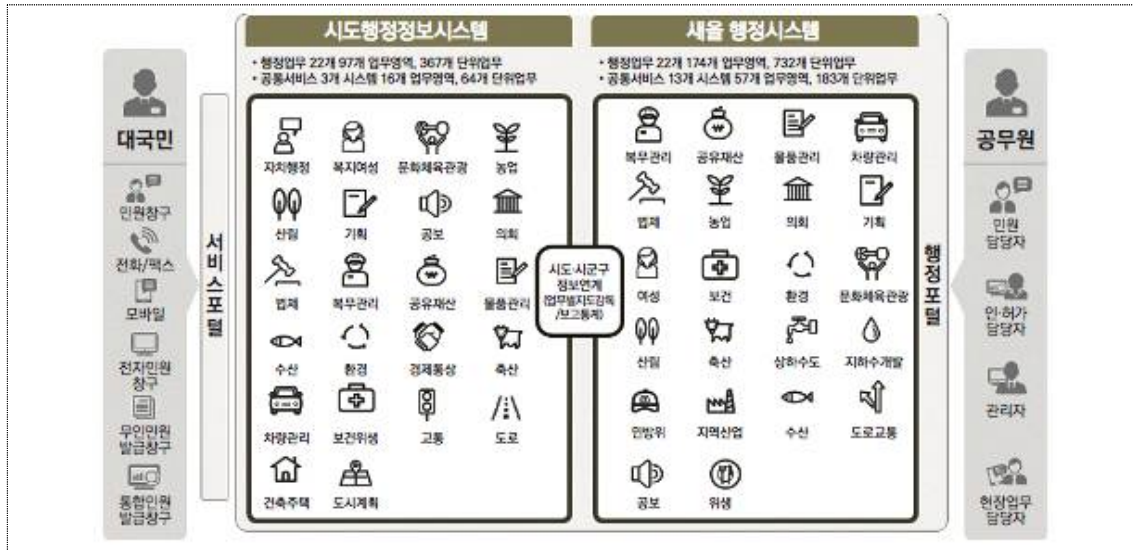
국토정보화 추진 경위

- 국토정보화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1995년)을 시작으로 3차원 공간정보(2011년), 실내 공간정보(2013년), 공간 빅데이터(2014년) 등 구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특히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계 및 개방, 유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전개하고 있음.
 - － 41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88개 시스템을 2015년부터 양방향 연계 방식을 활용하여 연결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협약을 추진

■ 행정정보화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시도,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지방 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은 지난 20여 년간 전자 정부의 근간이 되는 핵심 시스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의 핵심 창구로 일 평균 약 20만 건 이상의 민원 응대, 지난10년간 약 8억 건의 민원 사무를 처리



* 출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착수보고회 자료(2019)

그림 2-11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구성도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총 7종의 수당(양육수당, 출산 가구 및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해산 급여,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아동수당)의 서비스와 출산장려금 등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음. 향후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 예정



* 출처 : 행정안전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보도자료(2019)

그림 2-1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3절 관련 제도 및 계획 환경 분석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을 둘러싼 국가 법률 및 주요 법정계획을 분석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확보

1. 제도 및 계획 환경 분석 개요

(1) 분석 대상 주요 법률

■ 정책 부문

- 정보화와 직접 관련되거나 문화정보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법률로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 등 문화 및 예술정책에 연관된 법률과 「저작권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등이 있음.

■ 정보화 부문

- 정보화 부문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2) 분석 대상 주요 계획

■ 정책 부문

- 정책부문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 및 과제’,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 등이 있음.

■ 정보화 부문

- 정보화 부문의 경우 ‘전자정부 2020’ (행정안전부),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8-2022)’,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등을 분석함.

표 2-14

지역문화통합정보화 관련 제도 및 계획 목록

구분	주요 내용	소관부처	내용
제도	정책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자치 및 분권, 생활문화, 문화도시 등
		문화기본법	국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영향평가 등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과 활동 명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도서관법	도서관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 강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 증진 강구
		예술인복지법	예술인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 및 범위 등
		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 지침	-
	정보화	국가정보화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1.7월 전면 개정)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원칙, 절차, 추진방법 등 명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 공개청구에 관한 필요사항 명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지정
계획	정책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및 과제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2017.7.19.)와 국정비전 ‘혁신적 포용국가’의 주요 내용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5월 발표된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주요 내용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발효되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 주요내용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의 비전 하에 4대 목표 설정
	정보화	전자정부 2020	행정안전부 2016.4월 발표된 ‘전자정부 2020’ 주요 내용 ‘새로운 디지털의 경험으로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의 비전 하에 국민감성서비스, 지능정보 기반 첨단 행정, 지속가능 디지털 뉴딜의 세 가지 목표 설정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8-2022	관계부처 합동 2018.12월 발표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법률 분석 ① : 정책 부문

(1) 지역문화진흥법

■ 개요

- 2014년 1월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제정의 목적으로 함.

■ 법률의 내용

- 법률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문화진흥, 전문인력양성 및 실태조사 실시,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및 기금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정보화와 관련된 구체적 조항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지역문화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지역문화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음.

표 2-15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 구성 및 내용

장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법률의 목적 및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명시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생활문화 지원 및 시설 확충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생활속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 명시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명시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및 지원,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등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원 등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2) 문화기본법

■ 개요

-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문화를 특정분야가 아닌 사회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는 광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새

로운 문화정책의 이념과 원칙, 방향을 제시함.

- 더불어 복잡다기한 문화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문화 관련 법률에 통일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으므로, 문화기본법은 문화와 관련된 법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모법(母法) 기능을 함.

■ 법률의 내용

-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이의 보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담고 있음.
- 이 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문화의 정의를 협의의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개발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 추진을 유도.
-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제11조 ③)
 - －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문화예술진흥법

■ 개요

- 「문화예술진흥법」은 사실상 예술창작과 관련된 모법의 역할을 하는 법률로, 예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1972.8.14. 제정).

■ 법률의 내용

- 「문화예술진흥법」은 총 6장 41조와 부칙을 구성되어 있음.
 - － 문화예술 공간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의 설치 등 규정
 - － 문화의 날 설정 및 문화강좌 설치,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활동 활성화
 - － 도서관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인증제도

- 문화예술복지증진,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조성, 용도 등을 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 등의 설립 및 사업운영에 관한 내용 규정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해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
- 문화시설에 대한 포괄적 정의 및 관련 법률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제3호), 동법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1을 통해 문화시설의 종류를 총 6가지로 상세하게 분류해 놓고 있음.
 -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를 참고한 문화시설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공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법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4조의 2)
 - 정보화사업 및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문화분야의 주요용어의 정의나 문화시설의 종류 및 범주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본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정보수집 대상 및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동법의 관련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개요

- 「박물관 및 미술관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1년에 제정되었음.
 - 2019년 현재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동법 제1조)
 - 박물관·미술관·박물관자료·미술관 자료의 개념(동법 제2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제3조), 박물관·미술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제4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26조),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제33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의 내용

- 전시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개념 정의(동법 제2조) 및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박물관·미술관, 공립 박물관·미술관, 사립 박물관·미술관, 대학 박물관·미술관 등 총 4가지 유형구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3조)
 - 아울러 자료관, 사료관, 전시장, 향토관, 기념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등과 같은 전시

시설과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동법 제5조), 박물관·미술관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인 학예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6조)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타 문화시설과의 협력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33조)
- 정보화사업 및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문화시설 중 전시 시설로 분류되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종류 및 범주, 관련 전문 인력인 학예사의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본 지역문화 통합정보화사업의 정보수집 대상 및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동법의 관련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5) 도서관법

■ 개요

- 「도서관법」은 도서관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일반에게 독서 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에 제정되었음.
- 2019년 현재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동법 제1조)
- 본 법은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대학·학교·전문도서관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대한 사항(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및 주요 업무(동법 제18조·제19조),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동법 제43조)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법률의 내용

- 도서관시설 중 가장 핵심시설인 도서관의 개념 및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운영목적에 따른 분류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2조)
- 동법 제19조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이라는 규정이 있음.(동법 제19조 제1항 제4호)
- 또한 공공도서관의 업무에 대한 규정 중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표현이 있는 바, 공공도서관의 업무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 업무 이외에 행정목적의 정보제공 업무도 존재함을 알 수 있음.
(동법 제28조 제2호)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개요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에 제정되었음.
- 2019년 현재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동법 제1조)
- 본 법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사 등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주요 업무(동법 제10조),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동법 제27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동법 제31조)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법률의 내용

- 동법 제27조의 2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여하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동법 제31조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정보화사업 및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직접적 규정은 없음. 다만 본 정보화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표모델 설정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사와 같은 문화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실시간 정보수집체계 추진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

(7) 예술인복지법

■ 개요

-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의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하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며,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에 제정되었음.

- 2019년 현재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법 제1조)
- 본 법은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개념 (동법 제2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및 주요 사업 (동법 제8조·제10조), 지원대상 예술인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관련 전산망의 이용 (동법 제15조의2)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법률의 내용

- 동법 제15조의 2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원대상 예술인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정보화사업 및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다만 일정한 예술활동증명기준을 충족한 예술인의 경우 동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를 통해 경력 예술인에 대한 인력정보를 부분적으로나마 축적하고 있는 실정임.

(8) 저작권법 및 공공저작물 이용에 관한 내용

■ 개요

-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7가지의 권리임.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표 2-16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의 정의

구분	내용
저작물의 예시(제4조)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2차적 저작물(제5조)	■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편집저작물(제6조)	■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비보호저작물(제7조)	■ 비보호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함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법률의 내용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비보호저작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표 2-17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의 정의

구분	내용
저작물의 예시(제4조)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2차적 저작물(제5조)	■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편집저작물(제6조)	■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비보호저작물(제7조)	■ 비보호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함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은 공공문화정책에 관한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구축될 경우, 대부분의 데이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상당수 ‘비보호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음.
- 다만 민간에서 제작한 사진, 영상 및 지도 등을 무단으로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지속적인 저작권 관리가 필요함.

3. 법률 분석 ② : 정보화 부문

(1) 국가정보화기본법

■ 개요

- 舊 ‘정보화촉진기본법’ (이하 구법)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각 국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에 제정되었음.
 - 2009년에 구법의 명칭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2019년 현재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법 제1조)
- 동법과 더불어 검토가 필요한 부속 법령 및 관련 규정으로는 동법 시행령과 2019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등이 있음.

■ 법률의 내용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등이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동법 제6조 3항)
- 공공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에 대한 정보화 추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 제1항), 무엇보다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음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16조 제1항)

표 2-18

국가정보화기본법 주요 조항

법명 및 제·개정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정일 : 1995. 08. 04.
		최근 개정일 : 2018. 10. 16.
주요 조항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 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전자정부법

■ 개요

- 舊「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구법)은 행정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1년에 제정되었음.
- 2007년에 구법의 명칭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2019년 현재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동법 제1조)
- 더불어 검토가 필요한 부속 법령 및 관련 규정으로 동법 시행령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가이드 등이 있음.⁹⁾

■ 법률의 내용

- 「전자정부법」에 의거하면,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 운용성의 증진
-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 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동법 제5조 2항)
- 또한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65조 제1항)
- 아울러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 서비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음.(동법 제65조 제3항)

표 2-19

전자정부법 주요 조항

법명 및 제·개정일	전자정부법	제정일 : 2001. 03. 28.
		최근 개정일 : 2017. 10. 24.
주요 조항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9) 문화사업 관리시스템 종합계획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 전자적 행정관리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7.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8.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9.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11.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12.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집·관리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에 제정되었음.
- 2019년 현재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법 제1조)

■ 법률의 내용

- 본 법률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등이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동법 제6조 3항)
- 또한 공공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에 대한 정보화 추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 제1항),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음도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16조 제1항)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요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에 제정된 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법 제1조)

■ 법률의 내용

-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동법 제3조 1항),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법 제3조 2항) 등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기본원칙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13년 동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공공기관에서 수집·가공·생산하던 방대한 공공데이터들에 대해 민간분야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법적 수립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 제1항) 해당 기본계획에는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7조 제3항)
- 또한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설

령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제공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함을 밝히고 있음. (동법 제26조 제1항)

표 2-2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법명 및 제·개정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일 : 2013. 07. 30.
		최근 개정일 : 2017. 07. 26.
주요조항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자원조달 계획 11. 그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요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5년에 제정된 법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동법 제1조)

■ 법률의 내용

- 정부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동법 제12조) 향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서비스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 동법 제20조에서도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에 대한 정부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표 2-2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법명 및 제·개정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일 : 2015. 03.27.
		최근 개정일 : 2017. 07. 26.
주요조항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은 지난 2008년에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동 규정 제1조)

■ 규정의 내용

- 본 훈령은 문화정보화·문화정보화사업·문화정보자원 등 문화정보화 업무수행과 관련한 용어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 제3조), 정보화책임관(동 규정 제4조), 문화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동 규정 제5조),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운영(동 규정 제11조), 빅데이터 활용(동 규정 제20조의1)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지역문화 통합정보화사업은 포괄적으로 문화정보화에 해당되므로 문화정보화기본계획·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보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필요한 연계·통합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정보화책임관 및 문화정보협의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및 합의과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¹⁰⁾
- 아울러 통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 수집·분석 및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동 규정 중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정(동 규정 제20조의1)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등이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동법 제6조 3항)

표 2-22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주요 조항

법명 및 제·개정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정일 : 2008. 06.26.
		최근 개정일 : 2016. 05.12.
주요조항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이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문화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문화정보자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이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정보화인력, 정보화예산,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본부 실·국·단에서 정보화업무를 기획하여 추진하거나, 소속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문화분야 빅데이터”란 디지털 문화행정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5조(문화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문화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문화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문화 각 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문화사업 관리시스템 종합계획 기본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3. 관련 분야별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권익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격차해소·정보인프라에 관한 사항 6. 문화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사항 7. 그 밖에 문화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1(빅데이터 활용) ① 정보화책임관은 빅데이터 수집·분석 및 활용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분야 빅데이터 추진 업무의 공유 및 조정 2. 문화분야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3. 그 밖에 문화분야 빅데이터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

4. 계획 분석 ① : 정책 부문

(1)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 및 과제 : 혁신적 포용국가

■ 개요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함. 또한 국정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표방함.
 -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
 - －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지향함.

■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 및 과제와 ‘지역문화통합정보화’ 간 연계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물론 주요 영역 국정과제와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음.
- 국정과제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표방하고 있는 바, 문화를 통해 이러한 국정비전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문화통합정보화’를 통한 투명하고 정확한 문화정보제공, 중앙-지역, 지역 간 정보비대칭의 해소가 필수적임.

표 2-23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전략 및 국정과제와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국정 목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국정 전략			
	국정 과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문화사업에 대해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상호 공유 필요 •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문화 관련 공공기관 시설 및 사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전략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중앙 및 지역의 일자리, 일거리 정보 제공으로 문화분야 취업 활성화 • 지역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전략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전략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최신기술을 적용한 지역문화정보(공급, 수요) 수집·관리·운영 • 다양한 정보와의 융합기반 확보 • 문화데이터 활용 신산업 발굴 및 육성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지역의 영유아, 청소년,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보의 균형 있는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전략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비대칭 해소는 필수적 • 전문예술은 물론 생활문화 정보 제공으로 국민 일상 속 문화향유 실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 중앙은 물론 지역의 문화정책, 시설, 재정 및 주요사업 정보 제공으로 문화자치 및 분권 실현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전략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농산어촌의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지자체 및 관련 기관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채널 확보	

(2) 문화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진보정부 10년, 보수정부 10년간의 대입과 반목을 넘어서는 문화정책 수립의 목표 하에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수립함.
-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3대 가치는 ① 개인의 자율성 ② 공동체의 다양성 ③ 사회의 창의성임.
 -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자율성 보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자신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함.
 - (공동체의 다양성)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문화정체성과 그로부터 문화적 활동·표현들이 다양한 속성과 공동체들 내에 자유롭게 발현·존중되는 것을 뜻함.
 - (사회의 창의성) 사회 전반에 문화적 상상력과 역량을 확산시켜 4차 산업혁명·통일·일자리 변화 등의 미래 의제와 저출산·교육·복지·주거 등의 사회의제에 대응해야 함.

■ 문화비전 2030과 ‘지역문화통합정보화’ 간 연계성

-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또한 국정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그 맥이 닿아 있음. 개인의 자율성 보장, 다양한 공동체성의 존중, 문화를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어느 지역과 국민도 뒤처짐 없는 문화에 관한 정확한 정보획득이 필요함.

- 특히, 문화비전에서는 (의제 6) 지역 문화분권 실현 (과제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조성’의 세부 추진과제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활성화를 서정하였음. 이는 문화자치와 분권 실현에 있어 문화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추진근거가 되고 있음.

(3)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 :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 개요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 문화의 발전,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 필요
-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의 성과와 한계에 기반, 경제·사회·인구·인식 변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향후 5년간 (2020-2024) 지역문화진흥정책의 목표와 비전, 정책과제 제시 추진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이며, 주요 목표는 ① 내가 만드는 지역문화 ②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③ 사회를 혁신하는 지역문화임.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지역문화통합정보화’ 간 연계성

- 문화자치·분권은 지역문화 정책의 궁극의 목적이자 지향점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의 이양, 재정자율성 확보와 더불어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통계의 생산·관리·유통이 필요함.
- 특히 공공부문(중앙정부·지자체) 문화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제고가 요구됨. 이를 위해 문화 관련 정책사업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실시간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사업 중복성 지양, 성과 관리 및 집행 투명성 제고, 지자체간 융합·협력사업 확대 등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와 ‘문화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문화 기초데이터 생산·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문화현황통계’의 개선과 더불어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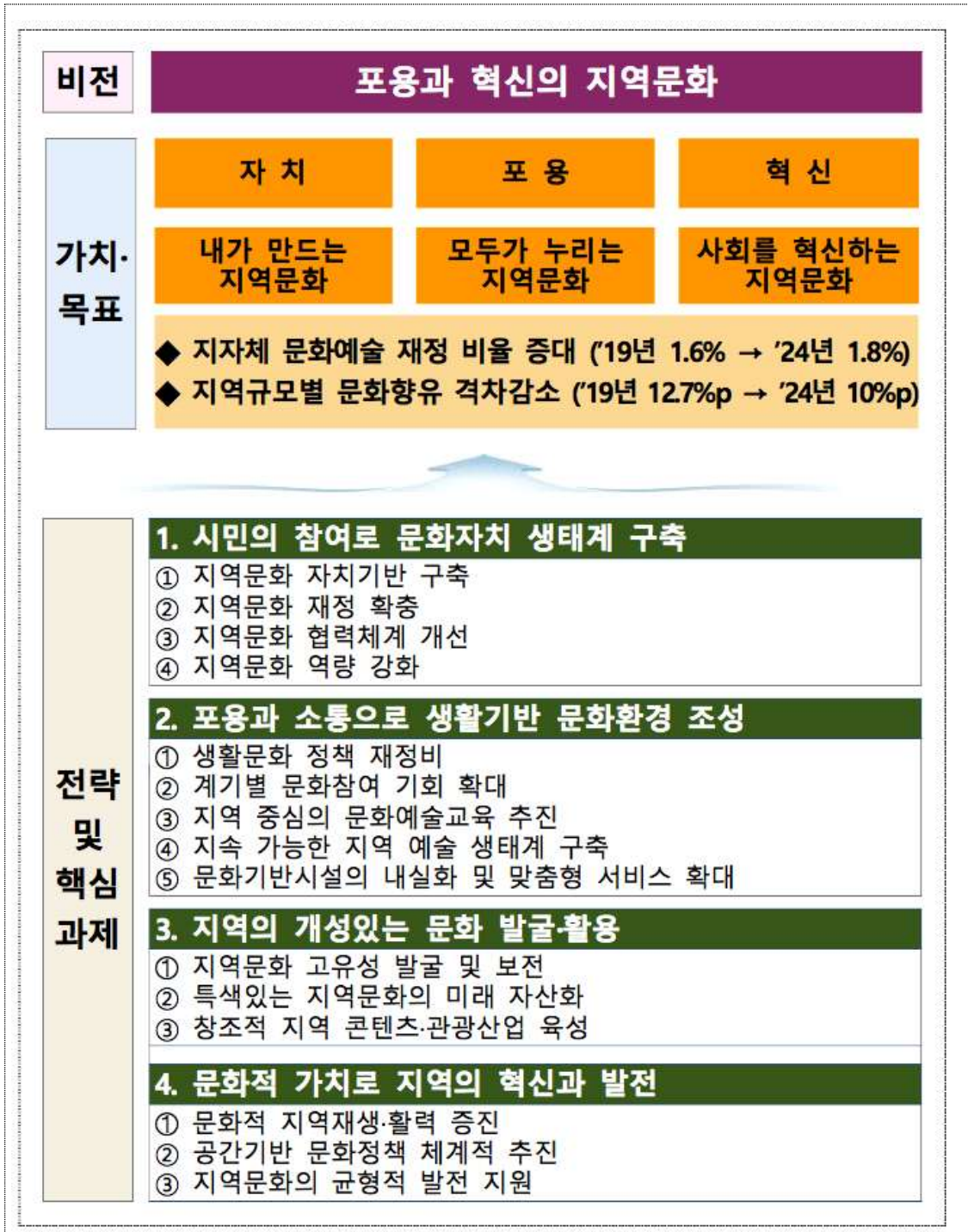


그림 2-13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 가치·목표, 전략 및 핵심과제

5. 계획 분석 ② : 정보화 부문

(1) 전자정부 2020

■ 개요

- 2016년 4월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발표함. 전자정부 2020은 새로운 디지털 경험으로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라는 모토를 기반으로 ① 국민감성서비스, ②지능정보 기반 첨단 행정, ③ 지속가능 디지털 뉴딜의 세 가지 목표를 수립하였음.



그림 2-14

전자정부 2020 비전 및 추진전략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ENJOY’를 표방하였음.

- 정보서비스의 재설계(Enhance Digital Experience), 인지 예측기반 지능행정의 실현(New-Building Intelligence Gov.),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Joining eGov Eco-system), 신뢰 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Organizing Trust Infrastructure),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의 주도(Yes! K-eGov.)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자정부의 개념 및 패러다임 변화

● 전자정부서비스는 행정기관 주도의 예산사업 중심의 정보화사업을 의미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있는 행정서비스 구현 노력임.

- 대표적인 서비스 개선사항은 전/출입신고 개선, 제세공과금 온라인 확인 및 납부, 복지서비스 개선, 각종인허가 및 등록서비스의 온라인화, 공간정보기반의 행정 및 민원서비스 제공임

● 전자정부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온디맨드’임.¹¹⁾ ‘온디맨드(On-Demand)’란 모바일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의미

- 정부는 전자정부서비스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 ‘정부·민간이 협력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또는 원할 것으로 예측되는 서비스를 지능화된 방식으로 인지하고 Seamless하게 적시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재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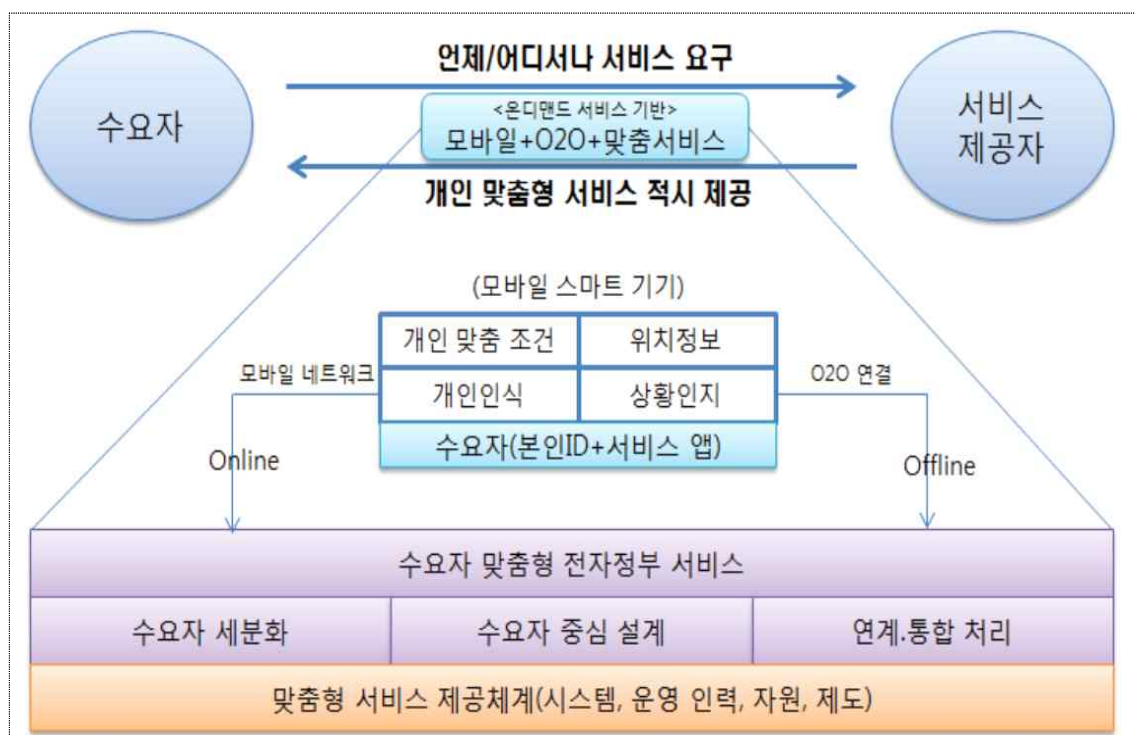


그림 2-15

정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11) D-gov_기획보고서_2016-1호(온디맨드_기반_전자정부서비스_추진전략), p15,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8-2022)

■ 개요

- 「제5차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2013~2017)」은 '국민 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 한국 실현'을 위해 4 대 전략 및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타 분야에 융합, 확산하는 계획을 추진함.
 - － 하지만 보수적인 법·제도 환경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할 범용 기술 수준은 주요 국가에 비해 미흡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초연결 지능정보화로의 국가 정보화 패러다임 전환 추진을 위한 「제6차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2018~2022)」를 수립함.
 -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정치·경제·사회 혁신체제를 구축 모색

■ 계획의 주요 내용

- (비전) 지능화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 국가사회 전 영역에서 걸쳐 지속가능한 정치·경제·사회적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의 정부 추구
 - －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로의 적극적 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충
 - － 신뢰 중심의 지능정보 인프라 기반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고, 국민 모두에게 기회와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사회 실현
- (목표) 비전과 연계된 구체적인 미래상 설정 (4대 목표)
 - － (국민의 사람을 책임지는 지능국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과 소통·통합하고 일상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 하는 국가사회
 - － (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제재도약) 디지털 전환으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
 - － (함께 하는 디지털 신뢰사회) 신뢰 중심의 지능정보기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포용 사회
 - － (안전한 지능망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실현



* 출처 :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18-2022

그림 2-16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18-2022 비전, 목표 및 과제

표 2-24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4대 전략 13대 과제

전략	과제	개념정의 및 주요내용
I. 지능화로 국가디지털 전환	1. 공공부문의 지능화 기반 구축	1-1. 국가 정보화사업의 지능화 전환 촉진 1-2. 정보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대 1-3.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정부 구현
	2. 국민 체험기반의 행복서비스 구현	2-1.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 2-2. 함께 누리는 복지 서비스 2-3.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문화 서비스 2-4. 윤택한 생활을 위한 고용 서비스 2-5. 쉽고 편리한 입법·사법 서비스
	3.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안전체계 확립	3-1. 국민 안전을 위한 지능형 안전체계 구축 3-2.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대응 3-3. 국가 안전기반 강화를 위한 스마트 SOC 구축 3-4. 국가 안보를 위한 스마트 국방
	4.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생활 기반 마련	4-1. 국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조성 4-2. 농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4-3. 지역 기반 지능화 혁신역량 강화 4-4. 도농 격차해소를 위한 스마트 밀리지
II. 디지털 혁신으로 성장동력 발굴	5. 데이터 경제 활성화	5-1. 양질의 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확대 5-2.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 및 활용 확산 5-3.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
	6.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	6-1.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 발굴·육성 6-2. 주력 산업의 지능화를 통한 생산성·효율성 제고 6-3. 신산업 규제혁신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7.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7-1. 중소·벤처기업의 지능화 혁신역량 강화 7-2. 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7-3. ICT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8. 혁신성장을 위한 지능화 기술 경쟁력 제고	8-1. 지능화 기술 확보 8-2. 혁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기술력 제고 8-3. R&D체계 혁신
Ⅲ. 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조성	9.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시민 양성	9-1. 산업혁신을 주도할 지능화 고급인력 양성 9-2. 산업 수요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 9-3.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10.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실현	10-1. 차별 없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10-2. 취약계층 지능정보역량 제고 10-3. 취약계층 경제·사회 활동 참여 촉진
	11. 지능정보사회 문화 창달	11-1. 지능정보사회 윤리 정립 11-2. 사이버 역기능 해소
Ⅳ. 신뢰 중심의 지능화 기반 구축	12. 지능정보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망 구축	12-1. 세계 최초의 5G 무선 네트워크 이용환경 조성 12-2. 지능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0기가 유선 네트워크 확충 12-3. 지능정보사회를 촉진시키는 IoT 인프라 고도화
	13. 사이버 안전국가 기반 확충	13-1. 정보보호 예방·대응 능력 강화 13-2. 정보보호 산업 육성 13-3. 통신망 재난 안전성 강화

* 출처 :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18-2022

* 붉은 글씨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과제

III

문화정보화 현황 분석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제1절 문화시설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문화 관련 정보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문화정보의 총량과 유형을 분석
- 지역문화 관련 통계 및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을 통해 향후 구축될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설계에 활용

1. 도서관

- 도서관의 종류는 설치 주체에 따라 국립 도서관,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으로 나뉘며 사립 도서관은 다시 그 목적에 따라 특수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으로 나뉘고 특수 도서관은 다시 학교 도서관, 대학 도서관, 전문 도서관 등으로 나뉨
- 도서관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대표적으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들 수 있음

(1) 조사통계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조사방법
 - － 2003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실시되며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함
- 주요 조사항목
 -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도서관 관련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도서관

구분	제공자료	관련부처
도서관	위치, 설립주체, 도서관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개관연도, 시설규모, 소장자료, 직원현황, 운영예산, 이용현황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 도서관정책기획단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자료 수집방법
 - － 도서관에게 공문발송을 통하여 도서관 담당자가 직접 입력
- 자료 제공
 - － 문화기반시설총람에 자료 제공 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Raw Data를 제공함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게시일	2019.12.13.	조회수	1840
담당부서	문화기반과(044-203-2640)	담당자	조순영
붙임파일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hwp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pdf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xlsx	미리보기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그림 3-1

자료제공 방식

전국도서관통계

● 조사 목적

- 도서관 관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서관 현황을 파악하여 도서관 정책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

● 조사 대상

- 공공도서관, 문고,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 병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

● 주요 조사항목

- 도서관명 등 기본정보, 도서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결산, 이용현황, 서비스 현황 등

● 공표시기 및 방법

- 조사주기: 1년
- 공표시기: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
- 공표방법: 전산망(인터넷)+간행물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 조사 목적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기초 통계 자료를 마련하고자 매년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공·사립작은도서관의 설립 현황과 운영 상태를 파악하여 현재 작은도서관의 운영 환경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의 연도별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흐름을 진단하여 작은도서관의 양적·질적 성장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 독서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문화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자 함

● 조사 대상

- 공립작은도서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

● 주요 조사항목

- 작은도서관 기본사항(설립 및 운영 주체), 좌석 수, 시설 규모, 소장 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직원, 자원봉사자, 사서 등 작은도서관의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개관일 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 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 사항 등

● 공표시기 및 방법

- 조사주기: 1년
- 조사시점: 전년도 1.1~12.31 기준
- 공표방법: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내 제공

■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

● 조사 목적

-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친 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대학도서관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

● 조사 대상

- 고등교육기관 전체

● 주요 조사항목

- 도서관 기본사항(설립유형) 소장 및 구독자료 수, 시설정보(면적, 열람석 수 등), 인력현황, 예산 및 결산현황, 이용자 수

● 공표시기 및 방법

- 조사주기: 1년
- 조사시점: 전년도 1.1~12.31 기준
- 공표방법: 학술정보통계시스템 홈페이지 내 제공

(2) 운영시스템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구축 목적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은 2008년 국가승인통계인 “전국도서관통계”의 작성과 결과를 서비스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임
- 도서관정책 수립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

● 통계시스템 구축 법적근거

-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2. 8. 13.>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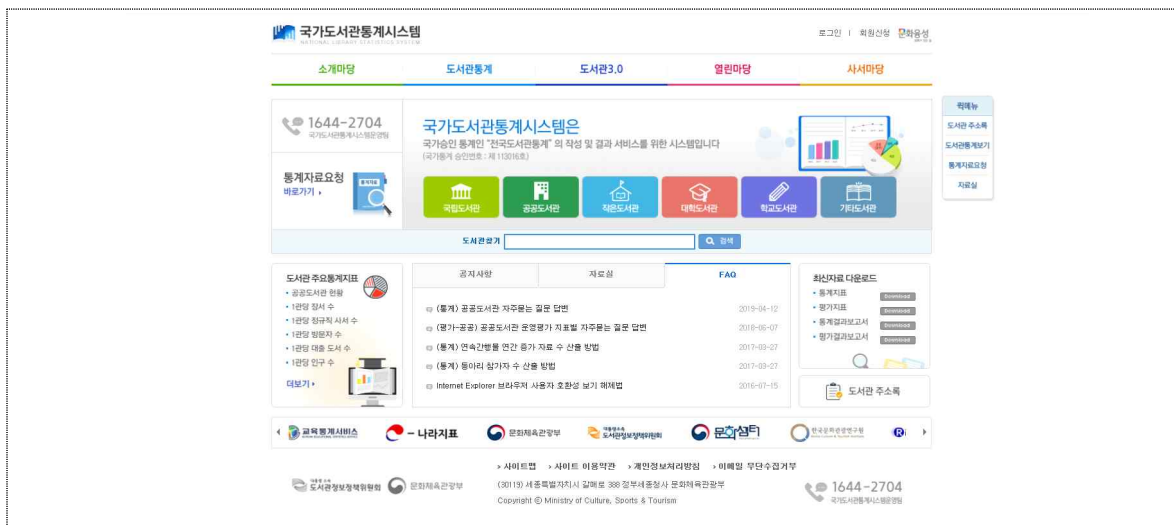
● 주요 제공항목

- 8개 영역의 도서관 현황조사: 도서관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현황, 이용 및 이용자, 장애인 및 어린이서비스, 전자서비스

● 시스템 구성

-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기타도서관 등 6가지 도서관에 대한 주요 통계지표와 통계항목을 주제별, 연도별로 제공함
- 통계자료 요청 메뉴를 통해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가능

● 제공화면



*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libsta.go.kr/>)

그림 3-2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메인화면

국가통계포털

● 시스템 구성

-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에서는 국가승인통계인 전국 도서관통계를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계열로 분석하여 제공

전국도서관통계		
전국도서관현황	수록기간	년 2007~2018
지역별도서관현황	수록기간	년 2007~2018
학교도서관현황	수록기간	년 2011~2018
작은도서관현황	수록기간	년 2013~2018
대학도서관현황	수록기간	년 2010~2018
국립도서관현황	수록기간	년 2010~2018
기타도서관현황	수록기간	년 2010~2014
도서관현황총괄표-전체	수록기간	년 2007~2011
도서관현황총괄표-시도	수록기간	년 2007~2011

* 자료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그림 3-3

국가통계포털 도서관 제공 항목

학술정보통계시스템

● 학술정보통계시스템 구축 목적

- 대학도서관통계의 작성과 결과를 서비스하기 위해 구축

● 제공항목

- 대학도서관 통계정보 제공

No	학교명	학교유형	설립	지역	대학규모	시설		
						도서관건물 면적(m ²)	명암석 출발검색수	설비 이용자용컴퓨터 (PC)수
1	ICT올리피아대학	전문대학	사립	경기	C그룹	429.3	161	0
2	가천대학교	대학	사립	경남	C그룹	3,733.3	822	32
3	가천대학교	대학	사립	경기	A그룹	13,083.5	3,305	175
4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	사립	강원	B그룹	8,226	1,384	70
5	가톨릭대학교	대학	사립	경기	A그룹	17,684	3,187	202
6	가톨릭상지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경북	C그룹	3,339	444	38
7	강리교신학대학교	대학	사립	서울	C그룹	2,542	402	13
8	강남대학교	대학	사립	경기	B그룹	5,555	1,101	80
9	강릉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충북	B그룹	1,055	350	8
10	강릉영동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강원	B그룹	2,521	487	16

* 자료 : 학술정보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rinfo.kr/>)

그림 3-4

학술정보통계시스템 도서관 제공 항목

2.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의 종류는 수장자료에 따라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으로 구분
- 전문박물관은 다시 미술관 · 역사박물관 · 과학박물관의 3가지로 대별됨

(1) 조사통계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조사방법
 - － 2003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실시되며 박물관을 대상으로 실시함
- 주요조사 항목
 -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박물관 관련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박물관

구분	제공자료	관련부처
박물관	시설정보(위치, 운영주체 등), 시설현황(면적, 시설별 면적 등), 소장자료 현황(유물 종류, 개수 등), 전시 및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수), 개관일수, 관람인원, 관람료, 인력현황수학예인력, 일반인력 등)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 도서관정책기획단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자료 수집방법
 - － 박물관(미술관)에게 공문발송을 통하여 박물관(미술관) 담당자가 직접 입력
- 자료 제공
 - － 문화기반시설총람에 자료 제공 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Raw Data 를 제공함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게시일	2019.12.13.	조회수	1840
담당부서	문화기반과(044-203-2640)	담당자	조순영
붙임파일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hwp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pdf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xlsx 미리보기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그림 3-5

자료제공 방식

■ 박물관(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 조사 목적

- 전국에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운영현황 실태 분석과 요구를 수렴하여 박물관(미술관) 운영 실태 자료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 통계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 운영 시설, 직원, 예산 등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및 수행

● 조사 대상

- 국·공·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

● 주요 조사항목

- 박물관(미술관) 일반현황(소재지, 유형 등), 시설현황(건립연월일, 면적 등), 소장자료 현황, 자료관리 여부, 운영프로그램 수, 도록발간 여부, 관람 시간 및 관람료, 운영인력(전문인력 수, 행정인력 수 등), 운영재원(총예산, 총결산)

● 공표시기 및 방법

- 조사주기: 1년
- 공표시기: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
- 공표방법: 문체부 홈페이지 내 제공

■ 국립박물관 연보

● 조사 대상

- 국립박물관

● 주요 조사항목

- 연혁, 조직(조직도, 직원 수), 부서별 업무분장, 직원 수, 시설현황(위치, 건립일, 면적 등), 예산(세입, 세출 현황), 관람객 현황(월별, 증감율 등), 소장품 및 전시품 현황, 전시프로그램(프로그램 명, 관람일 수, 관람인원 등), 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행사 현황, 국제교류 및 홍보행사 현황, 출판물 현황, 정보화 운영 현황

● 공표시기 및 방법

- 조사주기: 1년
- 조사시점: 전년도 1.1~12.31 기준
- 공표방법: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내 제공

3. 문예회관

- 문예회관은 예술 공연, 전시회, 학술 대회 따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을 의미함

(1) 조사통계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조사방법
 - － 2003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실시되며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함
- 주요조사 항목
 -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박물관 관련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3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문예회관

구분	제공자료
문예회관	시설정보(위치, 건립주체 등), 운영주체, 시설현황(면적, 시설별 면적 등), 인력 수, 공연일수, 전시일수, 이용자 수, 운영비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자료 수집방법
 - － 문예회관에 공문발송을 통하여 문예회관 담당자가 직접 입력
- 자료 제공
 - － 문화기반시설총람에 자료 제공 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Raw Data를 제공함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게시일	2019.12.13.	조회수	1840
담당부서	문화기반과(044-203-2640)	담당자	조순영
붙임파일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hwp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pdf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xlsx 미리보기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그림 3-6 자료제공 방식

■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 조사 목적
 - － 문예회관 운영 현황조사를 통해 전국 문예회관 운영의 기초자료 구축

- 문예회관 운영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문예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 문예회관 운영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예회관의 운영현황자료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
- 조사 대상
 - 전국 문화예술회관
- 주요 조사항목
 - 시설 기본현황, 시설 운영현황, 시설 인력현황, 시설 재정현황, 공연 실적현황, 문예회관 운영현황, 전시장, 교육장 가동/실적 현황, 기타 현황
- 공표시기 및 방법
 - 조사주기: 1년
 - 공표시기: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
 - 공표방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 내 제공

4. 문화원

- 문화원은 각 지방의 향토문화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 법인체임

(1) 조사통계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조사방법
 - 2003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실시되며 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 주요조사 항목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문화원 관련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문화원

구분	제공자료
문화원	문화원 명, 문화원 위치, 문화원장명, 설립일, 회원 수, 인력현황, 예산현황, 시설현황, 주요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자료 수집방법
 - 문화원에 공문발송을 통하여 문화원 담당자가 직접 입력

● 자료 제공

- － 문화기반시설총람에 자료 제공 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Raw Data를 제공함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게시일	2019.12.13.	조회수	1840
담당부서	문화기반과(044-203-2640)	담당자	조순영
붙임파일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hwp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pdf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xlsx	미리보기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그림 3-7 자료제공 방식

■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 조사 목적

- － 지방문화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직운영 및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문화원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
-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지역문화 정책에 대응하고 지방문화원에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
- － 문화원 특색에 맞는 조사지표를 개발, 검토, 보완, 수정을 통해 정확한 측정을 도모하고, 지방문화원 전체적인 현황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지원 계획 수립 자료 마련

● 조사 대상

- － 전국 지방문화원

● 주요 조사항목

- － 문화원명, 개원년도, 시설현황, 기금총액, 기금구성, 목표 및 비전, 사업/프로그램/동아리 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회원 현황, 재정·예산/기금 현황, 정책적 환경, 네트워크, 기초 문화재단 설립여부, 문화유산 등

● 공표시기 및 방법

- － 조사주기: 1년
- － 공표시기: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
- － 공표방법: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

5. 문화재단

-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 예술에 관련된 연구·출판 따위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임

(1) 조사통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조사방법
 - － 2003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실시되며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함
- 주요조사 항목
 -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문화재단 관련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문화재단

구분	제공자료
문화재단	문화재단 위치, 설립일, 설치조례, 이사장, 대표이사 명, 최초출연금, 기금규모, 주요사업, 조직현황, 기준정원, 인력현황, 예산현황, 사업현황, 사무실 면적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자료 수집방법
 - － 문화재단에 공문발송을 통하여 문화재단 담당자가 직접 입력
- 자료 제공
 - － 문화기반시설총람에 자료 제공 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Raw Data를 제공함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게시일	2019.12.13.	조회수	1840
담당부서	문화기반과(044-203-2640)	담당자	조순영
붙임파일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hwp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pdf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xlsx 미리보기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그림 3-8 자료제공 방식

6. 생활문화센터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문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 생활 밀착형 문화 시설임

(1) 조사통계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조사방법
 - － 2003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실시되며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함
- 주요조사 항목
 -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생활문화센터 관련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생활문화센터

구분	제공자료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위치, 운영방식, 공간유형, 선정연도, 개관연도, 개관일, 운영예산, 인력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자료 수집방법
 - － 생활문화센터에 공문발송을 통하여 생활문화센터 담당자가 직접 입력
- 자료 제공
 - － 문화기반시설총람에 자료 제공 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Raw Data 를 제공함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게시일	2019.12.13.	조회수	1840
담당부서	문화기반과(044-203-2640)	담당자	조순영
붙임파일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hwp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pdf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xlsx 미리보기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그림 3-9 자료제공 방식

■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 조사 목적
 - － 연차별 지속적인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지원 근거마련
 - － 생활문화센터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유형별 공간운영 특성 파악
 - － 생활문화센터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운영 성과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 조사 대상
 - －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및 이용자
- 주요 조사항목
 - － 운영자: 기본현황(기본정보, 예산, 지출, 운영인력), 운영계획 및 규정(운영 계획, 지자체 조례, 운영 규정, 운영 위원회, 요일별 운영여부), 시설 및 기자재(교통 수단, 공간, 기자재), 운영현황(운영 프로그램, 대관 실적, 회원 제도, 동호회, 방문자 수)
 - － 이용자: 여가활동 현황(여가시간, 여가활동, 여가활동에 대한 평소 생각), 생활문화센터 이용행태(생활문화센터 인지, 생활문화센터 인식, 주 이용 시설), 만족도(시설 만족도, 이용편의성 만족도, 이용 효과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 공표시기 및 방법
 - － 조사주기: 1년
 - － 공표시기: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
 - － 공표방법: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내 제공

7. 문화의 집

- 문화의 집은 청소년, 노인, 주부 등 계층별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문화 교육과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건전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립

(1) 조사통계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조사방법
 - － 2003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실시되며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실시함
- 주요조사 항목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문화의 집 관련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7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조사항목_문화의 집

구분	제공자료
문화의 집	문화의 집 위치, 개관일, 운영형태 및 운영주체, 연간 이용자 수, 운영인력 수, 휴관일, 개관시간, 총면적, 운영시설 현황, 프로그램 수 및 명, 동아리 현황, 예산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자료 수집방법
 - － 문화의 집에 공문발송을 통하여 문화의 집 담당자가 직접 입력

● 자료 제공

－ 문화기반시설총람에 자료 제공 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Raw Data를 제공함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게시일	2019.12.13.	조회수	1840
담당부서	문화기반과(044-203-2640)	담당자	조순영
붙임파일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hwp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pdf	미리보기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xlsx	미리보기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그림 3-10 자료제공 방식

제2절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

- 프로그램은 크게 공연전시와 교육체험, 행사축제, 기타로 구분되어지며, 세부사항으로는 중앙보조와 자체기획으로 나뉨

1. 공연전시

- 공연전시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대표적으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포털사이트를 들 수 있음

(1) 운영시스템

■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

- 구축 목적
 - － 분산된 공연 입장권 예매/취소 정보를 집계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 정보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 제공항목
 - － DB검색(공연, 공연시설, 기획/제작사, 수상작, 축제, 극작가), 예매상황판, 공연통계(기간별, 지역별, 장르별, 가격대별, 국내/내한별, 공연시설별 등), 공연소식 관련 정보 제공

KOPIS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DB검색	예매상황판	공연통계	공연소식	고객센터	KOPIS소개
공연DB 공연시설DB 기획/제작사DB 수상작DB 축제DB 극작가DB	예매상황판	종합통계 기간별 지역별 장르별 가격대별 국내/내한별 공연시설별 현황정보	공연뉴스 월간리포트 공연예술실태조사	공지사항 OPEN API 1:1 문의 Q&A	KOPIS 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 자료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홈페이지(<http://www.kopis.or.kr/>)

그림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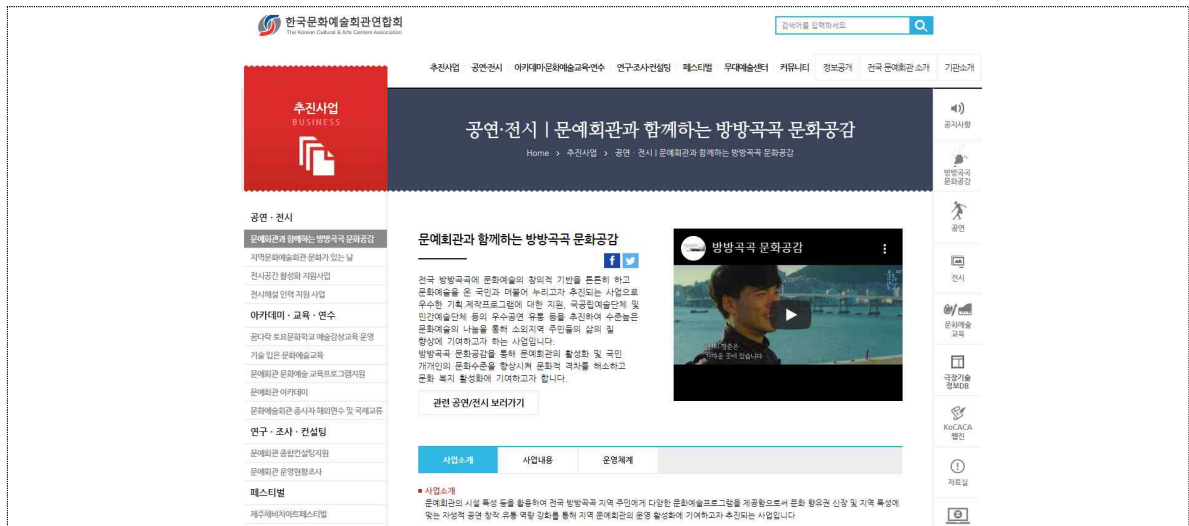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자료제공 방식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_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 구축 목적
 - － 문예회관의 시설 특성 등을 활용하여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제공항목

-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제공



* 자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www.kocac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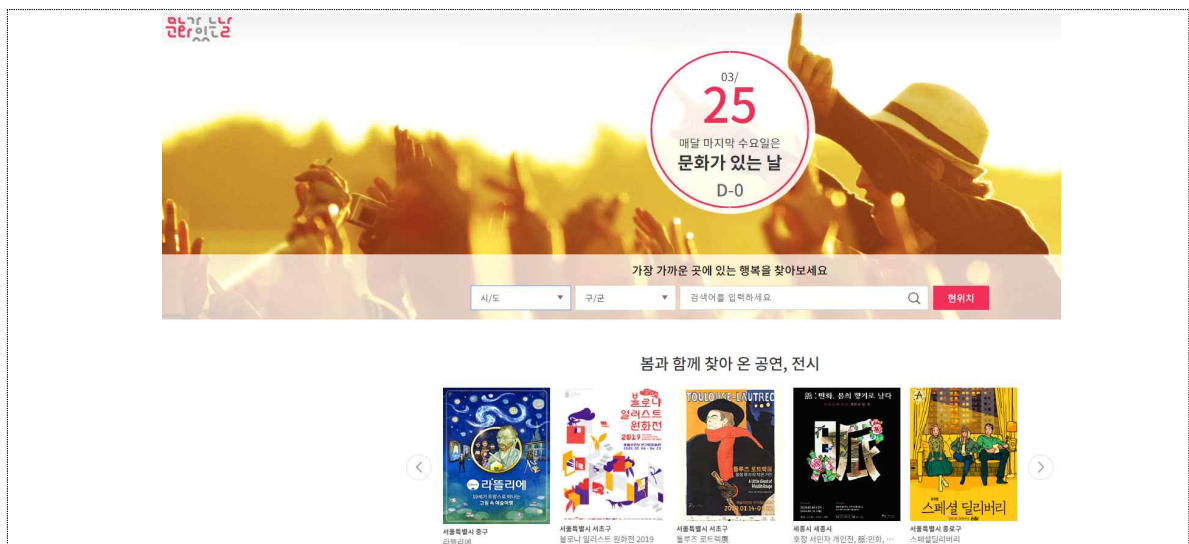
그림 3-1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자료제공 방식

■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 구축 목적

-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자료 : 문화가 있는날 홈페이지(<https://www.culture.go.kr/wday/index.do>)

그림 3-13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자료제공 방식

● 제공항목

-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영화관, 스포츠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도서관

관련 정보 제공

■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내 지역문화

● 구축 목적

- － 전국의 지역문화 소식을 공유하는 오픈게시판 운영

● 제공항목

- － 다양한 지역소식, 생활문화행사, 생활문화센터 소식, 일자리 등 유용한 소식과 정보 제공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Center.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All News', 'Business', 'Resources', 'Regional Culture', and 'Introduc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Regional Culture News' and features a 'Write Article' button. Below this, there is a list of recent news items with columns for 'No.', 'Category', 'Region', 'Title', 'Author', and 'Date'.

번호	구분	지역	제목	작성자	작성일
81	행사소식	서울	[신림동쓰리룸] 글쓰기 치유클래스 ~ 오늘 마음 ...	신림동쓰리룸	2020-02-03
80	행사소식	서울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문화상 수상 기념 ...	관리자	2019-12-09
79	행사소식	경기	2019 줄거운 공생(공공하는 생활문화) 포럼 <송...	부천생활문화 지원센터	2019-12-06

* 자료 :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rcda.or.kr/index.asp>)

그림 3-14

지역문화진흥원 프로그램 자료제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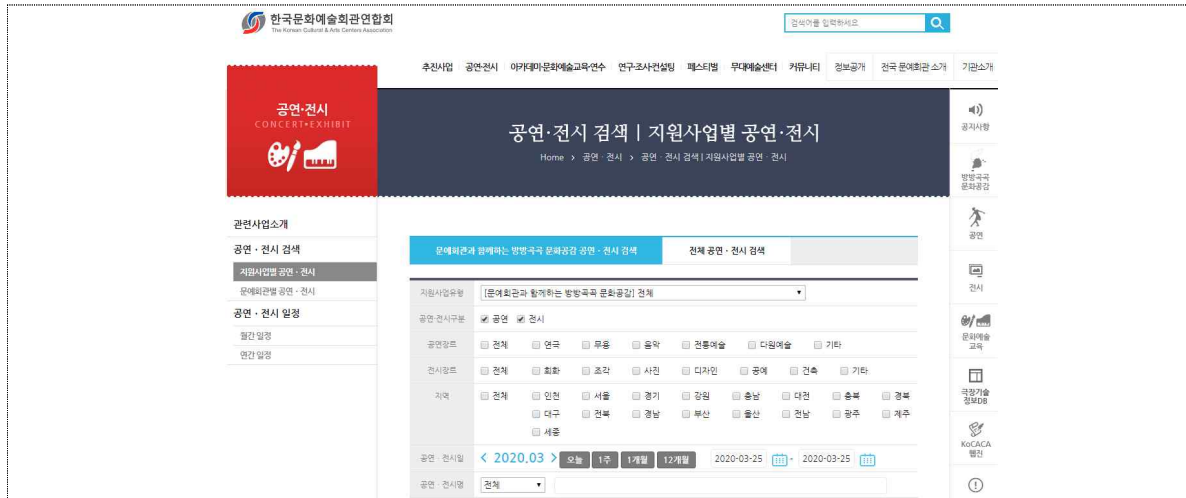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포털사이트

● 구축 목적

- －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 및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공연예술 유통,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활동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축

● 제공항목

-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진사업 및 아카데미 · 문화예술교육 · 연수, 연구 · 조사 · 컨설팅, 페스티벌, 무대예술센터 등의 관련 정보 제공
- － 지원사업별, 문예회관별 공연 · 전시 정보 및 월간, 연간 공연 · 전시 일정 정보 제공



* 자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www.kocaca.or.kr)

그림 3-1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프로그램(공연·전시) 자료제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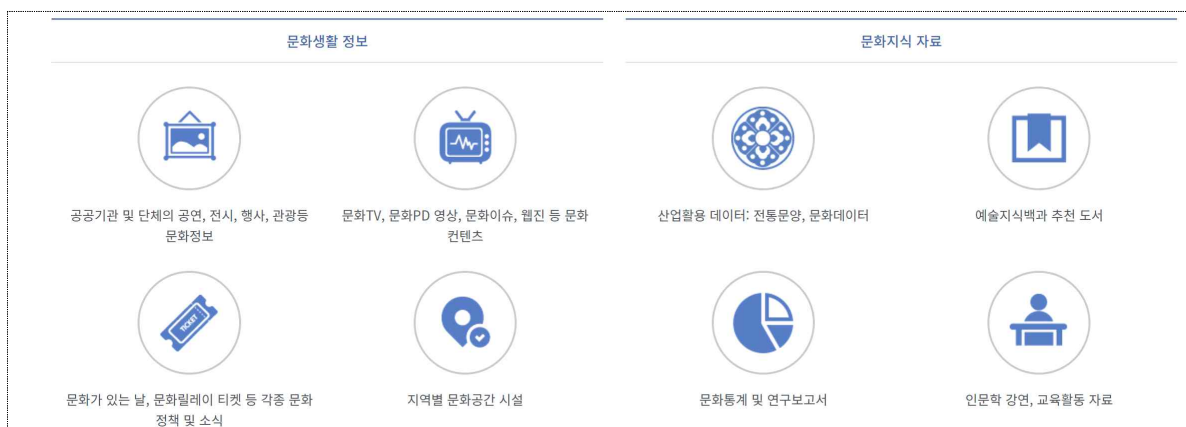
문화포털

● 구축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한국의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도서정보 등을 제공하여 한국의 문화를 보다 풍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문화정보사이트 구축

● 제공항목

- 내 주변 문화체험(공연/전시/행사/축제/교육/체험 등), 우리 동네 문화시설(공연장/미술관/체육시설/서점 등), 문화공감(문화이슈, 문화영상 등), 문화지식(문화공간, 한국문화100등), 소식(정책, 채용정보 등), 산업활용(한국의 문양, 3D콘텐츠) 관련 서비스 제공



* 자료 :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

그림 3-16

문화포털 주요 서비스 안내

서울문화포털

● 구축 목적

- 서울시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 등 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 제공항목

- 문화행사, 문화공간, 문화나눔, 문화일자리, 문화공모, 문화공감 관련 정보 제공



* 자료 :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https://culture.seoul.go.kr)

그림 3-17

서울문화포털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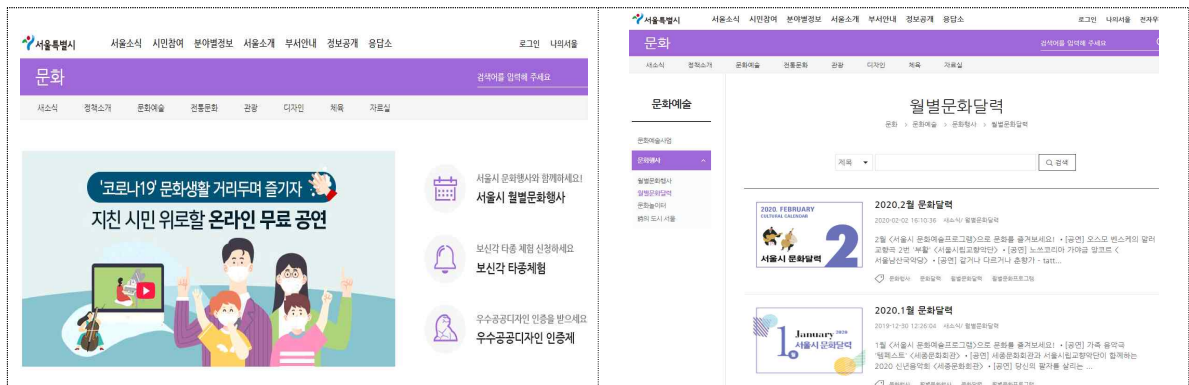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문화행사 안내 (ex. 서울특별시)

● 구축 목적

-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문화행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 제공항목

- 문화예술사업, 문화행사(월별문화행사, 월별 문화달력 등) 등 관련 정보 제공



*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culture/)

그림 3-18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프로그램 자료제공 방식

■ 문화N티켓(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 구축 목적

- 열악한 중소규모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티켓예매 사이트로, (문화예술 단체는 티켓판매 수수료 없이 티켓을 판매하고, 국민들은 예매 수수료 없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어) 대형 예매처 이용이 부담되는 중소규모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채널

● 제공항목

- 사용자 위치주변 예매정보, 문화시설 정보 관련 정보 및 예매서비스 제공



* 자료 : 문화N티켓 홈페이지(<https://www.culture.go.kr/ticket/main>)

그림 3-19

문화N티켓 서비스 제공 방식

2. 교육체험

- 교육체험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료와 각 공공기관, 지자체, 문화재단, 각종 협회·연합회 자료를 들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한국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연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만족도 조사 연구 등 다양한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1) 조사통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료 (ex. 한국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 조사 목적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11,625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 주요 조사항목

- －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내의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과 정규 교육과정 외의 자율동아리, 방과후 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문화예술교육 실태 파악
- －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외부 지원 사업 관련 현황 및 문화 예술교육 시설 등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파악

● 공표시기 및 방법

- － 공표주기: 1년
- － 공표시기: 조사기준 년도 12월
- － 조사기준시점 : 기준년도 09월 ~ 10월 기준
- － 자료수집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자료 제공

- － 학교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 자료 제공 방식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아르떼 라이브러리에서 보고서로 제공함



*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내 아르떼 라이브러리 홈페이지(lib.arte.or.kr)

그림 3-20

학교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 자료제공 방식

(2) 운영시스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구축 목적

- － 문화 관련 아카데미·문화예술교육·연수 과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 제공항목

－ 문예회관 아카데미(과정소개/교육신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번호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105	국립시립미술관	작가(가) 음악가	음악	2019-08-31~2019-10-26
104	부산문화재단	형식별과 이리스트 그리고 기록이 함께 만들어가는 '책'	시각예술	2019-08-24~2019-10-12
103	서귀포문화재단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술(미술·사진·영상·무의 음악)	전통예술	2019-08-03~2019-11-02

* 자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https://www.kocaca.or.kr/>)

그림 3-21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교육과정 및 일정 자료제공 방식

■ 대구문화재단_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구축 목적

- － 대구광역시 시민 누구나 즐겨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과연계 예술활동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

번호	이름	성별	활동분야	교육대상	상세보기
61	박세희	여	학교문화예술(공예), 사회문화예술(기타예술)	초·중·고·일반	상세보기
60	임은경	여	학교문화예술(미술), 사회문화예술(기타예술)	초·중·고·일반	상세보기
59	오지영	여	학교문화예술(공예), 사회문화예술(기타예술)	초·중·고·일반	상세보기

* 자료 : 대구문화재단 내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garte.or.kr/sub3_2.asp)

그림 3-22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교육과정 자료제공 방식

● 제공항목

- 대구광역시 내 문예회관 아카데미(과정소개/교육신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 서울예술교육

● 구축 목적

- 예술로플러스, 예술로 함께, 서울형 교육예술가,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서울시민예술대학 등 예술 관련 교육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 제공항목

- 서울시에 진행하는 예술 관련 교육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 자료 : 서울문화재단 내 서울예술교육 홈페이지(<http://artseduta.sfac.or.kr/>)

그림 3-23

서울예술교육 자료제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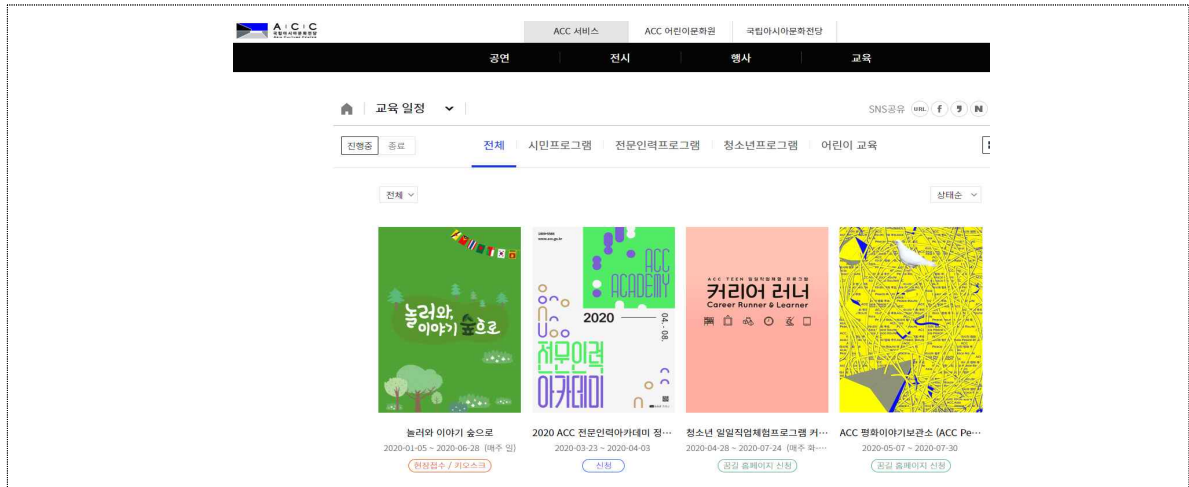
■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 구축 목적

- 아시아문화자원과 동시대 예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제작·체험의 장과 융합형 문화·예술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함

● 제공항목

- 문화관련 교육소개, 교육일정, 시민프로그램, 전문인력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어린이 교육 관련 정보 제공



* 자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

그림 3-2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육과정 자료제공 방식

3. 행사축제

- 행사축제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각 공공기관, 지자체, 문화재단, 각종 협회·연합회 자료를 들 수 있음

(1) 조사통계

■ 문화관광축제 통계

- 조사 목적
 - －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비롯한 관광산업 및 관련산업의 계획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현황자료를 연도별로 제공
- 조사 대상
 - － 각 특별시·광역시에서 3개 이내, 각 시·도에서 7개 이내의 축제를 추진하면 관광·축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 등 축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 등을 기준
- 주요 조사항목
 - － 지정구분, 축제명, 축제기간, 국내외 관광객수, 경제효과 등
- 공표시기 및 방법
 - － 공표주기: 1년
 - － 공표시기: 조사기준 년도 12월
 - － 조사기준시점 : 전년도 01.01 ~ 12.31 기준

- 자료수집방법 :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년도

자료 제공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Raw-Data를 제공함



*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know.tour.go.kr>)

그림 3-25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축제 자료제공 방식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 조사 목적

-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축제 평가와 환류를 통한 문화관광축제의 질적 제고를 위한

● 조사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대상

● 주요 조사항목

- 문화관광축제 현황(기간, 장소, 주요프로그램) 및 평가, 지자체 자체 설문조사(방문객 만족도, 소비지출, 외지관광객 비율),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 축제별 이미지

● 공표시기 및 방법

- 공표주기: 1년
- 공표시기: 조사기준 년도 12월
- 조사기준시점 : 전년도 01.01 ~ 12.31 기준
- 자료수집방법 : 전문가 현장평가 및 소비자 온라인평가, 지자체 성과평가

● 자료 제공

-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자료 제공 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e-book을 제공함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그림 3-2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자료제공 방식

(2) 운영시스템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구축 목적

-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정보가 연동되어 게시된 것으로, 축제 정보를 쉽게 검색 할 수 있도록 구축

● 제공항목

- 연도별, 지역별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정보 검색 서비스 및 관련 정보 Raw-Data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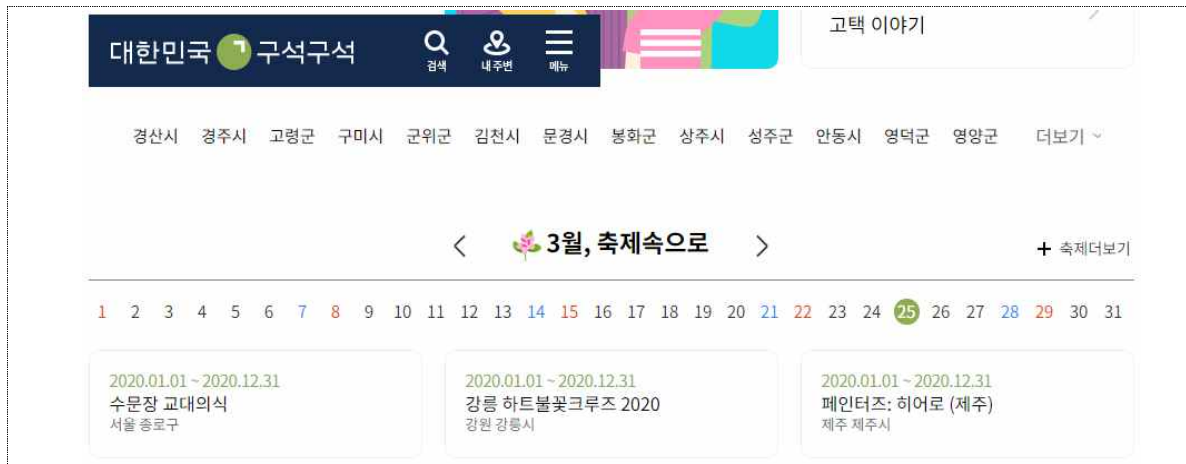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그림 3-27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자료제공 방식

■ 한국관광공사_대한민국 구석구석

- 구축 목적
 - 대한민국의 축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이트 구축
- 제공항목
 - 대한민국 축제 월별, 지역별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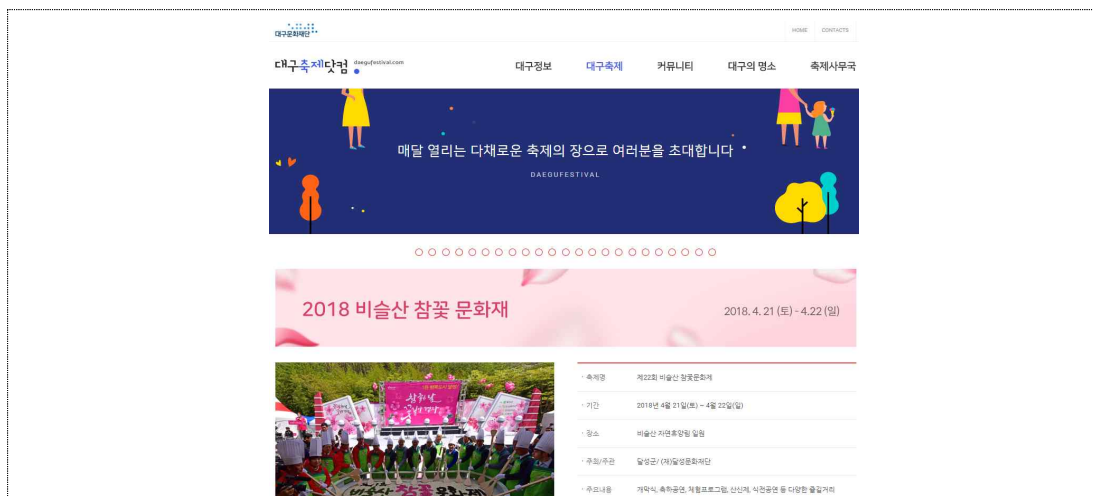
* 자료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그림 3-28

한국관광공사 축제 자료제공 방식

■ 대구축제닷컴

- 구축 목적
 - 대구광역시 전반적인 시즌별 축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이트 구축
- 제공항목
 - 대구광역시 축제명, 주제, 기간, 장소 등 관련 정보 제공



* 자료 :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대구축제닷컴(http://daegufestiv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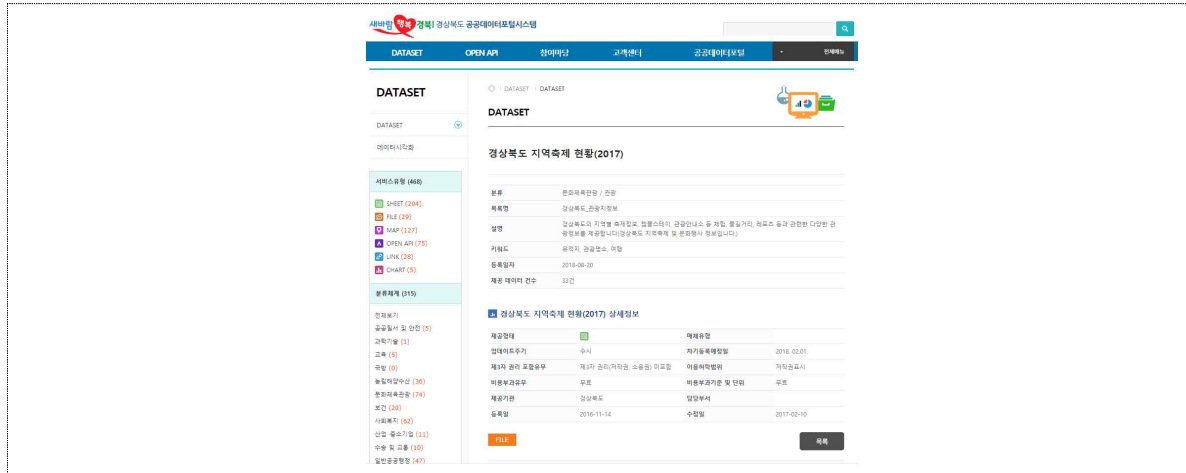
그림 3-29

대구문화재단 축제 자료제공 방식

■ 경상북도 공공데이터포털시스템의 경상북도 지역축제 현황

● 구축 목적

－ 경상북도의 지역별 축제 및 문화행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자료 : 경상북도 공공데이터포털시스템 홈페이지(data.gb.go.kr)

그림 3-30

경상북도 공공데이터포털시스템 축제 자료제공 방식

● 제공항목

－ 경상북도의 지역별 축제 및 문화행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Raw-Data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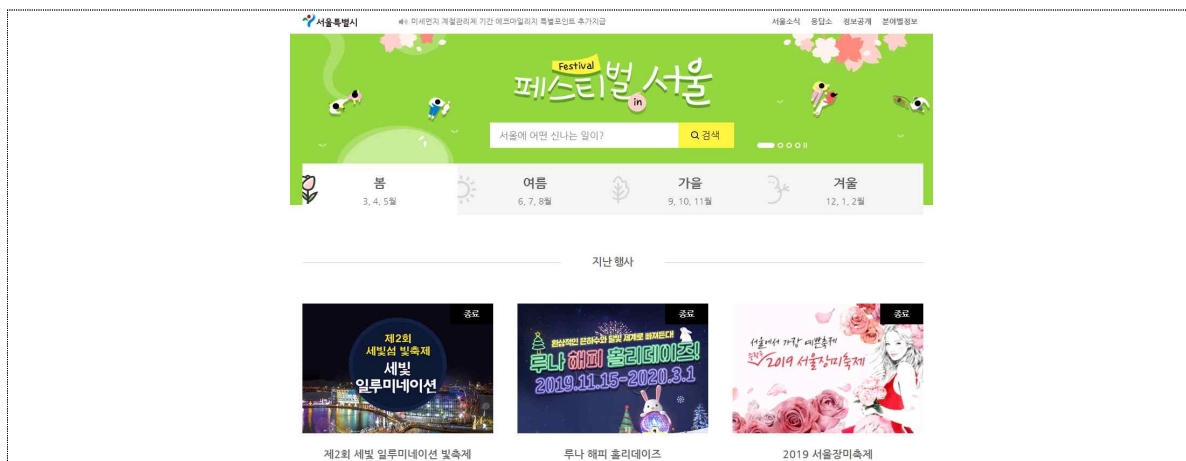
■ 페스티벌 in 서울

● 구축 목적

－ 서울시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 페스티벌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제공항목

－ 서울시 내 월별 축제 관련 정보(소개, 오는 길 등) 제공 및 해당 홈페이지 연결



* 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내 페스티벌인서울(https://festival.seoul.go.kr)

그림 3-31

서울시 페스티벌인서울 축제 자료제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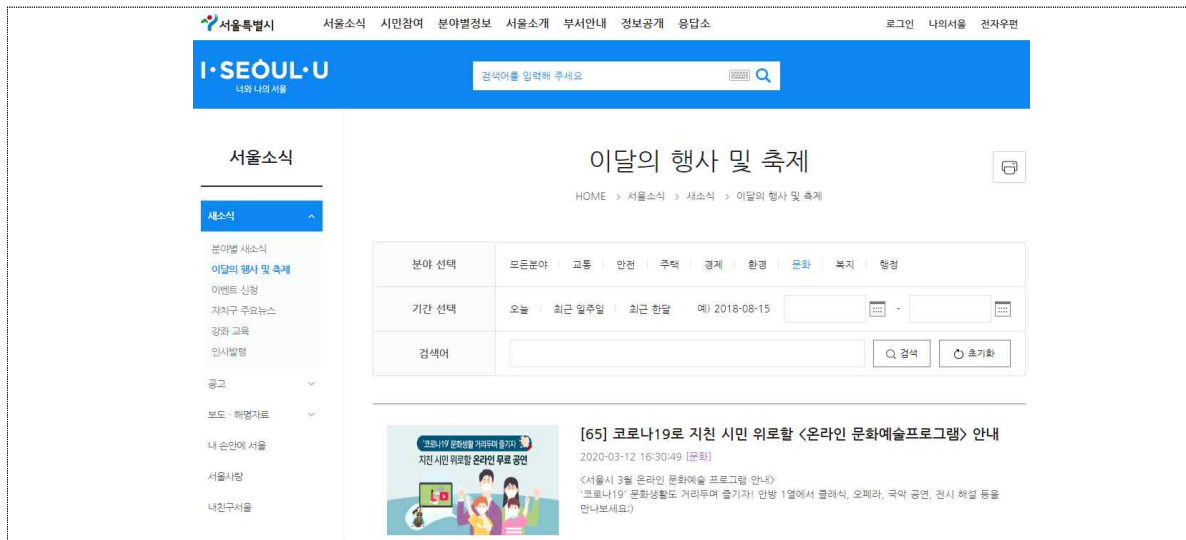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구축 목적

－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축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 제공항목

－ 분야별, 기간별 이달의 행사 및 축제 정보 제공



*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그림 3-32

서울특별시 행사 및 축제 자료제공 방식

제3절 인력단체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

- ☐ 인력단체는 크게 인력과 단체로 구분되어짐
- ☐ 인력: 예술인(전문예술인), 매개인력(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문화이모작사업, 문화예술교육사, 문화관광해설사, 자원봉사자), 교육인력(예술강사), 전문인력(학예사·사서)
- ☐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1-1. 인력 ① : 예술인

- 전문예술인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대표적으로 예술인실태조사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들 수 있음

(1) 조사통계

예술인실태조사

- 조사 목적
 - － 문화예술의 각 분야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등 14개 분야별 활동 예술인
- 주요 조사항목
 - － 예술활동분야, 예술활동내용, 고용 및 근로형태, 생활 및 복지, 예술정책만족도
- 공표시기 및 방법
 - － 공표주기: 3년
 - － 공표시기: 조사기준 년도 12월
 - － 조사기준시점 : 전년도 12.01 ~ 06.30 기준
 - － 공표방법: 언론(보도자료)+전산망(인터넷)+간행물
 - － 자료수집방법 : 면접조사
- 자료 제공
 - － 예술인실태조사 자료 제공 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e-book을 제공함

2018 예술인실태조사(2017년 기준)

게시일	2019.04.04.	조회수	4991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16)	담당자	이윤영
붙임파일	 PDF 내려받기  e-book 보기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입니다.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그림 3-33

예술인실태조사 자료제공 방식

(2) 운영시스템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구축 목적

- 문화예술의 각 분야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제공항목

- 포트폴리오 관리, 예술인 복지 원스톱 서비스, 구인·구직정보 제공, 온라인 지원관리, 예술활동 촉진 정보 아카이빙,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의 통합 로그인 제공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kawfartist.kr HOME 로그인 회원가입 이용약관 SITEMAP						
경력지원	복지지원	알림·상담	예술교류정보	뉴스레터	나의활동정보	온라인지원관리
예술활동증명 표준계약서	창작준비금지원 산재보험 의료비 지원 예술인패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공지사항 성폭력 피해지원 상담·컨설팅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활동공간 협화·조합 기타		내 정보 관리 내 이력 등록·수정 상담·신고 내역 내 1:1문의 답변	지원신청

* 자료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s://www.kawfartist.kr/hkor/userMain/hkorMain.do?sso=ok>)

그림 3-34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자료제공 방식

1-2. 인력 ② : 매개인력

- 매개인력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대표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실태조사와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을 들 수 있음

(1) 조사통계

■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 주요 조사항목
 - － 지역문화인력 직무실태 및 경력경로조사, 지원사성과평가 결과
- 조사주기 및 방법
 - － 조사주기: 1년
 - － 조사기간 : 전년도 01. ~ 12. 기준
 - － 조사방법 : 지역문화시설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조사(지원사업 참여시설 중 10개의 유형별 조사대상 선정, 해당 시설 직원대상 조사 추진), 지역문화인력 경력경로 추적체계 마련(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참여인력 대상 조사추진),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분석(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참여시설 및 지역문화인력 대상 조사 추진)
 - － 제공방법: 지역문화진흥원 내 홈페이지 내 제공



* 자료 :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rcda.or.kr>)

그림 3-35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성과분석연구 자료제공 방식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용 실태조사

- 주요 조사항목
 - －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현황, 의무배치기관의 자격소지자 활용내용, 자격 취득동기, 자격증의 구직시 도움정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현황, 배치형태, 담당업무, 향후 배치의향 제공
- 조사주기 및 방법
 - － 조사주기: 1년

- 조사기간 : 기준년도 07.~08. 기준
- 조사방법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D 진행
- 제공방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아르떼 라이브러리에서 보고서로 제공함



*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내 아르떼 라이브러리 홈페이지(lib.arte.or.k)

그림 3-3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자료제공 방식

■ 문화이모작사업 자료

● 주요 조사항목

- 교육생수, 지원규모, 실습사업수, 주민참여자수

● 조사주기 및 방법

- 조사주기: 1년
- 조사기간 : 전년도 04. ~ 12. 기준
- 조사방법 : 농산어촌, 도농지역 예비 문화리더(마을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귀농/귀촌인 그룹 등) 대상
- 제공방법: 지역문화진흥원 내 홈페이지 내 제공

(2) 운영시스템

■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

● 구축 목적

- 국가자격제도인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 제공항목

- 인정 전공학과 및 교육과정 안내, 지정 교육기관 안내, 나의 자격체험, 자격신청 제공



* 자료 : 문화예술교육사 (<https://acei.arte.or.kr>)

그림 3-37 문화예술교육사 서비스 제공 방식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해설사용)

- 구축 목적
 -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
- 구축 방법
 - － 문화관광해설사 기본 정보 및 양성·활동 정보의 실태조사를 통한 시스템 구축



* 자료 :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 (<https://www.ctgs.kr>)

그림 3-38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 제공 방식

- 제공항목
 - －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이용자관리, 통계분석(문화관광해설사 현황, 해설사 배치 현황, 해설 서비스 수요 현황, 보수 교육실시 현황) 제공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시스템

- 구축 목적
 - － 전국 어디에서든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 구축
- 제공항목

－ 문화관광해설사 소개, 예약서비스, 예약신청, 관광지 정보 제공



* 자료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시스템 (<http://www.kctg.or.kr>)

그림 3-39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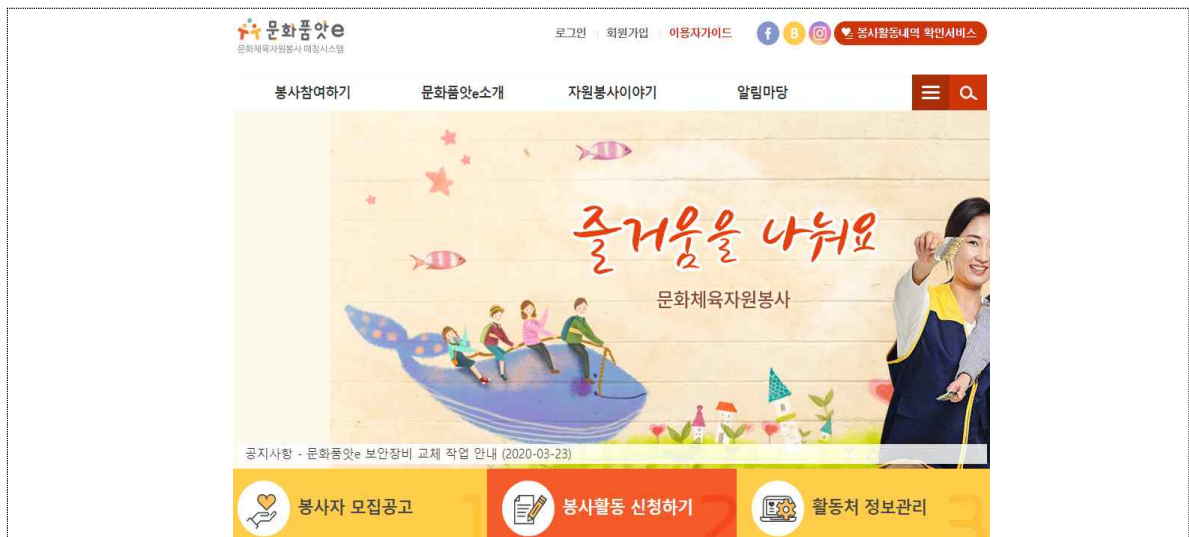
■ 문화품앗이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 구축 목적

－ 문화체육자원봉사의 수요-공급 매칭 시스템으로, 문화·체육 분야의 시설 및 단체 등이 봉사자를 모집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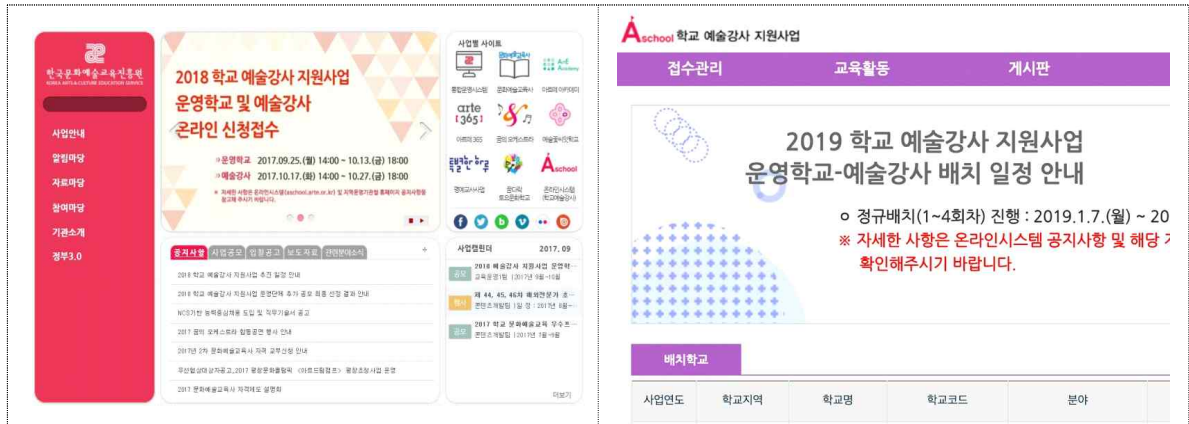
● 제공항목

－ 봉사자 맞춤형 매칭 활동정보 제공, 활동영역의 공간별·분야별·기능별 활동분류에 따른 체계적·전문적 활동정보 제공, 개인 맞춤형 봉사활동 이력관리 및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제공, 그룹 봉사활동 지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자료 : 문화품앗이 홈페이지 (csv.culture.go.kr)

그림 3-40 문화품앗이(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서비스 제공현황



* 자료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https://aschool.arte.or.kr>)

그림 3-4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방식

■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시스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통합운영시스템)

● 구축 목적

- 한국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사업운영단체 담당자, 학교·시설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 제공항목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련 자료 제공

■ 아르떼(ArtE Academy) 아카데미

● 구축 목적

- 문화예술교육의 매개자, 협력자,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우수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

● 제공항목

- 연수안내/신청, 연수자료 관련 서비스 제공



* 자료 : 아르떼 아카데미 (<https://hrd.arte.or.kr>)

그림 3-43

아르떼 아카데미 서비스 제공 방식

1-4. 인력 ④ : 전문인력

- 전문인력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대표적으로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들 수 있음

(1) 조사통계

■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조사 목적
 - － 도서관 정책 및 연구지원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조사결과 공유를 통해 부처 간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조사 대상
 - － 전국 개관 중인 도서관 대상
- 주요 조사항목
 - － 도서관명 등 기본정보, 도서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결산, 이용현황, 서비스현황
- 공표시기 및 방법
 - － 공표주기: 1년
 - － 공표시기: 작성기준 익년 12월
 - － 조사기준시점 : 기준년도 03.21 ~ 05.10 기준
 - － 공표방법: 전산망(인터넷)+간행물
 - － 자료수집방법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도서관 통계 담당자가 직접 입력
- 자료 제공
 -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내 홈페이지에서 제공함



*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www.libsta.go.kr)

그림 3-44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제공 방식

■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조사 목적

- 전국에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실태분석과 요구를 수렴하여 운영실태 자료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 통계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운영시설, 직원, 예산 등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및 수행됨

● 조사 대상

- 국·공·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 대상

● 주요 조사항목

- 기본정보, 이용현황, 운영인력, 운영재원 등

● 공표시기 및 방법

- 공표주기: 1년
- 공표시기: 작성기준 익년 12월
- 조사기준시점 : 기준년도 10. ~ 12. 기준
- 공표방법: 전산망(인터넷)+간행물
- 자료수집방법 : 조사목록을 이용한 전수조사

● 자료 제공

- 온-나라정책연구 내 홈페이지에서 제공함

온-나라 정책연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PRISM을 소개합니다 | 사이트맵 | 로그인

정책연구검색 | 정책연구정보 | 이용안내

전체 검색

● 과제정보

과제명	전국 박물관 미술관(유사시설 포함) 운영 현황 및 실태 조사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문화기반과
전화번호	044-203-2638	연구기간	2017-07-25 ~ 2017-12-21
연구분야	문화정책		
개요	전국 국·공·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수급·관리, 전시, 교육 등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저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 계약정보

수행기관	유니온리서치 [기타]		
수발연구원	차남균	계약일자	2017-07-25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7,4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제목	전국 박물관 미술관(유사시설 포함) 운영 현황 및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2017년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_180201_2.pdf (3485.0 KB) 2017년 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_180201(최종)_2.pdf (4373.3 KB)		
주제어	전국 박물관 미술관(유사시설 포함) 운영 현황 및 실태 조사		
발행년도	2017년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박물관 미술관 실태조사).hwp (15.0 KB) ↳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박물관 미술관 실태조사).pdf (41.2 KB)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hwp (22.5 KB) ↳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pdf (33.6 KB)		

* 자료 :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www.prism.go.kr)

그림 3-45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공 방식

■ 한국도서관 연감 내 도서관 통계(직원수)

● 주요 조사항목

- 도서관 현황과 통계, 도서관계 주요활동

● 조사주기 및 방법

- 조사주기: 1년
- 조사기간: 전년도 01.01.~12.31 기준
- 조사방법: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대학도서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통계시스템), 학교도서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통계참고
- 제공방법: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내 제공

(2) 운영시스템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구축 목적

- 국가승인 통계인 ‘전국도서관통계’의 작성 및 결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임

● 제공항목

- 공공도서관 현황, 장서 수, 정규직 사서수, 방문자 수 등 도서관과 관련된 통계정보 제공



* 자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aschool.arte.or.kr>)

그림 3-46

국가도서관통계 전문인력 정보 제공 방식

2. 단체

- 단체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대표적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예술경영지원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포털사이트 등을 들 수 있음

(1) 조사통계

■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 주요 조사항목
 -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관련 정보 및 지정현황, 운영실적 조사결과, 관련 법·양식, 전문예술법인단체 편람
- 조사주기 및 방법
 - － 조사주기: 1년
 - － 조사기간: 전년도 01.01.~12.31 기준
 - － 조사방법: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조사 시행
 - － 제공방법: 전문예술법인·단체 홈페이지 내 제공



* 자료 : 전문예술법인·단체 홈페이지(www.gokams.or.kr)

그림 3-47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제공 방식

(2) 운영시스템

■ 예술경영지원센터

- 구축 목적
 - － 사업공모 등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소식, 일자리정보, 공모·기금·행사 등의 문화예술분야 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 제공항목
 - － 사업안내, 사업 지원/신청, 발간자료, 동향/분석자료, 웹진, 전문예술법인단체현황, 일자리정보 관련 정보 제공



*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http://www.gokams.or.kr>)

그림 3-48

예술경영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방식

■ 전문예술법인·단체 포털사이트

● 구축 목적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현황 관련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 제공항목

- 전문예술법인단체 리스트, 제도안내, 지정현황, 사업소개, 온라인컨설팅, 전문지식 관련 정보 제공



* 자료 : 전문예술법인·단체 홈페이지(www.gokams.or.kr)

그림 3-49

전문예술법인·단체 리스트 제공 방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포털사이트

● 구축 목적

- － 정부정책과 사회적 경제 현장을 연결하기 위해 통합 구축

● 제공항목

- － 사회적 기업 리스트, 사회적 경제 관련 자료 제공 및 지원사업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ENGLISH

열린혁신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안내	진흥원 소식	진흥원 소개																									
지원사업 안내																													
<table border="1"> <tbody> <tr> <td>지원체계</td> <td colspan="4">·지원체계</td> </tr> <tr> <td>발굴육성</td> <td colspan="4">·아이디어 발굴 ·창업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td> </tr> <tr> <td>경쟁력 강화</td> <td colspan="4">·판로지원 ·e-store 36.5+ ·경영지원</td> </tr> <tr> <td>생태계조성</td> <td colspan="4">·자원연계 지원 ·인지도 확산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회적경제 정책지원</td> </tr> <tr> <td>협동조합</td> <td colspan="4">·교육/홍보 ·설립/인가 지원 ·판로지원 ·경영지원</td> </tr> </tbody> </table>					지원체계	·지원체계				발굴육성	·아이디어 발굴 ·창업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				경쟁력 강화	·판로지원 ·e-store 36.5+ ·경영지원				생태계조성	·자원연계 지원 ·인지도 확산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회적경제 정책지원				협동조합	·교육/홍보 ·설립/인가 지원 ·판로지원 ·경영지원			
지원체계	·지원체계																												
발굴육성	·아이디어 발굴 ·창업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																												
경쟁력 강화	·판로지원 ·e-store 36.5+ ·경영지원																												
생태계조성	·자원연계 지원 ·인지도 확산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회적경제 정책지원																												
협동조합	·교육/홍보 ·설립/인가 지원 ·판로지원 ·경영지원																												

*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그림 3-5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비스 제공 방식

제4절 행정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

☐ 행정은 문화관련 법·조례, 예산, 문화 관련 연구보고서로 구분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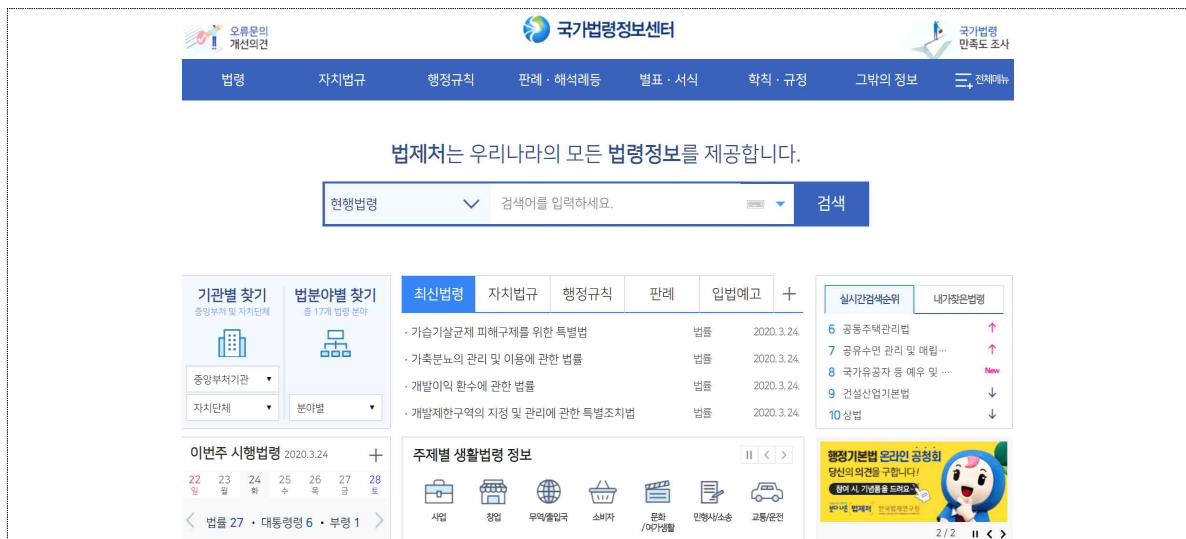
1. 문화 관련 법·조례 제공현황

- 문화 관련 법·조례 제공현황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룰 들 수 있음

(1) 운영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축 목적
 -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통합 검색서비스 구축
- 제공항목
 -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그림 3-5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제공 방식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구축 목적

- 처리된 의안, 계류 중인 의안, 의안 통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 구축

● 제공항목

- 의안정보, 법률안, 예결산 등 모든 의안 관련 정보 제공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구축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제공항목

- 조례, 규칙, 훈령 등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관련 정보 제공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

그림 3-5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 제공 방식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 구축 목적

-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은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이트 구축

● 제공항목

- 진행 중인 입법예고와 종료된 입법예고 관련 정보 제공

2. 예산 제공현황 : ① 문화 관련 예산

- 문화예산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열린재정, 지방재정 365 등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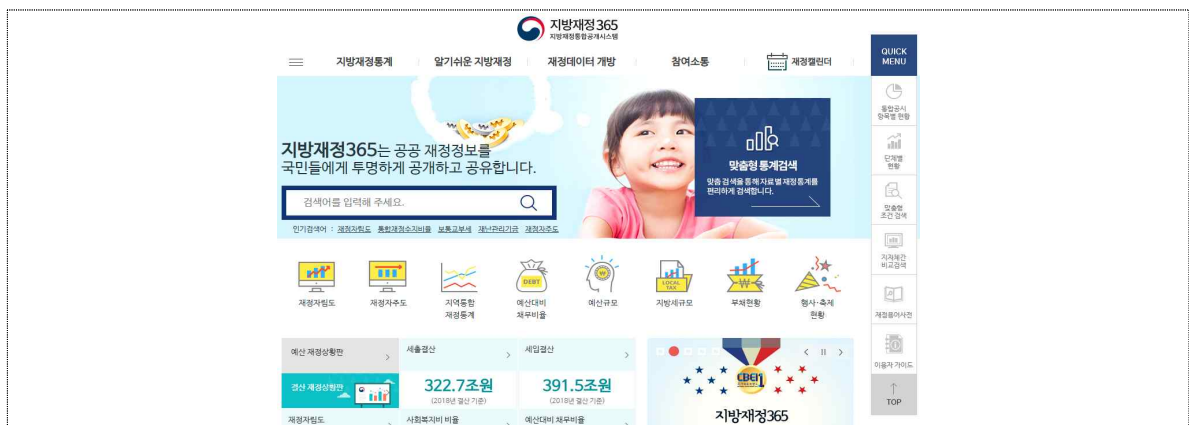
(1) 운영시스템

■ 열린재정

- 구축 목적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쉽게 제공하기 위해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제공항목
 - 알기쉬운재정, 재정통계(예산, 집행 등 통계 DB, 통계분석, 통계지표) 맞춤형정보, 재정 자료실 등 관련 서비스 제공

■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구축 목적
 -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의 예산현황, 결산현황, 세출예산운용상황 등 지역 전반에 걸친 살림살이를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공공데이터포털 구축
- 제공항목
 - 지방재정통합공시(재정자립도 등), 통합재정개요(세입예산, 세출예산 규모 등), 지방재정연감(세입결산, 세출결산 규모 등), 지방세통계연감(세목별 징수액 등), 세출예산운용상황(세입현황,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등) 등 69종 150여만건의 지방재정정보 제공



*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lofin.mois.go.kr)

그림 3-53

지방재정365 자료 제공 방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구축 목적

-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행정업무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보조금 지원 행정기관을 위한 행정업무전국 표준화와 지원사업의 통계에 대한 정보공유 환경을 제공하고자 구축

● 제공항목

- 웹사이트(예술가 및 예술단체 지원금 수혜를 위한 사업공고/지원신청/심의/교부신청/결과보고 등 관련 업무환경 제공), 운영기관 관리시스템(이용자의 사업공고/지원신청/심의결과/교부신청/현장평가/결과관리/통계관리를 위한 운영기관이 활용하는 시스템)



* 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ncas.or.kr)

그림 3-5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자료 제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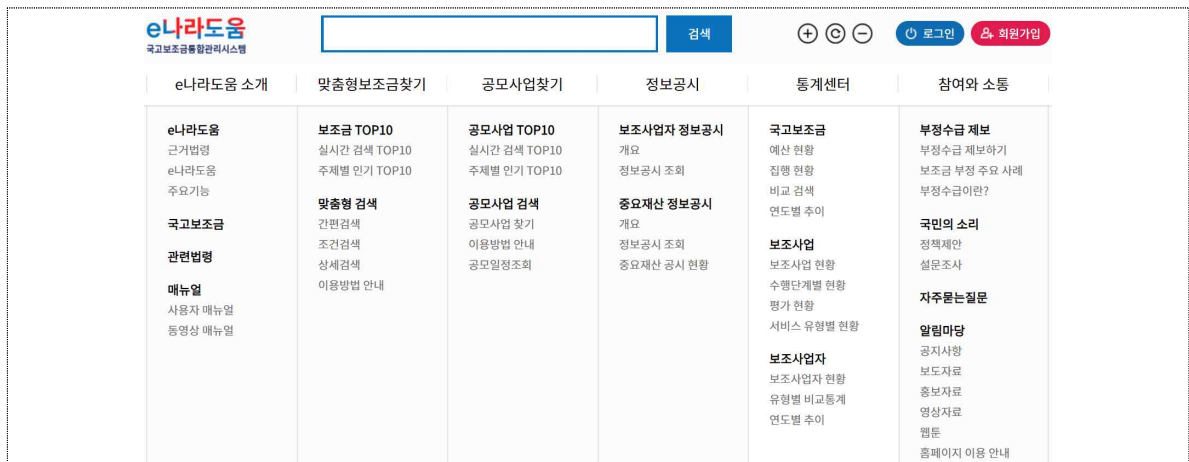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

● 구축 목적

-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보조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구축됨

● 제공항목

- e나라도움소개, 맞춤형보조금찾기, 공모사업찾기, 정보공시, 통계센터(국고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제보 등 서비스 제공



* 자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그림 3-55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방식

3. 문화 관련 연구보고서 제공현황

- 문화 관련 연구보고서 제공현황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누리집) 등을 들 수 있음

(1) 조사통계

지역문화현황통계

- 주요 조사항목
 - － 지역의 제반 문화환경 및 정책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석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여 제공(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 조사주기 및 방법
 - － 조사주기: 3년
 - － 조사기간: 전년도 01.01.~12.31 기준
 - － 조사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입력시스템
 - － 제공방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 제공

(2) 운영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누리집)

- 구축 목적
 - － 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과 각종 지식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에서도 이용할수 있는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 제공항목
 - － 도서관소개, 원문정보DB 자료 및 학위논문 검색, 디지털화 자료,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국내외 Web DB 등 서비스 제공

국립중앙도서관				
로그인 회원가입 내서재 바꾸기				
자료검색	컬렉션	신청·참여	도서관 이용	도서관 소개
소장자료	디지털컬렉션	자료신청안내	본관 이용시간 및 이용증 발급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비치회망도서	본관 자료실 안내	소속도서관
산책자료	관보	상호대차	디지털도서관 안내	도서관 협력망
Web DB	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	책다모아(기증)	도서관 일정	도서관 소식
국가자료종합목록	사서추천도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편의시설	발간자료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책 읽어주는 도서관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	자료복사	정보공개
국가전자도서관	영상자료 목록	연구정보서비스	전시	안내사이트 안내
근대문학종합목록		견학	자주하는 질문	
국가서지 LOD		사회봉사	설문조사	
OAK(국가리포지터리)		이용자교육	오류신고	
오아시스(OASIS)		메일링서비스	분실물찾기	
		연계 API		

*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

그림 3-56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공 방식

■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 홈페이지

● 구축 목적

-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관련 자료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제공항목

- 문화관광 관련 연구보고서, 문화관광인사이트, 웹진 문화관광, 한국관광정책, 문화정책논총, KCTI 인포그래픽스, 문화체육관광 경제지표, 세미나·토론회 관련 자료 제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CTI 발간물	KCTI 소식	열린마당	연구원 소개	정보공개
 KCTI 발간물		연구보고서	문화관광인사이트	웹진 문화관광
		KCTI 인포그래픽스	문화체육관광 경제지표	세미나·토론회 자료
				한국관광정책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www.kcti.re.kr)

그림 3-5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련 자료 제공 방식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홈페이지

● 구축 목적

- 본 연구회와 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물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제공항목

－ 연구성과, 국책연구동향, 기관자료실, 통계서비스 등의 자료제공



* 자료 : 국가정책연구포털 홈페이지(www.nkis.re.kr)

그림 3-58

국가정책연구포털 자료 제공 방식

arte 라이브러리

● 구축 목적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자료실’은 별개로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 통합 웹사이트 구축

● 제공항목

- － 교육콘텐츠자료, 연구 및 세미나자료부터 동영상, 국내·외 위클리뉴스, 컬렉션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자료 및 콘텐츠 서비스 제공



*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아르테 라이브러리 홈페이지(lib.artel.or.k)

그림 3-59

아르테 라이브러리 문화 관련 연구보고서 제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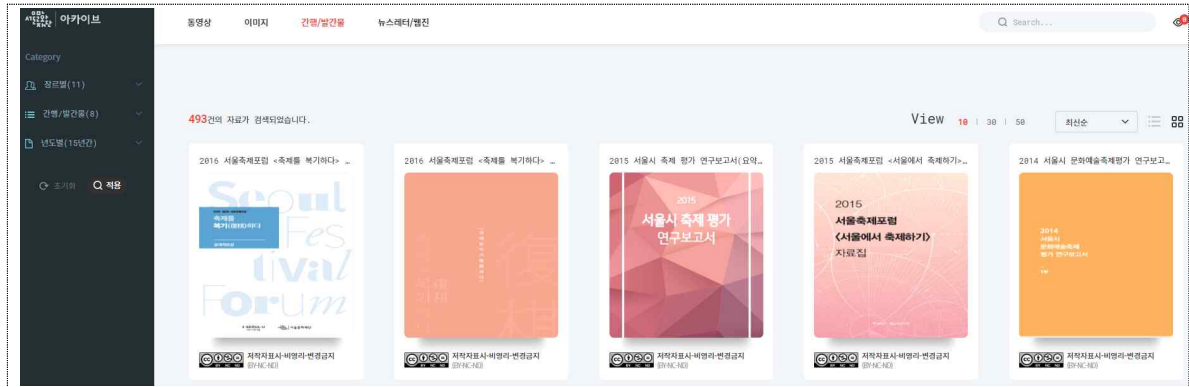
정부부처, 공공기관, 문체부 산하기관 등(ex. 서울문화재단 아카이브)

● 구축 목적

- 서울시 문화관련 동영상, 간행/발간물, 뉴스레터/웹진을 한 곳에서 검색할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제공항목

- 문화관련 간행/발간물 및 연극, 무용, 음악, 축제 등 11가지 장르별 보고서 자료 제공



* 자료 : 서울문화재단 아카이브 홈페이지(www.sfac.or.kr/archive/main.do)

그림 3-60

서울문화재단아카이브 자료 제공 방식

제5절 통계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

☐ 통계는 승인과 비승인으로 구분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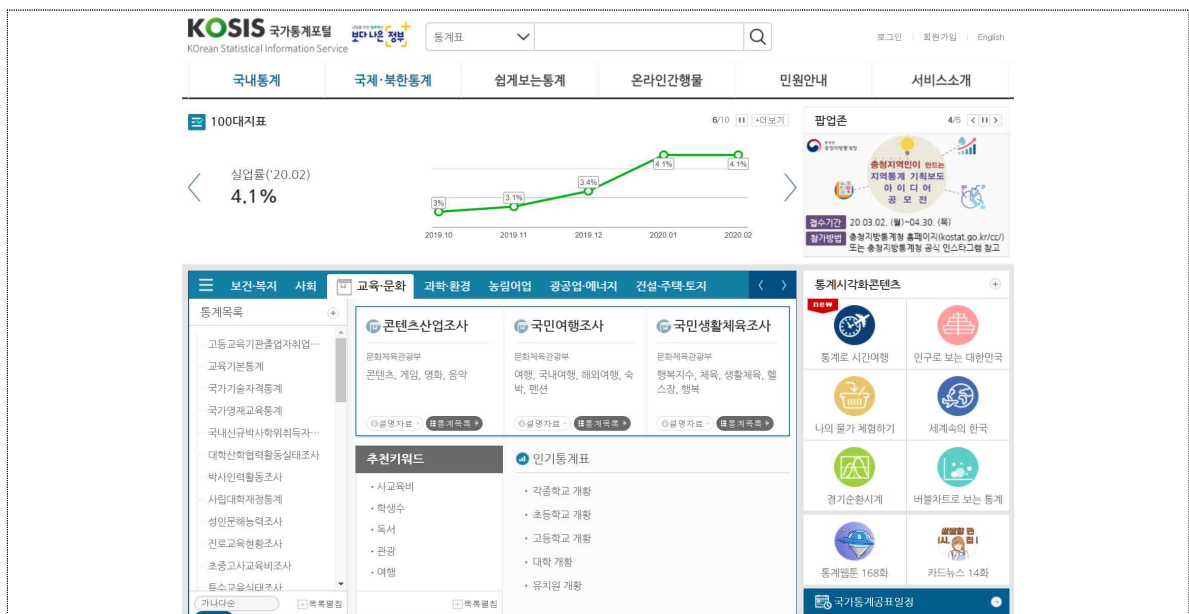
1. 승인통계

- 승인통계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국가통계포털, 문화센터, 문화 예술지식정보시스템 등을 들 수 있음

(1) 운영시스템

■ 국가통계포털(KOSIS)

- 구축 목적
 - －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및 공표하는 통계를 통계청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 포털서비스를 구축
- 제공항목
 - － 국내통계 134,586종의 통계자료 외에도 국제통계, 북한통계, 간행물을 비롯한 각종 통계콘텐츠를 제공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그림 3-61

국가통계포털 자료 제공 방식

문화센터

● 구축 목적

- 문화예술통계, 문화산업통계, 관광통계, 체육통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포털시스템 구축

● 제공항목

- 주제별통계, 지표통계, 시각화통계, 정보마당(특수분류, 산업분류), 소개마당(문화체육관광 통계현황, 관련사이트 등) 관련 서비스 제공



* 자료 : 문화센터(<http://stat.mcst.go.kr>)

그림 3-62

문화센터 서비스 제공 방식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ACKIS)

● 구축 목적

- 국내외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련 지식 정보와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구축한 DB 시스템

● 제공항목

- 문화예술지식(해외자료브리핑, 아키스브리핑, 문화돋보기, 연구보고서), 문화예술정보, 문화 통계 관련 서비스 제공



* 자료 : 아키스 홈페이지(<http://policydb.kcti.re.kr>)

그림 3-63

문화예술정보시스템(ACKIS) 서비스 제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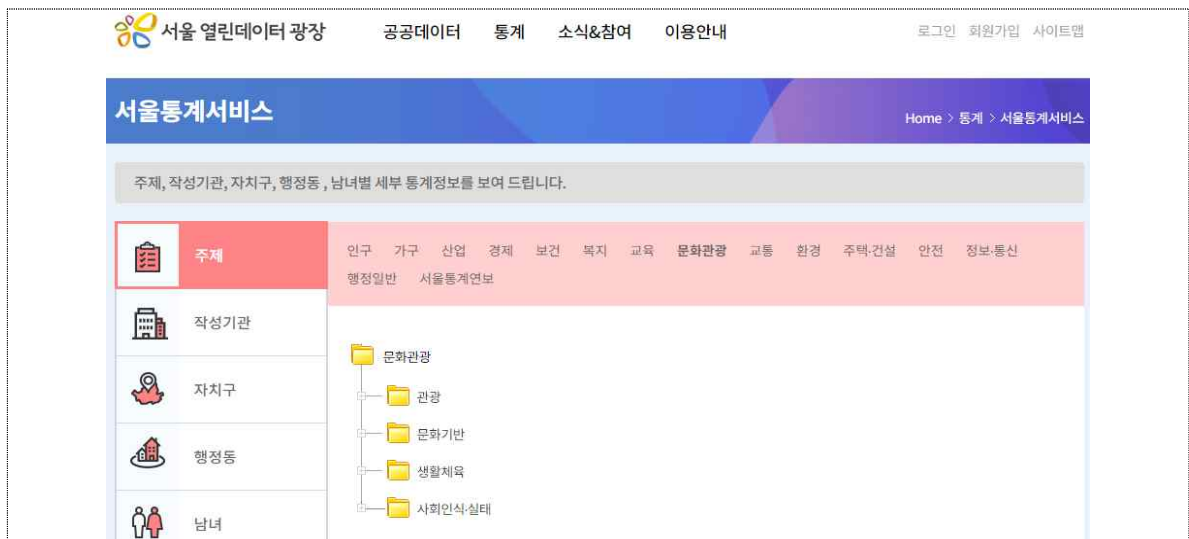
2. 비승인통계

- 비승인통계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등을 들 수 있음

(1) 운영시스템

■ 정부부처, 공공기관, 문체부 산하기관 등(ex.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구축 목적
 - － 서울시의 주제, 작성기관, 자치구, 행정동, 남녀별 세부 통계정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 제공 항목
 - － 문화관광(관광, 문화기반, 생활체육, 사회인식·실태) 관련 통계정보 제공 및 공공데이터(데이터셋, Linked Open Data 등) 서비스 제공



* 자료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https://data.seoul.go.kr/>)

그림 3-6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문화 관련 자료 제공 방식

제6절 빅데이터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

□ 빅데이터는 크게 이용자 정보, 소비지출액, 복지로 구분되어짐

1. 이용자 정보 제공현황

- 이용자 정보 제공현황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들 수 있음

(1) 운영시스템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 구축 목적

- － 분산된 공연 입장권 예매/취소 정보를 집계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 정보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 제공항목

- － DB검색(공연, 공연시설, 기획/제작사, 수상작, 축제, 극작가), 예매상황판, 공연통계(기간별, 지역별, 장르별, 공연시설별 등), 공연소식 관련 정보 제공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DB검색	예매상황판	공연통계	공연소식	고객센터	KOPIS소개
공연DB 공연시설DB 기획/제작사DB 수상작DB 축제DB 극작가DB	예매상황판	종합통계 기간별 지역별 장르별 가격대별 국내/내한별 공연시설별 현황정보	공연뉴스 월간리포트 공연예술실태조사	공지사항 OPEN API 1:1 문의 Q&A	KOPIS 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 자료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홈페이지(www.kopis.or.kr)

그림 3-65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자료 제공 방식

공공데이터 포털

● 구축 목적

-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창구로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

● 제공항목

- 데이터셋(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검색), 활용사례, 정보공유 등의 서비스 제공

The screenshot displays the Data.go.kr website, which is the national public data portal of South Korea. The interface is in Korean and features a top navigation menu with options like '데이터셋' (Data Sets), '제공신청' (Request for Provision), '활용사례' (Usage Cases), '정보공유' (Information Sharing), and '이용안내' (Usage Guide). A search bar is prominently displayed with the prompt '데이터를 검색해보세요!'.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sections for '국가중점데이터' (National Key Data) and '데이터 카테고리' (Data Category) with various icons representing different data categories like Education, National Affairs, Government, Finance, Industry, Social Welfare, Food Safety, and Culture. The right side of the image shows a list of '오픈API 176건' (176 Open APIs) with details for each, including the number of datasets, the type of API, and the service status.

*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www.data.go.kr)

그림 3-66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제공 방식

■ 민간데이터 포털 (ex. 네이버 데이터랩 : Data Lab)

● 구축 목적

- 다양한 데이터에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더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서비스

● 제공항목

- 네이버 검색어로 이루어진 빅데이터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나누어 제공

2. 소비 지출액 제공현황

- 소비 지출액 제공현황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문화비 소득공제 데이터, 네이버 카드사용통계 등을 들 수 있음

(1) 운영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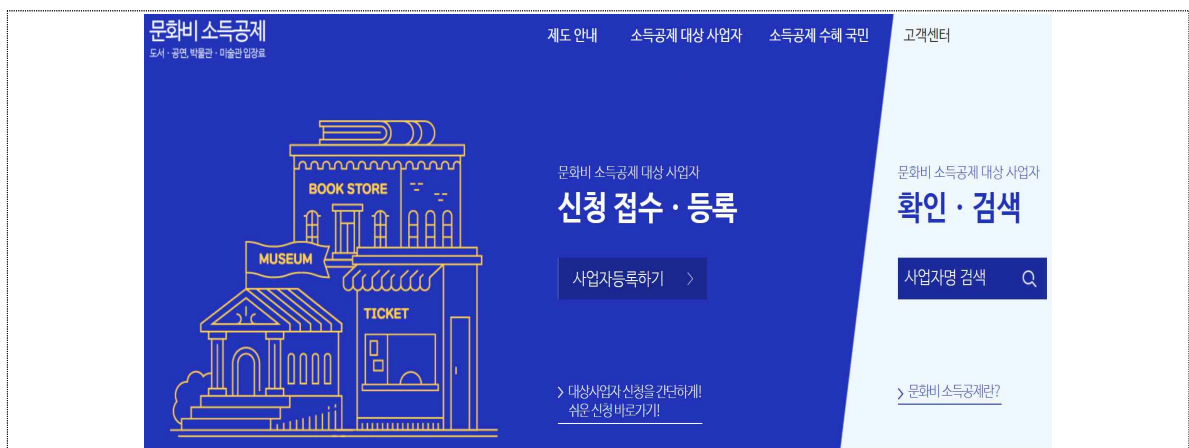
■ 문화비 소득공제 데이터

● 구축 목적

- 복잡한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자를 손쉽게 검색하고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의 신청접수를 돕기 위해 시스템 구축

● 제공항목

- 제도안내,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접수/등록 안내 등), 소득공제 수혜 국민(사업자 검색 및 안내) 관련 서비스 제공



* 자료 :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

그림 3-67

문화비소득공제 자료 제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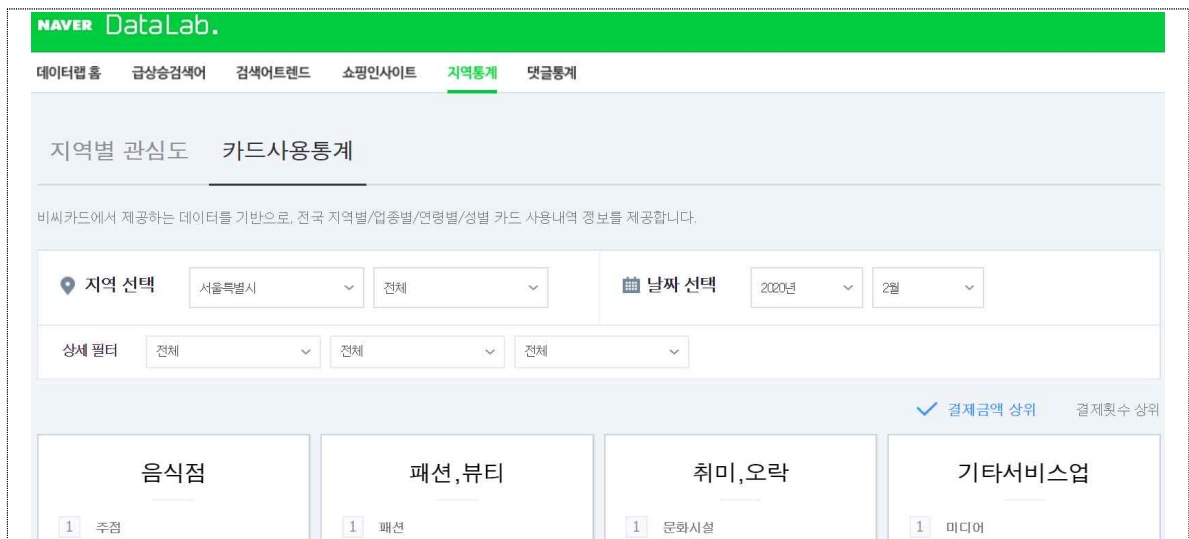
네이버 카드사용통계(자료제공: BC카드)

● 구축 목적

- 네이버는 BC카드가 보유한 카드결제 데이터를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랩'에 융합하였으며, 중 소사업자들이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신의 사업에 대해 더욱 확대된 인사이트를 얻게 돕기 위해 구축

● 제공항목

- 네이버가 보유한 검색 클릭 데이터(고객들의 구매 행동 예측), BC카드의 카드결제 데이터 (소비패턴을 집계하여 고객들의 실제 구매 여부를 파악) 제공. 특히 BC카드는 특정인을 확인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의 형태로 네이버 데이터랩에 카드결제 데이터를 제공하며, '카드 사용통계' 기능을 통해 최근 13개월간 특정 지역에서의 카드결제 횟수 또는 결제금액이 높은 업종을 월 단위로 확인 가능하게 함



* 자료 : 네이버 DataLab 홈페이지(<https://datalab.naver.com/>)

그림 3-68

네이버 DataLab 카드사용통계 자료 제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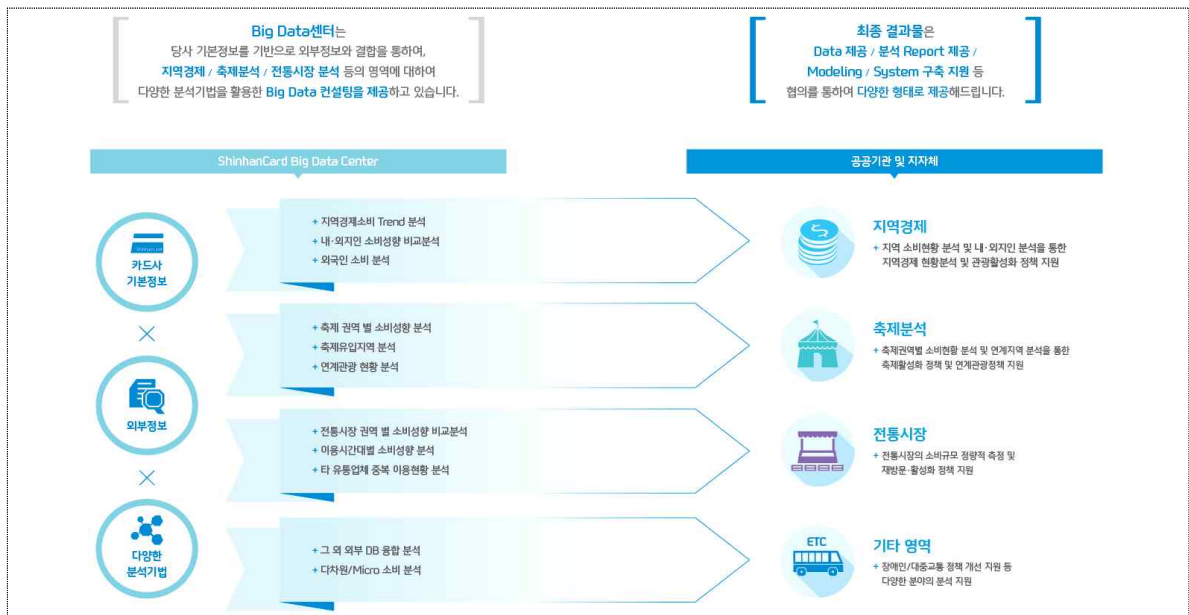
■ 카드회사 빅데이터(ex.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 구축 목적

- 국내 최대 규모의 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관광영역/지역경제/경제 모니터링 등의 영역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한 빅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하며, 국민-공공기관-신한카드 간의 상생의 사회적 빅데이터 가치 창출을 지향하고 공공영역의 정책적 의사결정 수립/개선 지원함

● 제공항목

- 소비의 주제, 시점, 장소/채널, 객체(가맹점 단위) 등의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목적에 따른 다차원 분석 가능



* 자료 :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

그림 3-69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자료 제공 방식

■ K-ICT 빅데이터센터

● 구축 목적

- 국내외 빅데이터 사업, 데이터 보유 기업·기관과 협력하여 빅데이터 활용 연구,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제작한 데이터셋 제공하기 위해 구축

● 제공항목

- 분석활용데이터, 소셜데이터, 경기도 제공데이터 등 관련서비스 제공



* 자료 : K-ICT 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https://kbig.kr/portal/>)

그림 3-70

K-ICT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공유 현황

3. 복지 제공현황

- 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데이터 등을 들 수 있음

(1) 운영시스템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데이터

● 구축 목적

- － 문화누리카드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구축

● 제공항목

- － 문화누리카드(카드발급안내, 지역주관처안내 등), 카드발급/잔액확인, 사용하기 등의 서비스 제공. 문화누리카드 가입자가 결제한 건별 사용내역 데이터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필요

문화누리	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잔액확인	사용하기	알림방	고객센터
문화누리카드란? 2020 카드 발급안내 스포츠강화이용권 지역주관처 안내 복권기금 문화나눔	발급절차흐름도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본인 충전금 충전 안내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 정보수정 사각장애연용 점자 스티커 신청	수령등록/인터넷 사용등록 오프라인 가맹점 온라인 가맹점 부정행위 신고센터 부정행위 관리 나눔티켓	공지사항 지역주관처 알림글 블로그/이벤트	자주묻는질문 (FAQ) 문고답하기 (Q&A)	

* 자료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

그림 3-71

통합문화이용권 자료 제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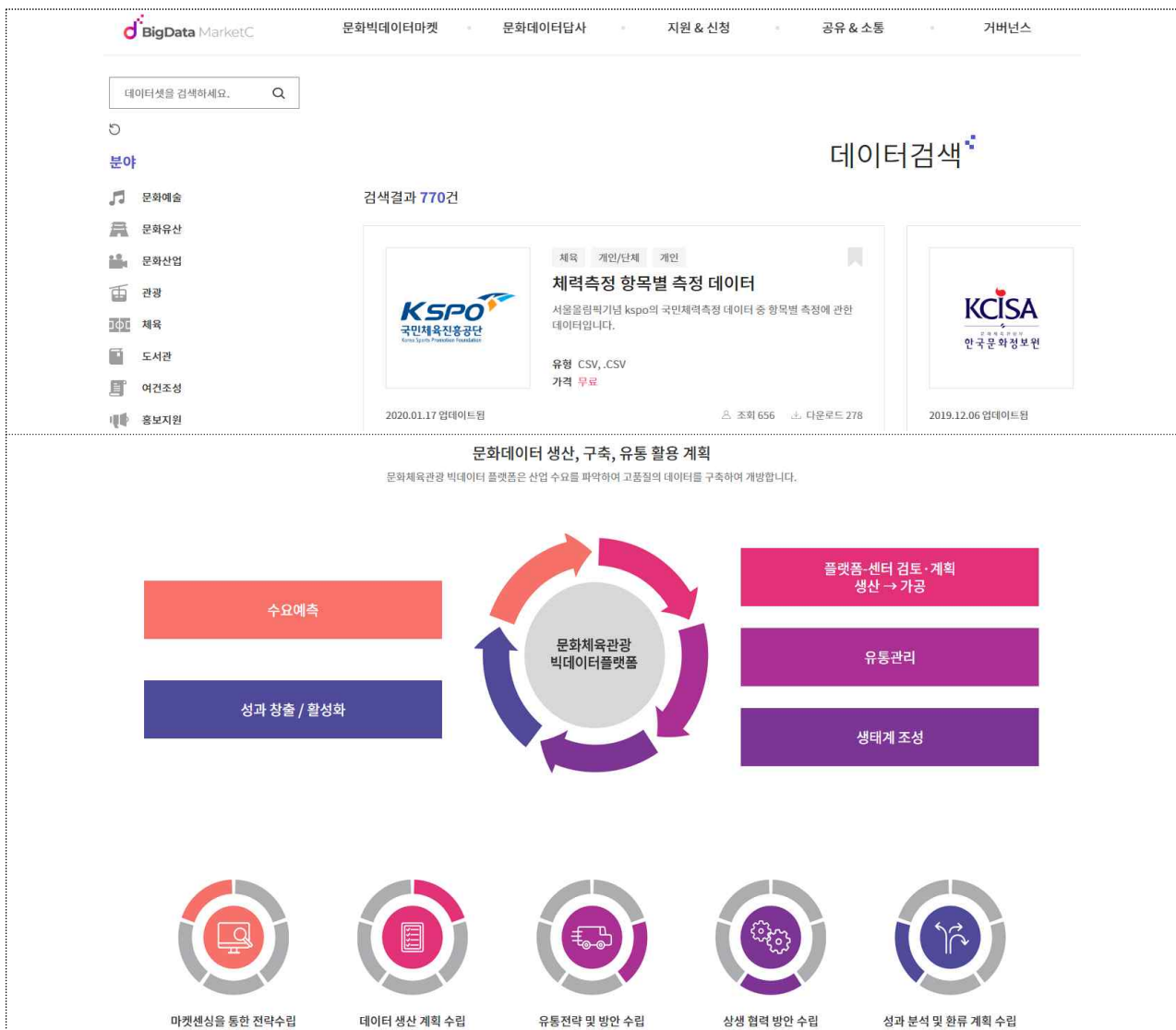
문화빅데이터 마켓

● 구축 목적

- 예술창작 및 예술가치 확산과 향유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데이터 구축 및 개방

● 제공항목

- 카테고리별(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제공기관별(한국문화정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빅데이터 정보 제공



* 자료 : 문화빅데이터 마켓 홈페이지(www.culture.go.kr)

그림 3-72 문화빅데이터마켓 자료 제공 방식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구축 목적
 - 보건복지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정보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 제공항목
 - 연구DB, Data Bank, 공간정보통계, 소셜데이터통계, 해외자료, 통계 시각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교육경험률 등 문화 관련 사회보장 통계 자료 제공



* 자료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홈페이지(data.kihasa.re.kr)
그림 3-73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자료 제공 방식

IV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1절 주요기관 관계자 간담회

□ (지역)문화예술정책, 콘텐츠는 물론 여가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분야별로 구성,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도출

1. 주요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1) 간담회 기본 정보

■ 개요

- 향후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될 (가칭)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지역별 문화재단 내 실무자 그리고 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종합연구 관련 간담회를 총 8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음
 - － 외부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본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성공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 제반조건을 논의하고, 실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음
 - － 간담회 개최와 관련된 세부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1

외부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내역

회차	일시	장소	대상 기관	참석 기관 수	기관 참석자 수	간담회 주제
1	2019.11.27.(수)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5개 기관	5명	사업 중복성 문제 데이터 입력주체 데이터 수집방식 법제도 개선방안
2	2019.12.05.(수)	서울역 프리미엄 라운지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2개 기관	2명	NCAS 운영현황 데이터 수집방식 시스템 연계방안
3	2019.12.19.(목)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4개 기관	5명	기관별 정보화현황 데이터 수집방식 인력정보 필요성 인력예산 지원여부
4	2020.01.14.(화)	부산역 KTX 회의실	경상도 소재 문화재단	6개 기관	6명	데이터 입력주체 전담기관 지정 인력예산 지원여부 시스템 탑재기능

5	2020.01.16.(목)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충청·강원도 소재 문화재단	5개 기관	7명	지역별 정보화현황 인력예산 지원여부 시스템 탑재기능
6	2020.01.20.(월)	전주시민놀이터 세미나실	전라도 소재 문화재단	3개 기관	3명	지역별 정보화현황 인력예산 지원여부 시스템 연계방안
7	2020.01.22.(수)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	수도권 소재 문화재단	8개 기관	10명	지역별 정보화현황 인력예산 지원여부 시스템 탑재기능
8	2020.02.06.(목)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시·도 연구원	8개 기관	8명	데이터 수집방식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기관 지정

(2) 주요 논의사항 개괄

■ 유관기관 데이터 관리 현황 및 신규시스템 데이터 수집범위

- 본 종합연구에서 추진 중인 통합정보시스템에 어떠한 내용의 인력정보가 수집·관리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문화예술분야 인력정보를 수집한다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에 대한 정보도 필수적으로 수집되어야 함
 - － 현재 문화재단마다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체적으로 수집하려고 하나,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기존에 이미 재단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각종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정리 및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 특히 기초문화재단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광역문화재단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사실 지역의 문화재단 주도로 지역문화 활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임

■ 데이터 수집 방안 및 품질 관리의 필요성

- 각 공공기관별로 이미 수집되고 관리 중인 문화 관련 데이터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수집할 필요성이 높은 데이터의 특성이나 연계 가능한 기존 데이터의 범위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연계하기 어렵거나 신규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각 지역별 광역·

기초 문화재단을 통해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별 문화재단이나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만으로는 데이터 수집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의 협조가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단 자체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 문화단체들의 열악한 인력 및 예산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데이터 수집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면 적시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보입력의 형태를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력해야할 각종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간 정보화 수준격차와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에 따라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정보화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고민만 하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함. 특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지역단위에서는 데이터의 관리계획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임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중복성·차별성 검토

-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하여 각 유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유사 정보화 사업을 살펴보고 본 종합연구에서 논의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만의 특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각종 기관들이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실태조사, 정보화시스템,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실태조사 및 각종 조사 업무무를 대체하고 통합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며 관리하는 신규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실태조사나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들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각 지역별 유관기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 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지역의 문화관련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입력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데이터입력 및 수집에 관련된 강제조항 혹은 의무조항의 규정이 필요함

■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관 선정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모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기획재정부의 알리오 시스템 등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기존 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향후 구축될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유관 공공기관별로 흩어져있는 각종 정보화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통합하고 일원화하거나, 기존 실태조사를 통해 축적된 비정형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하고 추후에도 유사한 조사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 되면 단순히 데이터 수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담기관을 두고 이러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일정한 수치를 도출해내는 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 설정이 필요할 것임

2.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1) 유관기관 데이터 관리 현황 및 신규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범위

■ 각 기관별 문화예술분야 데이터 관리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집계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정보의 경우 몇 가지 누락되는 정보들이 있으나,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거의 없었으며 실제 조사하는 내용들도 조사대상 기관 관계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수집 가능한 정보들임
 - －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량의 경우 2019년 12월 발표되지만 실제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의 과거 데이터임. 게다가 이마저도 몇 달 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내주는 엑셀파일들을 단순 취합한 자료에 불과함. 더욱이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종이 자료들이므로 갖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지방문화원의 경우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 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수집하는 정보 이외에도 실무 상 필요한 정보들이 더 존재함. 현재 문화원의 시설 관련 정보는 각 문화원별로 일정수준 관리되고 있으나 각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수집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만 소비되는 행사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널리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가 구축한 공공포털은 자발적 정보입력이 되고 있지 않아 네이버 같은 민간포털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서울문화재단의 공식포털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만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실정임. 즉 전체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표성이 낮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 현재와 같은 Top-down 방식에서는 한계가 있음
- 게다가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정보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큰 생활문화플랫폼도 운영되고 있으나, 생활문화플랫폼 시스템에 대해 외부에서는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 실정임. 우선 생활문화는 그 특성 상 정보 자체가 한데 모이지 않고 특히 공지사항을 모으는 등의 Top-down 방식으로 정보를 모으는 데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생활문화인들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공연예술전산망의 경우 전산발권시스템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에 등록되는 행사만큼 그렇지 못한 행사도 많을 것으로 추측됨
- 현재 지역별 문화예술회관도 나름대로 각 기관마다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나, 만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어 다각도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문예회관 운영 및 사업진행 시 해당 정보를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

이 가능해짐

- 최근 문화데이터의 수집과 관련하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서로 MOU를 체결하여 문화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경로로 수집할 예정임

■ 데이터의 수집 · 입력 범위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서 모든 문화예술정보를 전부 수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정말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같은 문화예술분야 정보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단순화, 표준화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인력현황이나 일자리 정보의 경우 기존의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는 데이터의 성격이 다르므로 종합연구를 통해 구축 예정인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 수록할 정보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만약에 문화예술분야 인력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한다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분야별 · 지역별 일자리 정보, 자원봉사 및 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정보가 문화예술분야의 인력 관련 정보들 중 가장 핵심사항임
- 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지, 아울러 실제 정보 수집관련 업무량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기초 문화예술 단체들과 같은 소규모 단체가 먼저 나서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으며,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된 예산 지원을 선불리 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정보입력에 대한 관련 단체 · 기관 ·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예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쉽지 않으며, 예술인에 대한 범주설정이나 검증도 어려운 실정임. 예를 들어 화가이자 공방 운영자인 경우 예술인인지 사업가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 또한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와 중앙에서 조사하는 데이터의 내용, 결과치가 서로 다른 경우 연구자 입장에서 어떤 수치를 활용해야 할지 고민됨. 따라서 시스템 구축 이전에 문화예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층위별로 나누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로선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예술인 등록 시스템에 실제 등록된 예술인, 문화가 있는 날 관련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인력, 문화이모작 사업 관련 인력 등에 대한 정보들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정보수집 절차 없이 통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인력 정보임
- 한편 생활문화의 경우 범위가 모호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애매하므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표준 가이드라인 설정이 중요함

■ 신규 시스템의 구축 취지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0여 개 관련 기관들의 주요 정보만 하나로 취합해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되고 훌륭한 분석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됨. 예를 들어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여러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기존 데이터 중 중요한 정보를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데이터로 재구축하고 이를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함. 지역별 문화재단이나 유관 공공기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만약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업관련 전수정보를 모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음
 - － 추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지역별 기초문화재단이나 유관 공공기관에 문화예술 관련 사업구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이러한 기관들이 다시 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이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유관 기관 사이에 신뢰도가 쌓이고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료 수집이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임. 또한 통합정보 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한데 중앙부처나 지역별 문화재단의 개별적·단독적인 홍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 데이터 수집 방안 및 품질 관리의 필요성

■ 방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효율적인 체계 확보

- 문화프로그램 정보는 개별 문화관련 기관·단체 웹사이트에 등록된 데이터를 연계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단순히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모아두는 과거의 형태를 넘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되어야 함
 - － 현재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현황 데이터의 경우 담당자가 매일 마다 관련 단체의 현황에 대한 정보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매월 대략 2천 건 이상에 대하여 수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음. 비록 수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이며 현재 이에 대한 행정 간소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효율적인 문화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OK 캐시백이나 바우처제도와 같은 정보수집 취지를 가진 모바일 원패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이 제도가 정착되면 위치기반 실시간 정보수집이 가능해지며 각 시설의 이용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

- 또한 실시간으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IT기기를 활용한 이용자 현황정보를 수집해야 함. 예를 들어 각 문화시설에 입장하는 입장객을 판별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 등을 입구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입장객 수를 파악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한 기관에서만 수행하기보다 문화예술 분야별로 설립되어 있는 각 협회·연합회에 정보 수집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추후 결과물에 대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형태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됨
- 다만 현재 개별 미술관이나 협회에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미술관 현황에 대한 정보입력을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임. 만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일적으로 정보입력을 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정보입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임. 만약 지금의 실태조사와는 별도의 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경우 미술관 입장에서는 자칫 또 다른 업무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 한편 시설에 대한 행정 통계 정보는 실제 정책입안 시 실무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임. 그보다는 어느 곳에서 어떤 행사를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했다는 정보를 문화프로그램 공급자가 직접 결과 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이 방법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정보의 신뢰성이 높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 간의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조례나 규정은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문화재단 측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타 지역과의 비교 데이터를 구축하기에는 지역의 내 기초문화재단 규모에서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 평가와 정보화사업 간 연계가 있어야 이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입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 그리고 정보입력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원하는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임
- 데이터 수집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문화기반시설별로 개별적인 자료 수집을 하는 방안, 관련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하는 방안, 전국 17개 광역 문화재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수집에 대한 예산·인력 확보

- 현재 매년 실태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예산·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 간 정보화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감안한 시스템 구축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 무엇보다 인력·예산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타 지역의 정보화수준을 따

라가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각 지역별 기초문화재단은 물론이거니와 광역문화재단의 경우에도 정보입력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 수집 필요성에 대한 공감감이 낮은 실정임. 현실적으로 아무런 인력이나 예산의 지원 없이 자료입력을 강요하거나 요구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광역문화재단처럼 각 지역별로 일종의 컨트롤 타워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물을 지정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함. 예산 없이는 관련업무가 원활히 되기 어려움
- 또한 관련 예산·인력 지원 시 중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과거 수원문화재단에서 문화지도를 처음으로 구축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작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집되는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관리자 1명과 전산 담당자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만 하는 실정임
 -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단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콘텐츠 단위로 제공하는 플랫폼인 GGC(경기문화예술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문화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단 4명으로 이 2가지 플랫폼 업무와 더불어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총 5개의 플랫폼을 유지·운영 중임
 - 사립미술관협회나 협회 소속 미술관의 경우에도 개별 미술관들은 자체적으로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이나 전시 관련 기사화를 기획하기가 어렵고 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홍보활동을 대행해주기를 요구하지만 협회 자체적으로도 관련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련 예산·인력 지원이 필요함
- 예산지원과 더불어 데이터 입력 및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함.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잘 운영되는 이유는 우선 관련정보 자체가 매월 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리뉴얼이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사업진행 기관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보를 입력함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 유지·관리 방안

- 향후 통합시스템이 표준화된 입력양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쉽고 비교 용이한 정보입력·공개체계 구성이 이루어지면 각 지역별 문화재단의 부족한 인력으로도 비교적 거부감 없이 협력할 것이며 데이터 오류도 감소될 것임
 - 실제로 얼마 전 종로문화재단에서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의 프로그램 지원신청 자료를 기반으로 종로에 위치한 문화예술단체들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외부 용역을 통해 하나하나 수집되었던 자료는 물론 서울시의 자료들조차 오류가 나타나는 정보들이 존재하였음
- 본래 통합정보화시스템의 구축 초기에는 수집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김. 만일 정보입력 및 수집에 관련된 강제조항이 없으면 담당

자의 의지가 없는 경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다시 새로 정보입력을 다 해야 함

- 한편 정보입력 및 관리의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과거에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함. 실제로 이미 수집된 기존 데이터들을 디지털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 본래 이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별 문화예술 현황에 대한 완벽한 정보 수집은 불가능함. 오픈 데이터 수집도 데이터 작성주기의 문제, 비정형데이터의 표준화 문제 등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도 수집되는 데이터의 질적 문제가 우려됨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일종의 샘플링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샘플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일일이 17개 광역, 기초 단체에 연락해야 하는 등 신속히 해당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정보접근에는 1차 접근과 2차 접근이 있음. 즉 기존 정보체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과 별도의 정보입력체계를 만드는 것의 차이인데,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일정한 데이터 품질 유지가 가능할 것임
 - － 기획재정부의 알리오 시스템은 유지보수 사업단이 별도로 존재하며 정보수집일이 정해져 있음. 특히 정보가 적시에 입력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운영업체에서 직접 연락하여 정보입력을 독촉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다만 이러한 입력강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보입력에 대한 저항이 상당함
 - － 대국민서비스가 아닌 행정정보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초적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입력강제 방안이 필요함. 특히 정보의 특성에 따라 입력강제 혹은 자발적인 입력유도가 요구됨
- 정보 제공하는 수준이 다르면 지자체간 비교가 불가능함. 보다 구체적으로 이 정보 시스템에서 수집할 데이터에 대해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수집·입력담당 공무원과 같은 실무자 대상의 정보입력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3)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중복성·차별성 검토

■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화 전략

- 이번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을 통해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관련 내용들을 하나의 단일 시스템에서 통합하여 정보를 탑재하고자 함
 - － 최근의 경향인 문화 분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지역의 문화향수실태나 문화자원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 사업 진행 시 활용하고 열악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음
 - － 다만 최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문화정보원의 빅 데

이더 플랫폼 사업과 본 종합연구를 통해 도출될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중복성 문제 및 해결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목적성을 뚜렷하게 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야 함. 특히 기초 통계, 지역 간 비교, 예산, 기관별 인력현황, 일자리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책 현황판 서비스 등이 요구됨
- 구체적으로 시설분류 및 현황은 본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수집 데이터로서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문화 사업 관련 정보도 일차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에 속함. 반면에 지식정보는 추후에 탑재해도 무방하며 통계정보는 타 사이트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중복성 문제가 있음
- 문화예술 수요자·공급자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로 상호작용하고 검색할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함. 특히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인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욕구가 높은 실정임. 본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그러한 정보공유·연계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수집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양이 방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꺼번에 추진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시스템 구축 계획을 착수하면서 데이터 수집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설정해야 함

다양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능조정 필요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별로 수 많은 정보화사업을 진행 중임. 기존 정보화사업을 통해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시스템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이 추가로 탑재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음
 - 다양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앞으로 본 사업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함
 - 아울러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 공연예술실태조사의 연계시스템화도 필요하며 그 밖에 한국문화예술회관 극장기술정보DB 등 기존에 시스템화 되지 않은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음
-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외부에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함. 통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과 같은 재단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타 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지역 현황 파악을 통한 맞춤형 사업 기획 등의 관점에서도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 법 개정의 필요성 문제

-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무지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니 결국 몇 년 뒤에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조례가 생겨났음. 이처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 보이면 시스템 구축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임
 - － 본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시 정보입력을 하게 되면 민간단체의 재정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관련단체들에서 정보입력에 소극적이었음. 추후 법으로 강제해서 비로소 의미 있는 정보수집이 가능해짐
-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법률의 형식과 관련하여 특례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 실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의 경우 체육 분야에 관련된 법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함. 체육과 관광분야 정보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추후 논의 예정임. 대국민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 다만 하나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각종 정보 수집 및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성공사례 등이 공유된다면 굳이 법 개정을 통한 강제적 수단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원들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리라 봄
-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이라는 큰 틀 아래 각종 실태조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예술 진흥법 법조항을 통해 정보입력 강제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함

■ 개정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주요 사항

- 사업의 성격, 전달체계에 따라 정보수집의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전달체계를 감안하여 법 개정 시 관련 조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정보입력과 관련된 조항이 없는 반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혁신포털의 경우 정보입력강제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어서 정보입력이 의무사항이고 강제적이며 벌점부과는 물론 정보입력이 미흡한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효과적인 정보입력 및 수집을 위해서는 관련 법조항이 있거나 권고조항이 있어야 함
 -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경우 정보의 미 입력 시 관련법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조차 추가적 인력투입을 통해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실정임
 -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는 정보입력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데이터 입력 관련 조항을 개정된 연합회 정관에 추가하였음. 다만 60여개의 정회원 기초문화재단에게 정보입력 시 구

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 아무리 시스템이 좋거나 법적 강제 조항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같은 실무자가 데이터 입력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의무조항을 넘어 처벌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함.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정보입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평가 시 페널티 부여와 같은 방식이 필요함
- 또한 데이터 수집 시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의 조례로라도 데이터 수집 및 제출의무를 강제해야 데이터 수집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임
 - － 특히 순환보직으로 인한 연속성 단절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조사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이나 조례로 업무근거를 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충남의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시 조례의 구속력이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조례제정과 같은 별도의 법적근거는 마련하지 못하였음
 - － 현재 충남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인원은 2명이며 관련 예산도 부족한 실정임. 아울러 시스템 관련 별도의 조직설립 근거도 전무함. 만약 법적근거에 의하여 별도의 정보시스템 관리센터가 설립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자료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됨

제도적 개선방안

- 현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는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문화재단 등 2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 한 곳당 연간 1,300 ~ 1,400만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음. 각 광역문화재단에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을 위해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기초 문화재단에서는 사용료 부담의 문제로 인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만약 시스템 사용료가 면제된다면 지역별 기초문화예술회관이나 기초문화재단과 같은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문화단체에서는 데이터입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의 품질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지역문화진흥원의 경우 정보입력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 데이터 수집의 신뢰성이 높음. 단 진흥원이 수집 중인 데이터가 향후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 광역재단에서 만드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입력된 정보들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도서관이 아닌데 도서관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있는 등 전국적인 수평적 비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정절차가 필요함
 - －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오류를 정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자체별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정보시스템 운영전담기관 선정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 연계가능한 문화예술 관련 정보시스템의 현황

- 현재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별도로 정제하는 절차를 거쳐 활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리시스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지난 2009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력정보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사업선정 작업에 있어 일정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음
 - － 만약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문화관련 사업정보 및 인력정보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다면 향후 문화 분야의 각종 총량 정보들을 수집하기에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존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나누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염두 해 두지 않은 시스템인 반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시스템은 투명한 보조금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인해 정보공개가 시스템 기능의 핵심임
 - － 현재 국가의 보조금이 단돈 1원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다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시스템 최종 수혜자, 공모금액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는 공모사업 정보만 수집하고 최종수혜자와 관련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음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공연법상 인터파크나 티켓링크 등과 같은 운영사이트 업체가 직접 티켓 판매 현황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문예회관과는 관련성이 적은 상태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 ARTS)라고 하는 일종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고민 중임
- 지역의 공공기관 관련 정보는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으나 이 시스템에 시설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된 정보화사업(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공식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 이 정보화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강의실, 주차장, 청사, 체육시설 등의 시설정보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타 정보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범위설정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만 해도 상당히 많으며 이 정보들만 제대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한다면 훌륭한 정보시스템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품앗이(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는 일종의 인력 매칭 시스템으로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와 활동 인증이 필요한데 이때 개인정보공유 동의를 받는 경우 추후 외부와 인력정보 공유 시 미리 동의 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타 지역이나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정보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지만 제대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예를 들어 지역의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등록예술인 DB도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인 인력 데이터를 수집된 목적 외 이용, 제3자 이용을 위해 공식적으로 외부기관에 제공한 적은 없으며 만일 외부에서 관련 데이터의 공유요청이 오더라도 raw data의 경우에는 개인별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유하기 어렵고, 다만 지역별 인원수와 같은 비식별 정보는 타 시스템과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충남에서는 충남문화예술종합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도 고려해 볼 직함. 이때 중앙과 지역 시스템이 제공할 데이터의 범위가 얼마나 동일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효과적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임
- 타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는 기존 시스템 간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이나 체계로 인해 데이터 수집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종류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또한 타 시스템과의 연계는 특정기관 내 보안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함.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서버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구비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보안문제로 인해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전담기관 지정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예를 들어 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매주 데이터 기록 및 관리를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이 시스템의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함. 특히 공공이 아닌 민간

부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수집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정보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임. 예를 들어 부산지역의 경우 문예회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문화시설이 지역 내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예회관 연합회 데이터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가 발생함

- 또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후 구축사업 추진 시 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전담기관을 확실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할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별 광역문화재단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생각되나, 이미 예술인 복지센터, 교육센터 지정 등 지역별 광역문화재단에서 전담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 시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문임

- 아울러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 기관에서는 단순히 데이터 수집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모여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 내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간담회 주요내용 (요약)

(1) 정보관리 현황 및 문제점

표 4-2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요약 : 정보관리 현황 및 문제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지역기관
- 개별 기관의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작업을 통해 축적 - 기관별로 해당 기관의 사업관련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중앙에서 존재하는 정보를 법률적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으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 정보독점이 일어나고 있음 - 정보 수집을 전국단위 실태조사, 사업 담당자 보고에 의존 - 중앙단위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중앙정부 사업 중심으로 수집되지 않는 정보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정보의 흐름이 종·횡적으로 단절 ▶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적, 방법론적 미비 ▶ 정보의 독점, 정보의 비대칭 상황 발생	-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전국단위의 통계나 정보에 의존하는 구조 - 재단이 있는 지역은 재단이 주로 정보수집관리의 주체가 되고 있음 - 중앙정부 통계만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져 광역시의 경우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난항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정보의 고립 및 독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아카이빙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타겟 설정오류와 시스템의 운영의 미흡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 -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문화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해당 내용 수집 - 민간영역에 대한 정보 수집 필요가 있지만 제약 - 지역 내에서도 타 장르, 타 기관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지 못함. ▶ 정보수집의 목적이 중앙정부와는 다소 상이하고, 지역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불가능 ▶ 지방정부 정보의 정책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미비 ▶ 정보 수집의 비표준화로 인한 데이터 통합 공유·활용 가능성, 연계분석 가능성 낮음 ▶ 지역정보가 종횡으로 공유되지 못함 ▶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됨

(2)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

표 4-3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요약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지역기관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동의는 하나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지역 현황 파악을 통한 맞춤형 사업 기획 등의 관점에서도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초문화재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중복성 문제를 고려해봐야 함	-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며 더불어 민간 문화관련 정보가 필요함 - 생산→가공→업로드에 주체가 명확화 되어야함 - 대국민 서비스, 행정서비스, 문화예술인 등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대상 타겟을 명확히 해야 함 -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대국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듦. 그 이유는 정보서비스영역 내용을 보면 지역 내에서 구심점이 되어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음 - 콘텐츠가 다 모이게 되면 자료가 다 나타나게 되는데 지역별 편중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수집항목

표 4-4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요약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수집항목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지역기관
- 문화예술분야 인력정보를 수집한다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경우 연초 300개의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이루어짐. 이 민간단체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본 종합연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사기업 분포현황과 같은 시각화와 관련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봄 - 기존 실태조사에서 수집하는 정보 이외에도 실무상 필요한 정보들이 더 존재함.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만 소비되는 행사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널리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인력현황이나 일자리 정보의 경우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는 데이터의 성격이 다르므로 종합연구에서 논의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수록할 정보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음	-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현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 - 기초지자체 재단은 아카이빙 자료(예술인, 민간문화시설 등)정보가 가장 필요함 - 재단들 간의 정책, 사업의 방향성, 숨어있는 자원(시설, 예술가 등) - 공문서 열람·관리 필요

(4)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방안

표 4-5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요약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방안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지역기관
-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자료 수집 전담부서에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공무원과 같은 실무자 대상의 정보입력관련 교육이 필요함 - 예산을 통해 정보제공을 유도해야 함 1개의 건축물에 스포츠센터, 문화의 집과 같이 다양한 시설들이 모여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입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문화 관련 단체들에게 실제로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수집의 주체가 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정보입력의 표준화를 하게 되면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이 단순해질 우려도 있음	-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민간영역에 대한 자료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문화재단에서 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뢰성을 유지하고 자료 소비에 대한 주체에 대해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함

(5) 기타 의견

표 4-6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요약 : 기타 의견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지역기관
- 현재 목적 외 이용, 제3자 이용을 위해 공식적으로 외부기관에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 적은 없으며, 만일 외부에서 관련 데이터의 공유요청이 오더라도 raw data의 경우에는 개인별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유하기 어렵고 지역별 인원수와 같은 비식별 정보는 공유가 가능함 -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지, 아울러 실제 정보 수집관련 업무량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기초 문화예술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된 예산 지원을 선불리 받기 쉽지 않음 - 문화포털 사업의 경우 수집된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신뢰성을 유지하고 자료 소비에 대한 주체에 대해 방안 마련이 시급함

(6) 간담회 의견 종합

- (현황) 중앙의 사업별 정보관리 지속, 지역은 개별 기관의 필요에 따라 문화정보 수집 및 관리, 표준화된 정보관리체계 부재, 문체부 사업별/지자체별 산발적 정보시스템 개발
- (문제점) 중앙중심의 정보수집, 정보의 비대칭 상황 발생, 전국단위의 문화정보 연계/활용/유통 미미, 지역의 문화정보역량 약화
- (개선방향)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성공 요인과 조치사항 (표 25 참조)

표 4-7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종합 : 성공요인과 조치 고려사항

구 분	성공요인	조치 고려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 문화정보의 범주, 주요 고객을 명확화 ☐ 중앙-지역의 원활한 문화정보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 기존 개별 문화정보 시스템 간의 중복방지 및 연계 강화	▷ 정보수집의 범주, 고객의 범주를 명확화하고 단계별 확장 모델 고려(공공→민간, 문화관계자→시민) ▷ 중앙정부 독점 정보의 지역 공유 방안 마련, 지역 문화정보의 원활한 수집방안 마련 ▷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의 포지셔닝 및 기존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마련
지역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역출연연구기관)	☐ 문화정보 생산과 관리 주체의 명확화 ☐ 지역 문화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지역중심의 정보수집 우선순위 설정 ☐ 데이터 품질관리(즉시성, 신뢰성 등)방안 마련 ☐ 문화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 지역문화정보 거버넌스 체계 및 관련 제도 마련 ▷ 문화정보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 전담기관을 통한 지속적 관리 ▷ 전담기관의 분석서비스 기능 탑재

제2절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지역문화통합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보서비스 구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

■ 조사 설계

표 4-8

설문조사 설계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 지자체, 문화시설, 문화재단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 2020년 01월 04일 ~ 02월 12일			
조사 완료 표본				
	지자체	문화재단	문화시설	
	79개 지자체	32개 문화재단	199개 문화시설	- 도서관 81개 - 박물관 46개 - 미술관 27개 - 공연장 45개
조사 내용				
	일반현황	문화정보 관리 현황		문화정보시스템 정책 수요
	- 성별 - 연령 - 직종 - 지역 - 소재지역 규모	- 문화정보 수집·관리 현황 - 수집관리 정보 종류 및 주기 - 문화정보 수집·관리 불편사항 - 문화정보 수집·관리 목적 - 문화정보 미 수집 이유 - 문화정보 내/외부 활용 현황 등		- 시스템 구축 동의 정도 - 관리 주체 - 시스템 자료 입력자 - 구축시 우선 고려사항 - 구축 효과 등

■ 응답 특성

- 본 조사에 응답한 지자체, 문화시설, 문화 재단의 지역규모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4-9

응답 특성- 지자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없음
전 체		79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50	63.3
	중소도시	24	30.4
	읍면지역 이하	5	6.3

표 4-10

응답 특성- 문화시설

(단위 : %)

구 분		사례수	없음
전 체		199	100.0
기관유형	도서관	81	40.7
	박물관	46	23.1
	미술관	27	13.6
	공연장(문예회관)	45	22.6
지역 규모	대도시	59	29.6
	중소도시	80	40.2
	읍면지역 이하	60	30.2

표 4-11

응답 특성- 문화재단

(단위 : %)

구 분		사례수	없음
전 체		32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15	46.9
	중소도시	12	37.5
	읍면지역 이하	5	15.6

2. 설문조사 결과

(1) 문화정보 수집·관리

■ 문화정보 수집·관리 여부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40.5%가 자체 문화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9.5%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재단) 지자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문화재단은 59.4%가 지역의 문화정보를 수집 관리 한다고 응답했으며, 40.6%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 문화시설에서는 자체 시설, 인력, 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59.3%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7%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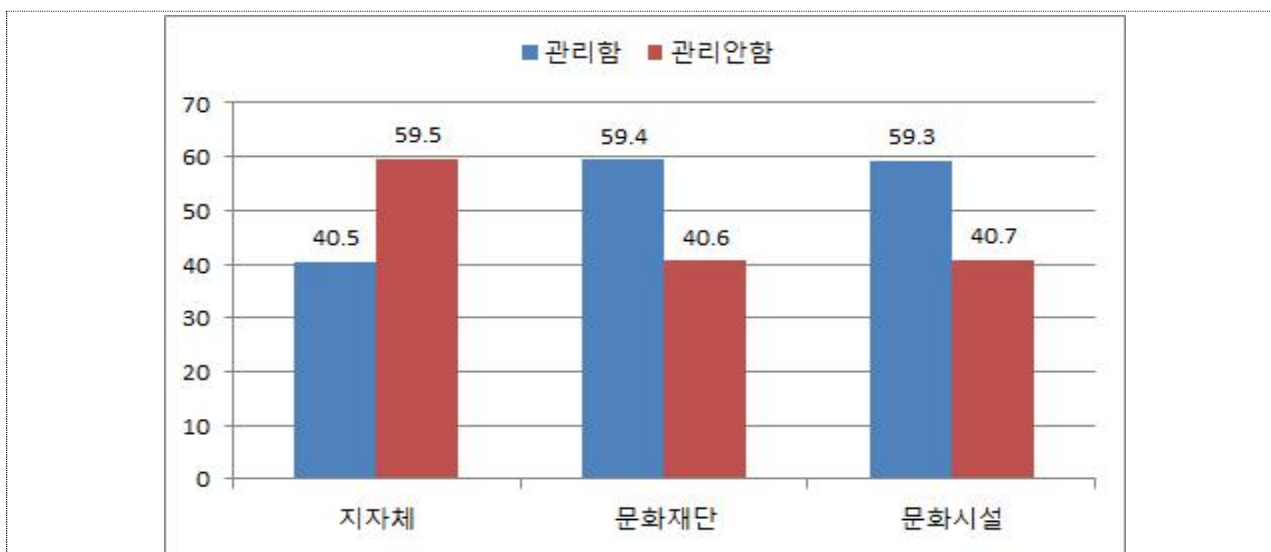


그림 4-1

주체별 정보관리 여부

■ 정보수집·관리의 목적

- (지자체) 문화정보를 수집·관리 하는 목적으로는 문화관련 자료의 단순 파악 및 정리 목적이 31.3%로 가장 높고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업 시행(25.0%), 문화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확보(18.8%) 등의 순임
- (문화재단) 문화정보를 수집·관리 하는 목적으로는 1순위 기준 문화관련 자료의 단순 파악 및 정리가 26.3%로 가장 높고, 1+2순위는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업 시행이 57.9%로 가장 높음. 지자체에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은 21.1%임

- (문화시설) 문화정보를 수집·관리 하는 목적으로는 1순위 기준 문화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확보가 36.4%로 가장 높고 문화관련 자료의 단순 파악 및 정리 (24.6%) 등의 순임

표 4-12

정보수집 · 관리의 목적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관련 자료의 단순 파악 및 정리	문화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확보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지역문화발전 기반 마련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업 시행	관련 정보를 상위기관에 제공	기타
자치단체	32	31.3	18.8	15.6	25.0	-	9.4
문화재단	19	26.3	10.5	21.1	21.1	21.1	-
문화시설	118	24.6	36.4	12.7	11.0	14.4	0.8

■ 수집 · 관리하는 주요 문화정보

- (지자체) 지자체는 문화시설, 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재단) 문화재단은 재단사업, 지역 내 문화정보, 관리시설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 문화시설에서는 시설운영현황, 시설정보, 인력,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가 다른 것이 특징이었고, 기관 내에서 주요 관심사항만 그나마 수집관리가 되고 있음

표 4-13

수집관리 문화정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문화시설
수집관리정보 순위	☐ 지역공공문화시설(65.6%) ☐ 문화관련사업현황(50%) ☐ 지역주요문화통계(43.8%)	☐ 재단 사업정보(100%) ☐ 지역 내 문화정보(52.6%) ☐ 관리 문화시설 정보(52.6%)	☐ 시설 운영현황(89%) ☐ 시설 정보(75.4%) ☐ 종사자, 이용자(69.5%)

■ 주요 정보 및 수집 주기

- (지자체) 많은 지자체에서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정보는 문화관련 사업, 문화 관련 예산, 문화채용, 문화행사 및 축제 등으로 나타내고 있음

- (문화재단) 문화재단의 경우 기관정보는 상시적으로 수집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 내 문화 정보 중에서 문화단체, 문화예산, 문화 인력의 상시수집 비율이 높았으며, 관리 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운영정보와 이용자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 문화시설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 예산, 프로그램, 자료, 이용자 정보들을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종사자와 이용자 정보의 상시 수집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14

문화정보별 수집 주기-지자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문화관련 사업	16	62.5	6.3	6.3	18.8	6.3
문화 관련 예산	13	61.5		7.7	23.1	7.7
문화 채용 정보	9	55.6		11.1	33.3	
문화단체 현황	13	38.5		23.1	38.5	
문화활동 인력	11	27.3		18.2	54.5	0.0
문화관련 기관	12	33.3		16.7	41.7	8.3
공공문화시설	21	38.1	14.3	14.3	23.8	9.5
문화행사 및 축제	19	42.1	5.3	10.5	10.5	21.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8	38.9	11.1	16.7	11.1	16.7
지역민 문화수요통계	12	33.3		16.7	41.7	8.3
지역 문화통계	12	41.7		8.3	33.3	16.7

표 4-15

문화정보별 수집 주기-문화시설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시설·운영 정보	89	49.4	5.6	5.6	6.7	13.5
시설 예산	85	57.6	2.4	7.1	2.4	15.3
시설 종사자	81	64.2	1.2	7.4	6.2	11.1
전문직 현황	80	62.5	7.5	6.3	12.5	11.3
시설 문화행사	102	62.7	8.8	6.9	7.8	7.8
시설 보유자료	99	62.6	7.1	6.1	4.0	11.1
시설 교육프로그램	99	60.6	8.1	5.1	8.1	10.1
시설 이용자	82	69.5	11.0	2.4	2.4	7.3

표 4-16

문화정보별 수집 주기-문화재단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기관 정보	문화관련 사업	19	63.2	-	5.3	5.3	10.5	10.5
	문화 관련 예산	17	64.7	-	-	23.5	5.9	5.9
	문화 인력	18	66.7	-	5.6	16.7	5.6	5.6
	문화 채용	17	70.6	5.9	5.9	5.9	5.9	5.9
	문화행사 및 축제	18	72.2	5.6	-	5.6	11.1	5.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9	68.4	5.3	-	10.5	10.5	5.3
지역 정보	문화관련 예산	9	55.6	11.1	-	11.1	22.2	-
	문화 단체 현황	9	77.8	-	11.1	-	11.1	-
	문화 활동 인력	9	55.6	-	22.2	-	22.2	-
	문화 관련 기관	10	70	-	10	-	20	-
	공공문화시설	10	70	-	-	10	20	-
	문화행사 및 축제	10	80	-	-	10	10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10	70	10	-	10	10	-
	지역민 문화수요통계	10	40	10	10		20	20
	지역 문화통계	10	60	-	10	10	20	-
관리 시설 정보	시설정보	10	60.0	10.0	10.0		20.0	-
	인력정보	10	70	-	-	10	20	-
	예산정보	10	60	-	-	20	20	-
	행사정보	10	80	-	-	10	10	-
	이용자현황	9	77.8	-	-		22.2	-
	보유자료	10	70	-	-		20	10
	교육 프로그램	10	80	-	-	10	12	-

■ 정보수집관리 주체

- (지자체) 수집·관리하는 문화정보의 관리 주체로는 해당부서 사업 관리자가 78.1%로 가장 높고 문화부서 총 책임자(9.4%) 등의 순임
- (문화재단) 수집·관리하는 문화정보의 관리 주체로는 해당부서 사업 관리자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함
- (문화시설) 수집·관리하는 문화정보의 관리 주체로는 해당부서 사업 관리자가 91.5%로 가장 높고 시스템 운영자(5.1%) 등의 순임

■ 정보관리 방법

- (지자체) 문화정보 수집·관리 방법으로는 내부 문서로 관리가 71.9%로 가장 높고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15.6%) 등의 순임

- (문화재단) 문화정보 수집·관리 방법으로는 내부 문서로 관리가 57.9%로 절반 이상이며, 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리가 21.1%,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10.5%) 등의 순임
- (문화시설) 문화정보 수집·관리 방법으로는 내부 문서로 관리가 62.7%로 가장 높고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22.9%) 등의 순임

표 4-17

정보관리 방법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문화시설
애로사항 순위	☐ 내부분서(71.9%) ☐ 내부정보시스템(15.6%) ☐ 홈페이지(12.5%)	☐ 내부분서(57.9%) ☐ 홈페이지(21.1%) ☐ 내부정보시스템(10.5%)	☐ 내부분서(62.7%) ☐ 내부 정보시스템(22.9%) ☐ 홈페이지(6.8%)

■ 정보수집 · 관리 애로사항

- (지자체) 지자체는 정보수집관리의 애로사항은 정보수집 대상기관의 정보관리 미흡, 정보관리 인력의 부족, 관련자와의 협조 미흡 나타남
- (문화재단) 문화재단은 자체 정보관리 역량의 미흡, 인력부족, 관련 협조의 미흡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 문화시설에서는 인력부족, 정보역량 미흡, 예산 부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표 4-18

정보수집관리 애로사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문화시설
애로사항 순위	☐ 정보수집 대상기관 정보 관리 미흡(46.9%) ☐ 인력부족(15.6%) ☐ 관련협조미흡(15.6%)	☐ 정보역량 미흡(42.1%) ☐ 인력부족(26.3%) ☐ 관련협조미흡(15.8%)	☐ 인력부족(32.2%) ☐ 정보역량 미흡(19.5%) ☐ 예산부족(9.3%)

■ 정보수집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

- (지자체) 문화정보를 수집·관리 하지 않는 이유는 자료 수집 및 전달 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각 34.0%로 가장 높고 정보가 많아 관리하지 어려움(17.0%) 등의 순임
- (문화재단) 문화정보를 수집·관리 하지 않는 이유는 자료 수집 및 전달 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응답이 각 30.8%로 가장 높음

- (문화시설) 문화정보를 수집·관리 하지 않는 이유는 자료 수집 및 전달 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각 32.1%로 가장 높고 정보가 많아 관리하기 어려움(11.1%) 등의 순임

표 4-19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료 수집 및 전달 수단이 부족함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정보가 많아 관리하기 어려움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가 부족함	기타
지자체	47	34.0	34.0	17.0	6.4	8.5
문화재단	13	30.8	30.8	7.7	7.7	23.1
문화시설	81	32.1	32.1	11.1	7.4	17.3

(2) 문화정보 활용 및 제공

■ 수집 정보 제공 여부

- (지자체) 문화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는 22.8%로 나타남
- (문화재단) 문화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문화재단은 34.4%로 나타남
- (문화시설) 문화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37.6%로 나타남
- (종합) 대시민 접촉지점에 가까울수록 정보제공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보제공이 미흡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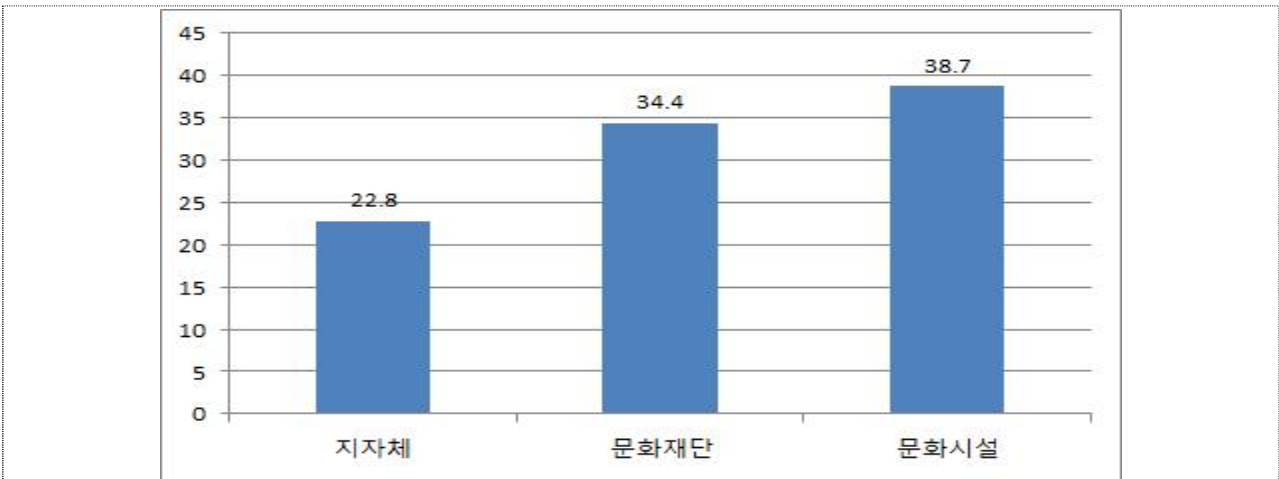


그림 4-2 주체별 정보제공 여부

표 4-20

수집 정보 제공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제공	미제공
지자체	79	22.8	77.2
문화재단	32	34.4	65.6
문화시설	199	38.7	61.3

■ 외부 제공정보의 종류

- (지자체)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예산, 문화사업, 문화 시설 정보 순으로 나타남
- (문화재단) 문화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문화행사/프로그램 현황, 관리시설/행사, 관리시설/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 문화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는 시설정보, 행사정보, 프로그램, 인력, 보유자료 등으로 나타남
- (종합) 전반적으로 시민의 정보수요가 많은 문화행사와 프로그램 정보등이 제공되고 있음

표 4-21

제공 정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문화시설
제공정보의 종류	☐ 지역내문화행사(61.1%) ☐ 문화예술프로그램(44.4%) ☐ 문화관련사업예산(38.9%) ☐ 문화관련사업내용(33.3%) ☐ 문화시설정보(33.3%)	☐ 기관 문화관련 사업(81.8%) ☐ 기관 문화행사 및 축제(81.8%) ☐ 기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81.8%) ☐ 문화 채용 정보(72.7%) ☐ 관리 시설 문화행사(63.6%)	☐ 시설 운영 정보(83.1%) ☐ 시설 문화행사(81.8%) ☐ 시설 교육프로그램(77.9%) ☐ 시설 인력(66.2%) ☐ 시설 보유자료(62.3%)

■ 상위 기관에 정보 제공

- (문화재단) 지자체에 가장 많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1순위, 1+2+3순위 모두 기관 내 문화관련 사업 현황(36.8%/73.7%)을 가장 많이 제공한다고 나타남
- (문화시설) 상위기관에 가장 많이 제공하는 정보 1순위는 행사정보, 시설정보, 예산 정보 순으로 나타났고, 1+2+3순위 기준으로는 행사정보, 이용자 정보, 교육프로그램 정보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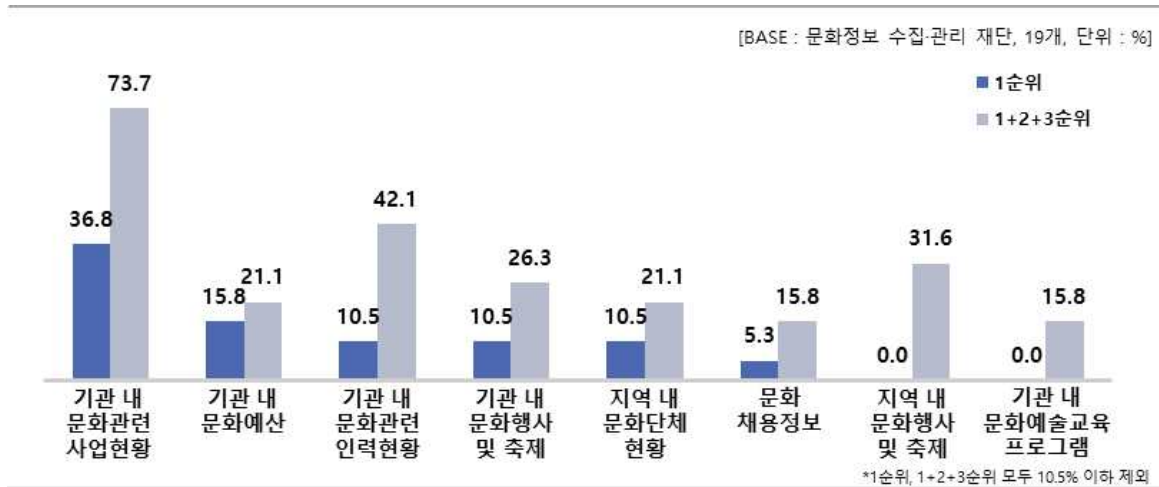


그림 4-3

상위기관 요청이 많은 정보-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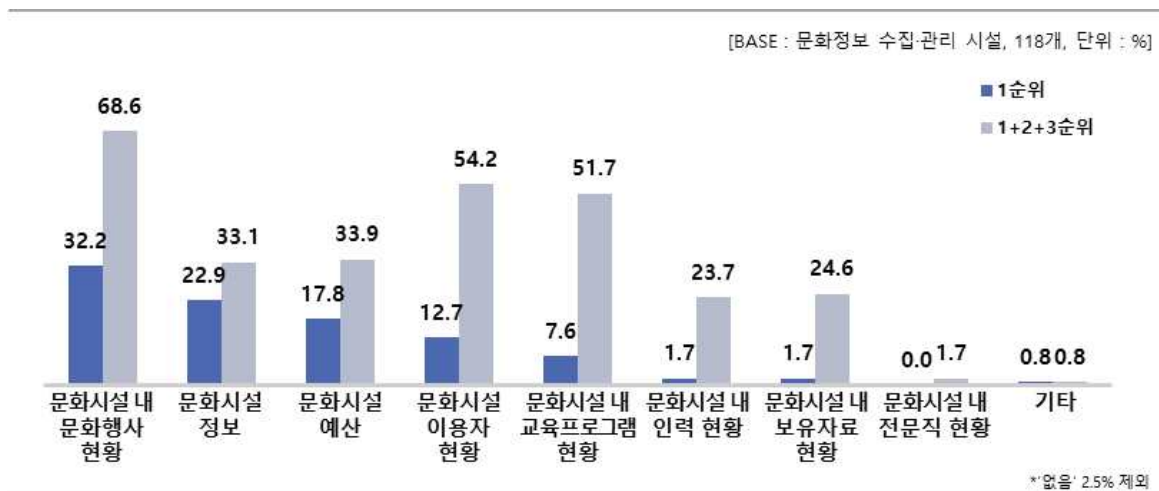


그림 4-4

상위기관 요청이 많은 정보-문화시설

정보제공 방법

- (지자체) 지자체의 정보제공 수단은 홈페이지(55.6%), 요청 시 문서제공(38.9%) 순임
- (문화재단) 문화재단의 정보제공 수단은 홈페이지(54.5%), 요청 시 문서제공(36.4%) 순임
- (문화시설) 문화시설의 정보제공 수단은 홈페이지(49.3%), 요청 시 문서제공(38.4%) 순임

표 4-22

정보 제공 방법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체 웹페이지 활용	요청시 문서로 제공	정보시스템	기타
지자체	11	81.8	18.2		5.6
문화재단	7	85.7	14.3		
문화시설	77	49.4	36.4	6.5	7.8

■ 정보입력자

- (지자체) 문화정보의 외부 제공 시 정보 입력자는 문화 관련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지자체가 94.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문화재단) 재단에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 입력자는 대부분의 재단에서 각 사업별 담당자가 직접 입력한다(81.8%)고 응답함. 다음으로 시스템 관리자(운영자)가 입력한다는 응답이 18.2%임
- (문화시설) 문화정보 외부 제공 시 정보 입력자는 각 사업별 담당자가 입력한다는 응답이 85.7%로 가장 높고 시스템 관리자 입력(11.7%) 등의 순임

표 4-23

외부 제공 정보 입력주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각 사업별 담당자가 입력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입력	기타
지자체	18	94.4	5.6	-
문화재단	11	81.8	18.2	-
문화시설	77	85.7	11.7	2.6

■ 정보 외부 미제공 이유

- (지자체) 문화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보 제공 시스템 미구축이 34.4%로 가장 높고 필요성을 못 느낌(24.6%), 정보내용 부족(16.4%) 등의 순임
- (문화재단) 외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재단의 미제공 이유는 정보 제공 시스템 미구축이 38.1%로 가장 높고, 정보내용 부족, 시간 및 예산 부족이 각 19.0% 순임
- (문화시설) 문화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보 제공 시스템 미구축이 32.0%로 가장 높고 필요성을 못 느낌(27.0%), 타 문화기관에서 제공(10.7%) 등의 순임

표 4-24

정보 외부 미제공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보 제공 시스템 미구축	정보내용 부족	시간 및 예산 부족	필요성을 못 느낌	타 문화기관에 서 제공	기타
지자체	61	34.4	16.4	8.2	24.6	9.8	6.6
문화재단	21	38.1	19.0	19.0	9.5	9.5	4.8
문화시설	122	32.0	9.8	9.0	27.0	10.7	11.5

(3)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정책수요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동의

표 4-25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동의 수준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보통이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100점 평균]	[5점 평균]
지자체	79	2.5	6.3	48.1	29.1	13.9	61.4	3.46
문화재단	32	6.3		40.6	28.1	25.0	66.4	3.66
문화시설	199	1.0	8.5	51.3	27.6	11.6	60.1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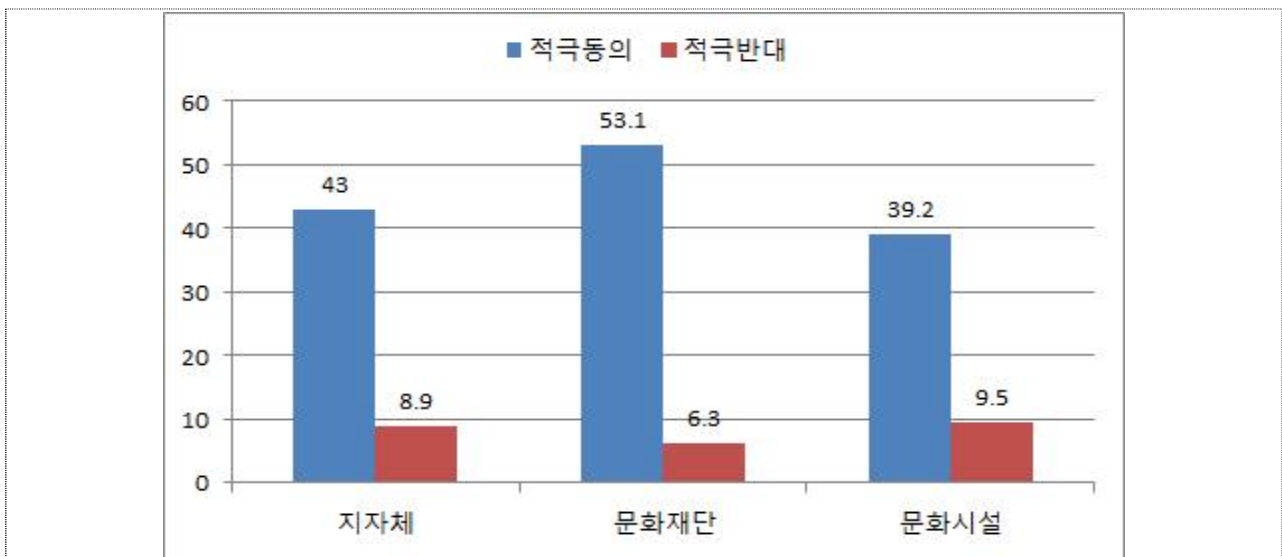


그림 4-5

주체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동의 여부

- (지자체) 중간층을 제외한 동의 반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지자체는 43%가 동의 8.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재단) 역시 중간층을 제외한 문화재단의 동의 비율은 53.1%로 나타남
- (문화시설) 중간을 제외하고 문화시설은 39.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찬성 이유

- (지자체)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료요구에 대응 및 사업개발에 활용이 40.3%로 가장 높고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정보 획득에 사용(23.6%), 문화사업 총괄 관리·조정 등 근거 자료로 활용(19.4%) 등의 순

임

- (문화재단)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찬성(혹은 보통)하는 재단은 시스템 구축 시, 문화사업 총괄 관리 조정 등 근거자료 활용(36.7%)과 자료요구 대응 및 사업개발에 활용(30.0%)을 이유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문화사업 총괄 관리·조정 등 근거 자료로 활용 응답이 27.2%로 가장 높고 자료요구에 대응 및 사업개발에 활용(25.0%),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정보 획득에 사용(22.2%) 등의 순임

표 4-26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찬성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료요구에 대응 및 사업개발에 활용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정보 획득에 사용	문화사업 총괄 관리·조정 등 근거 자료로 활용	중앙/자치단체 및 기관의 예산확보, 사업확장 등 업무에 활용	지역 간 비교분석에 활용	기타
지자체	72	40.3	23.6	19.4	11.1	5.6	
문화재단	30	30	13.3	36.7	13.3	3.3	3.3
문화시설	180	25	22.2	27.2	17.2	5.6	2.8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반대 이유

- (지자체)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필요성 부족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과다라는 응답이 각 42.9%로 조사됨
- (문화재단)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반대하는 재단(2개)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과다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 간 비교에 따른 업무 과중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과다가 각 36.8%로 높게 나타남

표 4-27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반대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필요성 부족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과다	지역 간 비교로 인한 업무 부담	기타
지자체	7	42.9	42.9		14.3
문화재단	2	-	100		-
문화시설	19	15.8	36.8	36.8	10.5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주체와 입력주체

표 4-28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주체 및 입력주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문화시설
관리주체	☐ 광역자치단체(38%) ☐ 중앙정부(27.8%) ☐ 중앙정부 산하기관(16.5%)	☐ 광역자치단체(25%) ☐ 광역 공공기관(25%) ☐ 중앙정부(21.9%)	☐ 중앙정부(32.2%) ☐ 중앙정부 산하기관(23.6%) ☐ 광역자치단체(16.1%)
입력주체	☐ 시설 기관 담당자(64.6%) ☐ 시스템 운영기관(20.3%) ☐ 기초지자체(13.9%)	☐ 시스템 운영기관(46.9%) ☐ 시설 기관 담당자(37.5%) ☐ 기초지자체(12.5%)	☐ 시설 기관 담당자(52.8%) ☐ 시스템 운영기관(33.2%) ☐ 기초지자체(13.1%)

- (관리주체) 관리 주체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문화시설의 의견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은 광역자치단체, 문화시설은 중앙정부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입력주체) 입력주체도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지점에서 입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시 자료 입력 의향

- (지자체)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에 자료입력 의향이 있는 지자체는 73.4% 수준
- (문화재단)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입력을 요청할 경우, 입력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과 입력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50.0%씩 나타남
- (문화시설)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자료입력 의향에 대해서는 시설의 64.3%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29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의향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지자체	79	73.4	26.6
문화재단	32	50	50
문화시설	199	64.3	35.7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의향 없는 이유

- (지자체) 입력의사가 없는 이유는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음

- (문화재단) 입력의사가 없는 이유는 데이터 입력과 관리의 주체가 중앙정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음
- (문화시설) 입력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인력 및 예산 부족이 56.3%로 가장 높음

표 4-30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불가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함	법적근거가 미흡함	중앙정부 사업임	기타
지자체	21	57.1	23.8	19.0	12.5
문화재단	16	31.3	12.5	43.8	
문화시설	71	56.3	23.9	15.5	4.2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시 주요 고려사항

- (지자체)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고려 요인으로는 시스템 사용 매뉴얼의 단순화가 51.9%로 가장 높고 타 지역과의 정보공유 가능(35.4%) 등의 순임
- (문화재단)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시스템 사용 매뉴얼 단순화(46.9%)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타 지역과의 정보공유 가능이 37.5% 순임
- (문화시설)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고려 요인으로는 시스템 사용 매뉴얼 단순화가 45.7%로 가장 높고 타 지역과의 정보공유(33.2%) 등의 순임

표 4-31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업의 주요 고려 사항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시스템 사용 매뉴얼 단순화	타 지역과의 정보공유 가능	대인서비스 향상	업무처리 속도 증가	기타
지자체	79	51.9	35.4	8.9	2.5	1.3
20대	13	53.8	23.1	15.4	7.7	0.0
30대	35	51.4	40.0	5.7	2.9	0.0

■ 주체별 문화정보 수요

- (지자체) 중요성-시급성을 중심으로 정보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지자체는 문화축제/행사 정보, 문화관련 프로그램 정보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요성, 시급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정보는 문화유산정보, 문화관련 통계정보, 문화행정 정보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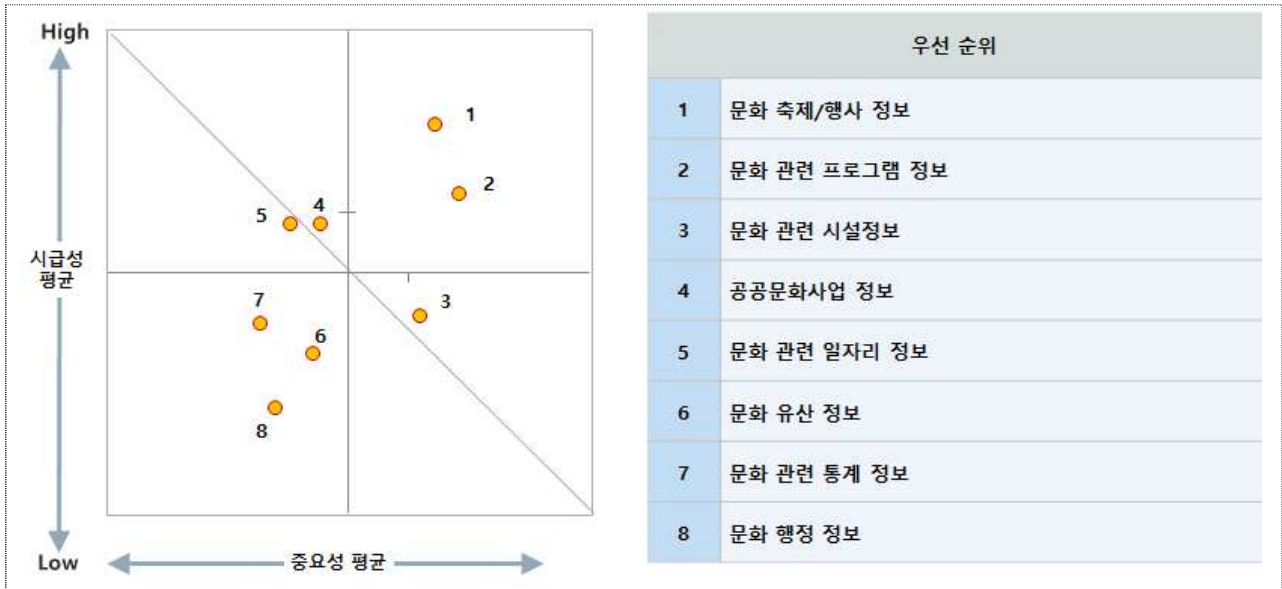


그림 4-6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수요 우선순위

- (문화재단) 문화재단은 문화관련 일자리 정보, 문화관련 행사/축제 정보, 공공문화사업 정보가 우선순위 높았음
- 문화시설 정보, 문화행정정보, 문화유산 정보는 우선순위가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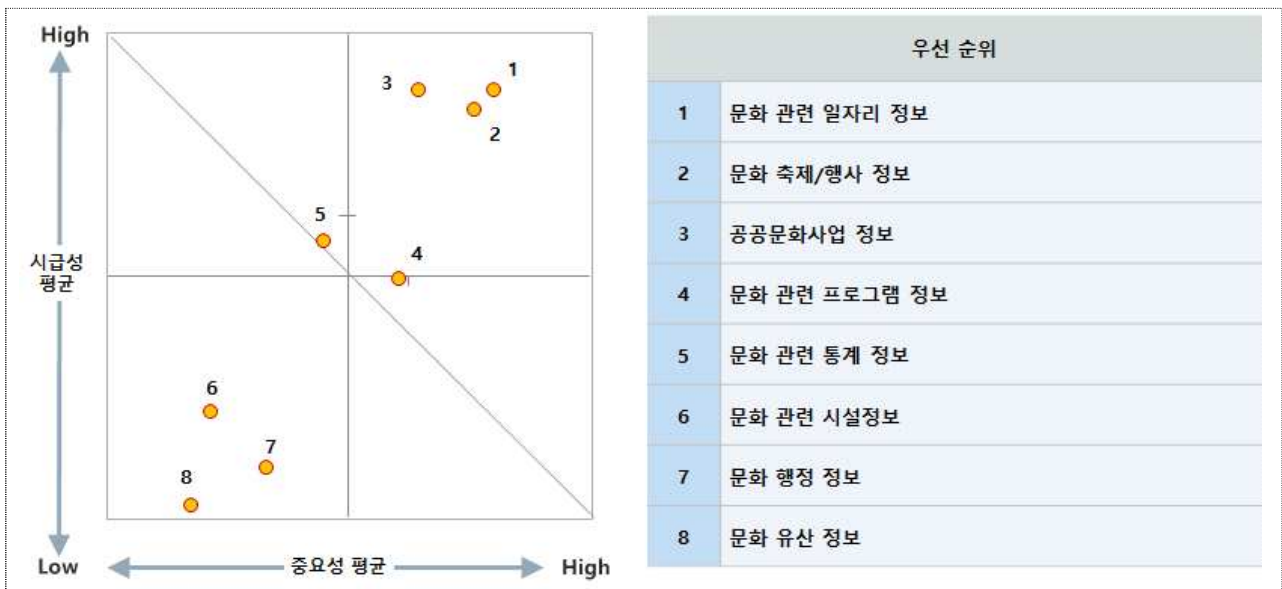


그림 4-7 문화재단의 정보수요 우선순위

- (문화시설) 문화시설에서는 문화축제/행사, 문화관련 프로그램, 문화관련 일자리, 공공문화사업 정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문화관련 통계정보와 문화행정 정보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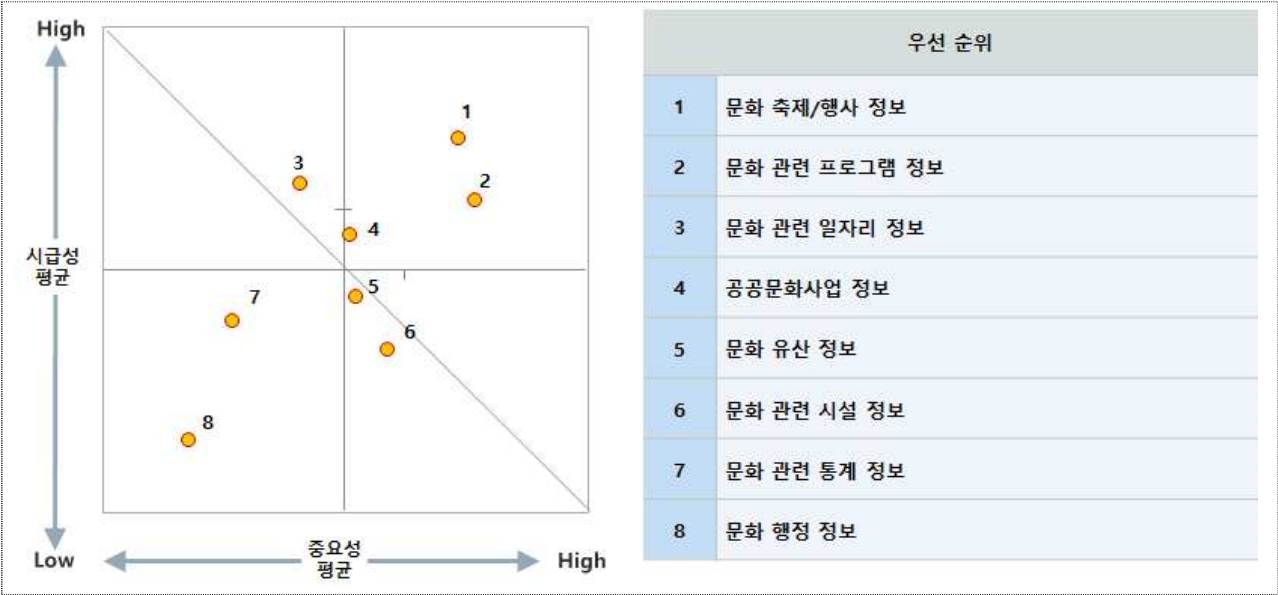


그림 4-8 문화시설의 정보수요 우선순위

- (관리주체) 관리 주체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문화시설의 의견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은 광역자치단체, 문화시설은 중앙정부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입력주체) 입력주체도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지점에서 입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활용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 (공통) 축제/행사, 프로그램 등 주민/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가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함
- (특이점) 문화관련 통계정보는 문화정보 수요측면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았지만, 활용측면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2 활용도 높은 문화정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문화시설
정보 활용도	☐ 프로그램정보(75.9%) ☐ 축제/행사정보(73.1%) ☐ 관련통계정보(72.5%) ☐ 공공문화사업정보(71.8%) ☐ 시설정보(67.7%)	☐ 관련통계정보(76.6%) ☐ 축제/행사정보(74.2%) ☐ 프로그램정보(71.1%) ☐ 공공문화사업정보(71.1%) ☐ 행정정보(67.2%)	☐ 프로그램정보(72.1%) ☐ 축제/행사 정보(69.8%) ☐ 공공문화사업정보(65.8%) ☐ 관련 통계정보(64.8%) ☐ 문화유산정보(63.3%)

(4) 설문조사 종합

■ 정보수집 · 관리

- 지역은 전반적으로 문화정보역량이 미흡하여 문화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수집 · 관리 현황) 지역문화정보 총괄주체인 지자체의 문화정보 수집 관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타나남
- (수집 · 관리 목적) 지역문화정보를 수집 · 관리도 문화관련 정보의 단순 파악으로 정보의 적극적 수집 · 관리는 되고 있지 않음
- (수집 · 관리 정보) 주요 수집관리 정보는 문화시설, 문화사업 등 자체 성과관리 측면의 정보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수집 · 관리 역량) 고질적으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역량과 인력의 부족현상 발생
- (수집 · 관리 체계) 정확히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통할지에 대한 기준 부재

■ 정보제공

- 일부 대시민 정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음
- (제공 현황) 문화서비스의 대시민 접점에 있는 시설들의 정보 제공이 그나마 가장 활발함
- (제공 정보) 프로그램, 행사 시민의 정책체감과 관련이 높은 영역에서 정보제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 (제공 방법) 전반적으로 대시민 정보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문화행정 정보는 문서로 제공하고 있음
- (제공 담당) 개별 사업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음 아님
- (미제공 이유) 수집 및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구축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통합정보시스템 수요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주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의 우선순위 등에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시민수요가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스템 구축 동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가 높음
- (시스템 필요성) 행정정보의 유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인한 업무 부담도 우려하고 있음
- (시스템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시스템 참여 주체는 전반적으로 현장정보가 담길 수 있는 시설 및 기관 담당자라고 인식하고 있음
- (주요고려사항) 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스템 사용의 편의성, 정보공유 가능성으로 나타남
- (정보수요) 전반적으로 대국민 수요가 많은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원하고 있음
- (정보활용) 대국민 수요가 높은 영역의 정보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화관련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시사점

- (정보수집 관리) 정보수집관리체계의 미비로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 필요
- (정보공유) 시민을 위한 정보공유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행정 정보 등의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화행정정보의 공유체계 구축 필요
- (통합정보시스템)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행사정보들이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지역에서 정보 입력과 접근이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V

국내외 사례 분석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제1절 국내 사례

1. 국내 타 부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례 선정

■ 既 구축된 시스템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서비스되던 각종 정보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한 사례 선정

- 신규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해당 시스템 운영을 위해 별도로 조직된 위탁·관리 전담기관의 유무, 데이터 외부개방 등의 여러 특징들을 비교 분석함

표 5-1

국내 타 부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시스템 명칭	소관부처	데이터 통합대상	전담기관	주요 기능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교육부	시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 관련 정보 공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 수집
국가평생학습포털	교육부	프로그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 정보 수집
공공기관혁신포털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시설 내 행사정보 공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사업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사업 관련정보 수집
농림사업 정보시스템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농림사업 관련정보 수집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기획재정부	보조금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 수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및 보조금 관련 정보 수집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통계청	통계자료	-	각종 통계자료 공시
e-고용노동지표	고용노동부		-	노동분야 지표 공시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행정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연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국세청		-	국세업무 연계

2.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1) 시스템 개요 및 구축목적

■ 시스템 개요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시스템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학교알리미)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
- 학교정보공시 포털(학교알리미)에는 2008년부터 교육부에서 정한 공시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으며, 학생·교원현황·시설·학교폭력발생현황·위생·교육여건·재정상황·급식상황·학업성취 등과 같은 학교의 주요 정보들을 해당 포털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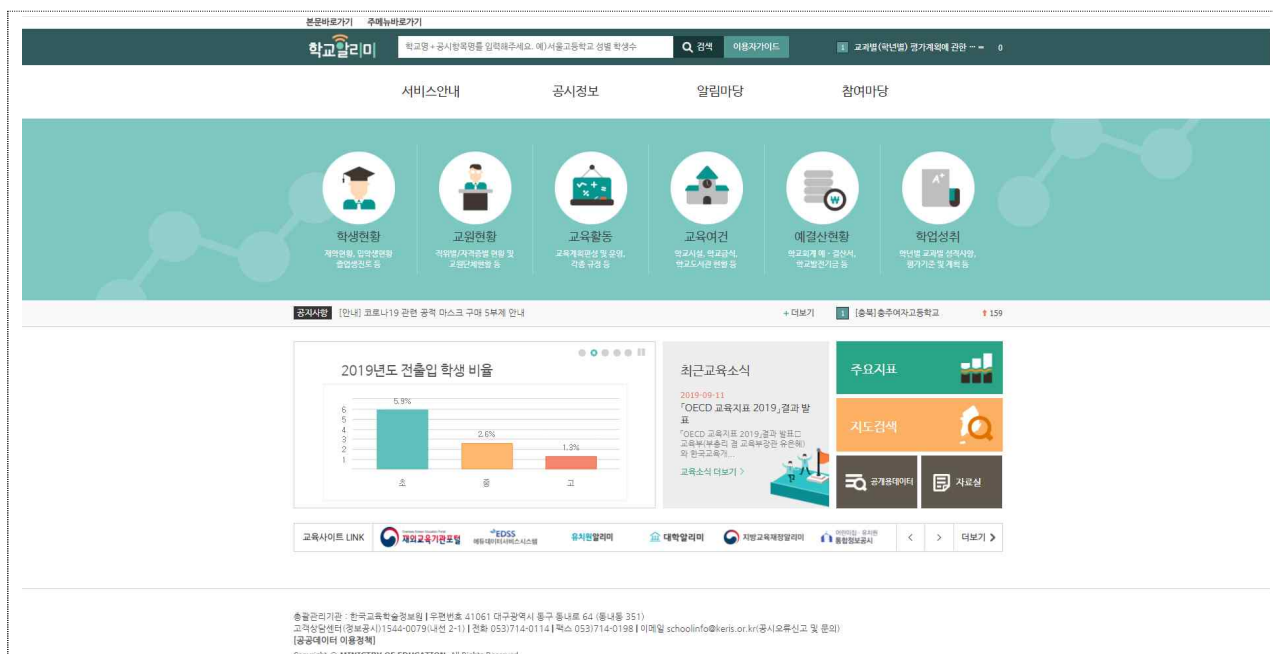


그림 5-1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시스템 구축목적

- 이러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은 학교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임
- 본 시스템은 공시정보의 신뢰도·활용도 제고를 통해 학생·학부모·정책입안자 등 교육정보의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학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추진되었음

-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과 학술연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됨

(2) 시스템 추진경과

- 학교의 정보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법령이 제정된 것은 지난 1997년임
 - －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교육 기본법」에서 학력평가와 인증제도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제26조), 같은 날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지방교육 행정기관, 학교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에 대해 규정한 바 있음
 - － 이후 2004년 8월 31일, 국민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 － 또한 공개 대상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 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정보 공개에 대한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5년 2월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학교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방안이 발표되었음
- 2007년 4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동년 5월 25일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제명의 법률 제8492호가 공포·시행되었음
 - － 2014년에는 학교알리미 이용 편의성 및 사용자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기로 공시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2월부터 학교알리미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 언제 어디서나 학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음
 - － 2015년에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시를 위하여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검색 여건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개편 작업과 다양한 검색기능, 지도 서비스,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 등이 구현되었음

표 5-2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시스템(학교알리미) 구축, 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추진 경과

년도	주요 내용
2007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2007. 5. 25.)
2008	● 학교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정(2008. 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2008. 11. 17.) ● 학교알리미 대국민서비스(www.schoolinfo.go.kr) 개통(2008. 12. 1.)

2012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시 서비스 실시(2012. 11. 30.)
2013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조사와 정보공시 시스템 자동 연계(2013. 5. 1.)
2014	• 학교알리미 모바일 서비스 가개통 및 시범운영(2014. 12. 22.)
2015	• 학교알리미 모바일 서비스 개통(2015. 2.) •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개편서비스 시범개통 (2015. 12.)
2016	• 학교알리미 정부3.0 공개용 데이터 개방(2016. 3.)
2017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017. 1. 31)\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연 4회 조사
2018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018. 4. 30)

(3) 시스템 운용체계

■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 2005년 4월 교육 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07년 4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 25일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제명의 법률 제8492호가 공포·시행되었음
- 아울러 2008년 11월에는 추가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의 법적 기반이 완비되었음
- 이후 몇 차례의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19년도 기준 14개 항목, 44개 범위, 51개 세부범위, 차수별 59개 세부범위 입력을 통해 각종 초·중등학교의 정보가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음
- 일선 교육 관련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게 되며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총괄관리기관에서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에 근거하여 공시항목별 자료를 입력·관리·운영하고 있음

■ 시스템 추진체계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추진체계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지원)청, 총괄관리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단위학교, 정보공시 업무 협의체 및 현장지원단으로 구성됨
- 교육부는 시스템 주관기관으로서 기본계획수립과 제도 개선 등 정보공시제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전반적인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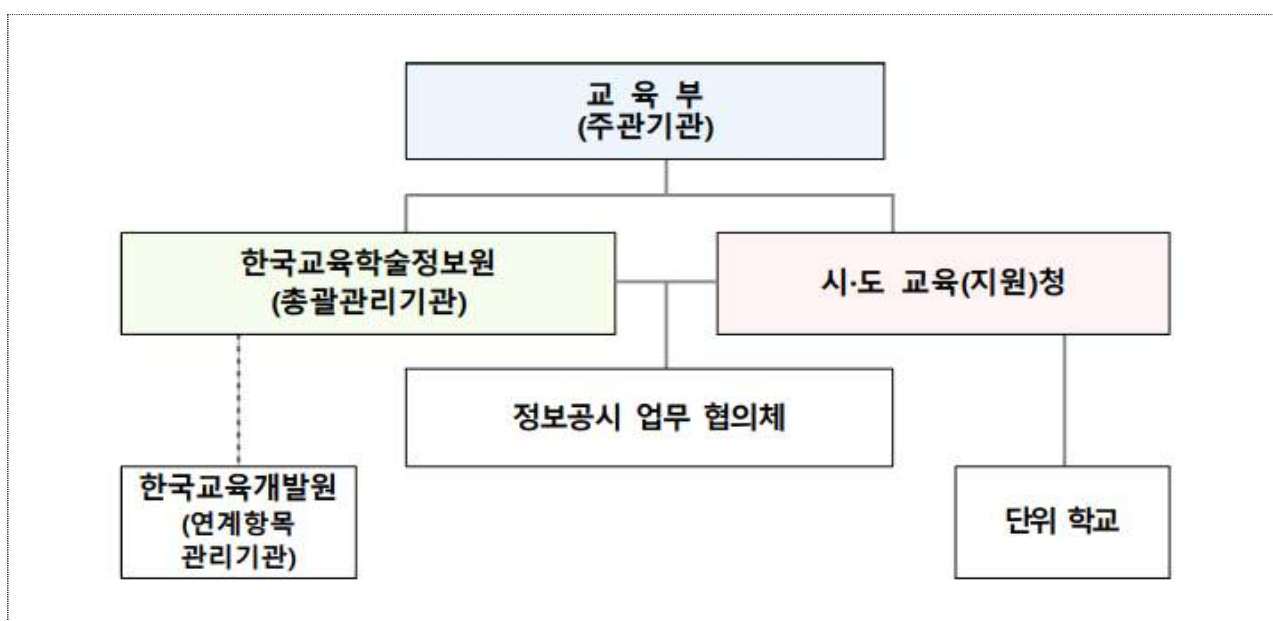


그림 5-2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추진 체계

- 시·도 교육(지원)청은 관할 단위학교의 공시업무를 지원하고 단위학교의 공시자료가 제대로 수집·관리되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며, 공시 정보의 품질 관리 및 현장 점검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시스템 총괄관리기관으로서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학교별 공시자료 수집·관리 및 검증을 지원하며 시스템 사용자 지원 및 콜센터 운영, 공시 지침 연수, 공시정보 활용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각급 단위 학교들은 학교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 및 항목별 작성자·확인자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가지며 공시자료 입력 및 제출과 공시업무, 공시입력 근거자료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정보공시 업무 협의체는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 및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관련제도 및 지침 개선사항 발굴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음

- 동 시스템의 연계항목관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공시 자동 연계항목과 관련하여 자료 제공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지침 및 자료를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함



그림 5-3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업무 흐름도

(4) 주요 서비스 및 기능

■ 정보 공시 기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15개 항목의 학교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정보공시의 주체를 전국 초·중등학교의 장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음
- 학교정보공시 대상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입력·제출하며, 시·도교육청 및 총괄관리기관에서 검증 후 학교알리미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학교알리미가 아닌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표 5-3

2018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대상 기관

(단위: 개)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기타				합계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	
총계	6,251	3,232	2,357	176	67	1	7	23	42	12,156

■ 공시 내용 및 범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상 초·중등학교가 공시해야 하는 15개의 정보를 열거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공시항목, 공시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시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례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5) 시스템 운영성과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한 공공 빅데이터 개방 확대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개별 학교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2016년 3월부터 수치화가 가능한 학교정보공시 항목을 집합데이터 형식으로 개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 활용을 추진하였음
- 이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오픈포맷(CSV) 형태의 선순위 개방을 실시하였으며, 공시정보를 민간업체 등에서 활용하도록 데이터를 연계 서비스하여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공시자료의 민간 부문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음

표 5-4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개방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개)

구분	2016	2017	2018
개방 항목 수(누적)	20 (37%)	25 (46%)	29 (57%)
총 세부 항목 수	54	54	51

■ 전국 단위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공시업무 추진 프로세스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전국의 학교 정보공시 베테랑 업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2017년 9월에 17개 시·도 총 83명의 현장지원단 구성을 추진하였음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교현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정보공시 행정·시스템·지침서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있음

표 5-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현장지원단 지원 상세 내역

구분	참여 인원	온라인 지원 횟수	맞춤형 컨설팅 횟수
2017년 하반기	32	170	14
	51	255	51
2018 상반기	27	282	0
	53	428	87
합계		1,135	152

■ 공시정보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유사 통계자료 일치성 제고 및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통계 및 나이스 자료 연계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전국 1만 2,000여 개 단위학교에 오류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사전테스트 및 입력기간 전 특정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음
- 현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정보공시 데이터의 근거자료를 3년 동안 단위학교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바, 기존 수기문서로 관리하던 학교정보공시의 항목별 근거자료를 시스템에 즉각 탑재할 수 있도록 자료 관리·보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원업무 경감 및 활용 편의성을 강화하였으며, 학교별 상이한 근거자료의 표준화된 프레임을 제공하여 데이터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였음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의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은 정보공시 서비스 품질제고, 이용자 편의개선 등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음

3.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1) 시스템 개요 및 구축목적

■ 시스템 개요

- 국가평생학습포털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료로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종합포털임
- 국가평생학습포털의 이용자는 로그인 없이 무료로 약 40만 건의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ON 배움터)를 수강할 수 있고, 시도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평생교육 기관, 강좌 정보 등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음



그림 5-4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서비스 구성도

■ 시스템 구축목적

-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은 모든 국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학습정보, 학습 콘텐츠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여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평생학습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음¹²⁾
- 그 동안 평생교육정보 및 프로그램 등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학습자가 일일이 찾아야 했고,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으나

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NILE 기관 소개 브로슈어

국가평생학습포털 개통을 통해 전국의 평생학습정보 및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콘텐츠를 바로 학습할 수 있어 생활 속 평생학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림 5-5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서비스 추진목적

(2) 시스템 추진경과

- 교육부는 지난 2013년 9월, 당시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¹³⁾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하였으며 동 기본계획의 4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제시한 바 있음¹⁴⁾

- 아울러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서비스 체제(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망)구축 계획을 추진하였음
- 특히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온-오프라인의 학습정보와 콘텐츠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지역 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 등 오프라인 지원체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며, 지식공유와 재능기부를 위한 온라인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등 해당 서비스 체계가 국민 평생학습의 장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13) 온라인 평생교육 종합서비스를 개통하고 지역별 행복학습지원센터의 오프라인 사업과 함께 연계하여 ‘온 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계층별 요구(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에 따라 ‘생애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며, 특히 소외계층(저소득층, 저학력층, 경력단절여성)의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전체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14)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2013,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p.7

-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서비스를 시범개통 하였음
 - － 현재 국가평생학습포털은 일반 국민과 평생학습관계자의 온라인 평생학습네트워크 거점으로서 평생학습 참여활동 및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동시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평생교육 유관기관, 일반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5-6

국가평생학습포털 구축 관련 연혁

년도	주요 내용
2007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2008	• 평생교육진흥원(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2013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발표
2014	•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서비스 시범 개통
2015	• 14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연계(강원, 경남, 전남 추가)
2016	•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연계 완료(광주, 전북, 세종 추가)
2020	• 평생학습계좌제-늘배움 통합회원 관리시스템(평생교육 One-ID) 개통

(3) 시스템 운용 체계

■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 지난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법적근거가 관련법 조항(평생교육법 제19조)으로 마련됨에 따라 그 다음해인 2008년 2월 평생교육정책 실행의 총괄기구로 평생교육진흥원(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음¹⁵⁾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 4항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바, 동법 제19조 4항 5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의 구축)과 7호(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동법 제20조 2항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제20조 2항 1호(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획 및 정보의 제공)와 4호(해당

15)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와 ‘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센터’ 등 설립 당시에 독립된 기관에 분산되어 운영 중이던 3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하였음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에서도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있음

- 아울러 동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급 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는 평생교육 정보화 관련 의무조항(제22조 제1항)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인적자원 관련 정보화 조항(제22조 제2항)을 두고 있음

■ 시스템 관리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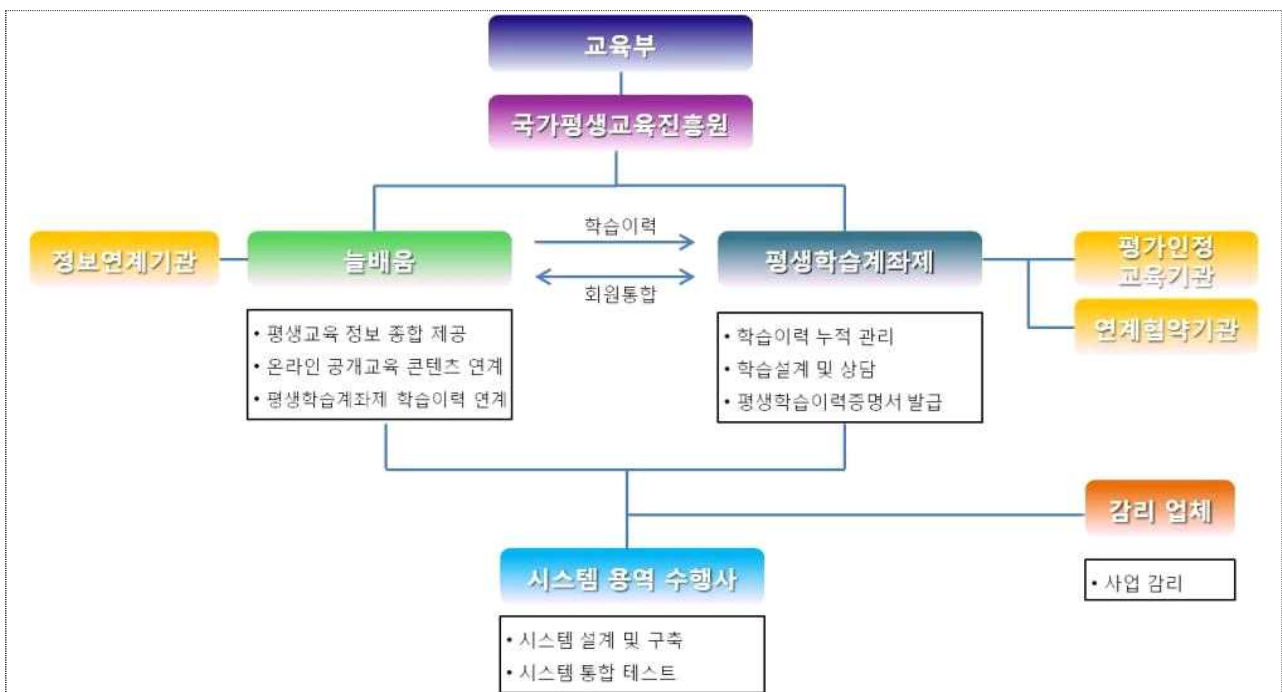


그림 5-6

국가평생학습포털의 추진체제

- 중앙 단위에서 구축되는 국가평생학습포털은 시·도의 평생교육정보를 한 데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구현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역의 학습자간을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음
-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교부 등 평생교육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습플랫폼운영실)은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평생교육기관 및 연계기관 지원체제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공공기관, 학술기관, 시·도별 평생학습센터 등 연계기관들은 콘텐츠 및 평생교육 정보 제공과 더불어 기관별 시스템 연계 시 업무 협조, 연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 주요 서비스 및 기능

■ 전국 평생교육 정보 종합 제공

- 국가평생학습포털은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¹⁶⁾과 연계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평생교육 기관의 강좌 및 기관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원하는 지역의 강좌를 하나의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함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은 지난 2013년까지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경기, 충남, 제주 7개 지역에서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는 광주, 전북,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 그리고 2016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과의 연계가 완료됨으로써 각 지역별 시·도 정보망과 국가평생학습포털 간의 상호 정보유통을 위한 표준화된 정보유통시스템이 구축되었음
- 이러한 전국 및 시·도간 정보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강좌, 강사정보 등을 국가평생학습포털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인접 생활권에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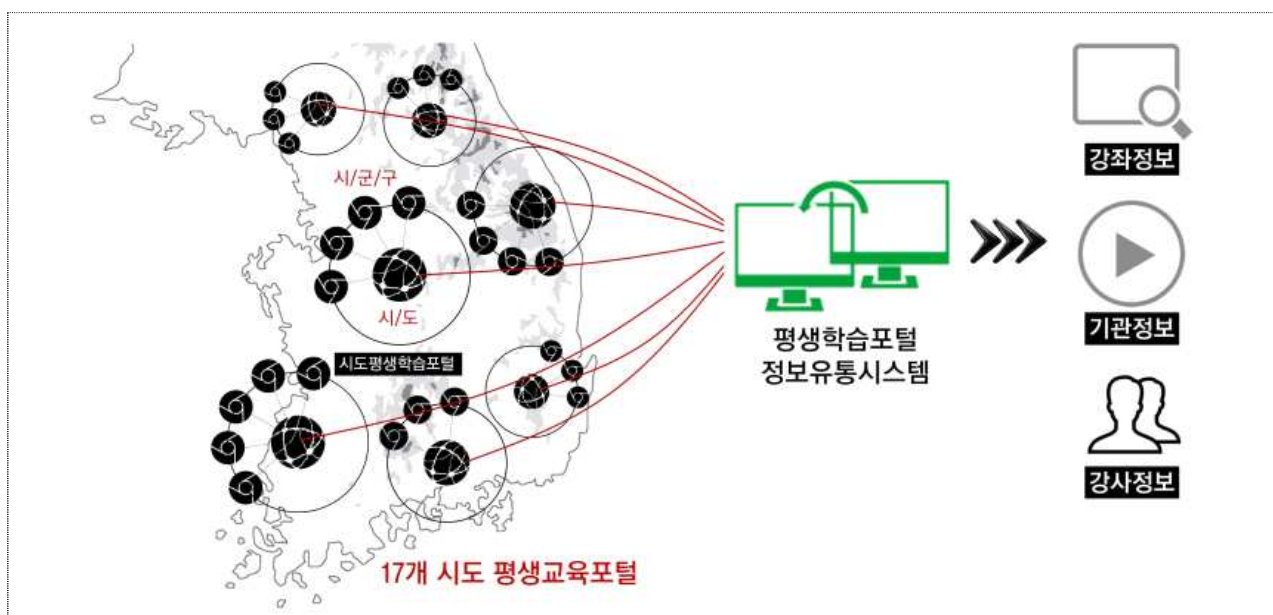


그림 5-7

시·도 평생학습정보망 연계체제

16) 지역 주민의 원활한 평생학습 참여를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별 평생교육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온라인 공개교육 콘텐츠 연계 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공공·유관기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동영상 평생학습 콘텐츠를 연계·제공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 콘텐츠를 쉽게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국가평생학습포털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K-MOOC 등 국내유관 기관은 물론 유튜브(Youtube) 교육콘텐츠 및 테드(TED) 강연회 영상 등 약 40만 건에 달하는 평생교육 관련 온라인 영상 강좌를 제공 중이며, 광범위한 수요자 층의 요구만족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우수한 품질의 강좌를 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5-7

평생교육정보연계 기관 현황

2019년 12월 기준

년도	기관명
2019	금융감독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립국악원 e-국악아카데미, 한국생산성본부, 서민금융진흥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노사발전재단
2018	국민권익위원회, 통일교육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재정부경제배움e,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학회, 애니캠(삼성시각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한국U러닝연합회, 한국 MBTI연구소,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2017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겐스타트/신지원,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ECK교육,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지역평생교육, 다문화교육, K-MOOC
201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립국어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립재활원, (주)랜드프로, 인프런(인프랩),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주, 세종, 전북)
2015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조폐공사(한국은행), (주)지에듀컴, 현대경제연구원, (주)휴넷, (재)스마트교육재단, 평생학습대학, 성인문해교육,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강원, 전남, 경남), 서울시 교육청(에버러닝)
201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방송),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부모교육, YouTube Edu, TED Ed,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

- 또한 국가평생학습포털은 평생교육에 소외되는 계층을 없애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포털의 주요 수요자 중 하나인 노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용 모드(글자 크기 확대, 항목 등 간소화 기능)를 제공하고 있음

평생교육 관련 전문자료 제공

- 평생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제공받아 평생교육법 제18조에 의한 국가평생교육통계자료 및 각종 평생교육 학술자료,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내 학술자료나 기타 정책관련 자료를 국가평생학습포털 내 자료실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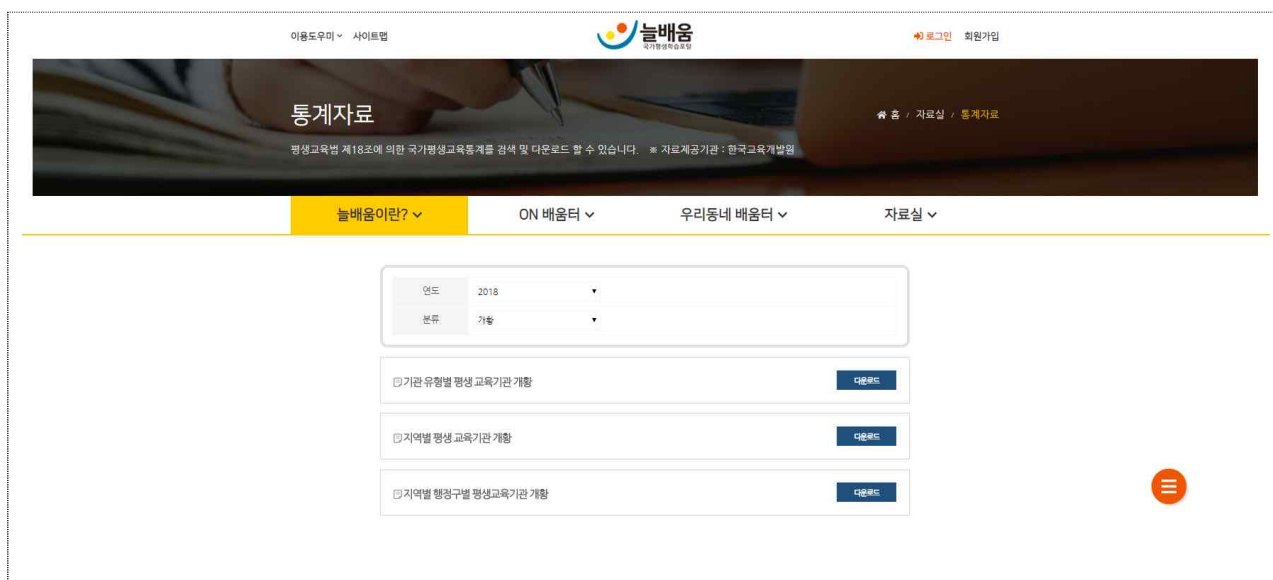


그림 5-8

국가평생학습포털의 통계자료 제공 메뉴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서비스 제공

- 평생학습계좌제란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는 제도로써 개개인의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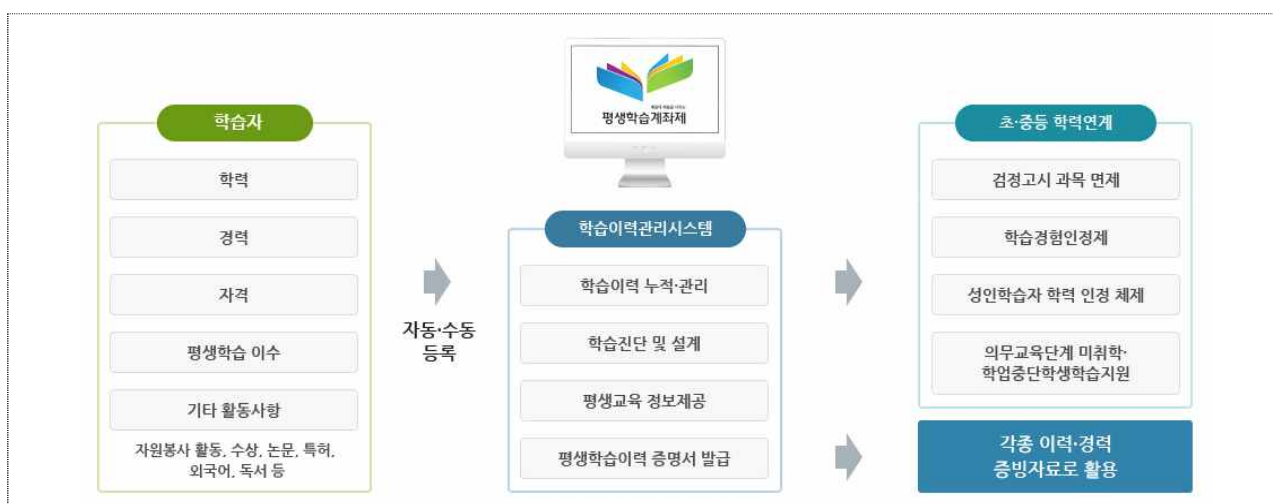


그림 5-9

평생학습계좌제의 기본개념

- 평생학습계좌제도의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학습자용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자 및 교육기관 관리자용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온라인 평가인정시스템의 3가지로 구성됨
- 학습자용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학습계좌 개설 및 학습이력 누적·관리, 평생학습 이력증명서 발급기능을 가지고 있고, 운영자 및 교육기관 관리자용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학습과정 운영·관리, 학습이력 승인 처리, 통계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이며, 온라인 평가인정시스템은 기관등록 적합성 검토 및 기관등록 신청업무에 특화된 시스템임



그림 5-10

평생학습계좌제 이용방법

(5) 시스템 운영성과

■ 서비스 특성

-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및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운영되는 서비스이므로 해당 시스템의 안정성, 가용성, 보안성 확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당 서비스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특성 상 각종 관련 제도나 정책기조 등의 시간적·공간적·사회적인 변화와 이용자 민원 등에 따른 업무 변경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분야임

■ 서비스 종류 및 이용 현황

-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의 경우 전용 웹사이트 서비스, 모바일웹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과 학습이력데이터 연계를 통해 개인별 체계적 학습이력 누적·관리 및 평생학습이력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2018년 12월 기준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및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의 주요 이용현황 실적은 아래와 같음

표 5-8		국가평생학습포털 이용 현황		2018년 12월 기준
구 분		현황		
정보제공	공공기관	27개	약 39만개	
	학술기관	2개	약 600개	
	민간기관	11개	약 6천개	
	시·도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17개	약 38만개	
	시·도 교육청	1개	약 4만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개	약 4천개	
	기타	2개	약 1천개	
회원가입자		약 14천명		
모바일앱 다운로드		약 3만 건		

표 5-9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이용 현황		2018년 12월 기준
구 분		현황		
학습계좌개설자		77,859명		
학습이력등록		268,610건		
유효 평가인정 학습과정		26,213개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1) 시스템 개요 및 구축목적

■ 시스템 개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국민에게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지난 2010년 정식 개통되었음
- 동 시스템은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과 중앙부처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 시스템(범정부)) 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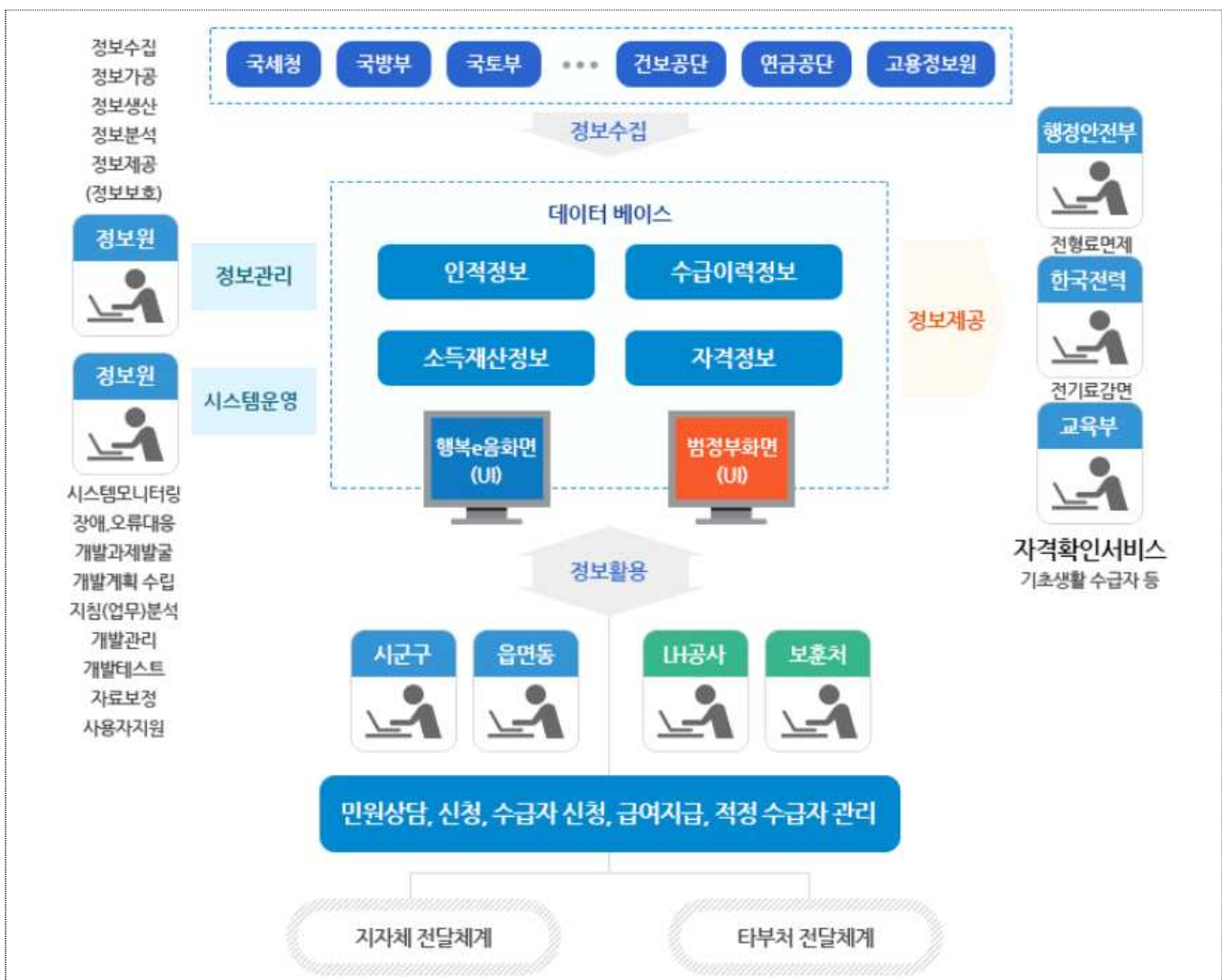


그림 5-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성도

-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한 복지사업정보,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수급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하는 한편 각 부처는 관리되는 각종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대응, 적정수급관리, 업무처리, 복지사업설계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시스템 구축목적

- 복지 예산의 증가 및 서비스 다양화의 추세에 비하여 부처별 분절적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 간 중복·누락 발생, 종합적 서비스 제공 미비,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과다 등으로 인해 복지 재정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처 간 협업과 정보 공유,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실현하고자 하였음
- 동 시스템은 사회복지행정의 효율화, 부당한 예산집행의 예방, 적격 수급자의 발굴 및 급여 연계, 복지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업무 지원 및 연계기반 마련 등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

(2) 시스템 추진경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적으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전신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의 자격과 지원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신청·접수, 자산조사, 지원여부 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었음¹⁷⁾
 - 지난 2007년 12월 통합 복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최종 전달체계를 단일화하여 중앙, 지방 정부, 민간의 전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한다는 대통령 공약 발표 이후, 2008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BPR/ISP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음

17) 사회보장정보원, 2019, 사회보장정보원 10년사

- － 이후 2009년 말 지자체별·서비스별로 관리 중이던 복지대상자 정보를 복지대상자 개인별·가구별로 통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정식 개통하였으며 당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이 동 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

표 5-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추진 경과

년도	주요 내용	유형
2008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BPR/ISP	컨설팅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반 구축 사업(1차)	구축
2009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반 구축 사업(2차)	구축
2010	• 범정부 복지 정보 연계 체계 BPR/ISP	컨설팅
2015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컨설팅	컨설팅
	•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구축	구축
2016	• 사회보장정보 통계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 사업	통계
	• 민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구축
2017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 사업	인프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수립 컨설팅 사업	컨설팅
2018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컨설팅
2019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ISMP) 수립	컨설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수급이력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복지 업무 담당자가 동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대응·업무처리·복지사업설계 등의 복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복지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임
- 지난 2011년 6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전 부처로 확대 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구축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전 부처 복지사업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한 사업범위를 확정하고 동

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개정을 통해 통합정보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¹⁸⁾

- 이후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구축을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 3단계에 걸친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복·부적정 복지급여 지급방지 및 자료 품질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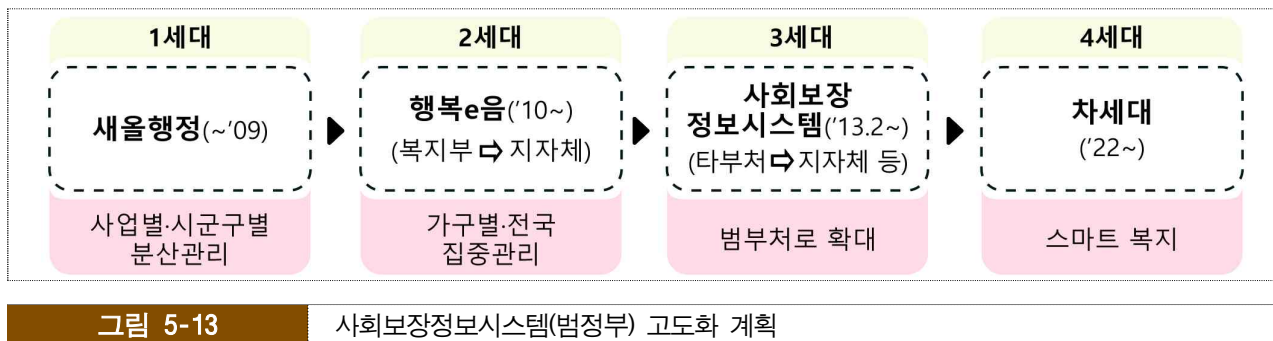
그림 5-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구성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 추진

- 지난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복지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의 시스템은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이는 2010년 대비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가 4.1배 (700만 명→2,867만 명), 예산 3.8배(20조 원→76조 원), 사업이 3.5배(101종→350종)로 늘어나는 등 동 시스템 도입 이후 복지 분야의 각종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임
-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9년도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ISMP) 수립하고 2020년부터 정보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임

18) 사회보장정보원, 2019, 사회보장정보원 10년사



(3) 시스템 운용체계

■ 시스템 관리체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 등의 120여 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치 단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범정부 차원의 복지사업 및 자격·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복지 사업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정보시스템의 명칭은 과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범정부 복지정보통합시스템이었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으로 명칭이 통일되었음

■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120여 개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서로 다른 기준을 표준화 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158개의 관계법령을 개정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 정보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정보 연계, 시스템 운영기관 설립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공포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시행되었음¹⁹⁾
-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5항과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에도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아울러 2009년 6월 9일 개정·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19) 사회보장정보원, 2019, 사회보장정보원 10년사

전담기구 설립)에 의거하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동년 12월 행복e음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국가복지정보포털,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등 기존 3개 정보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이 설립되었음

- 한편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2014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동법 제12조를 통해 잠재적 복지수요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와 역할을 보다 확대하였음

(4) 주요 서비스 및 기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합DB는 크게 복지정보통계시스템, 보육정책DW,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실적통계자동화시스템, 전자바우처통계시스템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 행복e음은 복지대상자의 신청·접수·조사, 지원 여부 결정, 급여지급,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복지대상자 개인·가구 기본 인적사항 및 육구 정보, 소득·재산 정보, 자격·수혜 이력, 복지지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함
 - － 범정부 시스템은 각 부처에 산재·분절된 복지정보를 연계·통합하여 맞춤형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 복지사업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범정부 복지사업 정보, 자격·이력 통합 DB, 부적정·중복 수급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함

(5) 시스템 운영성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 현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2017년을 기준으로 정부 내 17개 부처에서 제공하는 총 350여종의 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리되는 복지대상자는 약 2,800만 명에 달하고 있음²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으로 복지대상자는 2010년 기준 700만명에서 2015년 기준 2,700만명으로 약 3.9배 증가하였으며, 시스템 사용자도 2010년 기준 20,940명에서 2016년 기준 35,509명으로 약 1.7배 증가하였음
- 또한 동 시스템의 1일 평균 트랜잭션 처리량도 2012년 기준 3천 6백만 건에서 2015년 기준 1억 건으로 약 2.9배 증가하는 한편, 복지데이터 총량도 2011년 기준 14TB에서 2015년 43TB로 약 3.1배 증가하는 등 데이터 폭증에 따라 지속적인 DB서버

20) 사회보장정보원, 2019.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급여보장단위 인적정보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장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²¹⁾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전후 변화 및 성과

- 동 시스템을 통해 복지 민원인의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협업체계가 구축되었고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통합·관리, 중복지급에 대한 사전점검,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부적정한 지급 차단 및 예산의 투명한 운영 등에 복지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사업별 유사 서식을 통합하거나 자동연계로 생략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증대하였고, 복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을 위해 상담사례 관리를 통해 부처별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시켰음
- 급여의 자동생성 및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과의 전자적인 연계 등 급여의 지급절차를 자동화·시스템화하여 각종 복지급여의 정확한 전달 및 공무원의 횡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자금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케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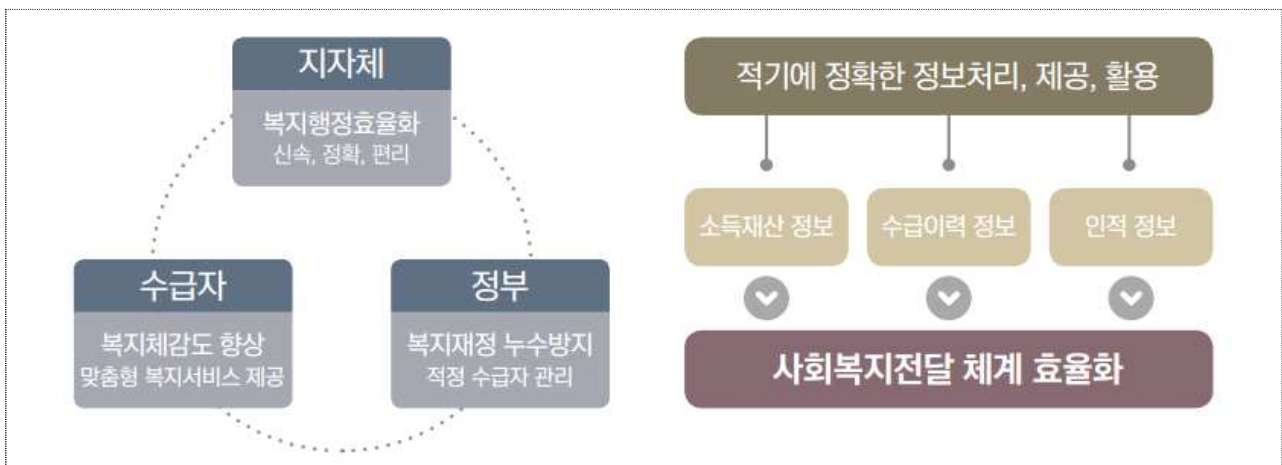


그림 5-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효과

21)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1) 시스템 개요 및 구축목적

■ 시스템 개요

- 2017년 보조금 개혁 이전에는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을 판단하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설계되어 있지 않았고, 지급 주체의 분산과 정보 단절로 담당 부처의 세부적인 내용 검토에 한계가 있었음
- 특히 담당 부처의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 예산(안)을 작성하거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안)을 취합할 때 유사·중복 사업 편성 여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없었고 국고보조금 지급 주체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유사·중복 사업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이로 인해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가 단절되는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국고보조금의 중복 수급에 대한 문제제기가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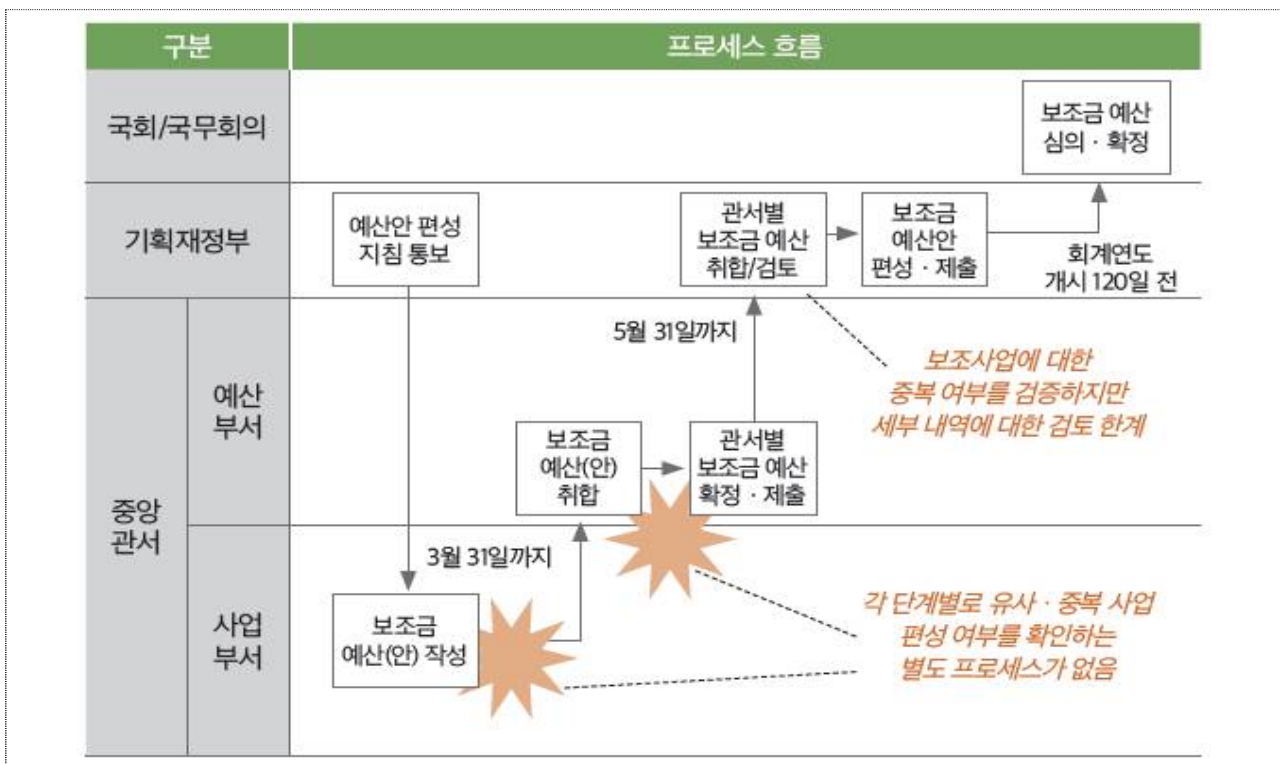


그림 5-15

국고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전의 예산 편성 시 문제점

- 정부는 보조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제도 개혁 및 시스템 구축을 결정하였으며 지난 2017년 보조금 개혁을 위한 하

나의 방안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을 도입하였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 교부 · 집행 · 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임

■ 시스템 구축목적

- 국가가 보조사업자에게 먼저 보조금을 교부 · 이체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선지급 · 후정산)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을 추진할 자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괄 지급 이후 다수의 보조사업자를 담당 부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보조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구축을 통해 보조금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음
-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실시간 집행과 온라인 정산으로 안전하게 보조금을 관리하는 한편 총괄 조정 기능으로 실시간 집행 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개로 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계를 연 · 월 단위로 공개하여 정책방향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5-16

전체 보조금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2) 시스템 추진경과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지난 2013년 8월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집행 감사 결과 약 2,300억 원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으며, 2014년 1월 보조금 비리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 검찰 · 경찰 합동 조사에서도 약 3,200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등 각종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

생하였음

- 이에 따라 2014년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 대책이 수립되었으며, 2015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음. 이후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에 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출범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함

표 5-1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추진 경과

년도	주요 내용
2014. 12.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마련 및 핵심과제로 e나라도움 구축결정
2015. 09.	• 나라도움 구축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 & ISP) 수립
2015. 10.	• 기획재정부 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2016. 1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2017.01.04. 공포)
2017. 01.	• 보조금 교부와 집행기능 등 1차 기능 개통
2017. 07.	• 보조금 정산, 중복·부정 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 전면 개통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시기별 업무

- 2017년 1월의 1차 개통에서는 보조금 통합관리의 기본 기능인 보조사업 관리 및 사업 수행 관리 기능을 개통하였고 2017년 7월의 2차 개통에서는 집행정산 중 정산 관리, 반납 관리 기능과 중복·부정수급 관리, 통계 분석, 총괄 조건, 정보 공개 기능이 포함되었음
- 이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등 유관 기관의 시스템과의 연계 작업을 병행하여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었음

표 5-1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시기별 업무

년도	업무	주요 내용
1차 개통 (2017. 1)	보조사업 관리 사업 수행 관리	- 사업 기준 정보 관리, 내역 사업 편성 및 배정, 공모 관리, 보조사업 교부 관리, 지출관리 - 교부신청, 보조금신청, 계약관리
	보조금 포털	사용자 포털 및 업무 포털 관리, 사용자 로그인
	집행 정산	- 교부 관리, 집행 관리, 카드·계좌 관리 - 정산 관리, 반납 관리
전면 개통 (2017. 7)	중복·부정 수급 관리	수급자 통합 관리, 자격 검증 항목 관리, 부정 징후 모니터링, 부정수급 패턴 분석
	통계 분석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별 통계 관리, 집행 실적 통계
	총괄 조정	회의 관리, 평가 관리, 집행 모니터링
	정보 공개	공모 사업 조회, 보조금 맞춤형 정보 공개

(3) 시스템 운용체계

■ 시스템 관리체계

- 현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9(운영기관협의회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 11조 (운영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 운영과 시스템 연계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운영기관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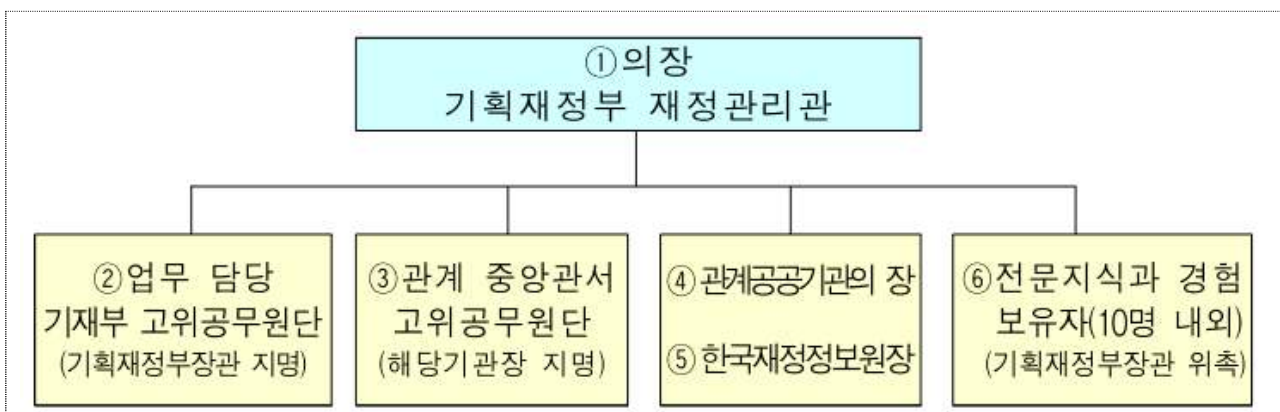


그림 5-1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협의회 구성

- 이러한 운영기관협의회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25명 이내의 위원으

로 반기별 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하는 형태로 활동하며, 운영기관협의회 산하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 시스템연계 실무협의회, 시스템개선 실무협의회 등 3개 분야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운영기관협의회는 크게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보조금관리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운영계획, 시스템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그 밖에 운영기관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 2015년 10월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과 동시에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감사원, 국세청 등 9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정부 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음
- 이후 2016년 9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26조의 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제26조의 3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 총괄 및 업무의 위탁), 제39조의 3 (대국민 이용 지원)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위탁운영기관으로 2017년 1월에 한국재정정보원이 지정되었음

(4) 주요 서비스 및 기능

■ 시스템 구성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국고보조금 포털과 내부 행정망으로 연결되는 업무 지원 포털로 구성됨
- 업무 지원 포털은 보조사업 관리, 사업 수행 관리, 집행·정산, 중복·부정수급 관리, 통계분석, 총괄 조정 관리, 통합 연계 모니터링, 공통 관리 기능으로 구성됨
- 대국민포털은 공공 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관리, 사업 수행 관리, 집행 관리, 공모 안내, 부정수급 대책, 보조금 관련 법제도 정보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맞춤형 정보 공개, 보조사업자 정보, 중요재산 정보, 보조사업 정보, 보조금 통계 정보, 보조금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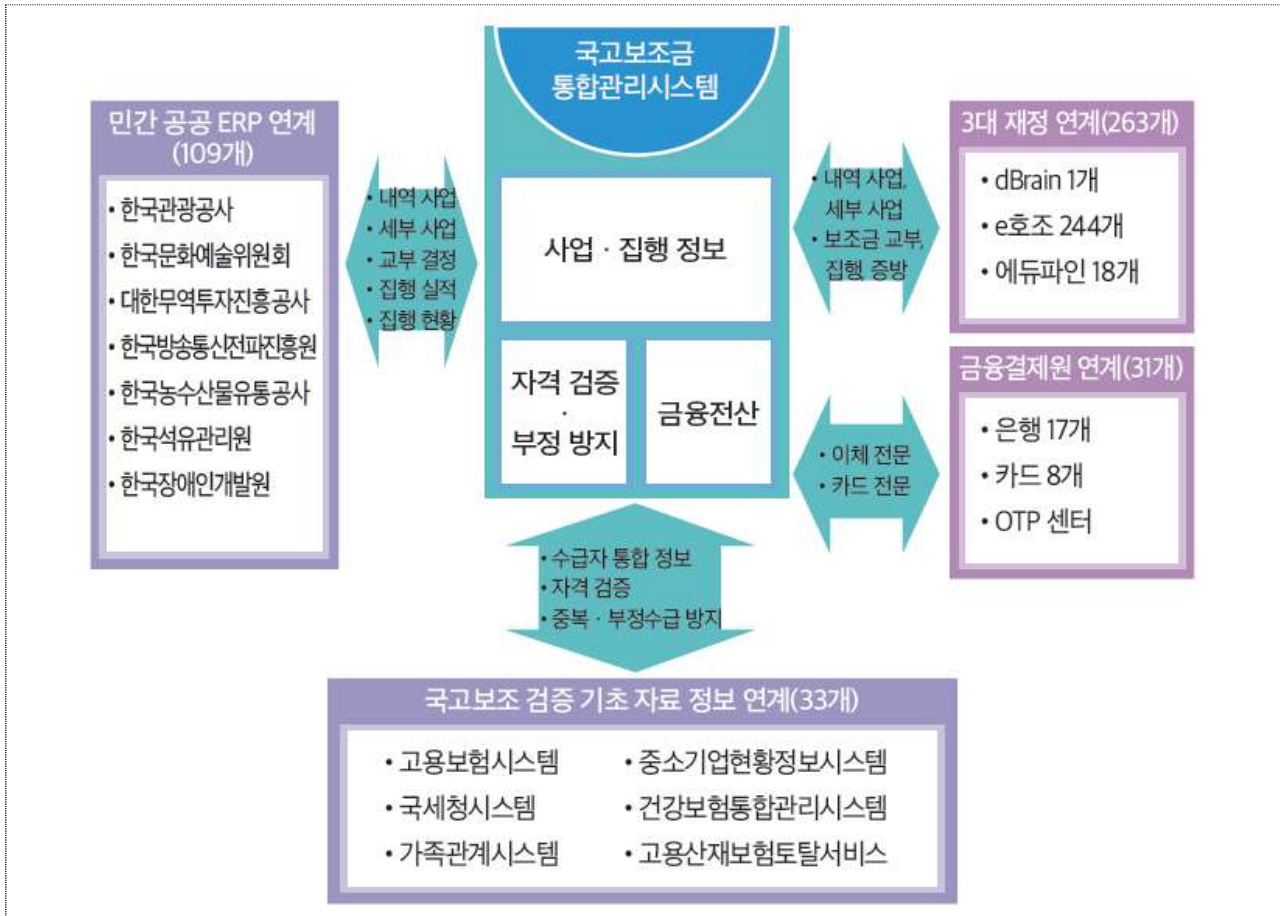


그림 5-18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 현황

- 중앙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정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자격 검증과 중복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33개 시스템, 국고보조금을 이용하는 민간-공공 기관 109개의 시스템 등과 연계 중임
- 특히 그 이외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타 부처에서 운영 중인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 보조금 집행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 종래 세부사업 단위(1,535개)까지 관리하던 것을 내역사업으로 세분화(4,786개)하고, 기초지자체, 민간사업자까지 연결하여 상세내역(81,769개)의 집행상황까지 관리

■ 민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체계

-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자금은 재정정보원에 통합 예약 후 지급토록 하며, 예약된 자금은 국세청, 금융결제원과 연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허위 여부 검증 후 거래처에 실시간 전자이체 집행됨

■ 보조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 관리

- 보조사업자, 수급자별로 사업수행 및 수급이력이 축적·관리됨
-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격검증 등 중복·부정수급 방지 기능, 수혜자 관점에서 보조금 정보 맞춤형 제공, 보조사업자 정보공개 등



그림 5-19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효과

(5) 시스템 운영성과

■ 주요 성과

-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후,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 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 정착, 보조사업 정보공시 시행 등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 바 본 시스템을 통해 관련예산의 조기집행에 기여하였으며 민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체계, 보조금 집행 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음
- 또한 사용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기능개선을 수행하고, 교육 및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한 적발·환수조치로, 본 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수급 예방 및 차단 효과를 구현해냈음
- 한편 보조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을 관리함으로써, 중복부정수급 추적 등 집행의 적절성 분석이 용이해짐. 실제로 국고보조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은 공모 사업 안내창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스템의 향후 운영방향

- 2020년 신설되는 권역별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개선하는 한편 신기술 기반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정수급 탐지율을 제고하는 등 보조금 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보조금 관련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을 제고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의 내실화 제고를 위해 2020년에는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그림 5-20

2020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중점과제

6.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

(1) 시스템 개요 및 구축목적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은 국가정책 수립과 점검 및 정책성과의 측정 등을 목적으로 38개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하고 관리하는 국정지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웹기반의 통계정보시스템으로 지난 200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 동 시스템은 용어 그대로 국정의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는 통계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지표는 국정운영 및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가장 부합하는 지표체계라 할 수 있음
- 현 국정모니터링시스템 관리체계에서 총괄 운영과 개선 및 시스템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는 통계청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음
 -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등록된 각 부처별 통계지표를 통해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지표에 대한 간략한 해석·그래프·관련 DB도 다운받을 수 있어 이용자 스스로 인포그래픽 제작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이 가능함



그림 5-21

국정모니터링시스템 홈페이지

● 시스템 구축목적

-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자에게는 한국의 현 위치를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지표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고, 향후 국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데 있음
- 또한 일반 국민에게는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여러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알기 쉬운 나라지표로 국가발전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그림 5-22

국정모니터링시스템 개념도

(2) 시스템 추진경과

■ 시스템 구축과정

- 2005년 대통령 지시로 통계청 주관 하에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각 부처는 소관 통계자료 발굴을 시작하고 선정된 지표의 입력 및 개선 작업을 시작하였음
- 2006년 5월 통계청은 750여 개 지표를 발굴하여 e-나라지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국무회의에서 시연회를 개최한 후, 행정부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2008년 영역별 대표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5개 분야(총량, 경제, 사회, 문화, 정부 등)의 696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여 서비스를 개편하였음
- 2020년 현재 39개의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743개의 나라지표와 관련 정보를 e-나라지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그림 5-23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3) 시스템 운용체계

■ 시스템 관리체계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범정부 국정통계시스템으로 통계청이 주관기관으로서 총괄하여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이 담당지표를 관리하고 있음

표 5-1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리체계

구 분	주요업무
통계서비스기획과	•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업무담당 •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관리(제안서 검토 및 기술협상 등)
통계데이터기획과	• 제안요청서 작성 및 발주 • 제안서 기술평가 실시 및 보안준수 여부 점검
용역수행자 (수행사업자)	•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등 사업 수행 • 작업내역별 추진경과 등 일정 보고 • 각종 산출물 작성 및 유지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지표 관리자 (나라지표 담당기관 : 약 40개 기관)	• 신규지표 발굴 및 지표자료 입력 • 시스템 기능 향상 관련 의견 및 요구사항 제시

■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은 지난 2007년 3월 제정된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17호)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근거로 삼고 있음
- 현재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통계청이 본 시스템운영의 주관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총괄 운영 및 보완·개선, 나라지표의 추가·삭제 및 나라지표 분류체계의 관리, 나라지표의 관리실태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대한 교육 및 협의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각 정부기관의 장은 동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과 관련한 나라지표(이하 “소관나라지표”라 함)를 시의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담당하고 있는 소관나라지표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총괄담당자 1인과 나라지표별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본 시스템에 탑재될 주요 지표데이터의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지표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4) 주요 서비스 및 기능

■ 시스템 관리 체계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인 서비스시스템과 지표 콘텐츠 등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그 중 서비스시스템은 다시 웹서비스, 모바일웹서비스, 공유서비스로 구분됨

표 5-14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시스템 체계 및 주요 기능

구분	시스템명	주요 기능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 (대국민)	웹서비스	- 지표 서비스 * 나라지표, 국가발전지표 - 통합검색 제공 - 인기지표, 최신지표 제공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
	모바일웹 서비스	- 지표 서비스 - 인기지표, 최신지표 제공	
	공유서비스 (OpenAPI)	지표 일부항목(통계표 등) 공유 제공	
관리 시스템 (관리자)	관리시스템	- 지표서비스 정보관리 및 정보입력 - 지표서비스 점검관리 - 지표담당자 관리	시스템 관리자, 부처 기관운영자 및 지표담당자 약 500여명

※ 서비스시스템 URL : <http://www.index.go.kr>(웹), <http://www.index.go.kr/smart>(모바일웹)

■ 영역별 지표체계 제공

- 현재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외부로 제공하는 e-나라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3개 대분류로 구성되며, 경제는 10개, 사회는 12개, 환경은 7개의 중분류로 구성됨
- 중분류는 다시 1-8개의 소분류로 구성되며, 각 소분류는 복수의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지표체계의 최종단계인 각 세부지표마다 지표를 관리하는 책임 기관이 명시되어 있어 국정운영 및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관여하는 정책입안자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줌

■ 시계열 통계의 도식화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특징은 시계열 통계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그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수치와 함께 지표에 대한 의미 분석 및 관련파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이 시스템은 지표 분류체계에 따라 분야별 또는 부처별로 개별지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지표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업무와 통계청 업무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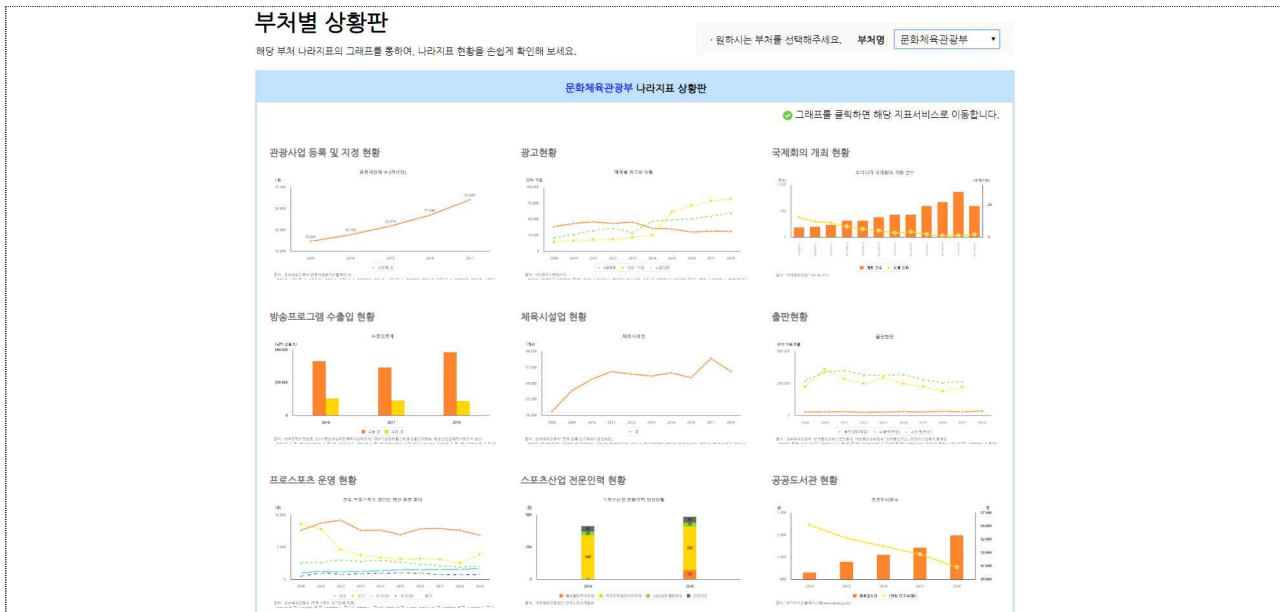


그림 5-24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부처별 상황판 서비스

(5) 시스템 운영성과

■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나리지표 현황

- 현재 e-나리지표는 현재 3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743개 나리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나리지표는 아래와 같음
 - 공공도서관 현황,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공연/전시 횟수,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관광사업 등록 및 지정 현황, 관광수지 실적, 광고현황, 국민생활체육 참여현황, 국민여행 총량, 국제회의 개최 현황,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무대전 문인력 배출 추이, 문화산업 현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추이,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운영,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현황, 외래관광객수, 전통사찰지정 등록 현황,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주요 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현황,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체육시설업 현황,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출판현황, 프로스포츠 운영 현황, 해외여행자수

7.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1) 시스템 개요 및 구축목적

■ 시스템 개요

-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은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해당 지역주민이 각종 민원과 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의 집합을 말함
- 이러한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은 행정업무의 처리와 민원 서비스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응용소프트웨어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정보기반환경, 시스템으로 획득된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시스템 구축목적

-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환경은 해당 기관의 정보 인프라 및 재정여건, 단체장 및 실무자의 정보화 추진의지 등에 따라 기관별로 큰 격차가 존재하였음
-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주요 수혜자인 지역 주민들의 전자정보 이용에 있어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주로 지방행정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종이서류 감축, 중앙부처와 시도·시군구 행정계층 간 전자적 행정처리 및 정보공유 체계 마련,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등을 시스템 구축의 주된 목표로 하였음
- 아울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민원절차 간소화·민원창구 단일화·첨부 서류 감축 등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향상, 민원처리과정·행정정보 공개 등 투명한 행정 처리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또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복투자 방지, 지방행정정보 통합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민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이루고자 하였음

(2) 시스템 추진경과

■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을 통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추진경과

- 행정 정보의 혈관 역할을 하는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서울행정정보시스템)의

활용 확대에 따라 광역 단위 행정 업무 처리와 중앙 부처, 시·군·구 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시·도의 정보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2002년 본격적으로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동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6개 시·도 중 4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시·도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BPR/ISP 수행 및 To-Be모델을 정립하였음
- 이후 시·도 행정정보화 1단계 개발사업 (2004년 1월~2005년 5월),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개발사업 (2006년 5월~2006년 12월)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총 1,678억 원이 초기 구축비용으로 투자되었음

표 5-15

시·도 행정정보화 추진 경과

단계	추진 내용
시·도 행정정보화 계획수립 (2002.12. ~ 2003.08.)	• 업무환경, 정보기술, 법제도 동향/현황 및 선진사례 분석 • 시도 행정정보화 구축전략 수립
시·도 행정정보화 1단계 (2001.01. ~ 2005.12.)	• 기반부부 개발 :24개 행정업무, 16개 시도 적용 및 운영 • 행정/서비스 포털 기반 및 시도행정정보 공유 구축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2006.05. ~ 2006.12.)	• 시도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및 BPM 시범적용 • 시도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ISP 및 성과관리시스템 시범구축 • 시도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차세대 행정서비스 기반형성 (2007.01. ~ 2008.12.)	• 행정업무에 공간 정보 활용방안 수립 • 시도 정책결정지원 시스템 시범구축 및 성과관리 시스템 확대적용 • 시도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강화 및 활성화
차세대 행정서비스 (2009 ~ 2011)	• 자치단체 공간행정체계 수립 • 시도 정책결정지원 시스템 및 BPM을 통한 업무처리 확대적용 • 시도 업무관리시스템과 결재시스템 통합구축

※ 출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백서(2010)

■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을 통한 행정정보시스템 추진경과

- 시·군·구 행정정보화를 위하여 1998년 1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BPR/ISP 수립을 시작으로 2003년 12월까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개발, 확산 및 연계 사업이 진행되었음
- 하지만 행정업무 프로세스의 전자화가 미흡하고 개별 행정업무 간 처리단절로 시스템이용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였다는 점, 유관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해 민원서류의 감축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있어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 등 각 행정계층간 수평적·수직적 연계가 미비하다는 점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음

-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시군구 소관 행정업무전반에 걸친 통합처리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수평적 업무의 통합 처리, 수직적 정보운용, 현장과 사무실간 업무처리 연계 등을 강화하고자 2차레에 걸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이 진행되었음
- 이후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자지방자치단체 기반을 완성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고도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발전 및 고도화 BPR/ISP (2004년 10월~2005년 6월)를 시작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 1차 구축사업 (2005년 12월~2006년 8월)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 2차 구축사업 (2006년 6월~2006년 12월)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음
-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의 비전은 흐름행정구현 및 대민 정보서비스 혁신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것이었으며 2006년부터 전국 234개 시·군·구 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초기비용으로 총 1,404억 원이 투자되었음

표 5-16

시군구 행정정보화 추진 경과

단계	추진 내용
고도화를 위한 BPR/ISP (2004.10. ~ 2005.06.)	● 기존 21개 업무영역에 대해 프로세스 중심의 31개 영역으로 업무 재설계 ●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2005.09. ~ 2006.12.)	● 전국 시군구 표준 공통기반환경 구축 (HW 9종, 상용SW 14종 도입) ● 사용자 규모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축 (대형1, 대형2, 중형, 소형)
시·군·구 행정종합정보고도화 1차 구축사업 (2005.12. ~ 2006.12.)	● 행정업무통합처리 표준시스템 구축 ● 여성, 위생, 내부행정, 감사, 법제, 의회 6개 시스템 고도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고도화 2차 구축사업 (2006.06. ~ 2006.12.)	● 복지, 환경, 지여간업, 민방위 4개 행정업무 시스템 고도화 ● 1차 사업 개발시스템 결과물 6개 시군구 시범적용
시·군·구 행정종합정보고도화 3차 구축사업 (2007.05. ~ 2008.03.)	● 1, 2차 개발시스템을 전국 확산 보급 (2007. 5~2007. 12) ● 수산, 도로교통, 농촌, 문화, 보건, 기획, 공보 7개 업무 추가 고도화 개발 (2007.05. ~ 2008.03.)

※ 출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백서(2010)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추진경과

-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은 텍스트 관리기반의 시도·시군구(새울)행정정보시스템에서 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임

- 2007년 자치단체 행정업무 공간정보 연계활동 ISP수립을 시작으로 2009년 시범 1, 2차 사업(대전, 제주)을 진행하였으며, 2010년 3차 구축사업으로 행정공간정보체계 적용 및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제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2012년 전국 서비스 오픈 이후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생활공감지도서비스의 대표적 서비스인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와 스마트안전귀가 서비스는 각종 언론매체 및 국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는 한편 지난 2013년 11월 대한민국 스마트앱 어워드 공공서비스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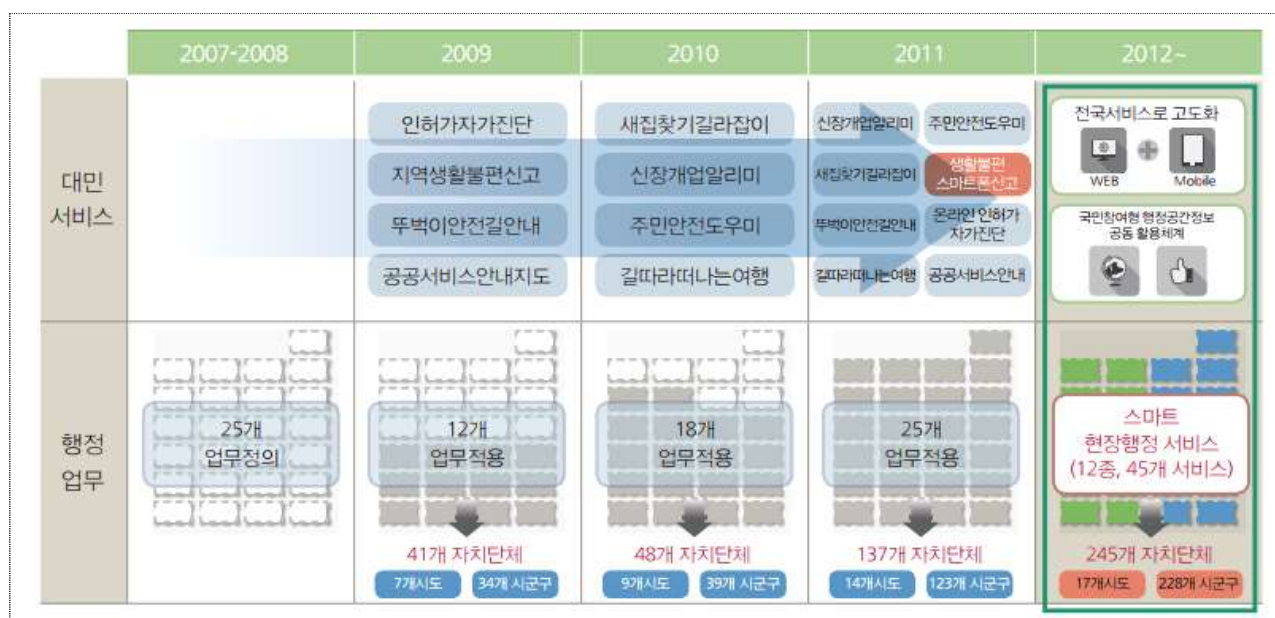


그림 5-25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추진 로드맵

■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시스템 추진경과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전국 자치단체의 인허가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매일 자동으로 수집하고, 축적된 다양한 인허가 행정정보를 일반국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임
- 2018년에는 지난 2015년 구축 이후 이용편의성 부족 및 회원가입 등의 불필요한 기능 등을 시정하고 인허가 데이터의 분류 및 제공체계를 개선하여 공공데이터 제공과 활용에 대한 기본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 DB 재구축 및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기도 하였음

(3) 시스템 운용체계

■ 시스템 관리체계

- 2020년을 기준으로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텍스트 관리기반의 시도·시군구(서울)행정정보시스템에서 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전국 자치단체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인허가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시스템 등 총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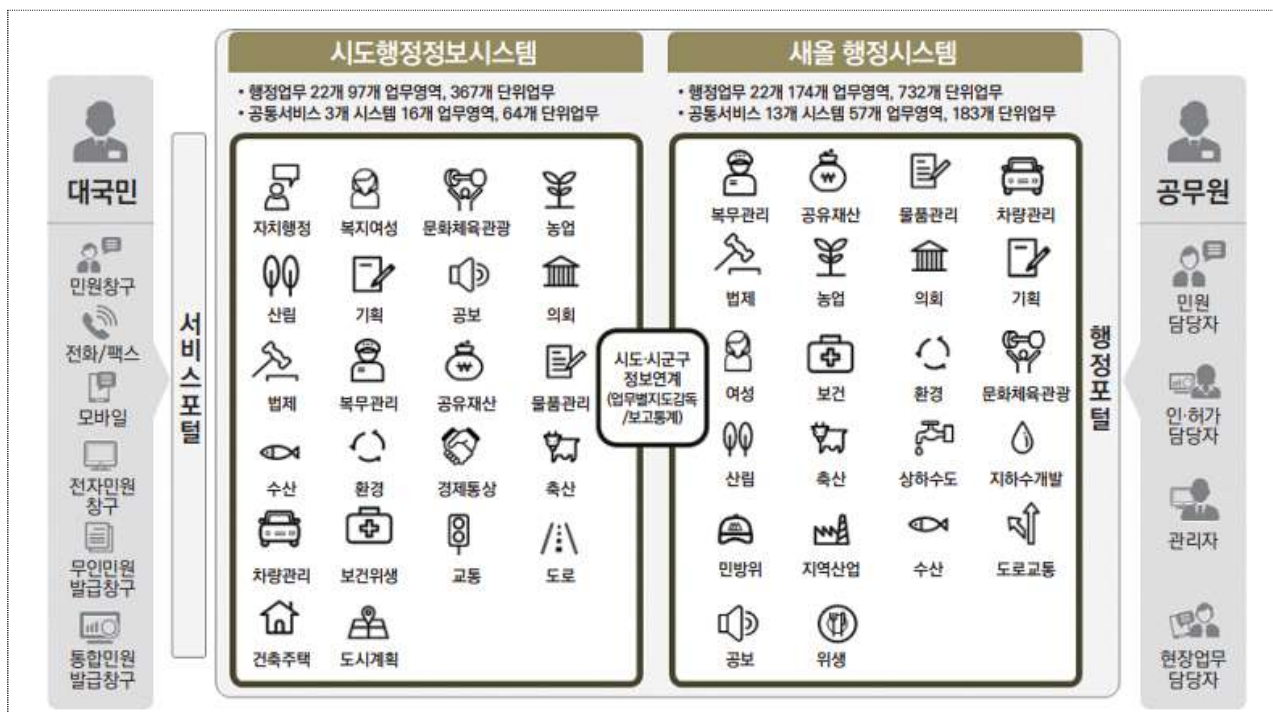


그림 5-26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개요도

※ 출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백서(2018)

(4) 주요 서비스 및 기능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 업무 중 자치행정, 보건 위생 등 22개 행정 업무와 3개 공통 서비스인 성과 관리, 서비스포털, 공통 및 정보 연계·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 ↔ 중앙 부처와의 수평, 수직적 정보 연계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시·도 22개 행정 업무와 행정포털, 서비스포털 등 기본 시스템의 정보화를 통해 시·군·구, 정부24, 중앙 부처와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민원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보고통계 처리로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중복 처리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음

- 시·도에서 수행하는 22개 공통 행정 업무 분야의 367개 단위 업무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업무별·기관별 동일 정보에 대한 중복 작업 방지로 관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음
- 아울러 그간 공통·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241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적 정보에 대한 보고통계 업무가 중앙 부처 ↔ 광역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전자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업무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 부처와의 업무 연계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보 유통 채널이 구축되었음



그림 5-27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개념도

※ 출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백서(2017)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2004년)을 본격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시스템 및 유관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해 지방행정 업무 전반에 걸친 단절 없는 행정흐름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처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도시, 농촌, 산림, 어촌 등)을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체계 기반을 구현하였음

-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하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함에 따라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하나의 민원 창구로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통합 민원발급창구체계가 구현되어 대민서비스가 제고되었음
- 전국적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됨에 따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유관 기관 간 수평적 연계 체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 ↔ 중앙 간 수직적 정보연계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각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행정자료들을 전산망을 통해 서로 연계함으로써 지방행정 업무의 혁신과 투명성이 제고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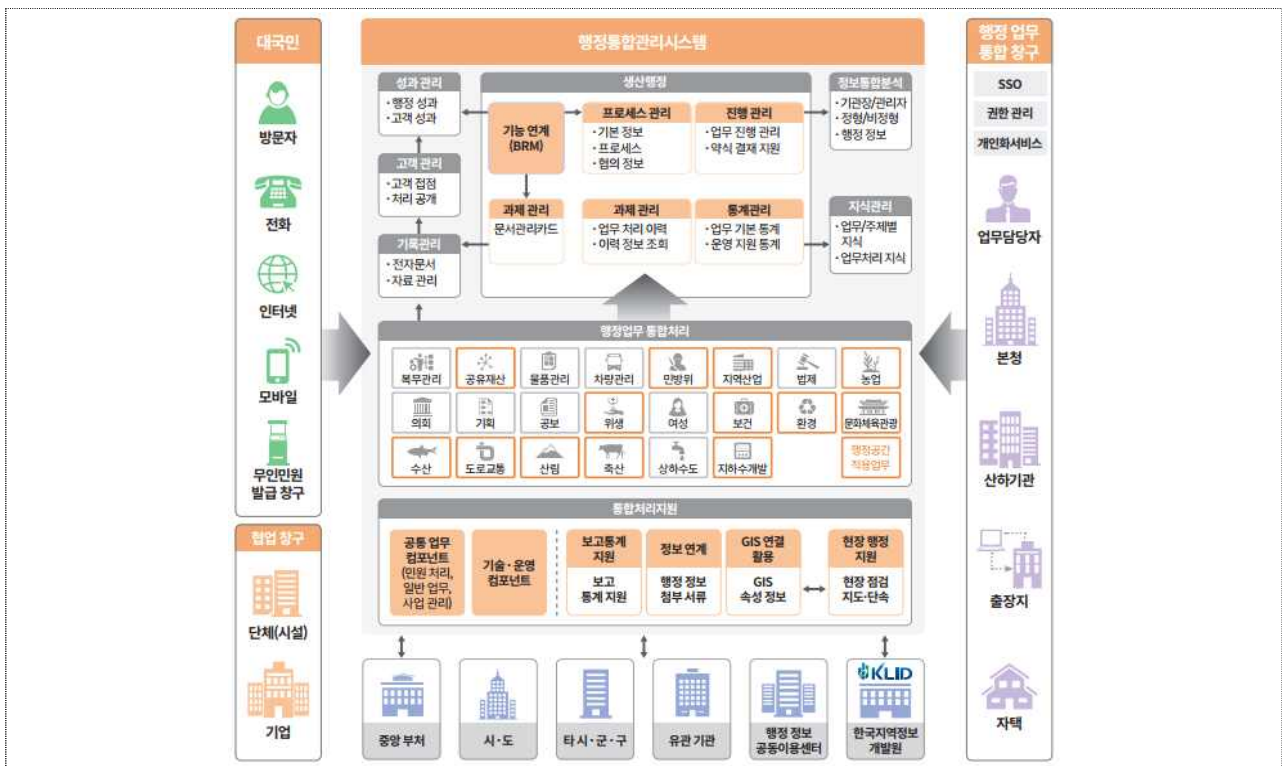


그림 5-28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개념도

※ 출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백서(2017)

행정공간정보시스템

- 기존에 구축되어 있었던 시·도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공간 정보를 접목한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은 각종 위치 조회, 분포 조회, 통계 조회, 대상지 검토 등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은 공간정보의 수직·수평적 연계활용을 통해 업무 간, 조직 간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허가·지도점검·현장조사·보고통계 등의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업무 편의성 향상을 촉진하였음

- 스마트 현장행정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 조회,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활공감지도서비스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정보지도, 공공서비스안내지도,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불편신고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5-29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개요도

※ 출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백서(2017)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토록 하기 위한 서비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정보를 민간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 이 시스템을 통해 민간 기업은 750만 건에 달하는 각종 업종·업소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 할 수 있고,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Open API) 제공 등을 통해 웹·앱 서비스 개발 업무에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IT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제공 데이터를 7개 분야, 36개 그룹, 191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데이터 전체 다운로드, 그룹별 다운로드, 지역별 다운로드 형태로 다양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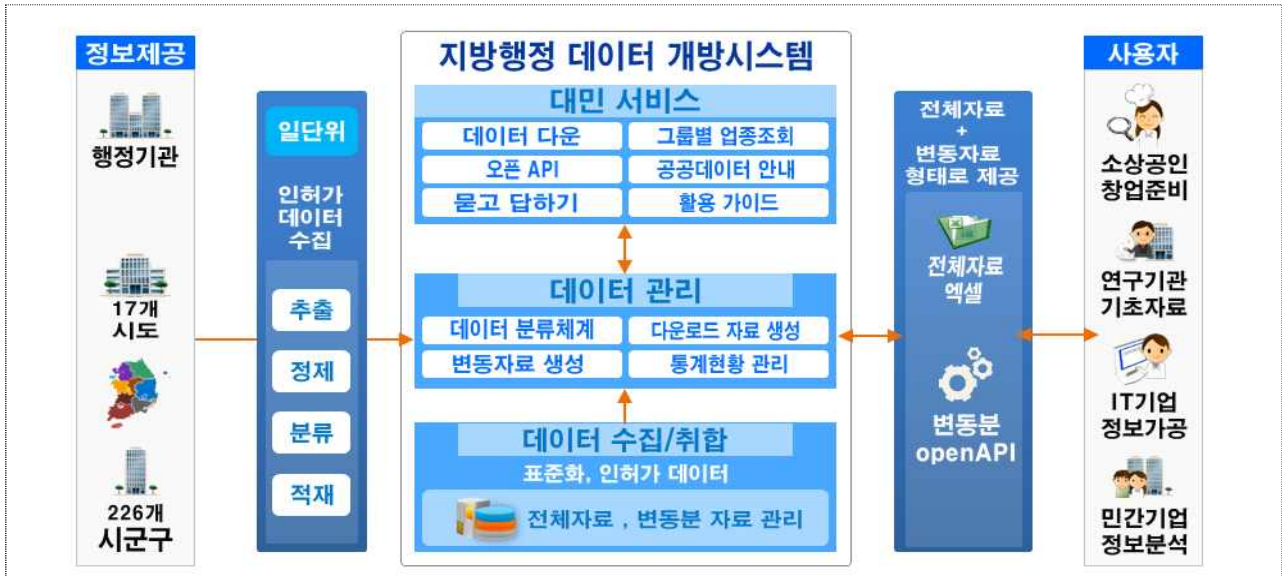


그림 5-30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시스템 개요도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도입 추진

- 지난 2010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개통 이후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기능 개선 한계 봉착, 자치 분권·4차 산업혁명 등 정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혁신 지원 등을 위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이 추진되었음
-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10년간 약 2조 6,168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방정부(국정 과제 8개)와 지방 분권 가속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정량적·정성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²²⁾

(5) 시스템 운영성과

■ 통합 유지관리 체계 운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²³⁾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및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의 통합적인 유지관리 수행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졌음
- 공통기반·통합콜센터 등 긴밀한 협업체제로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시스템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서비스품질 및 사용자 만족도가 제고되었음

2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9, 2018 지역정보화백서

2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9, 2020년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요청서

■ 행정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격차 해소 및 예산 절감

- 표준화된 한 번의 연계로 전국이 연결되는 정보유통 효율화를 달성하였으며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에 따른 중복개발 방지 및 정보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음. 실제로 2009년 기준 연간 216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현재 2020년 기준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약 96억원 수준으로 낮아짐
 - －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였음
 - － 이러한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은 시군구, 시도,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을 위해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기관 간 자료수집·정책보고 등의 업무지원 기능도 아울러 갖추고 있음

■ 행정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연계효과

- 시·도,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지방 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 행정공간정보시스템 등 4개 시스템으로 구축된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의 핵심 시스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음
 - － 우선 대국민 민원서비스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의 핵심 창구로서 일일 평균 약 20만 건 이상의 민원 응대와 더불어 2010~2019년 간 약 8억 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 또한 공무원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처리의 관문으로 공무원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24시간 전담, 9,000여 종이 넘는 데이터 기관 간 연계를 운영함으로써 기초 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 ↔ 중앙부처와의 수평·수직적 정보 연계를 통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²⁴⁾
- 2010년 3월 시작한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는 2017년 2월말 기준 1,489만 5,487건의 서비스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가 총 누적 1,151만 9,360건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고 앱 다운로드는 2017년 2월 말 기준으로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134만 6,661건, 인허가 자가진단 5만 6,514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은 7개 분야 36개 그룹 189업종으로 분류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고, 지역별 업종 분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함은 물론 업종별 지역별 검색도 가능하게 구성하여 총 750만 건의 업종·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9, 2018-2019 지역정보화백서, p.84

제2절 국외 사례

1. 국외 주요국가 문화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동향 분석

- 문화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구축한 포털사이트 및 오픈 플랫폼 사례 중 문화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에 충실한 사례 선정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요구되는 정보제공 서비스의 유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분석자료 생산방안 도출

2.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1) 유럽연합(EU)의 Compendium 정보시스템²⁵⁾

- 유럽연합(EU)의 유럽 문화정책 및 경향의 개요(The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이하 Compendium)은 유일무이한 문화 분야의 공공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회원국들의 문화정책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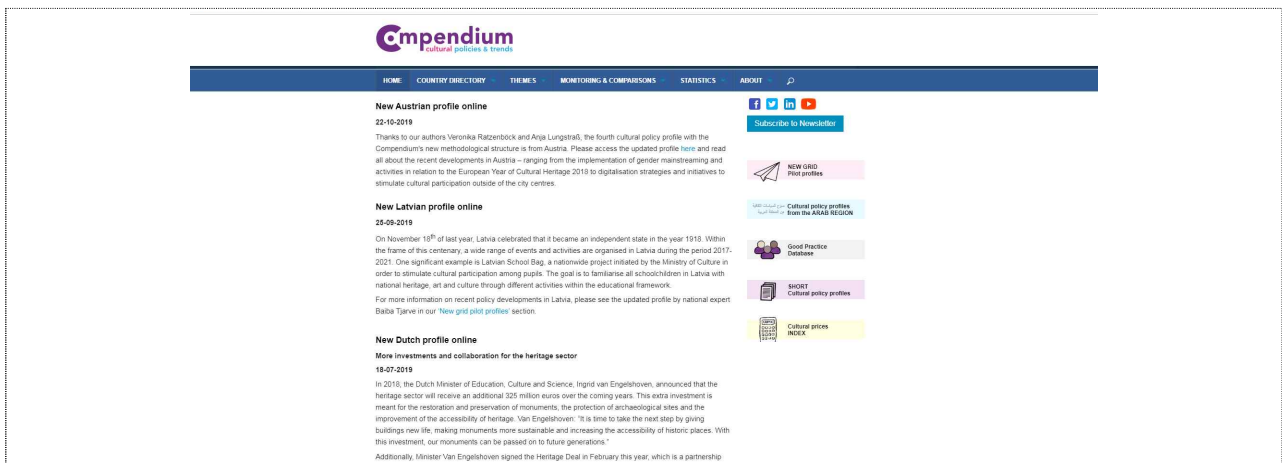


그림 5-31

Compendium 웹사이트 메인화면

- 본래 유럽의회(the Council of Europe)와 유럽 문화 비교 연구소(The European Institute for Comparative Cultural Research : ERICarts)의 합작 사업으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되었음

25) <https://www.culturalpolicies.net/web/index.php>

- Compendium은 2018년 4월 1일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회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예술문화·문화정책 연구소인 Boekman Foundation²⁶⁾에서 운영되고 있음
- 비정부기구와 정부기관이 모두 회원으로 참여하는 Compendium만의 특성으로 인해 각 국가별 전문연구가 집단의 독립성이 보장됨
- 현재 가입된 회원목록
 - － 이해관계자 : 아시아-유럽 재단,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독일, 핀란드, 프랑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 － 상임 회원 : 에스토니아 음악·연극 아카데미, 유럽 문화연구원협회, 이탈리아 문화경제협회
 - － 임시 회원 : 유럽의회, 유럽 문화비교연구소
 - － 스폰서 : 네덜란드 교육, 문화, 과학부
- 국가별 목록(Country Directory)을 통해 Compendium 정보시스템에 가입한 회원 국가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문화관련 보고서(Country Profile)의 내용을 목차별로 검색하고 통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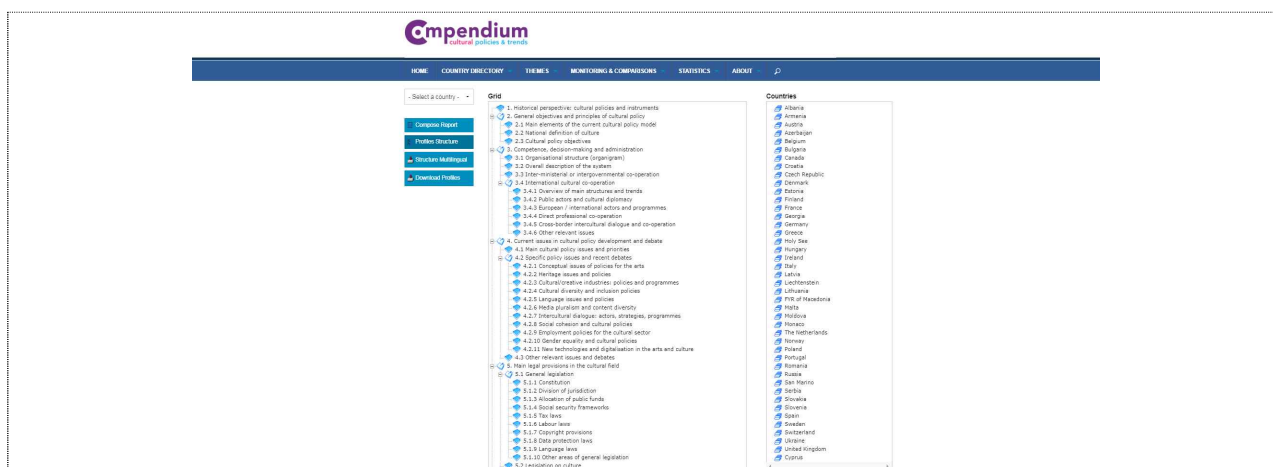


그림 5-32

Compendium 웹사이트 중 국가별 보고서의 목차구성

- － 보고서 구성(Compose Report) : 국가별로 제출된 문화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목차별·국가별로 지정·편집하여 보고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음

26) <https://www.boekman.nl/en/> (영어), <https://www.boekman.nl/> (네덜란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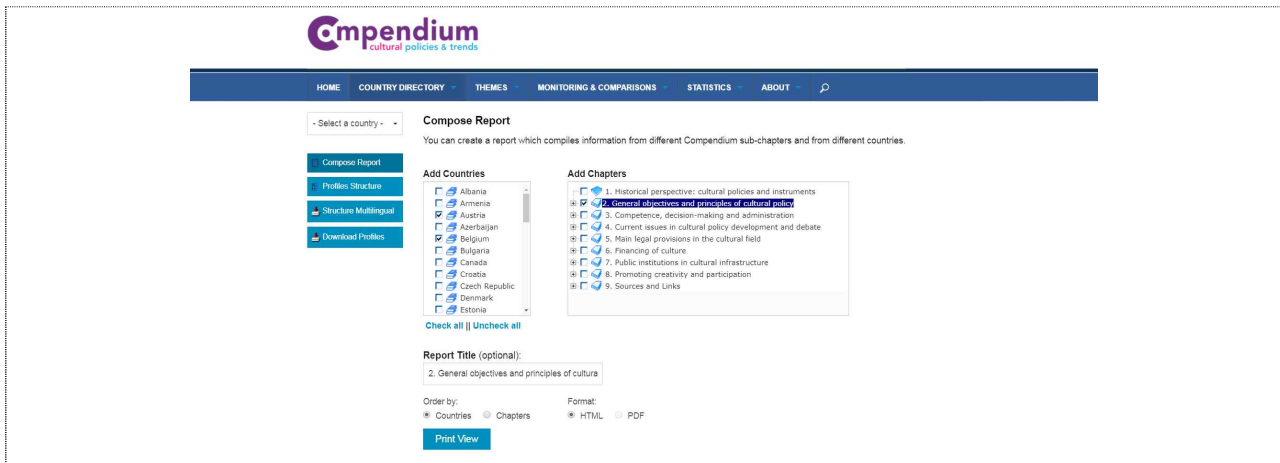


그림 5-33

Compendium 웹사이트 중 국가별 보고서 검색화면

- 보고서의 구성 및 목차(Profiles Structure) : 국가별로 작성하는 보고서 자료의 목차 및 실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국가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 다국어서비스(Structure Multilingual) : 보고서 자료의 목차가 수록된 문서파일을 국가별 언어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국가별 보고서의 다운로드(Download Profiles) : 문화정책과 관련한 국가별 보고서 자료를 영어와 해당국가 언어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통계자료(Statistics) 메뉴를 통해 Compendium 정보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비교 가능한 통계 데이터 및 그래프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Division		STATISTICS - FUNDING						
Participation		Monitoring Changes in Direct State Cultural Expenditure by Sector						
Markets		For more information see individual country profiles.						
Employment		Chapter 6.2.3 "State Cultural Expenditure by Sector"						
Funding		Countries	Years	Libraries/ Literature	Museums/ Archives	Performing Arts (music + theatre)	Radio/TV	Visual Arts
Resources								Film/Video
Armenia	2005	10.3%	18.9%	28.7%	-	-	-	7.8%
	2006	8.6%	21.4%	34.1%	-	-	-	5.5%
	2007	8.9%	13.1%	32.4%	-	-	-	8.3%
	2008	10.6%	14.7%	44.6%*	1.2%	-	-	9.6%
	2009	11.5%	15.4%	47.3%*	1.0%	-	-	8.8%
	2010	11.2%	15.6%	48.4%*	1.2%	-	-	8.7%
	2011	10.3%	14.5%	52.2%*	1.1%	-	-	7.9%
Austria	1997	8.9%	10.4%	34.5%	1.6%	0.5%	1.8%	
	2000	4.2%	18.8%	28.5%	1.4%	1.1%	1.9%	
	2002	4.4%	14.5%	21.8%	0.1%	1.5%	1.7%	
	2003	4.2%	15.3%	25.9%	0.1%	1.5%	1.6%	
	2004	4.0%	15.0%	25.3%	0.1%	1.5%	1.5%	
	2005	3.74%	14.61%	26.3%	0.04%	1.51%	1.73%	
	2006	3.40%	13.87%	27.44%	0.03%	1.36%	1.23%	
	2007	3.4%	13.3%	23.2%	0.1%	1.5%	1.7%	

그림 5-34

Compendium 웹사이트 중 분야별 문화지출액의 연도별 변화추이

- 인구 동향(Population) : 국가별 총 인구, 인구 증가 및 인구 밀도, 총 인구와 총 인구 대비 비국적자의 비율
- 문화활동 참여(Participation) : 영화관 입장객 수, 인터넷 보급률, Facebook 서비스 사용자 수 및 인터넷 이용자 중 Facebook 서비스 사용비율

- － 문화관련 시장 및 거래 (Market) : CUIPX (문화관련 재화 및 서비스 가격지수), 문화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수준, 가격수준의 유럽 국가별 비교표 등

Population

Participation

Modals

Employment

Funding

Resources

Share of women in selected fields of employment (2017)

Country	Cultural employment	High-tech industry & Knowledge-intensive services
Austria	44.53%	47.14%
Belgium	45.20%	46.21%
Bulgaria	55.23%	46.60%
Croatia	45.04%	45.78%
Cyprus	47.76%	47.96%
Czech Republic	49.19%	44.17%
Denmark	50.08%	47.20%
Estonia	63.23%	48.71%
Finland	51.00%	46.16%
France	46.32%	45.11%
Germany	47.30%	46.56%
Greece	43.57%	41.90%
Hungary	50.78%	45.33%
Iceland	50.00%	46.47%
Ireland	46.41%	45.03%
Italy	43.85%	45.09%
Latvia	64.44%	55.73%
Lithuania	61.55%	51.54%
Luxembourg	53.23%	46.32%
Malta	38.36%	39.96%
The Netherlands	44.59%	46.41%
North Macedonia	50.21%	39.21%

그림 5-35

Compendium 웹사이트 중 여성의 고용비율 현황

- － 고용 (Employment) : 총 문화분야 고용, 총 고용 중 문화고용의 비율, 문화 분야 및 총 고용 중 자영업자의 비율, 각 분야별 여성의 고용비율 등
- － 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기금 (Funding) : 문화에 대한 총 정부 지출액, 공공 문화 기금 현황, 정부수준별 · 국가별 문화지출 비율, 각 문화 분야 별 지출 비율

(2) 유럽연합 (EU)의 Europeana Project

- 유럽연합(EU)의 Europeana 프로젝트는 2004년 구글의 디지털도서관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유럽 연합의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임
- 2005년 유럽 6개국(프랑스,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디지털도서관 창설을 제안한데서 시작되었으며 서적, 미술작품, 문학작품, 음악 등을 DB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33개국에서 2천 2백 개 이상의 기관들이 컨소시엄²⁷⁾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이며 현재 유럽 연합의 재정지원으로 유로피아나 재단 (Europeana Foundation)²⁸⁾이 컨소시엄을 총괄하고 있음

27) 컨소시엄(consortium)은 본래 라틴어로 동반자 관계와 협력, 동지를 의미하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여러 개의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컨소시엄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28) <https://pro.europeana.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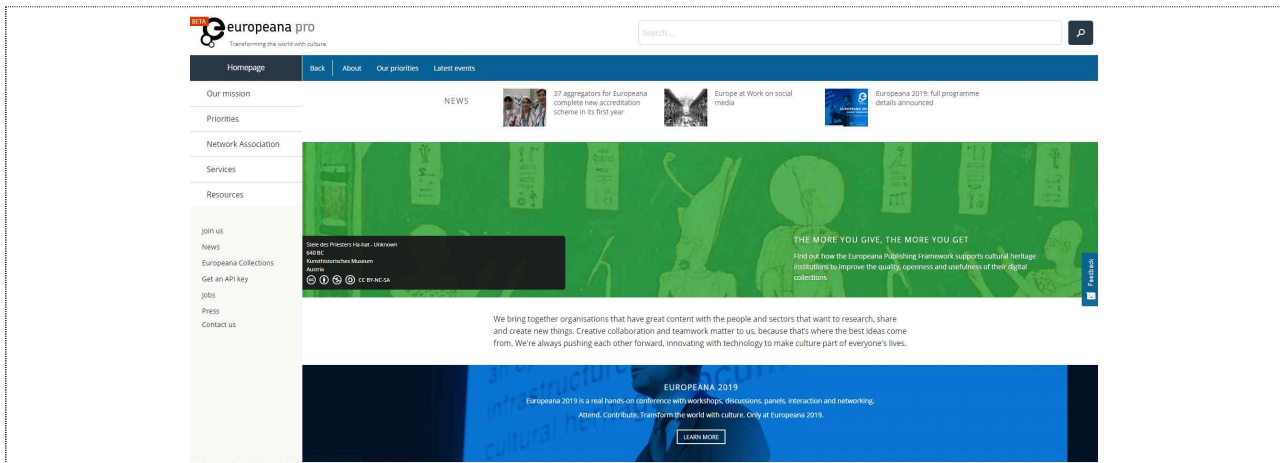


그림 5-36

Europeana Pro 웹사이트 메인화면

- 문화유산의 섹션을 GLAM (Gallery, Library, Archive, Museum)으로 분류하여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이나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작품 그리고 일반저작권 작품과 라이선스 구별이 어려운 작품 등을 모두 디지털화하여 유로피아나 재단이 개설·운영 중인 공식 포털 웹사이트 (Europeana Collection)²⁹⁾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2,500개가 넘는 연구기관으로부터 3,390만 여건의 자료를 취합하였으며³⁰⁾, 2019년 현재 57,651,630건의 예술작품, 유물, 서적, 영화 및 음악 관련 자료가 유럽의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기록 보관소들에서 수집되어 공식 포털 웹사이트(Europeana Collection)에 디지털데이터로 등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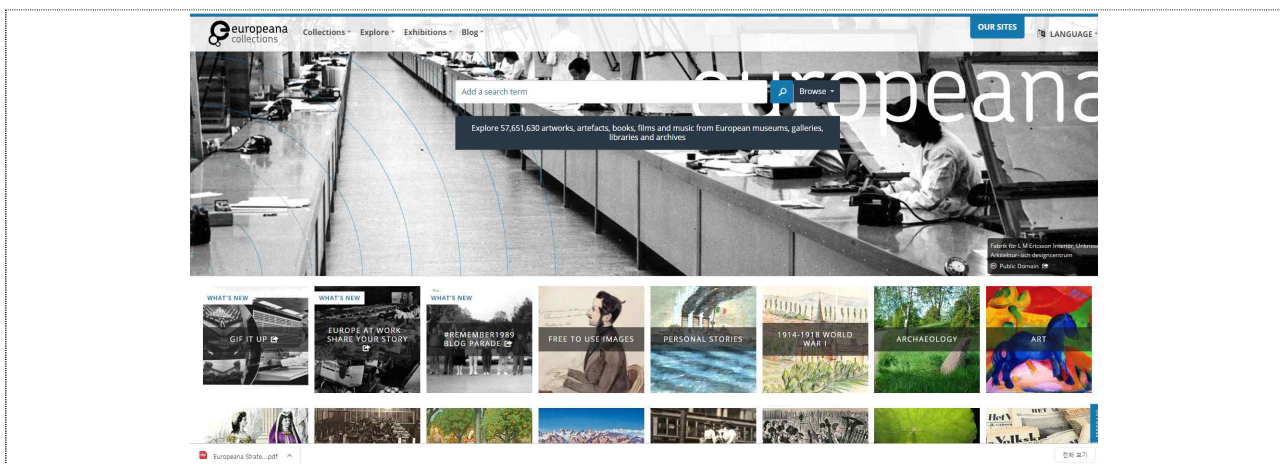


그림 5-37

Europeana Collection 웹사이트 메인화면

-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는 Europeana Data Model (EDM)이라는 데이터 기록 모델을

29) <https://www.europeana.eu/portal/en>

30) <https://strategy2020.europeana.eu/>

개발함으로써 이를 통해 각 국가별 데이터 간의 원활한 상호공유 및 교류를 지속시키고 보다 더 체계적인 아카이빙을 가능케 하고 있음

- Europeana Data Model (EDM) : 각 국가별 데이터 간의 원활한 상호공유 및 교류를 지속시키고 체계적인 아카이빙을 가능케 하는 독자적 데이터 기록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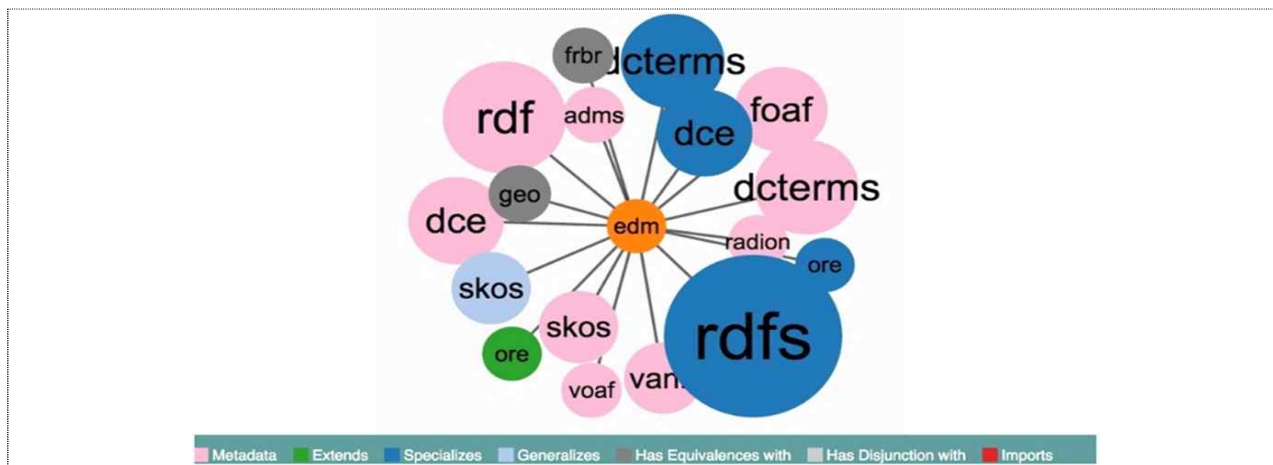


그림 5-38

Europeana Data Model (EDM)의 개념도

- 해당 EDM 모델에 따라서 유로피아나에 수록된 정보들을 LOD (Linked Open Data)로 연결 시킴으로써 메타 데이터 간의 원활한 연결을 보장하고 있음
- 유로피아나에 수록된 문화유산들의 정보는 'CC BY-NC-SA(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으로 공개되고 있으며³¹⁾ 이로 인해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내려 받아 재가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음
- 유로피아나 재단을 통해 무료로 Europeana API Key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누구든지 유럽 전역의 주요 박물관 및 갤러리에서 가져온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구축이 가능함
- SNS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 다른 이용자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Pinterest에 정식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음

31) <http://ccl.cckorea.org/showcase/europe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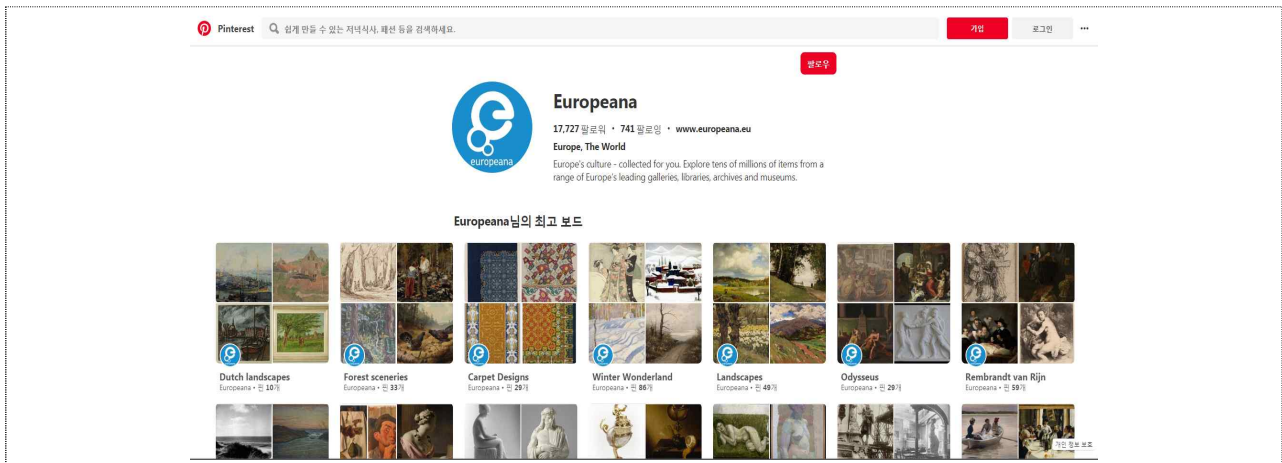


그림 5-39

Europeana Pinterest 계정의 메인화면

- 또한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는 ‘Europeana Strategy 2015-2020’³²⁾을 통해 중장기 전략과 목표모델을 공개하면서 다음의 3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음
 - 데이터의 품질향상(Improve data quality) : 유로피아나는 기존의 웹기반 서비스인 Google, Flickr, Pinterest와는 차별화된 메타 데이터를 갖고 있으나 언어문제, 데이터 입력의 규격화된 형식, LOD(Linked Open Data)와 같은 데이터형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데이터의 개방(Open the data) : 유로피아나의 잠재적 목표 시장과 사용자들에 도달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규모 확대
 - 참여자들을 위한 가치창출(Create value for partners) : 유로피아나 웹사이트에 사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시킴



그림 5-40

Europeana Strategy 2015-2020

32) <https://strategy2020.europeana.eu/>

3. 프랑스

(1)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의 지역문화 정보³³⁾

- 프랑스는 중앙정부의 문화부 (Ministère de la Culture)가 산하 공공 문화기관들을 총괄하여 프랑스 내의 전체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집행, 관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문화부 홈페이지의 문화와 영토 (Culture et territoires)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 로 나타나는 지역의 문화 (La Culture en région)에는 3가지 정보제공 서비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
 - － 축제 파노라마(Panorama des festivals) : 프랑스 전 지역의 축제, 전시회, 회의, 비엔날레에 대한 위치정보 및 행사정보를 지도서비스와 연동하여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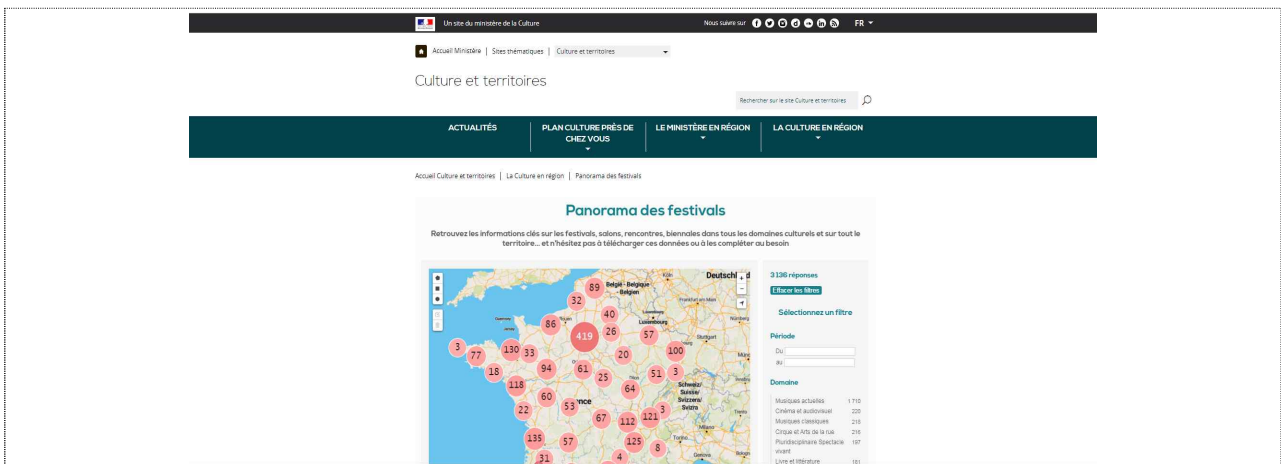


그림 5-41

프랑스 문화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랑스 전역의 축제 현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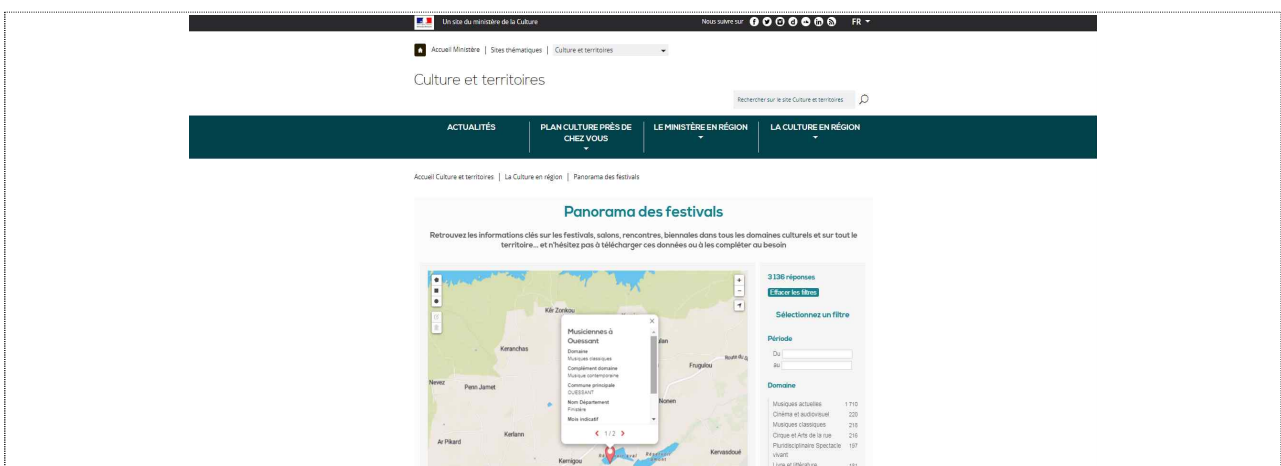


그림 5-42

웨상(ouessant) 섬의 웨상의 음악가 (musiciennes à ouessant) 축제 정보

33) <https://www.culture.gouv.fr/Sites-thematiques/Culture-et-territoires/La-Culture-en-region>

- 문화부 인증지도 (Cartes des lieux labellisés par le Ministère) : 프랑스 문화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각종 시설·건축물들에 대한 위치정보 및 시설관련 기본정보를 지도서비스와 연동하여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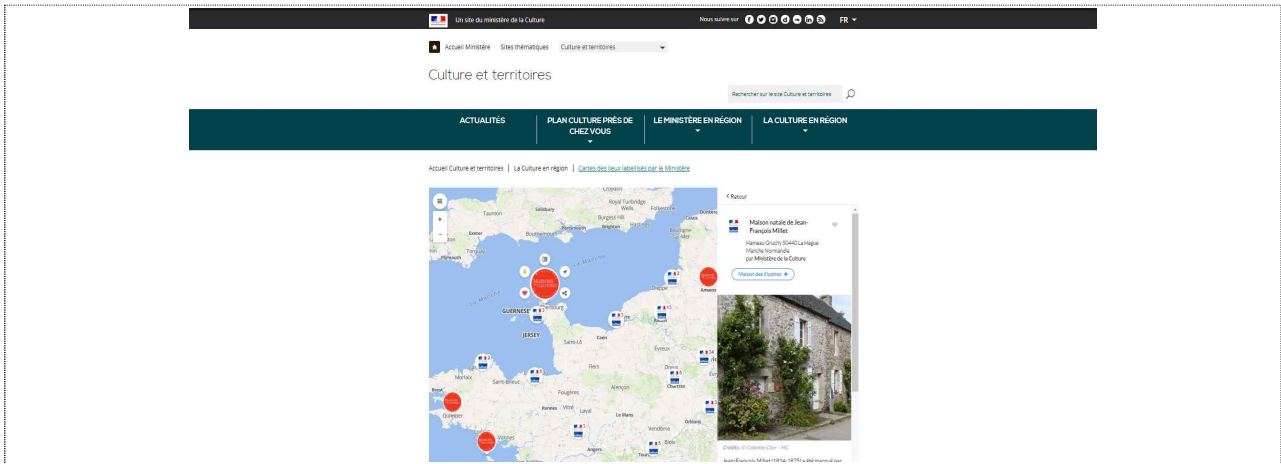


그림 5-43

장 프랑수아 밀레의 출생지 (Maison natale de Jean-François Millet) 정보

- 도서관 지도 (Carte des bibliothèques) : 프랑스 전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위치정보 및 시설관련 기본정보를 지도서비스와 연동하여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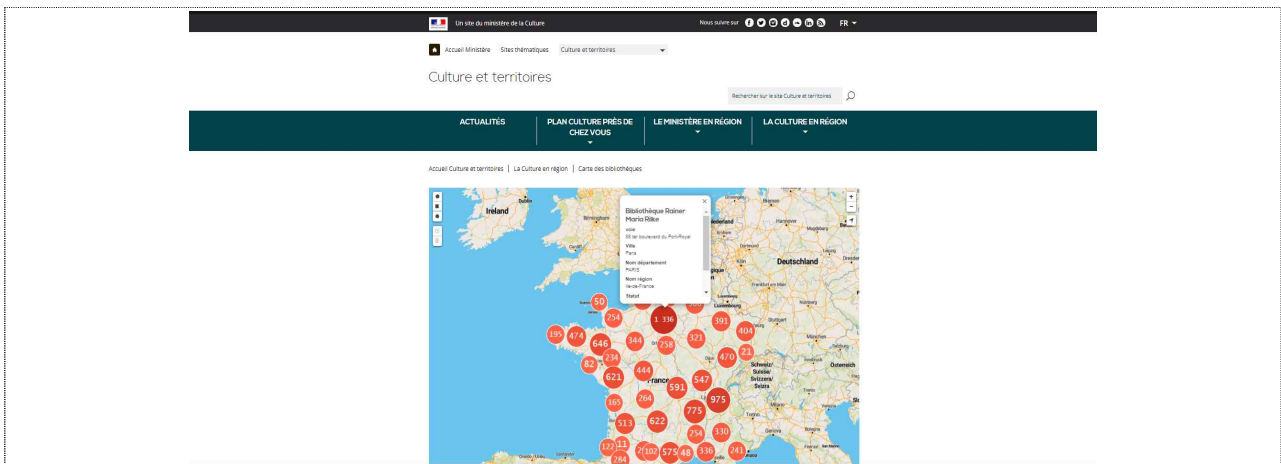


그림 5-44

라이너 마리아 릴케 도서관 (Bibliothèque Rainer Maria Rilke) 정보

- 아울러 연구와 통계 (Études et statistiques) 카테고리를 통해 프랑스의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 공공 문화시설 현황 및 각종 문화관련 수치에 대한 통계자료와 연구자료, 설문조사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화 영토 참여플랫폼 (la plateforme participative Territoires culturels) :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문화 프로젝트의 운영·개발자들이 규격화된 양식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함

- 이를 통해 문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참여형 플랫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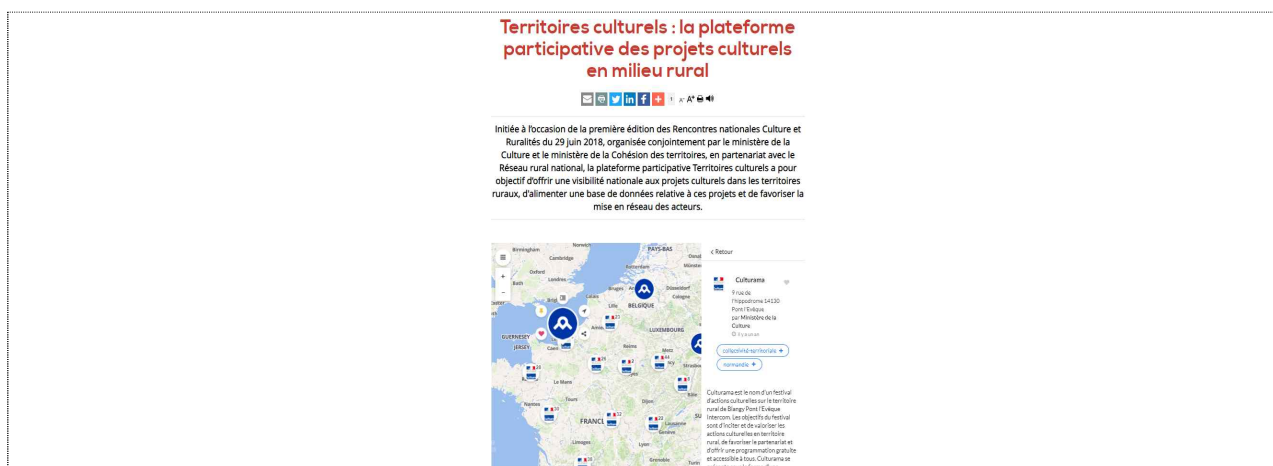


그림 5-45

프랑스 노르망디 칼바도스 주의 'culturama 축제³⁴⁾' 정보

(2) 프랑스 문화부의 오픈 데이터 플랫폼³⁵⁾

■ 서비스 개요

- 프랑스 문화부가 2016년부터 추진한 플랫폼으로 문화분야와 관련된 75개의 통계자료와 더불어 표, 그래프, 지도 등의 시각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임



그림 5-46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나만의 지도 만들기 서비스

34) <http://www.culturama-lesite.fr/index.php>

35) <https://data.culturecommunication.gouv.fr>

데이터 분석기능 제공

- 각각의 통계자료에 대하여 표와 그래프로 분석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 국·공·시립 박물관에 대한 각 연도별 유·무료 관람객 수, 지역별 관람객 수, 관람객 수가 많은 상위 10개 도시 목록 등의 정보를 제공함



그림 5-47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도표·그래프 분석기능

나만의 지도 만들기 서비스

- 문화 분야와 관련된 통계자료들에 대한 도표·그래프 분석기능을 제공과 더불어 나만의 지도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해당 플랫폼에 수집된 각종 문화 분야의 데이터 목록을 이용자 스스로 자유롭게 선별한 후 해당 정보를 지도상에 구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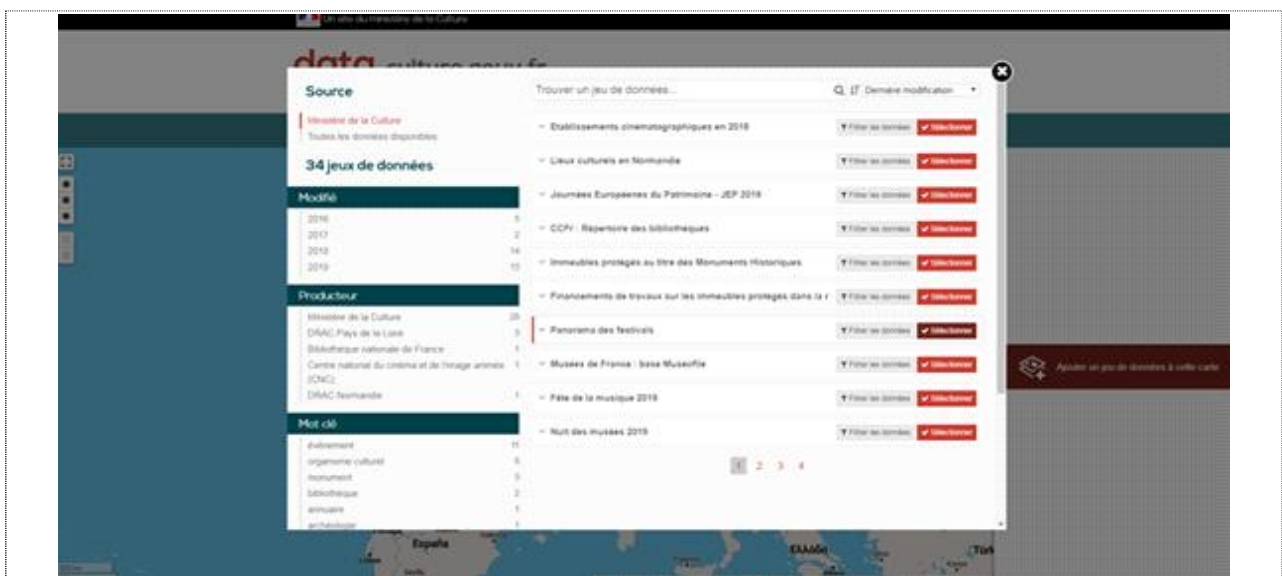


그림 5-48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나만의 지도 만들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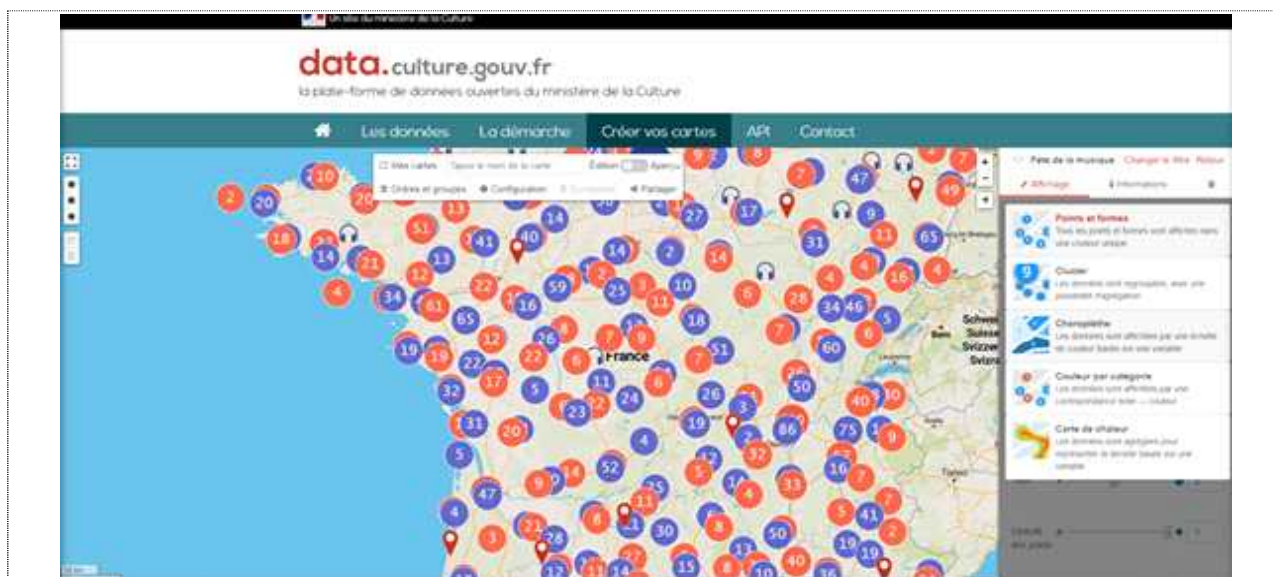


그림 5-49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나만의 지도 만들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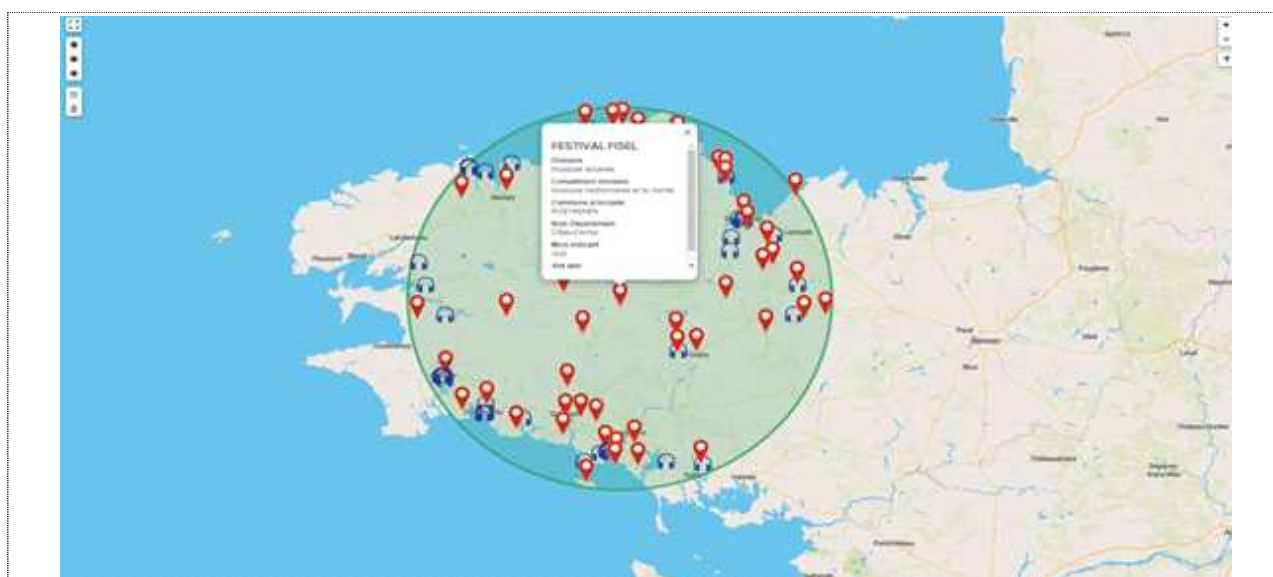


그림 5-50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나만의 지도 만들기 서비스

- 지도상에 표현하는 디자인형식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시 아이콘의 크기나 형태 및 색깔을 조정할 수 있음
- 또한 여러 데이터 목록을 동시에 구현하거나 과거에 작업했던 이력 불러오기 기능도 탑재하고 있음
- 또한 도형그리기를 이용한 정보필터링 기능은 물론 문화시설 및 행사정보의 지도상 확인이 가능하며, Open Street Map(오픈소스 방식의 참여형 무료지도서비스)을 이용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4. 영국

(1) 1 Life (Live more, Live well)

추진배경 및 목표

- 1 라이프는 건강과 웰빙, 신체활동, 예술활동 등을 통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
- 1 라이프는 라이프스타일 관리 솔루션 회사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공공영역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정보 제공 방법

- 1 Life 웹사이트를 통해 미술관, 체육시설, 여가센터, 수영장, 극장, 공원 등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민간 및 공공 여가시설 정보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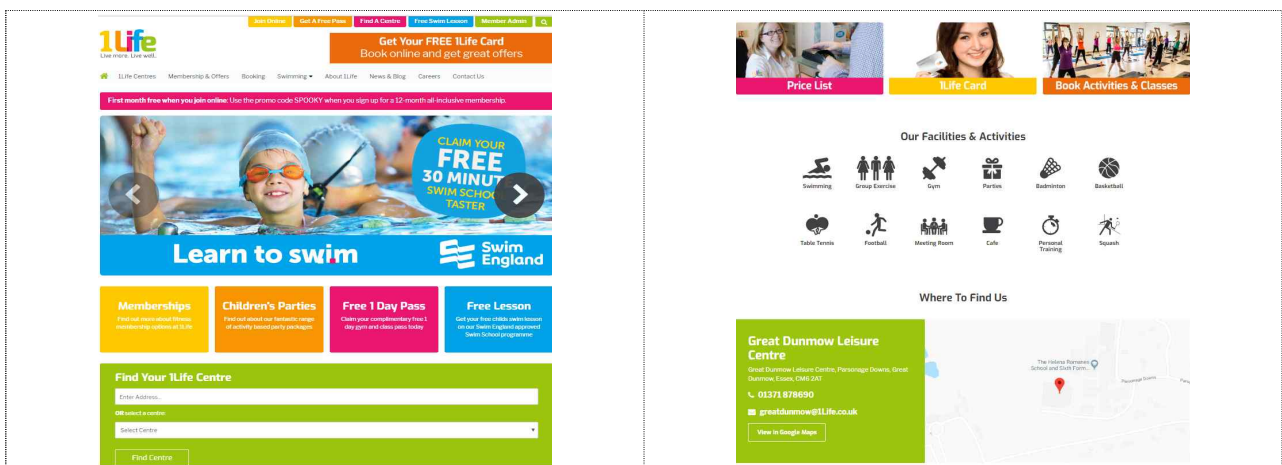


그림 5-51

영국 1 Life 홈페이지 메인 화면



그림 5-52

영국 1 Life' APP

- 공식 웹사이트에서 거주지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주변에 위치한 여가시설이 지도 상에 표시되고, 표시된 시설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상세한 프로그램이나 가격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설의 위치, 개장시간, 수업 시간표, 수업 설명에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예약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주요 서비스

- 1 Life는 지역기반으로 여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지역 내 여가 니즈 파악, 서비스 제공 업체 발굴 및 지원), 이러한 시스템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투자 및 펀딩 컨설팅·지원을 담당하기도 함
- FreeLife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자에게 무료 3일 체험, 무료 활동 패스, 제휴업체(오락, 식음료, 의류 및 기타 매장)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 개인이 속한 센터에서 하는 이벤트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정보 업데이트, 시간표 업데이트, 온라인 예약 및 지불 등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카드사용을 통해 사용자 정보 수집 및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함

(2) 문화여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Greenwich Leisure Limited (GLL)³⁶⁾

■ 추진경과 및 개요

- 1993년 그리니치 평의회는 공공 지출 삭감으로 인해 여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고, 대안적으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GLL임
- 처음에 7개의 센터를 양도받아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수행, 1996년 그리니치 외곽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여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음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레저 센터에 새로운 서비스 추가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였으며, 회원 수 7,000명에서 850,000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방문자수가 5천 4백만에 이르게 되었음

■ 기관의 역할

- 지역민들을 위해 지역 사회서비스와 공간 개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질의 커뮤니티 레저 및 피트니스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있음

36) <https://www.gll.org/b2b>

- 30개 이상의 지방의회, 공공기관 및 스포츠 단체와 협력하여 250개 이상의 공공 스포츠 및 레저 센터 및 57개의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음
- 2010~2013년 사회기업 마크를 획득하였으며 빅 소사이어티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주요 제공서비스

- 1993년부터 여가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는 레저, 도서관, 건강, 교육 및 스포츠 개발임
-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가 추진하는 국가전략을 지원하고 있다고 표방하고 있음
- 문화체육서비스의 포용성, 접근성, 지속가능성 등 국가 전략적 목표에 대응되는 실천들 해나가고 있음



그림 5-53

영국 GLL 홈페이지 메인화면

웹사이트 내 정보제공 서비스 목록

- 여가 (LEISURE), 스포츠 (SPORT AND LEGACY DEVELOPMENT), 건강 (HEALTH), 도서관 (LIBRARIES), 교육 (EDUCATION), 문화시설과 행사 (VENUES AND EV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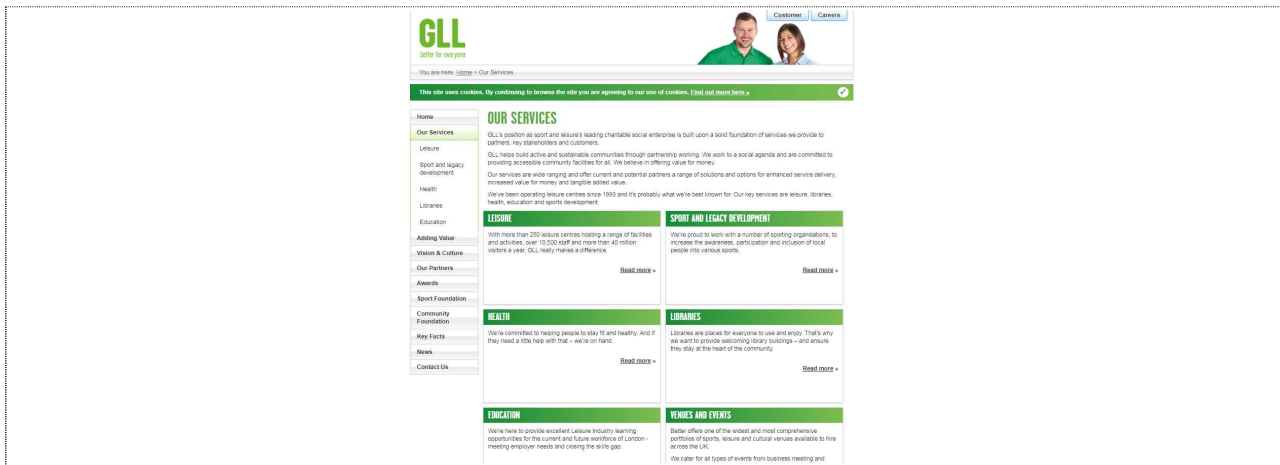


그림 5-54

영국 GLL에서 제공하는 정보제공 서비스 목록

(3) 행정데이터연구센터(Administrative Data Research Center : ADRC)

■ 시스템 개요 및 추진목적

- 영국 정부는 모든 정보를 보안 등급 기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가장 보안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일급 기밀 정보(Top Secret)로, 보안 필요성이 없는 정보를 공공데이터(Official)로, 일급 기밀 정보와 공공데이터 사이의 정보를 중요 기밀 정보(Secret)로 분류하고 있음
- 가장 보안 수준이 낮은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지칭하며, 영국 정부는 대다수 정부의 자료를 여기에 편입하여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설립 배경

- 영국은 대학과 정부의 협업을 통한 증거기반정책 도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에 하나임. 정부는 대학에 돈(funding)을 제공하고 대학은 정부 정책을 위한 증거(evidence)를 산출해줌으로서 서로의 역할분담 및 협업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음
-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증거를 중요시 하는 영국에서 정부가 생성하고 있는 행정데이터가 정책을 위한 연구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혁신기술부 산하 경제사회연구위원회(ERSC)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행정데이터연구네트워크를 설립함(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 : ADRN)를 설립함
- 이러한 행정데이터연구네트워크(ADRN)는 사회·경제분야 연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검증된 행정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데이터서비스(ADS)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영국 내 4개 권역에 행정데이터연구센터(ADRC)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현재 행정데이터연구네트워크(ADRN)는 ADR UK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UK)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2021년까지 경제사회연구위원회(ERSC)의 자금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ADR 스코틀랜드, ADR 웨일즈, ADR 북아일랜드, 영국 통계청, ADR UK 전략허브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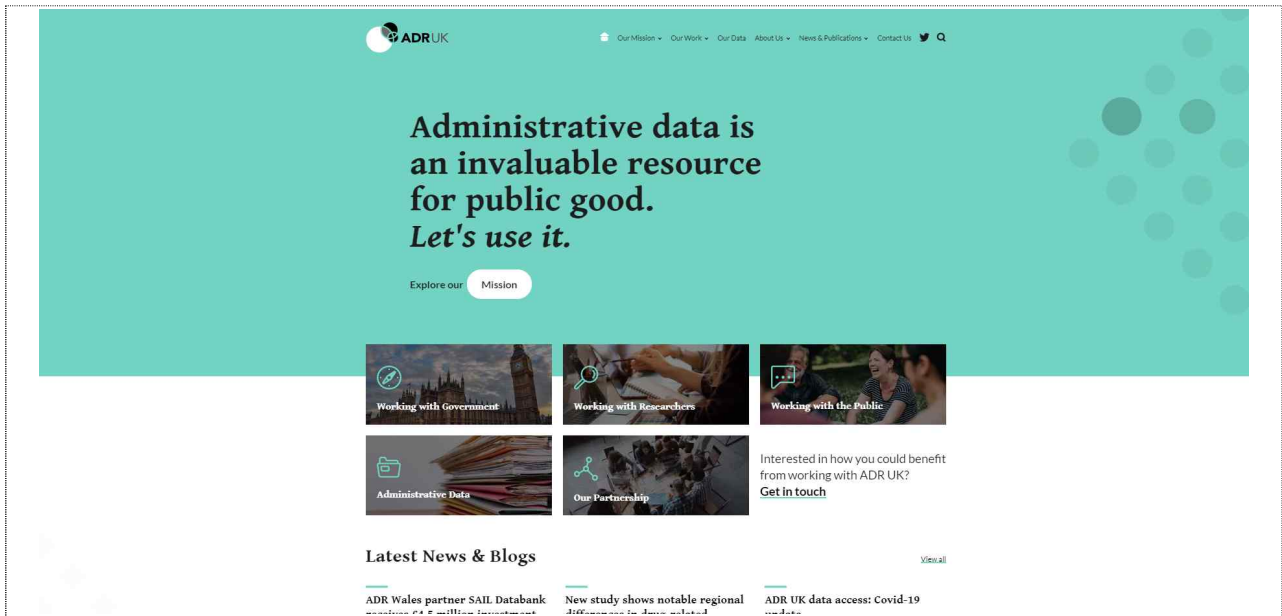


그림 5-55

ADR UK 공식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및 기능

- 행정데이터연구센터는 각 부처에서 생성되는 행정데이터가 활용되는 연구과제들을 주선하며, 상이한 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제3의 데이터를 창출하는 역할을 함
- 데이터 개방에 있어서 주된 이슈는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of 1998)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것임
- 행정데이터연구센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술적 지원은 정부 내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행정데이터에서 개인 인식이 가능한 정보를 비식별화(de-identified) 하는 작업임
- 행정데이터연구센터의 역할은 기술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데이터를 요청한 연구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심의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행정데이터연구센터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데이터연구센터의 자체 기준에 적합해야 함

- 행정데이터연구센터는 자연 및 이공계의 연구보다는 정책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경제 및 사회과학 중 점의 연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시스템 시사점

-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센터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다수의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임
- 행정데이터연구센터가 데이터 공개의 대상을 연구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일반인과 기업의 상업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하지 않는 등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3.0 정책 하의 데이터 개방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5. 스위스

(1) 스위스 연방 통계청 ((Federal Statistical Office) 문화통계³⁷⁾

■ 기관 소개

- 연방통계법 (Federal Statistics Act)에 의거, 스위스 연방의 각종 통계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공식 연방기관으로 스위스 연방 내무부 소속이며 유럽 연합의 통계 기구인 Eurostat (European Statistical Office)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를 생산·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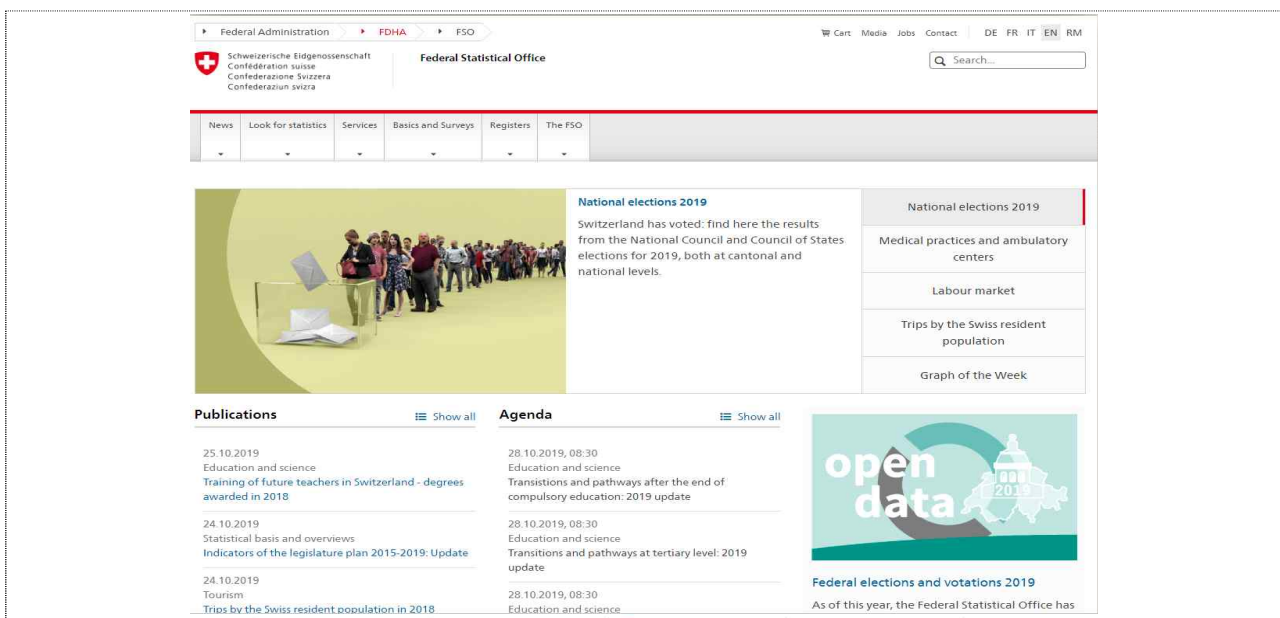


그림 5-56

스위스 연방 통계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 서비스 목록

- 인구, 영토와 환경, 국가경제, 농업 및 임업, 에너지, 건설 및 주택, 교통, 안보, 건강, 교육 및 과학, 정책, 범죄 및 사법시스템, 지속가능 발전 등 21개 분야의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횡단면 주제 (Cross sectional topics), 지역 통계 (Regional statistics)에 관한 통계자료도 공개하고 있으며 주요 통계자료에 대해 메타 데이터와 더불어 그래프 자료, 지도서비스 연동기능도 제공하고 있음
- 문화분야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여행 (Tourism), 문화, 미디어, 정보사회, 스포츠 (Culture, media, Information society, sport) 카테고리에서 찾아볼 수 있음

37) <https://www.bfs.admin.ch/bfs/en/home.html> (영어), <https://www.bfs.admin.ch/bfs/de/home.html> (독일어), <https://www.bfs.admin.ch/bfs/fr/home.html> (프랑스어) 등 5개 국어 지원

■ 오픈데이터 공개

- 정부기관의 공개데이터에 대한 공공기관 거점포털³⁸⁾을 통해 오픈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기준 73개의 기관과 관련한 총 7,070개에 이르는 각종 오픈데이터를 API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 175개의 여행 (Tourism)분야 관련 오픈데이터, 329개의 문화, 미디어, 정보사회, 스포츠 (Culture, media, Information society, sport)분야 관련 오픈데이터를 제공함
- 문화 분야와 관련하여 공개된 오픈데이터의 주요 사례로 바젤 박물관의 이벤트 정보, 취리히 시의 예술품 목록 및 역사적 기념물 목록과 박물관 정보, 스위스 연방의 공공 문화지출액 내역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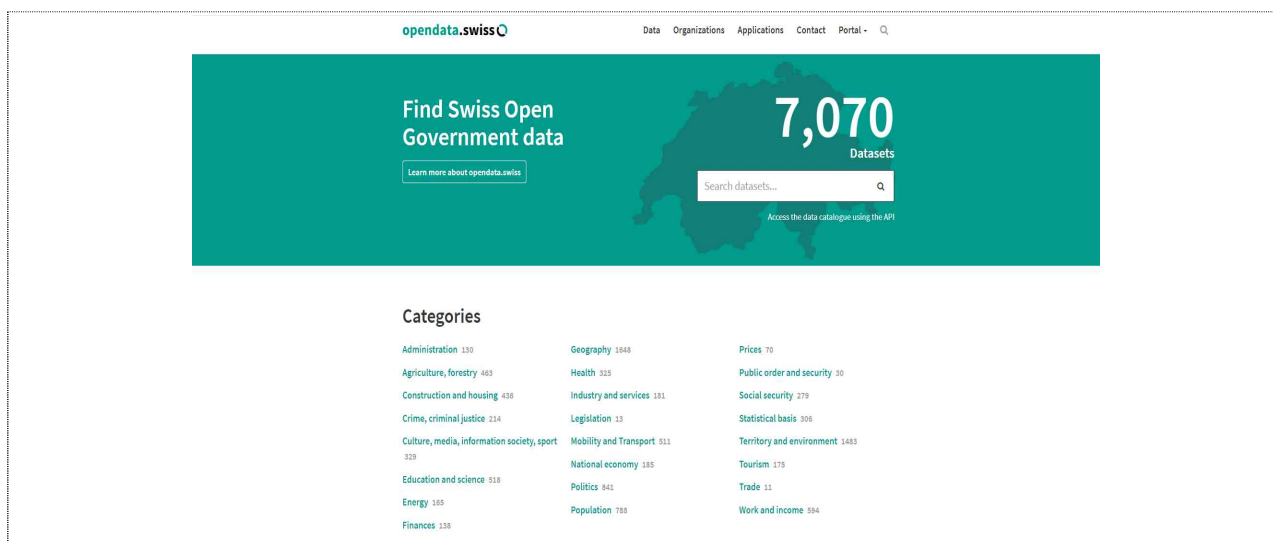


그림 5-57

스위스 연방 통계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스위스 연방 베른 주(Kanton)³⁹⁾의 'Geoportal'⁴⁰⁾

■ 서비스 소개

- 베른 주의 건설, 교통 및 에너지 관리부 (Bau-, Verkehrs- und Energiedirektion des Kantons Bern) 내 지리정보국(Amt für Geoinformation)에서 운영·관리하는 베른 주 공식 지리정보 플랫폼으로서 베른 주 행정구역 내의 다양한 지리정보, 메타 데이터를 웹 맵 서비스(Web Map Service, WMS)⁴¹⁾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38) <https://opendata.swiss/en/>

39) 베른 주의 주도는 베른 시이며, 스위스의 사실상 수도이자 스위스 연방의회 의사당이 소재하고 있음. 또한 지난 1983년에 베른 시의 옛 시가지 (Old City of Berne)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었음.

40) <https://www.geo.apps.be.ch/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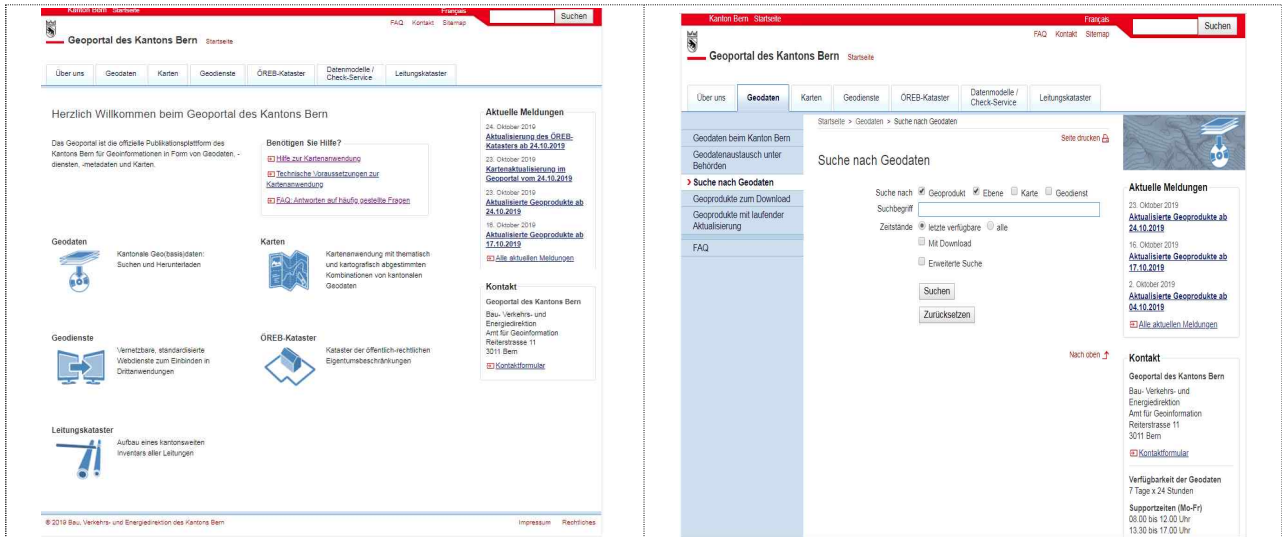


그림 5-58

스위스 베른 주 Geoportal 사이트의 주요 메뉴

서비스 목록

- 지리 데이터 : 검색 및 다운로드 기능 탑재
- 지도 : 주제별 지도 및 관련데이터 조합을 통한 응용 지도 서비스 제공
- 지리 서비스 : 베른 주에 대한 기본 지도 데이터, 인구·사회·세계 관련 데이터, 건축 및 시설·기념물 관련 데이터, 교통정보 데이터, 행정 구역 및 주 경계 데이터, 농업 및 수자원 관련 데이터, 공공의료 관련 데이터 제공
- 토지 정보 시스템 (GRUDIS)와의 연동 가능
- 지하에 위치한 각종 상하수도, 배관시설, 통신설비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주요 기능

- 다양한 주제별 위치정보 데이터 및 지도 데이터를 하나의 서비스에서 통합적으로 제공
- 기본 지도, 행정 구역 표시, 교구의 행정 구역, 대중교통 담당구역 표시, 어업면허 구역 표시, 공사 구역표시, 베른 주 내에 소재하는 게마인데 / 코뮌 (Gemeinde / Commune : 스위스 연방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치단체) 현황과 각 지자체별 세율 현황, 대중교통 지도, 베른 주 내의 AED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 제공
- 주 (Kanton)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는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 베른 주 내의 고고학 유적지 위치정보 제공

41) GIS (지리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맵 서버에서 생성된 지도 이미지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

● 베른 주 역사지도 및 자연보호 지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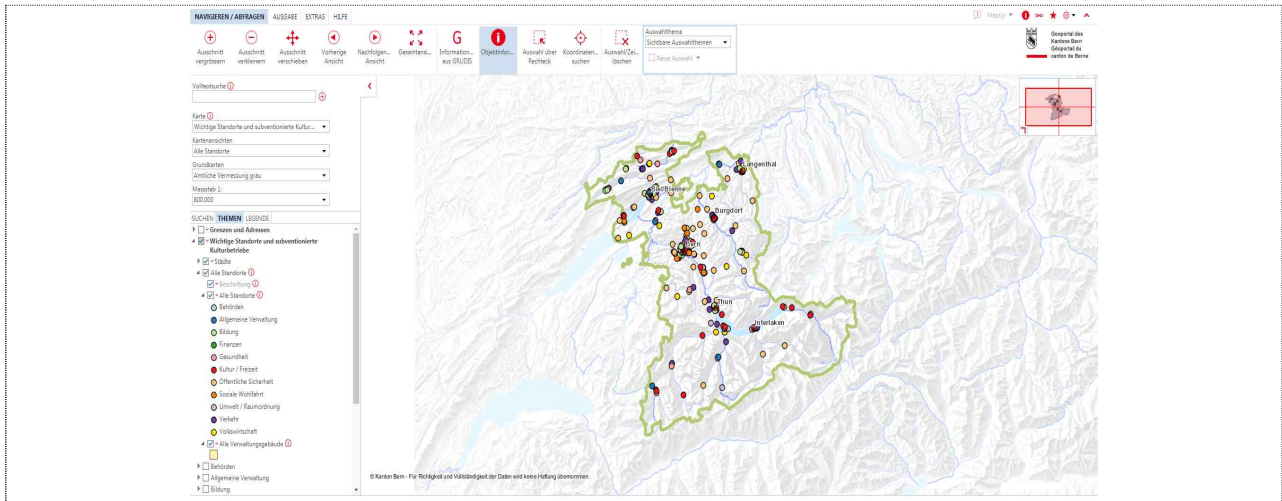


그림 5-59

Geoportal 에서 검색한 주요 공공기관들의 위치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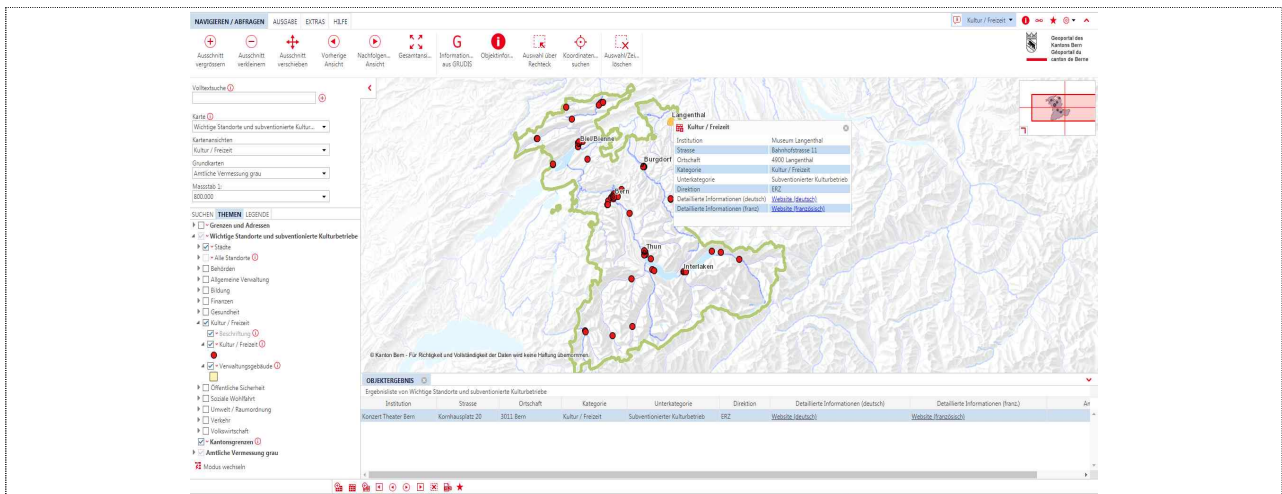


그림 5-60

Geoportal에서 검색한 문화시설 (란겐탈 박물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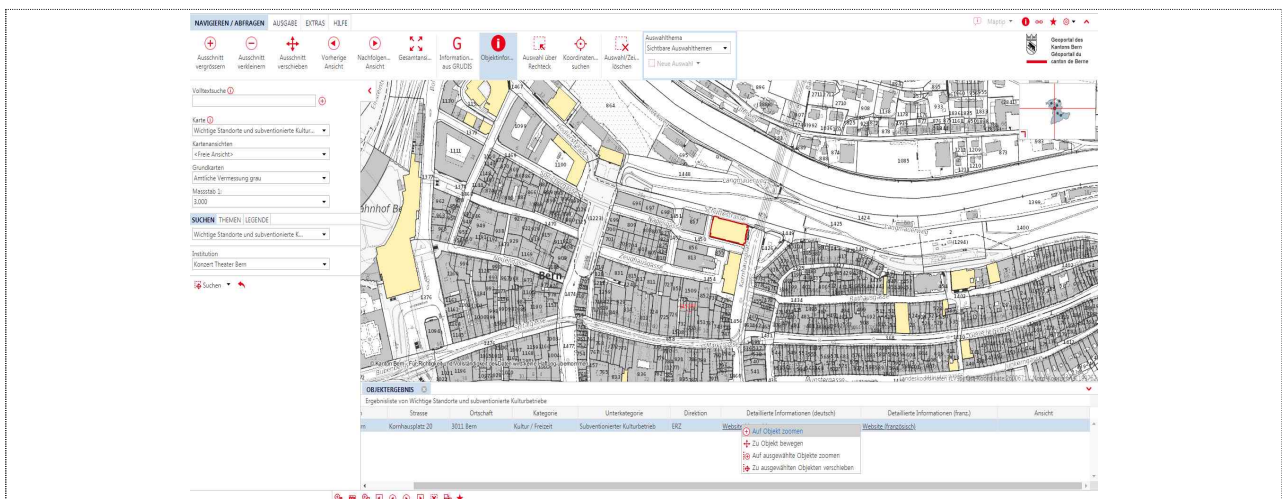


그림 5-61

Geoportal 에서 검색한 문화시설 (베른 극장) 정보⁴²⁾

42) 시설 명, 주소, 우편 번호, 기본 카테고리 명, 세부 카테고리 명, 관리주체, 각 언어별 (독일어·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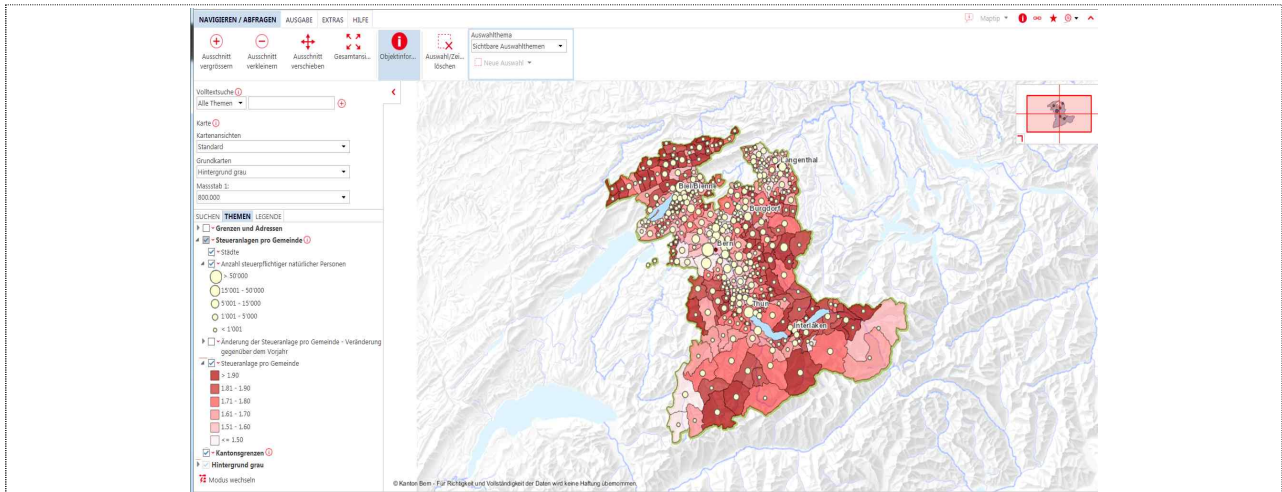


그림 5-62

베른 주 내의 지역별 세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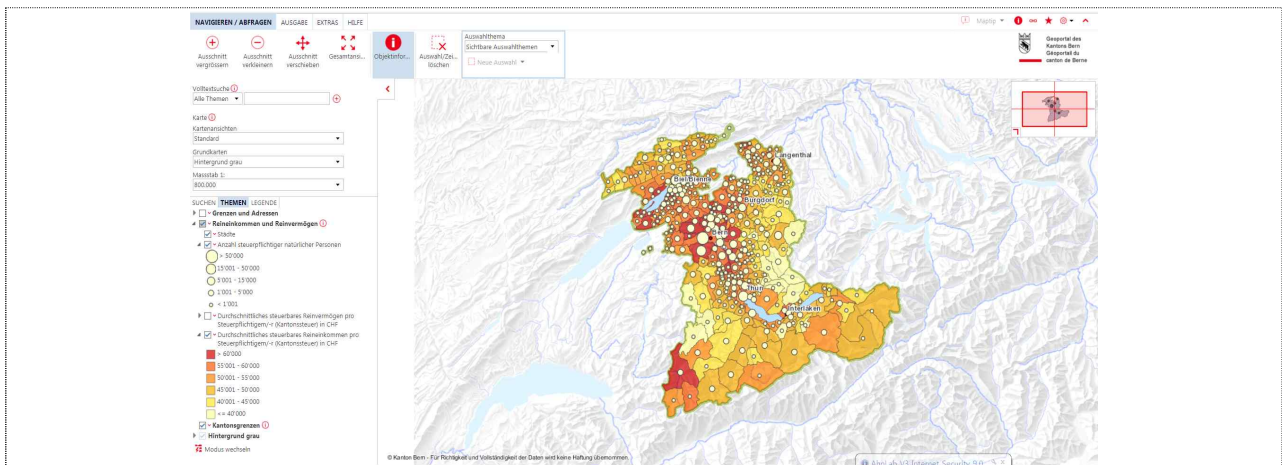


그림 5-63

CHF (스위스프랑)을 기준으로 본 베른 주 내의 지역별 순소득 현황

(3) 스위스 연방 베른 주(Kanton)의 ‘Bauinventar online’ 서비스

서비스 소개

- 베른 주 각지의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프로젝트 기념물 2020 (Projektes Bauinventar 2020)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베른 주 교육부(Erziehungsdirektion des Kantons Bern) 내 문화국(Amt für Kultur)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음

서비스 목록

- 각각의 기념물이 위치한 게마인데 / 코뮌 (Gemeinde / Commune : 스위스 연방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치단체)의 명칭 및 주소, 주요 사항, 건축 형태, 지번, 지정 보존대상 (Kantonale Objekte)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공개하고 있음

어) 관련 웹사이트 정보, 기타정보가 제공됨.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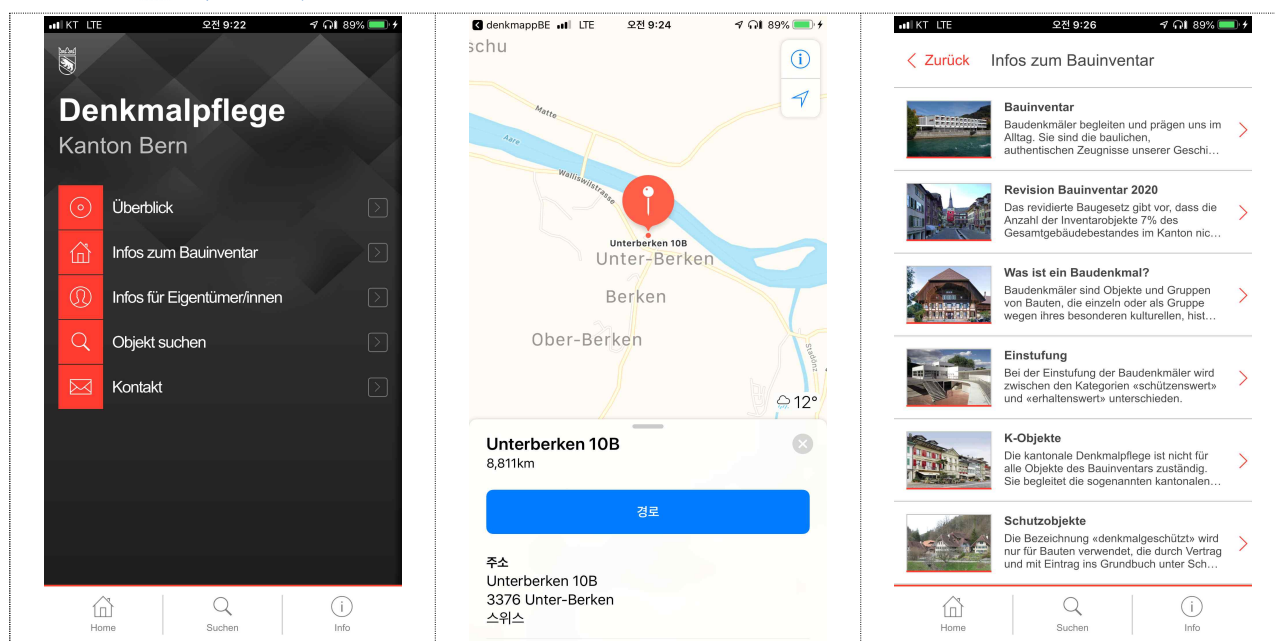


그림 5-64

문화유산 정보제공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DenkmappBE)

- 베른 주의 지리정보 플랫폼인 지오 포털 (Geoportal),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DenkmappBE)을 통해서도 관련 데이터 이용가능
-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2017년 6월 26일 기준 보호 대상인 기념물들의 목록과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확인 가능

(4) 스위스 연방 베른 주(Kanton)의 ‘문화진흥 포털’⁴³⁾

서비스 소개

- 베른 주 내의 각종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프로젝트 지원금 신청을 온라인 포털로 접수하는 서비스로서 베른 주의 교육부 (Erziehungsdirektion des Kantons Bern) 내 문화국(Amt für Kultur)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음

43) www.be.ch/kulturfoerderung-gesuchportal (독일어), www.be.ch/culture-portal-requests (프랑스어)

그림 5-65

포털에서 지원 가능한 신청 분야(영화, 문학, 음악 등 11개 분야)

■ 신청 조건

- 분야별 차이는 있으나 보통 해당 문화프로젝트 시행 2개월 전까지 지원 요청을 해야 함
- 베른 주 내의 거주자이거나 해당 단체의 회원 절반 이상이 베른 주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자체도 베른 주에서 이루어져야 함.
-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체 예산규모, 자금 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그림 5-66

신청 절차 예시 (신청자의 거주지 및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선택)

6. 러시아

(1) 러시아 문화부의 문화포털

■ 시스템 개요

- 2012년에 시작된 러시아 문화부의 문화포털은 10,000개 이상의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며 러시아에 있는 80,000개 이상의 문화 기관(박물관, 극장, 도서관, 콘서트 홀, 문화 센터 및 클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포털 구독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750만 명이 약 3,200만 페이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시스템 주요 기능

- 러시아 내 주요 문화기관의 주요 문화행사 소개 및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 러시아 연방의 문화활동 관련통계, 예를 들어 등록된 문화기관, 문화행사 수, 문화행사 참여자 수, 뉴스레터 제공 수, 문화포털 내 위젯기능 활성화 수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지역 활동 맵을 통해 러시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행사 정보를 한눈에 파악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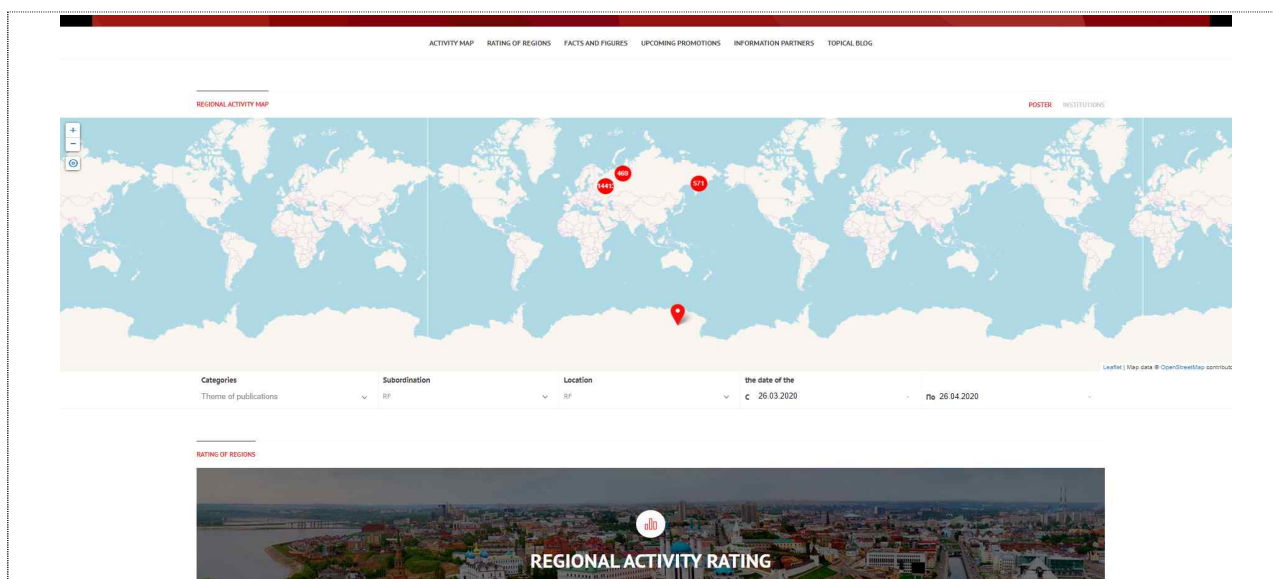


그림 5-67

지역 활동 맵 기능

■ 지역 활동 등급 공개

- 지역 활동 등급은 러시아 연방 내의 문화기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행사에

대한 인터넷 홍보, 이메일을 통한 정기뉴스 발행, 문화포털에 등록된 행사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각 인구별·지역별 순위를 매기고 포털 상에 공개함

- 해당 순위는 인구 2백만 이상, 백만 이상 2백만 미만, 백만 미만 등으로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월별·지역별 순위가 공개되어 있음
- 순위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문화포털 상의 지역 활동맵에 해당 지역·기관의 문화 행사 정보를 등록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문화포털 웹사이트 내 위젯 기능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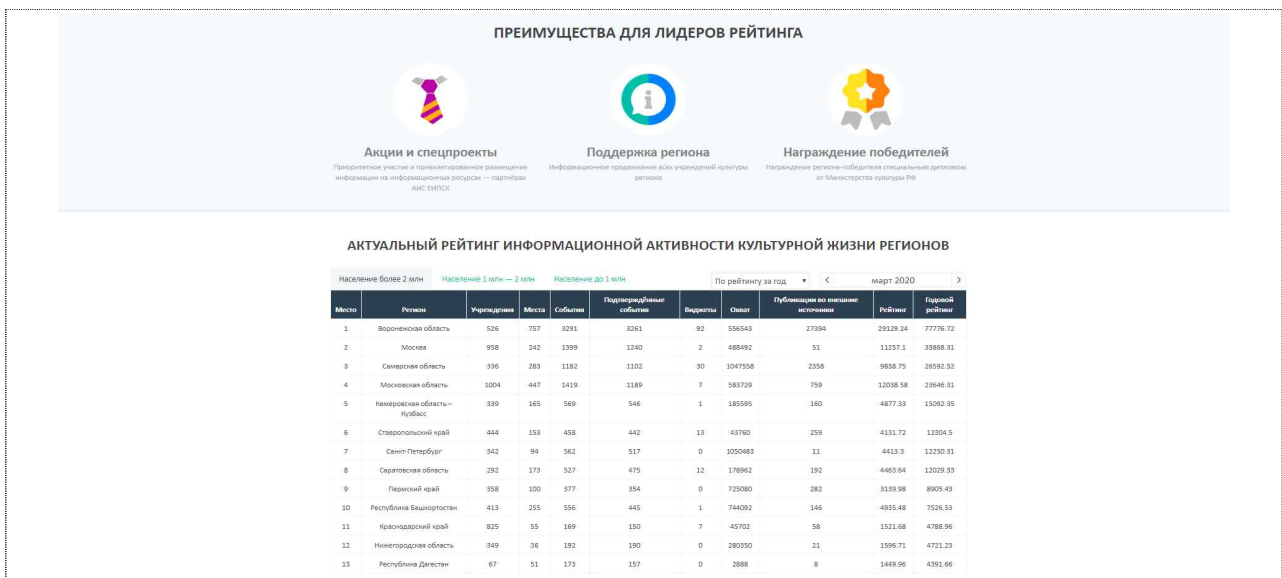


그림 5-68

지역 활동 등급 순위표

(2) 러시아 문화부의 문화보조금 포털

■ 시스템 개요 및 추진목적

- 2017년 4월 옴스크에서 개최된 「문화는 국가의 최우선과제」 포럼결과를 바탕으로 구축하게된 포털사이트로 러시아 내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연방정부, 주 정부, 기초 지방자치단체, 민간 보조금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음
- 해당 포털사이트는 일종의 통합정보사이트로서 구축되어 문화예술분야의 여러 창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제공의 유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러시아 연방의 총 85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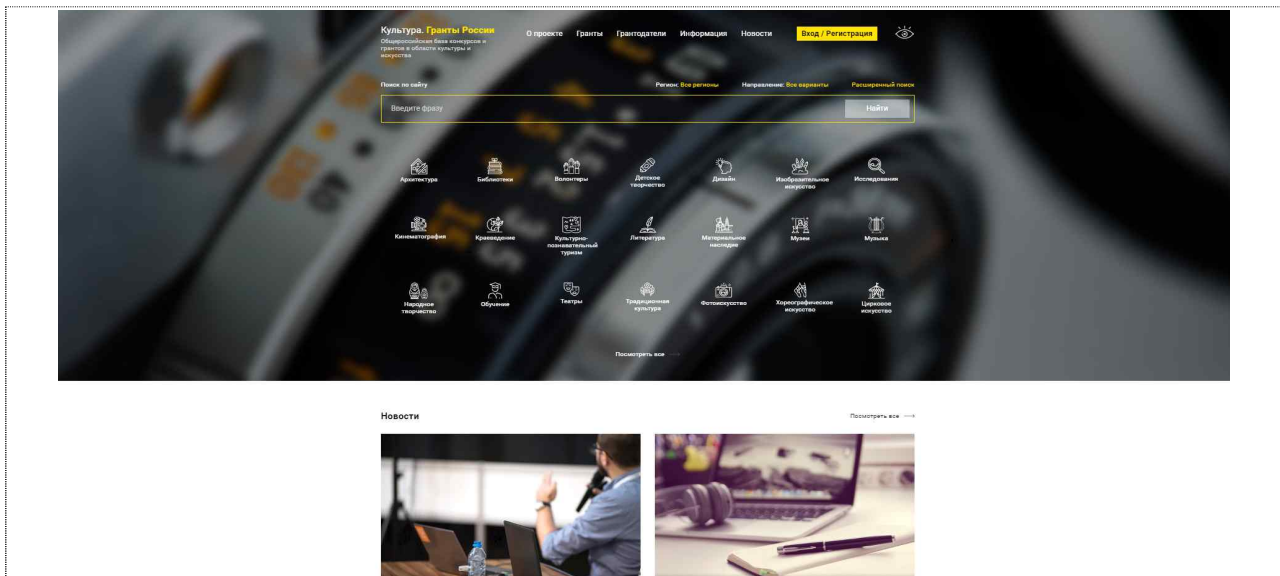


그림 5-69

문화보조금 포털 공식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및 기능

- 문화, 예술 및 관련 분야의 보조금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보조금 교부자, 수혜자 등록 기능,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공개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함
- 다양한 분야의 보조금 지원현황 정보검색, 수혜자에 대한 지원안내, 보조금 지원현황 분석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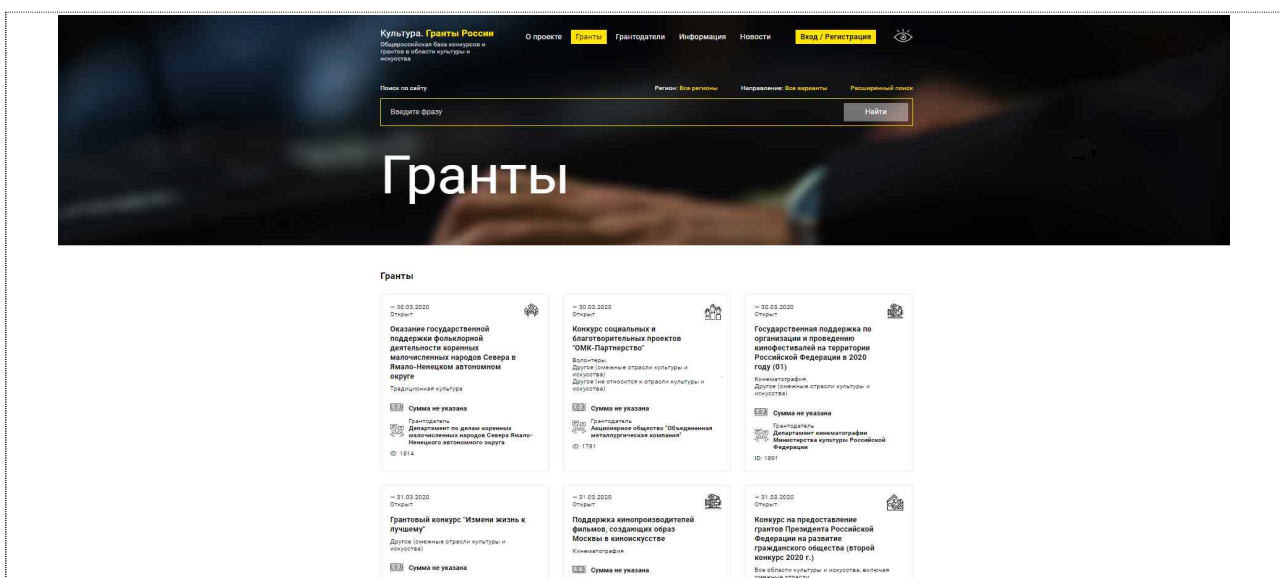


그림 5-70

보조금 제공 프로젝트 목록

■ 보조금 신청절차 및 진행현황 정보 제공

- 보조금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절차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의 목록을 추천 목록화하여 표시함
-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참여하고 싶은 개인·단체가 자발적으로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해당 프로젝트 내용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며 자문위원회에 의해 프로젝트 내용의 신뢰성 검토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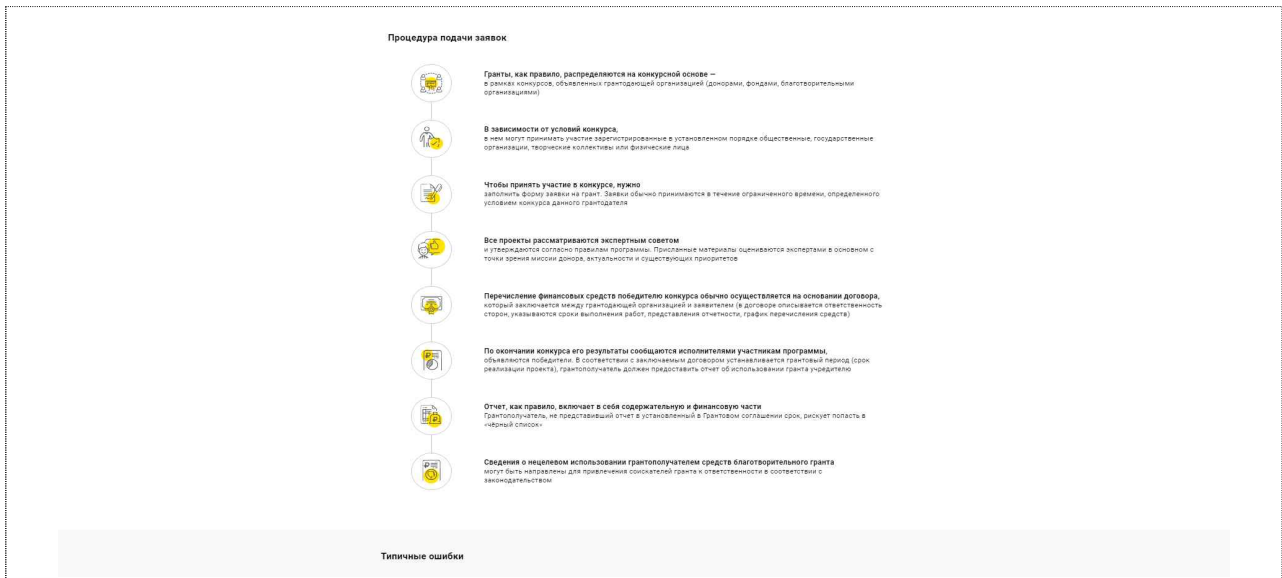


그림 5-71

문화보조금 신청절차 안내

■ 시스템 시사점

- 러시아 연방 내 문화 기관 및 사회적 비영리 단체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보조금 수혜자나 지원자 모두 러시아 연방 내의 타 단체와의 경쟁에 자연스럽게 노출됨
- 러시아 연방 내 문화 기관 및 사회적 비영리 단체의 정보창구로서 개방형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국의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 다양한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목록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조금 관련 정보 획득이 하나의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 전역의 보조금 지원 현황 및 타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내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문화기관 및 사회적 비영리 단체의 정보습득 통로로 활용되어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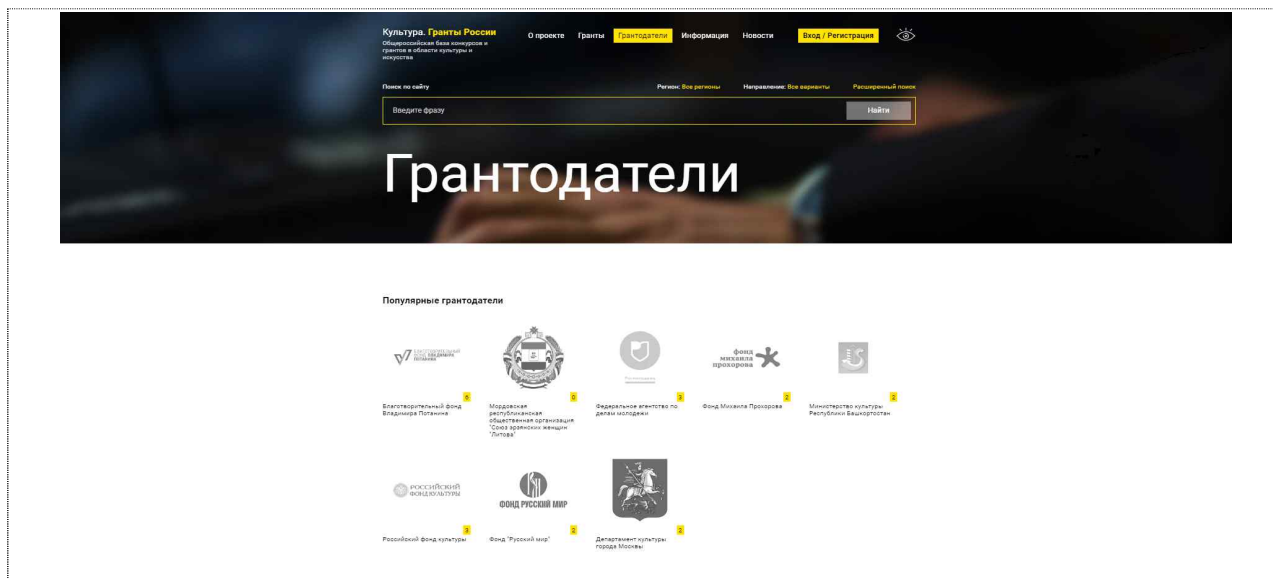


그림 5-72

문화보조금을 제공하는 러시아 내 관련기관 목록

7. 라트비아

(1) 라트비아의 kulturas dati Portal (문화 데이터 포털)⁴⁴⁾

- 이 포털은 라트비아가 생산하는 문화 분야의 공식 통계데이터들에 대하여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속하여 이용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임
- 포털의 운영 및 관리는 라트비아 공화국 문화부 산하의 문화 정보 시스템 센터 (Kulturas Informācijas Sistemu Centrs)⁴⁵⁾에서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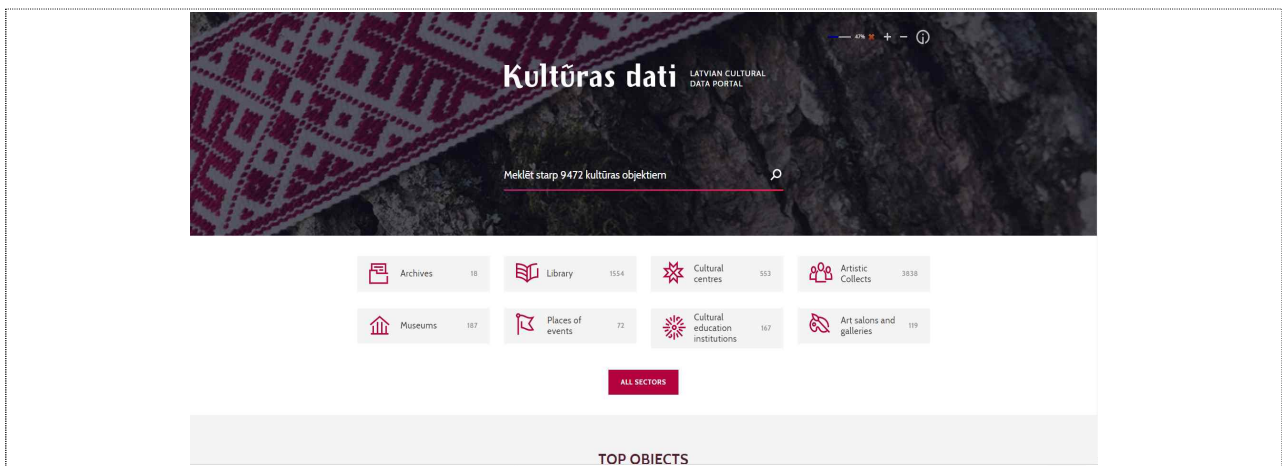


그림 5-73

라트비아 kulturas dati (문화 데이터 포털)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 문화 시설 (Cultural Objects), 문화 서비스 (Services), Vacancies (구인정보), Routes (추천 경로), Cultural projects financed (재정지원을 받은 문화 프로젝트 목록)의 5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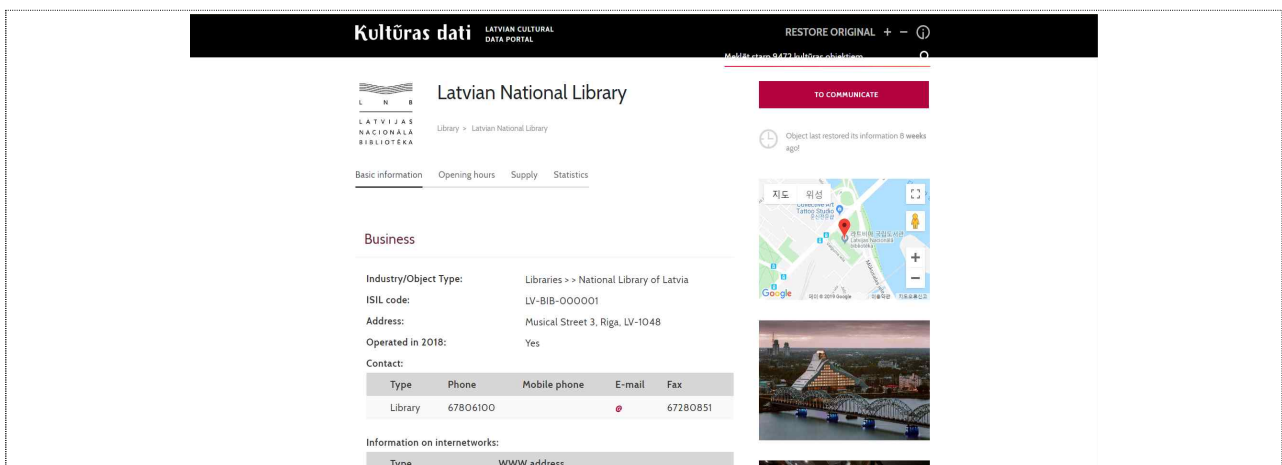


그림 5-74

라트비아 kulturas dati (문화 데이터 포털) 웹사이트의 문화시설 정보 메뉴

44) <https://kulturasdati.lv/lv>

45) <http://www.kis.gov.lv/>

- 기본적인 정보, 연락처 정보, 이용가능여부, 사회기반시설,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 각 문화시설 관련 통계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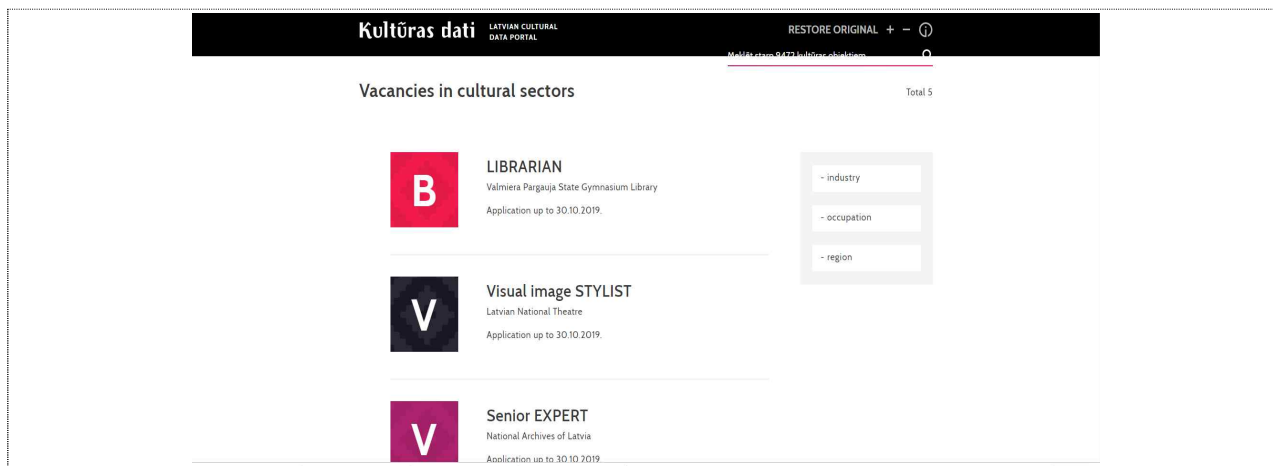


그림 5-75

라트비아 kulturas dati (문화 데이터 포털) 웹사이트의 구인정보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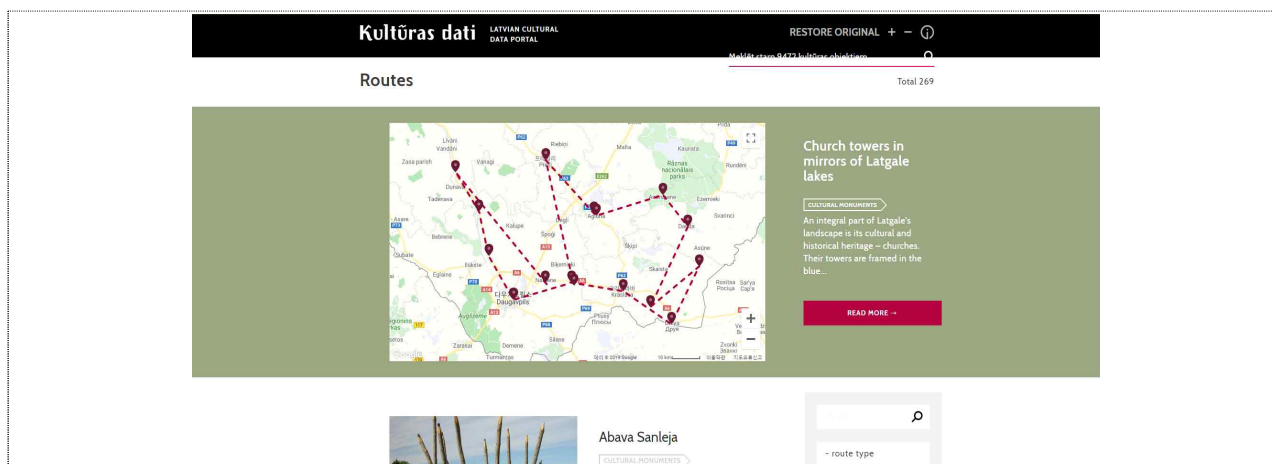


그림 5-76

라트비아 kulturas dati (문화 데이터 포털) 웹사이트의 추천경로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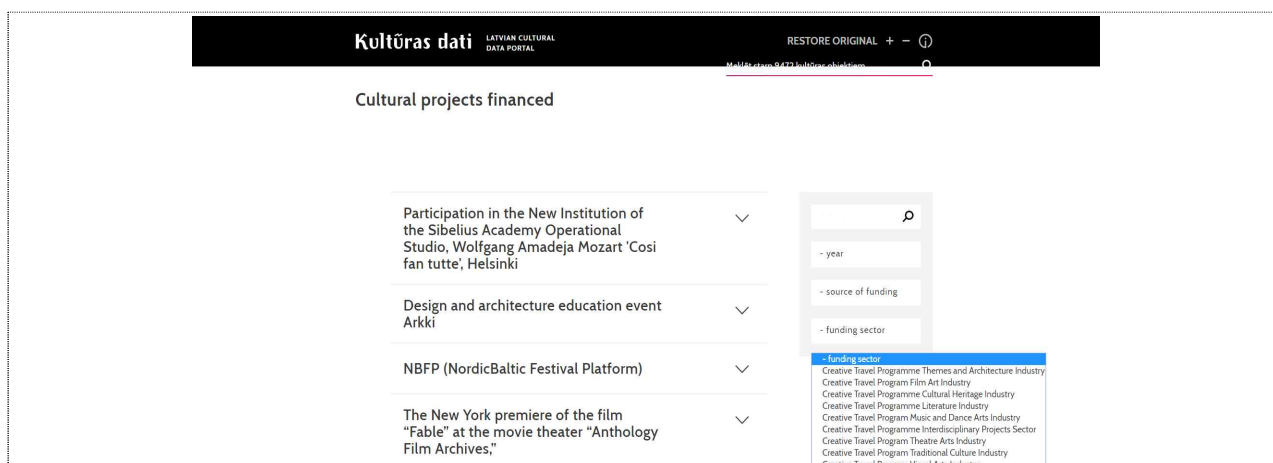


그림 5-77

국가 문화자본기금 (State Culture Capital Fund)의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목록

- 아울러 국가 문화자본기금(State Culture Capital Fund)⁴⁶⁾의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문화시설에 대한 추천경로 서비스, 훈련 서비스, 문화 시설들의 구인 정보도 해당 포털에서 제공함
- 이 문화 데이터 포털에 게시된 정보는 향후 라트비아 문화부 산하의 문화 정보 시스템 센터가 운영하는 오픈 데이터 포털⁴⁷⁾에 추가됨
- 문화 분야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30일 제정된 라트비아 내각규정 291번(문화 분야의 공식 통계작성 규정)⁴⁸⁾에 따라 수행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문화 센터, 극장, 영화관, 예술단체, 비정부기구 등 총 16가지의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을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규정의 부칙에는 각 분야별로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해야 할 구체적인 데이터 목록들이 제시되어 있음

Muzēji		1 pielikums: Muzēju saraksts 2017. gada 31. marta stāvoklim: 90-291	
№	Datā iedaļa	Indikatoru nosaukums	
1.	Pasākumu saraksts		
1.1.	Arhitektūras saraksts		
1.2.	Pasākumu saraksts		
1.3.	Adm.		
1.4.	Arhitektūras saraksts		
1.5.	Arhitektūras saraksts		
1.6.	Arhitektūras saraksts		
1.7.	Arhitektūras saraksts		
1.8.	Arhitektūras saraksts		
1.9.	Arhitektūras saraksts		
1.10.	Arhitektūras saraksts		
1.11.	Arhitektūras saraksts		
1.12.	Arhitektūras saraksts		
1.13.	Arhitektūras saraksts		
1.14.	Arhitektūras saraksts		
1.15.	Arhitektūras saraksts		
1.16.	Arhitektūras saraksts		
1.17.	Arhitektūras saraksts		
1.18.	Arhitektūras saraksts		
1.19.	Arhitektūras saraksts		
1.20.	Arhitektūras saraksts		
1.21.	Arhitektūras saraksts		
1.22.	Arhitektūras saraksts		
1.23.	Arhitektūras saraksts		
1.24.	Arhitektūras saraksts		
1.25.	Arhitektūras saraksts		
1.26.	Arhitektūras saraksts		
1.27.	Arhitektūras saraksts		
1.28.	Arhitektūras saraksts		
1.29.	Arhitektūras saraksts		
1.30.	Arhitektūras saraksts		
1.31.	Arhitektūras saraksts		
1.32.	Arhitektūras saraksts		
1.33.	Arhitektūras saraksts		
1.34.	Arhitektūras saraksts		
1.35.	Arhitektūras saraksts		
1.36.	Arhitektūras saraksts		
1.37.	Arhitektūras saraksts		
1.38.	Arhitektūras saraksts		
1.39.	Arhitektūras saraksts		
1.40.	Arhitektūras saraksts		
1.41.	Arhitektūras saraksts		
1.42.	Arhitektūras saraksts		
1.43.	Arhitektūras saraksts		
1.44.	Arhitektūras saraksts		
1.45.	Arhitektūras saraksts		
1.46.	Arhitektūras saraksts		
1.47.	Arhitektūras saraksts		
1.48.	Arhitektūras saraksts		
1.49.	Arhitektūras saraksts		
1.50.	Arhitektūras saraksts		
1.51.	Arhitektūras saraksts		
1.52.	Arhitektūras saraksts		
1.53.	Arhitektūras saraksts		
1.54.	Arhitektūras saraksts		
1.55.	Arhitektūras saraksts		
1.56.	Arhitektūras saraksts		
1.57.	Arhitektūras saraksts		
1.58.	Arhitektūras saraksts		
1.59.	Arhitektūras saraksts		
1.60.	Arhitektūras saraksts		
1.61.	Arhitektūras saraksts		
1.62.	Arhitektūras saraksts		
1.63.	Arhitektūras saraksts		
1.64.	Arhitektūras saraksts		
1.65.	Arhitektūras saraksts		
1.66.	Arhitektūras saraksts		
1.67.	Arhitektūras saraksts		
1.68.	Arhitektūras saraksts		
1.69.	Arhitektūras saraksts		
1.70.	Arhitektūras saraksts		
1.71.	Arhitektūras saraksts		
1.72.	Arhitektūras saraksts		
1.73.	Arhitektūras saraksts		
1.74.	Arhitektūras saraksts		
1.75.	Arhitektūras saraksts		
1.76.	Arhitektūras saraksts		
1.77.	Arhitektūras saraksts		
1.78.	Arhitektūras saraksts		
1.79.	Arhitektūras saraksts		
1.80.	Arhitektūras saraksts		
1.81.	Arhitektūras saraksts		
1.82.	Arhitektūras saraksts		
1.83.	Arhitektūras saraksts		
1.84.	Arhitektūras saraksts		
1.85.	Arhitektūras saraksts		
1.86.	Arhitektūras saraksts		
1.87.	Arhitektūras saraksts		
1.88.	Arhitektūras saraksts		
1.89.	Arhitektūras saraksts		
1.90.	Arhitektūras saraksts		
1.91.	Arhitektūras saraksts		
1.92.	Arhitektūras saraksts		
1.93.	Arhitektūras saraksts		
1.94.	Arhitektūras saraksts		
1.95.	Arhitektūras saraksts		
1.96.	Arhitektūras saraksts		
1.97.	Arhitektūras saraksts		
1.98.	Arhitektūras saraksts		
1.99.	Arhitektūras saraksts		
1.100.	Arhitektūras saraksts		

그림 5-78

문화 분야의 공식 통계작성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자료목록 (박물관)

(2) 라트비아 kulturas Karte App(문화 지도 App)

- 지난 2005년 라트비아 전역의 문화 인프라, 문화기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라트비아 공화국 문화부 산하 문화 정보 시스템 센터에서 개발했던 디지털 문화지도(kulturas Karte)의 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2017년 이후 현재는 모바일 App의 업데이트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임
- 건축물, 도서관, 영화관, 문화 센터, 문화교육시설, 유적지 등 라트비아 전역의 각종 문화관련 시설들의 위치정보를 지도서비스와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였음

46) State Culture Capital Foundation (SCCF)

47) <https://data.gov.lv/lv>

48) <https://likumi.lv/ta/id/291512-noteikumi-par-oficialas-statistikas-apkoposanu-kulturas-j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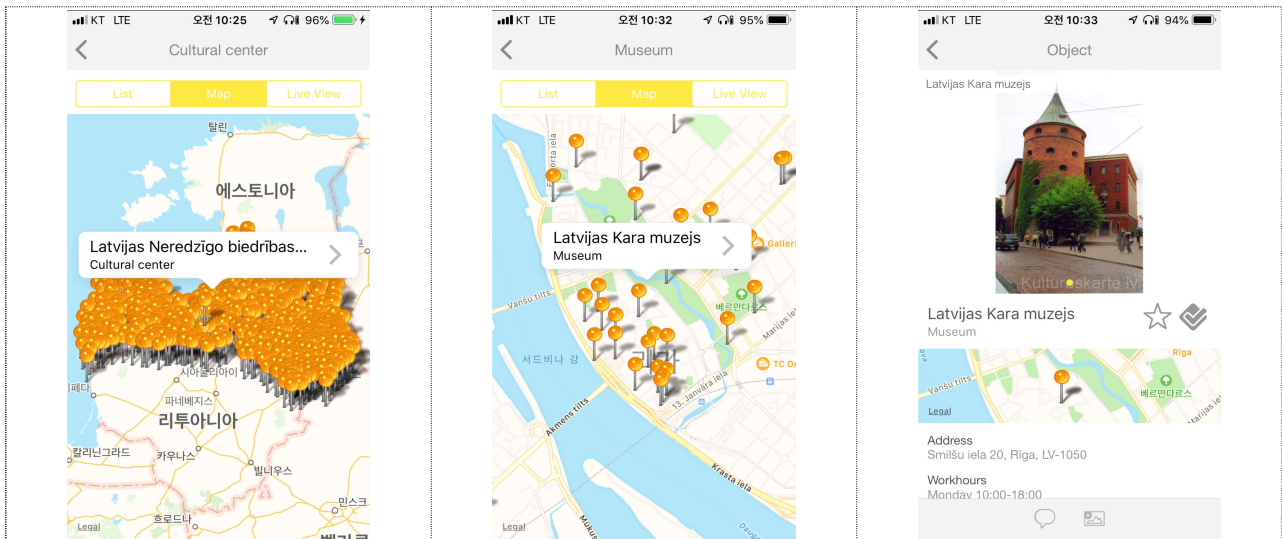


그림 5-79

라트비아 kulturas Karte APP

VI

기본 방향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제1절 종합검토

1. 기본방향 도출 개요

(1) 정책환경,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필요성 정리

-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에 비추어 현재 지역문화정보체계의 포괄적인 문제점 해소하고,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에 일치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도출

(2) 조사·분석한 결과를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과 관련 이슈 및 시사점으로 정리

- 정보화 관련 환경분석, 지역문화정보 현황분석,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국내외 정보화 사례 분석 등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의 내·외부 여건이 갖는 이슈 및 시사점 도출
- 이슈 및 시사점은 거시적 중장기적 동향과의 일치 여부, 현재 지역문화정보의 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구성됨

(3) 이슈 및 시사점을 종합하여 지역문화 통합 정보화를 통한 개선방향 및 핵심성공요인 도출

- 각 도출된 문제점 및 시사점을 통해 문제의 직접적 해소 또는 문제의 경합을 위해 설정해야 하는 개선방향 도출
- 문제 및 시사점 가운데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의 내용적 측면 외 정보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환경적 조건을 종합하여 핵심성공요인 도출

(4)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기본방향으로서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배경, 지역문화정보 관리 개선방향을 종합하여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의 비전 설정
- 설정된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비전 구현을 위한 핵심 폭포를 설정하며, 핵심목표는 시스템의 구조와 범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시스템 구현 후 성과를 평가하는 기본 틀로 작동

2. 종합진단 및 시사점

(1) 각 영역별 주요 이슈 진단

표 6-1

분석 영역별 주요 이슈 진단

분석 영역	이슈 진단
정보정책 동향	-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 데이터 활용과 가공의 위한 개인정보 보안대책 마련 - 주요 부처에서는 차세대 통합정보사업 추진 중(행안부, 복지부 등)
지역문화 현황	- 지역문화사업의 양적, 질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중앙과 지역의 분리된 사업관리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 - 중앙과 지역의 다양하고 복잡한 보조금 사업 추진
지역문화정보 현황	- 범위에 있어 지역문화사업의 양적, 질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지역문화정보의 개별적, 원시적 생산관리 지속과 파편화된 정보 유통 - 지역문화정보의 표준 부재로 지역문화정보의 관리·생산의 차이 발생 - 중앙과 지역, 지역 간 정보단절 및 정보 독점현상 발생 - 정보 수요자에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지역의 정보중요성 인식과 정보관리 실행의 간격으로 지역문화정보 지체현상 발생 - 문화영역에서는 기본 통합정보시스템도 미비하고, 일부 통합정보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정보의 완결성 및 품질 미흡
지역문화정보 기반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현행 법령에 지역문화정보화를 위한 근거 조항 필요 - 재정 관련 법령에서 일부 성과 점검·평가를 위한 자료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의 통합 수단 결여 -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이해당사자 정보정책 수요	- 지역문화정보의 수집·관리 표준안 필요 - 분산된 문화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연계 필요 - 지역문화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필요 - 지역문화정보 전담기관 지정 검토 필요 - 지역문화정보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필요
국내외 사례 및 최신 동향	- (국내) 정보표준, 거버넌스, 법률, 전담조직 등 정보화 추진체계 구축이 정보화 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 - (국외) 정보의 수집 통합 수집 뿐 아니라 정보의 활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정보정책) 다른 영역의 정보화는 문화영역에 비해 한세대 이상 앞서나가고 있음
- (지역문화) 문화사업의 복잡화·다양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관리체계는 미흡
- (지역문화정보) 문화사업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파편적 정보의 관리, 정보 공유 체계의 부재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지역문화정보기반) 현실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디지털화 이루어져왔으나, 문화영역

은 여전히 아날로그적 관리 기반에 의존하고 있음

- (이해당사자 정책수요)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정착에는 의문으로 가지고 있음
 - －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관리의 표준, 정보 입력의 편리성, 지역의 정보역량 강화, 정보의 적극적 공유, 제도적 기반,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라고 제안되고 있음
- (국내외 사례) 국내외 사례도 정보의 활용을 위해 정보의 통합, 정보의 연계 등이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조직 등이 필수적임을 나타내고 있음
 - － (국내) 정보화 시스템의 선두 부처의 경우 정보의 표준, 관련법률, 전담조직의 3요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 (국외) 국외의 경우 정보화 실행은 국내에 비해 느린 편이나, 정보화의 방향에서 국내보다는 앞서 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림 6-1 기본방향 도출 과정

(2) 종합 시사점

■ (통합) 산재한 문화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 필요

- 문화시설 및 자원, 프로그램 정보가 단체·기관별로 관리되고 통합서비스 부재
 - － 정보의 개별 관리·서비스로 인해 단체·기관 간 정보공유, 업무 및 정보처리 협력에 제약, 유

사 중복사례 발생

- 새로운 공공 문화정책 및 서비스 영역을 수용하면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데이터 통합 수집·관리 및 서비스 추진 필요
 - － 생활SOC, 인력, 일자리, 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문화정보·데이터를 수용, 서비스 제공 필요

■ (공유) 파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공유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 해소 및 역량 강화

- (분권지원) 일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의 적극적 공유를 통해 지역의 자치기반 마련 및 책임 강화
- (효율성 증대) 중앙-지역, 지역 간 정보 칸막이로 제거를 통해 문화정책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필요
- 궁극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매개로 지역문화 관련 이해관계자간 정보 거버넌스 구축

■ (활용) 단순정보의 유통을 넘어 가공/분석 정보의 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데이터 기반 문화 서비스 구현

- 데이터 기반 지능형 사회로의 이행에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 근거기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스마트 도시 구축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문화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필요
-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정책의 초석 마련
 - －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분석을 통한 데이터 큐레이팅 기능 강화로 정보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추진 요구 (데이터 큐레이팅 :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선별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시)

(3) 핵심성공 요인

■ 단계적 접근을 통한 시스템 내실화

- 정보화에 따른 전반적 과급효과, 예상되는 혜택 때문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게 되면 예상결과에 도달하기도 전에 심리적 저항, 정보독점주의 등 정보화 장애요인으로 누락되는 정보가 많아지고 초기에 실패할 확률이 높음
- 현재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대부분의 통합정보 시스템은 정보의 완결성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시스템이 중장기적으로는 대시민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초기에 분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할 경우, 시민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완전한 정보 구축이후 단계적으로 대시민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지역중심의 완결성 있는 통합정보 수집

- 기존의 문화관련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높지 않은 이유는 중앙중심의 불완전한 정보가 관리되기 있었기 때문임
- 정보의 활용, 정보에로의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수를 기본으로 한 정보의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임

■ 지역문화정보 유관기관의 협력

- 결국 완결된 정보가 모이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주체의 참여가 기본이 되므로 지역문화정보화에 대한 기본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정보 표준화, 기존시스템 활용 방안, 정보의 공유방안, 업무절차와 같은 실무적 차원까지 수많은 논의 사안 존재
- 특히, 지역문화정보의 표준 빠르게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정보관리의 업무절차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것이 필요

■ 정보의 분석·가공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가용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분석·가공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정보 분석센터 등을 조기에 구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지역문화정보 분석센터는 중앙정부 관련 업무 뿐 아니라 지방정부 정보분석 지원업무를 병행하여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중앙-지역의 상생을 위한 시스템임을 조기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이는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는 좋은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통합시스템 전담 추진조직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빠르게 지정하여 사업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
- 타부처 정보시스템 사례에서도 핵심적인 성공요인중 하나는 전담조직의 구성과 효율적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역문화정보화 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 사례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대규모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의 협조, 재정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정보화 관련 법률에서는 관련 정보의 전자적 관리를 의무화 하거나 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채택하고 있는데, 문화관련 법률에는 전자적 관리와 관련 사항이 전무하여 시급히 개정 필요

제2절 기본방향 및 주요 기능

1.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 사업 비전 (안)

비전: 지역문화정보 공유를 통한 문화자치·분권 지원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정보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자치와 분권의 실현
- 문화의 다양성은 문화영역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의사결정과 선택을 지원하는 정보의 복잡성은 문화역량의 격차를 만드는 요인
- 지역문화통합정보화를 통해 적절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선택과 결정을 지원하여 문화자치와 분권 실현의 초석 마련

2.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 사업 목표 (안)

**지역과 현장에 기반한
포용과 혁신의 문화정보 순환체계 구축**

(1) 지역과 현장에 기반한

- 지역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 지역과 현장에 산재한 多영역의 문화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2) 포용과 혁신의

- 주민·전문예술인·문화기관 및 인력·사업체, 정부 및 지자체 등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뒤처짐 없이 공유·활용할 수 있고,
- 지역문화 정보의 공유를 통해 공공문화서비스·문화행정을 혁신 하고,

(3) 문화정보 순환체계 구축

- 정보 수집과 저장을 넘어 시민, 지역, 중앙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지역문화정보 순환체계 구축

3.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 방향

(1) 통합

■ 기존의 분절된 정보를 통합

- 사업별, 생산 주체별로 개별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수요자의 정보선택 확장
- 지역문화정보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완결성 있게 수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공유

■ 기존의 단절된 정보를 공유

- 중앙에 집중되어 유통이 안되는 정보, 지역의 정보로 방치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수요자의 정보접근 확대
- 연계가 필요한 정보와 수집이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연계와 수집 방법 모색

(3) 활용

■ 기존의 저장된 정보를 활용

- 저장되고 의미화 되지 못했던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가치 창출
-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의 완결성, 데이터 큐레이팅을 통해 정보활용 가능성 모색

4.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지향



그림 6-2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사업지향

(1) 정보관리

■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 종합정보

- 주요 문화시설, 문화정책, 장르중심으로 수집·관리 되던 정보를 지역(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 관련 종합정보체계로 개선

(2) 정보범위

■ 가치사슬 중심의 문화예술 종합정보

- 문화생태계 각 영역에서 개별 관리되던 정보를 문화생태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치사슬 중심의 종합정보체계로 개선

(3) 정보주체

■ 모든 주체가 문화정보주체로 참여

- 수직적 정보 수집·관리 체계를 수평적 참여와 활용 구조로 개선

(4) 정보활용

■ 아카이빙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정보 생산

- 정보의 단순 아카이빙을 넘어 의사결정과 선택에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정보활용 체계로 개선

5.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 추진과제 (안)

■ 구축방향

- 분산된 정보의 통합, 단절된 정보의 공유, 저장된 정보의 활용에 초점

■ 추진과제

- ① 지역문화데이터 통합 수집·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② 데이터 기반 분석정보 서비스 체계 마련, ③ 중앙-지역·민-관 문화정보협력체계 구축, ④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표 6-2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환경개선 과제

추진과제		세부 과제
시스템 구축	지역문화데이터 통합 수집·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차별화 전략 수립 • 지역문화통합정보 표준안 및 수집 가이드라인 수립 • 지역문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BPR/ISP 수립
	데이터 기반 분석정보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문화 공간지리정보 서비스체계 구축 • 지역문화정보 분석 전담조직 구축
기반 구축	중앙-지역·민-관 문화정보협력체계 구축	• 지역문화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체계 마련 • 지역문화정보 수집체계 구축 • 지역문화정보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확보 •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VII

구축 방향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제1절 지역문화데이터 통합 수집·관리 및 표준화

1.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차별화 전략

(1) 배경 및 필요성

- 문체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문화정보시스템이 이미 다수 존재하므로 본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을 체크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정보원에서 통합시스템 형태로 문화포털, 문화데이터 광장, 다부처 연계 서비스 플랫폼,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음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차별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담보함은 물론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화 사업 중복·연계 검토

■ 기준

- 행자부(2017) ‘정보화 사업 중복·연계 검토 가이드’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행정서비스, 관리 데이터, 정보시스템 수요자 등을 제시하고 최소 2개 이상에서 동일 조합이 있을 경우 중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표 7-1

중복성 검토 가이드 라인

영역	항목	내용	분류기준
목적	행정서비스	사업이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서비스참조모델(SRM)
	업무영역	사업이 지원하는 기관업무기능	정부업무분류체계(BRM)
기능	데이터	관리하는 데이터	데이터참조모델(DRM)
대상	수요자	사업이 지원하는 수요자	수요자 분류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17).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가이드

■ 검토결과

- 목적에 있어서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은 정책의사결정 지원 목적, 공공문화정책 영역, 지역중심 문화통합데이터, 일차적 수요자가 정부관계자 이므로 모든 기준에서 다른 시스템과는 차이를 보임

표 7-2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 결과

영역	항목	지역문화 종합시스템	문화포털	문화데이터 광장	다부처연계 서비스플랫폼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목적	행정 서비스	정부 內 지원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	대국민 서비스
	업무 영역	공공문화정책	문화산업 정책	문화산업 정책	문화산업 정책	문화산업 정책
기능	데이터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 공연전시 교육체험 정책정보 인력·단체 행정정보(법, 조례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공연전시 전통문양 행사축제 교육체험 문화영상 문화통계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도서 정책지원 문화홍보	메타데이터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도서 정책지원 문화홍보)	관광 기상 문화예술(공연,전 시, 축제, 행사) 여가/취업 문화시설 도서이용 문화통계
대상	수요자	정부 內	국민	국민	-	국민

주: 다부처연계서비스 플랫폼은 3단계(2020년) 구축단계로 오픈된 상태가 아님
문화체육관광아빅데이터 플랫폼은 과학기술부 과제로 진행하고 있음

■ 데이터 품질

- 데이터 수집방법 및 서비스 특징도 전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데이터 연계와 오픈 API에 의존하고 있어 중앙정보위주의 수집과 정보의 품질이 떨어지는 특징이 나타남

표 7-3

기존 문화관련 시스템 데이터 특징

영역	문화포털	문화데이터 광장	다부처연계 서비스플랫폼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 및 연계	데이터 연계	오픈 API	플랫폼 참여기관 제공
데이터 서비스 특징	링크 및 메타정보 서비스	영역별 데이터가 서비스되지 않고 있음	공개 안됨	시범서비스 (데이터제공 안됨)

(3)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차별화 전략

■ 포지셔닝 전략

- 중복성 검토 가이드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중앙-지역, 부분-통합 차원으로 살펴 보면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기존의 문화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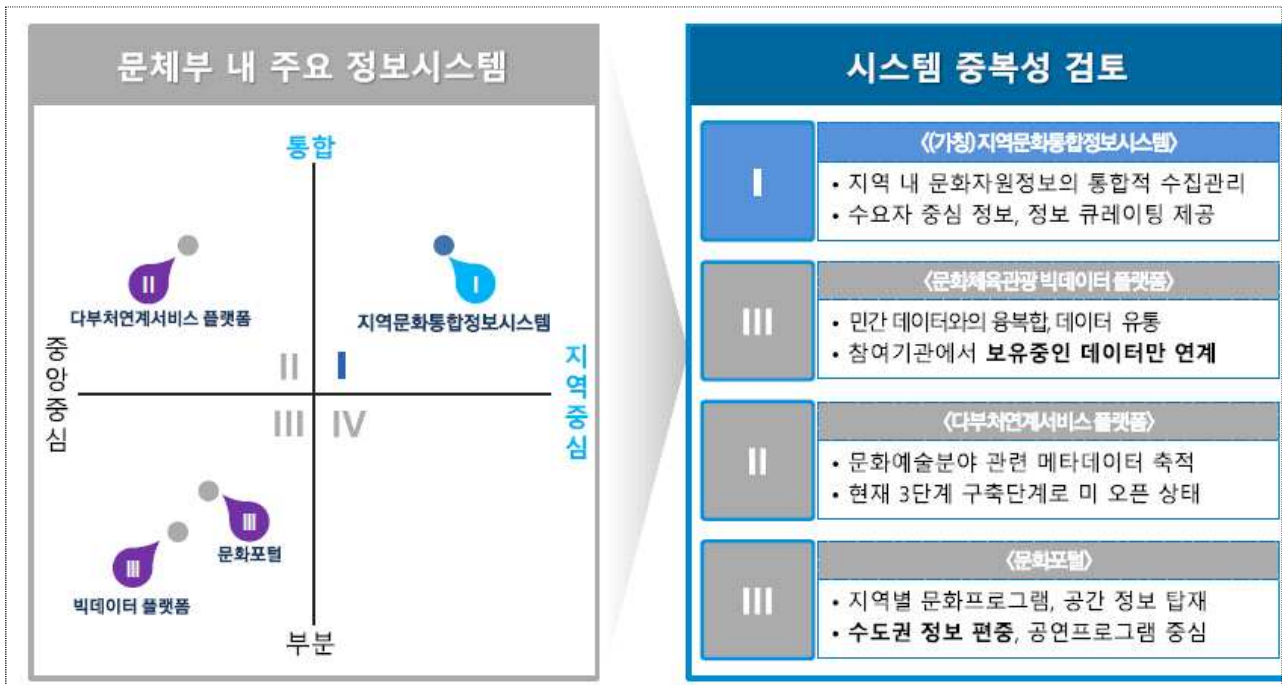


그림 7-1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의 포지셔닝

■ 차별화 영역의 구체화

-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앙-지역의 정보 균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 정보의 통합, 분석활용을 중심으로 정보 큐레이팅 강화로 차별화

표 7-4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차별화 전략

차별화 영역	지역문화통합정보 시스템	기존 시스템
정보의 완결성	지역문화의 범위에서 완결성 추구	수집 가능한 파편화된 정보
정보의 균형성	지역과 중앙의 정보 균형	중앙 중심의 정보수집, 지역의 참여 미미
정보의 다양성	지역문화정책 영역을 포괄하여 정보 공유의 다양성 확대	일부 공연, 행사 중심의 정보 수집·제공
정보의 활용성	정보 큐레이팅으로 정보 활용	단순한 문화데이터 아카이빙

2. 지역문화통합정보 표준분류체계 및 가이드라인 구성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문화정보가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수집 주체간의 정보수집 기준, 범위가 달라 정보를 호환·통합하거나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품질이 상이함
 - － (중앙) 문화 관련 데이터는 ‘문화예술정책실’ 내 3 정책관실 11과와 함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 관리
 - － (지역) 지역에 따라 성과관리 측면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정보의 호환성이 낮음
- 지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관리 역량의 차이로 정보화 수준의 격차 발생
 - － 문화정보의 요소의 명칭, 정의형식, 규칙에 대한 원칙의 표준화를 통해 일정부분 정보역량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역문화 정보수집·관리의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보관리의 편리성을 높이고 호환성, 구체성, 완결성 있는 정보의 수집이 필요

(2) 추진방안

■ 지역문화정보 표준 분류체계 구성

- 분류체계 구성 방향
 - － 지역문화생태계의 핵심구성요소인 문화시설, 프로그램, 문화인력, 이용자정보와 행정정보인 예산, 법률, 통계 정보 등을 중심으로 개발
 - － 해당 업무 수행자의 숙련도 및 정보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 지역문화정보 표준 분류체계(안)
 - －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정보 현황과, 지역문화정보의 활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 분류체계를 제안

표 7-5

지역문화정보 표준 분류(안)

구분	대상		영역	연계 가능 데이터	유관기관	갱신 주기	수집방안
시설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공공/민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운영팀	반기별	지자체** 입력 (문화기반시설총람 대체)
		박물관·미술관	공공/민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전국 박물관·미술관 실태조사	한국박물관협회/한국 사립미술관협회		
		문화예술회관	공공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문예회관	시설 내 인력 / 연합회		

프로 그램	생활문 화 시 설			문화원	공공	운영현황 조사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한국문화원연합회	실시간	① 기존 시스템 연계 및 통계데이터 수집 → ②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관리의 자료 분석
				문화재단	공공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지역문화재단실태조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생활문화센터	공공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의 집	공공/ 민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한국문화의집협회		
				작은도서관	공공/ 민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시스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운영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공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포털사이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공 연 전 시	중 앙 보 조	공 연 예 술 프 로 그 램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공공/ 민간	지역문화진흥원 자료	지역문화진흥원	분기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공/ 민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자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각 시설·기관	공공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포털사이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자 체 기 획	각 시설·기관	각 시설·기관	공공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포털사이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교 육 체 험	중 앙 보 조	학 교	예술 꽃 씨앗 학교	공공/ 민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료〉 ·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연구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만족 도 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 회	꿈다 락 토요 문화 학교					
		자 체 기 획	각 시설·기관	각 시설·기관	공공	각 공공기관·지자체·문화재단·각종 협회·연합회 자료	지자체 및 각 기관		

표 7-6

지역문화정보 표준 분류(안) (계속)

구분	대상		영역	연계 가능 데이터	유관기관	갱신 주기	수집 방안
행사 축제	중 앙 보 조	지자체 주관 축제· 행사 등	공공	각 공공기관·지자체·문화재단· 각종 협회·연합회 자료	지자체 및 각 기관	분기별	① 기존 시스템 연계 및 통계데이터 수집 → ②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관리의 자료가
		각 시설·기관					
	기 타	생활문화 관련 프로그램					
		각 시설·기관					

		기획						
인력 단체	인력	예술인	전문 예술인	민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분기별	공 및 자체분 석
		매개인력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공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1회	
			문화이모작사업	공공	문화이모작사업 자료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예술 교육사	공공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용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문화관광 해설사	공공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시스템	한국관광공사	분기별	
			자원 봉사자	공공/민간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한국문화원연합회		
		교육인력	예술강사	공공/민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통합운영시스템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전문인력	학예사·사서	공공	국립중앙박물관·한국도서관협회 자료	국립중앙박물관·한국도서관협회	연1회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민간	전문예술법인·단체 포털사이트	예술경영지원센터	분기별		
		사회적기업	민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포털사이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행정	문화 관련 법·조례		공공	의안정보시스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시스템 관리기관	분기별		
	예산	문화 관련 예산	공공	열린 재정, 지방재정365		실시간		
		문화 관련 보조금 사업	공공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실시간			
	문화 관련 연구보고서		공공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비정기		
통계	승인	문체부 승인통계	공공	국가통계포털(KOSIS), 문화센터	통계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시간		
	타 부처 승인통계							
	비승인	각종 현황자료	공공	정부부처, 공공기관, 문체부 산하기관 등	각 기관	비정기		
빅데이터	이용자 정보		공공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	예술경영지원센터	실시간		
			민간	민간포털(카카오 등) 데이터	민간기업			
	소비 지출액		공공	문화비 소득공제 데이터	한국문화정보원, 국세청			
			민간	카드회사 빅데이터	민간기업			
	복지		공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데이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1회		

■ 지역문화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통해서 자료수집의 체계화 및 익립 주체의 지역문화통합 정보시스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수집 가이드라인 포함 사항) 정보 수집 및 입력의 지침, 지역문화정보의 범위, 조사 내용, 유의사항 등 제시

■ 비정형 문화데이터의 표준화 방안 마련

- 데이터 요소별 품질관리 원칙 수립 및 데이터 관리 및 품질수준진단 매뉴얼 제작과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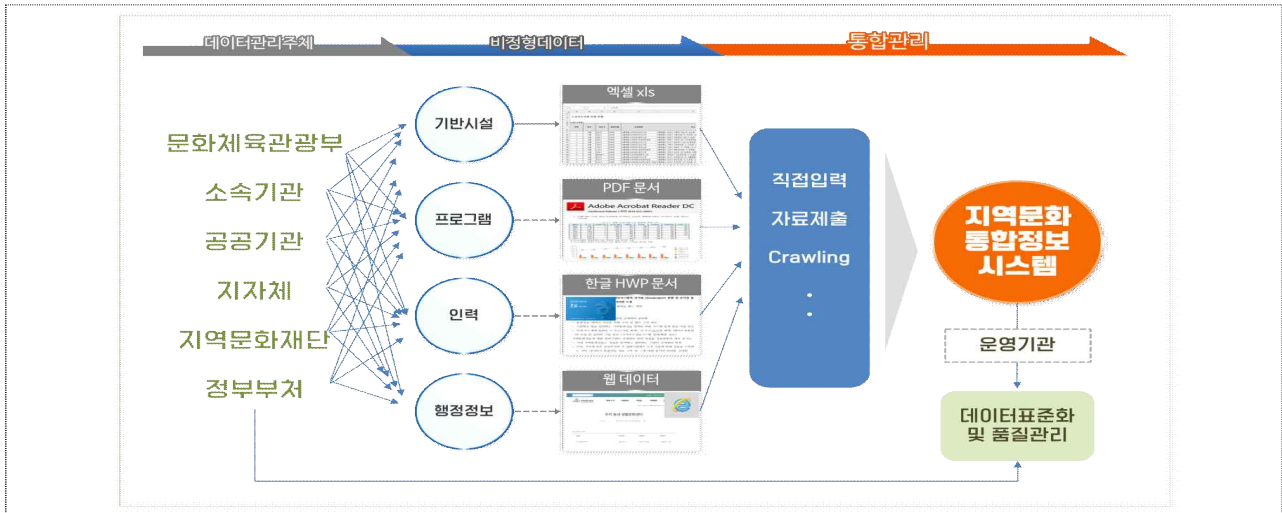


그림 7-2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웹사이트 메인페이지

(3) 참고사례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향토문화표준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각 자치단체의 향토문화전자대전에 적용하고 있음.
- 이 분류안에서 시군지(또는 시군사) 편찬시 활용되어 온 분야별 분류를 기본으로 9개 대분류, 38개 소분류 항목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였음

표 7-7 향토문화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소분류	내용
삶의 터전 (자연과 지리)	자연환경	● 위치와 면적, 지형 및 지질, 기후
	동식물	● 동물상, 식물상
	마을경관	● 취락 및 주거지, 풍수지리
	향토지	● 지리지·읍지, 고지도, 시군지
삶의 내력 (지방의 역사)	선사	
	삼국~통일신라	
	고려	
	조선	
	개항기(1876~1910)	
	일제강점기	
	현대	
삶의 자취 (문화유산)	선사 유적 및 유물	
	건축유적	● 성곽, 관방유적, 궁궐, 관아유적, 교통유적, 유교 유적, 누정,

		비석, 고가, 능묘, 제단
	조각	• 불상, 능묘조각, 기타조각
	서화	• 회화, 서예, 금석문
	공예	• 공예품, 요지, 공예기술
	기타	
삶의 주체 (성씨와 인물)	주민	
	성씨	• 성씨 집단, 친족 집단
	인물	• 역사인물, 근현대인물 (1910~)
삶의 틀1 (정치와 행정)	지방정치	• 지방정치 연혁, 의회활동, 정당, 역대 선거
	지방행정	• 행정 연혁, 시·군·구 행정, 읍·면·동 행정, 행정기관 및 단체
	사법 및 치안	• 사법, 치안 및 소방, 교도활동
	지역사회운동	• 현대사회운동, 환경운동, 교육운동
삶의 틀2 (경제와 산업)	총론	• 지역경제 현황, 산업인구 분포, 기반시설, 특산품
	농림수산업	• 농업, 임업, 잠업, 양봉업, 축산업, 수산업
	광공업	• 광업, 공업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보험업
	상업 및 서비스업	• 상업, 상가와 시장, 대형 유통, 무역업, 서비스업
	교통, 통신 및 건설업	• 교통, 통신, 건설업, 기간시설
삶의 내용 (종교와 문화)	종교	• 불교, 유교, 개신교, 천주교, 고유종교, 외래종교
	교육	• 유아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	• 문학 활동, 예술 활동, 문화시설, 여가시설, 문화예술단체, 지역 축제 및 행사
	언론	• 신문, 출판, 방송, 기타
	체육	• 체육활동 및 실적, 체육시설, 체육단체
삶의 방식 (생활과 민속)	생활	•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건강생활
	민속	• 생업과 세시의례, 민간신앙, 평생의례, 놀이와 오락, 민속예술
삶의 이야기 (구비전승과 어문학)	지명유래	• 행정지명, 자연지명
	어문학	• 전설 및 민담, 설화, 민요, 시가, 산문, 언어

3.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BPR/ISP 수립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문화정보가 정보칸막이에 의해 개별 관리·활용되어 정보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통합 관리 필요
- 지역문화통합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기술(IT)을 적용하고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해결책을 찾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필요
 - － 기존의 지역문화정보 업무, 기존의 지역문화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보 모형과 정보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행계획 수립 필요
- 기존의 지역문화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문화정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수행방법 구상 필요
 - － 문화 자치·분권과 국민 생활 속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지역문화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가공·유통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혁신적인 업무수행 방법 필요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해 지역문화통합정보화의 내용적·방법적 실행에 대한 BPR/ISP 사업 추진 필요

(2) 추진 방안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BPR/ISP 컨설팅 수행
 -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연구에서 제안된 지역문화정보 표준 분류,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방향 등에 기반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발주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BPR/ISP 추진의 주안점
 - － (시스템 효율성) 지역문화통합정보의 수집, 공유, 활용 등 지역문화통합정보화시스템 전체를 효과적/실용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 (업무 효율성) 지역문화정보 관리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지역문화정보관련 기관의 공통 업무 협업체계 구축
 - － (데이터 활용성) 지역문화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표준 등을 적용하여 활용성, 융합성, 연계성 강화
 - － (서비스 활용성) 지역문화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고려한 지역문화정보관리 체계 구축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BPR/ISP 제안요청서 포함 사항

- 지역문화정보 관련 환경분석
- 지역문화정보화 관련 주체들의 업무절차 표준화 방안 마련
- 지역문화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업무프로세스 설계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기본설계
- 지역문화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기본설계
-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표준(안) 제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관리규정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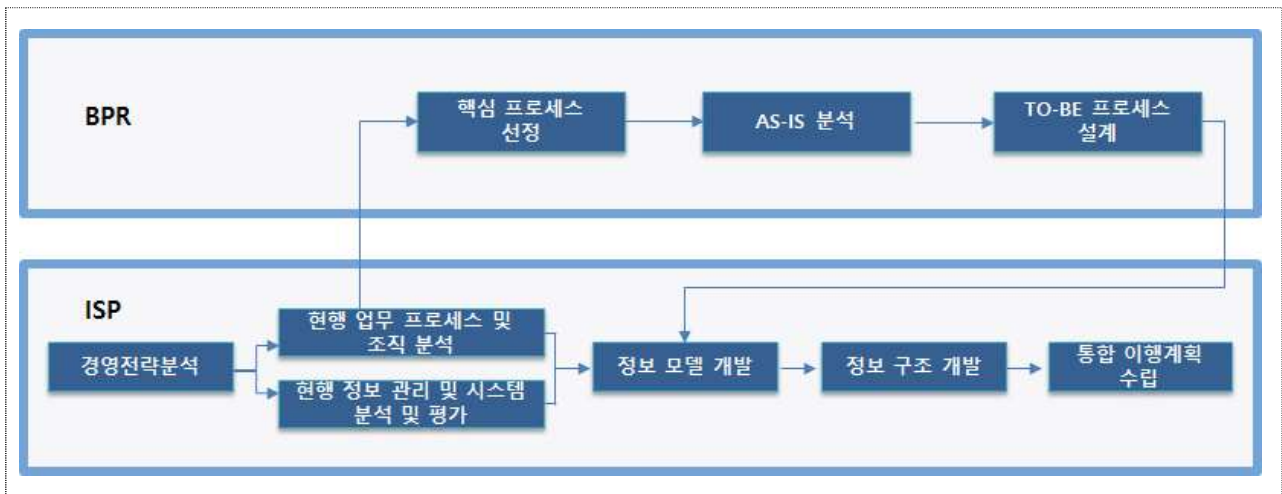


그림 7-3

BPR/ISP 수립 절차

(3) 지역문화통합정보화 BPR/ISP 제안요청서(안) : 부록 참조

제2절 데이터 기반 분석정보 서비스체계 구축방안

1. 지역문화 공간분석체계 구축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정보화는 단순히 자료의 전자적 입력, 축적 및 전달의 차원을 넘어 정보의 연계·통합, 정보의 분석·가공·활용, 서비스 고도화, 이로 인해 가능한 업무 재설계 등 조직과 업무의 혁신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음
 - － 분석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방식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향후 스마트시티 추진 역량과도 밀접하게 관련됨
 - － 다양한 부처, 각종 기관에서 웹 기반 공간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융복합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지역문화정보는 통합이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활용도 미미한 상태임
 - － 현재 각 지자체 및 기관들에서 개별적으로 지도 및 유사 공간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중이나 단순 이미지 기반의 현황제시에 그치고 있음
- 정책 의사결정 및 문화서비스의 제고, 수요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기존데이터의 시각화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필요

(2) 추진 방안



그림 7-4

데이터 기반 지역문화 공간분석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

■ 통합정보 구축 및 갱신

- 다수의 비정형 문화정보의 정확성/신뢰도 개선 필요

■ GIS활용 시스템 구축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GIS기반의 문화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가능

■ 미래 신기술 대응

- 사물인터넷(IoT), AR, VR 기술 접목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가능

■ 활용 분야

- 대국민용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업무시스템
- 현재 산재된 대국민용 문화정보를 하나의 통합서비스에서 손쉽게 정보를 구득하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

(3) 추진 필요사항

■ DB수집 및 관리 및 표출 방안

- 현재 시각화 대상 범위 검토에 의한 DB특성 및 그에 따른 특성 파악을 바탕으로 기존 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확보 방안 필요
- 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갱신 구축 필요
- 현재 데이터의 정결성 정도 파악
- 데이터 중복 관리로 인한 데이터 수집 및 구축비용 최소화 고려 필요
- 데이터 중복 관리로 데이터 불일치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 필요
- 문화정보의 유관기관에서 수집 및 구축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의 유용한 데이터 발굴 및 연계 분석 필요
- 다차원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 및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성 필요

■ 시스템 구축 및 연계활용 방안

- 행정망 기반에 운영되는 브이월드 배경지도의 적극적인 활용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행정공간정보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연계, 활용 필요

- 향후 각 기관으로부터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증가하고 데이터 양이 증가할 경우, 높은 관리 수준이 요구되므로 연계통합방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문화정보 연계 표준화 필요
- 정보의 최대 및 최적 활용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필요
- 기존 서비스와 현행 서비스와의 연계활용 방안 및 향후 용도 제시
- 다양한 방식의 정보제공 방식(OpenAPI, FTP, 메일, 웹 등) 고려 필요

■ 조직, 법, 제도적 차원의 방안

- 현행 정보화 수립방안에 필요한 법/제도적 규정 필요
- 문화정보 수집 및 활용,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조직의 생성 및 운영 방안 모색
- 문화정보 수집에서 시스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그룹별 중요도 및 담당기관의 역할 및 정보 공유체계 마련 필요
- 제약사항이 없는 정보의 공개 시에도 정보 공개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 문화정보 확대 및 고도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계획 필요
- 문화정보 장기 트렌드 분석을 위한 법률적 정보 보관 주기 검토 필요
- 개인정보, 위치정보 및 문화정보를 융복합하는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공개 범위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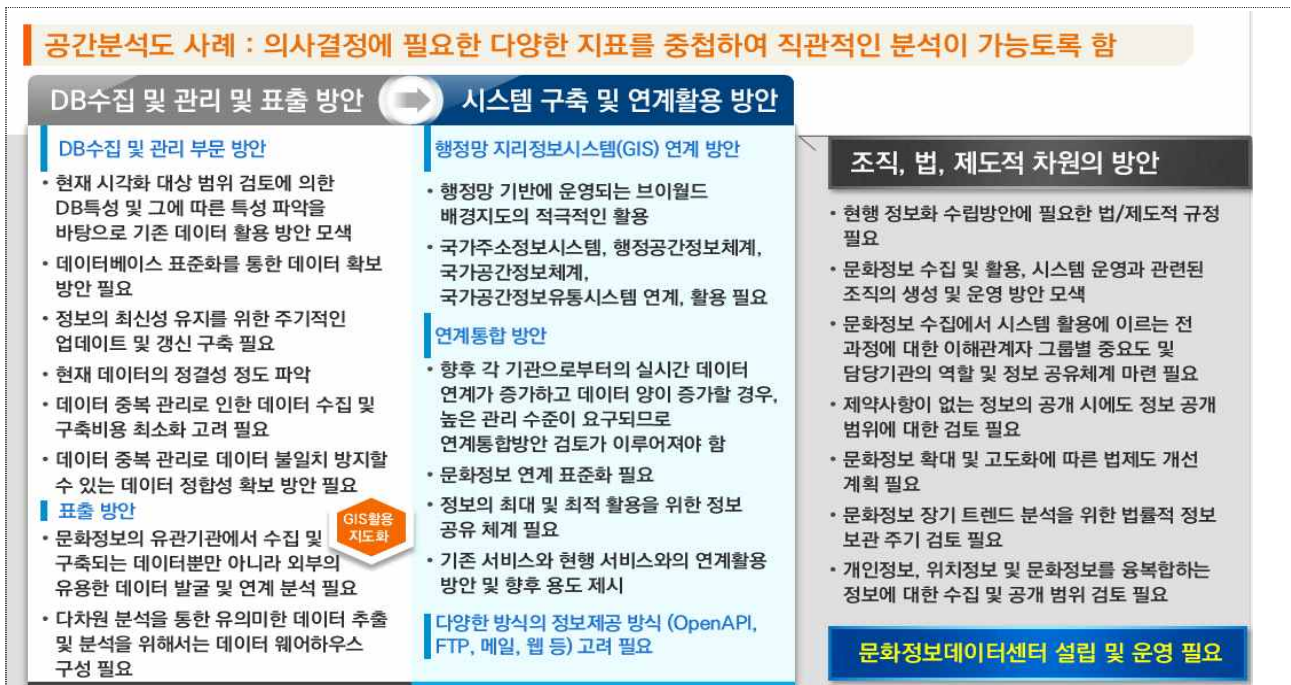


그림 7-5

지역문화 공간분석체계 부문별 필요사항

(4)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예시)

■ 기본현황도 서비스

- 기본 현황도는 인구, 재정 등 일반적 특성의 공간적 차이를 보여주거나 지역문화 대상 기관의 위치를 토대로 분포 위치를 확인하는 지도를 의미
- 공간적 범위 : 전국 혹은 주요 광역시 (시군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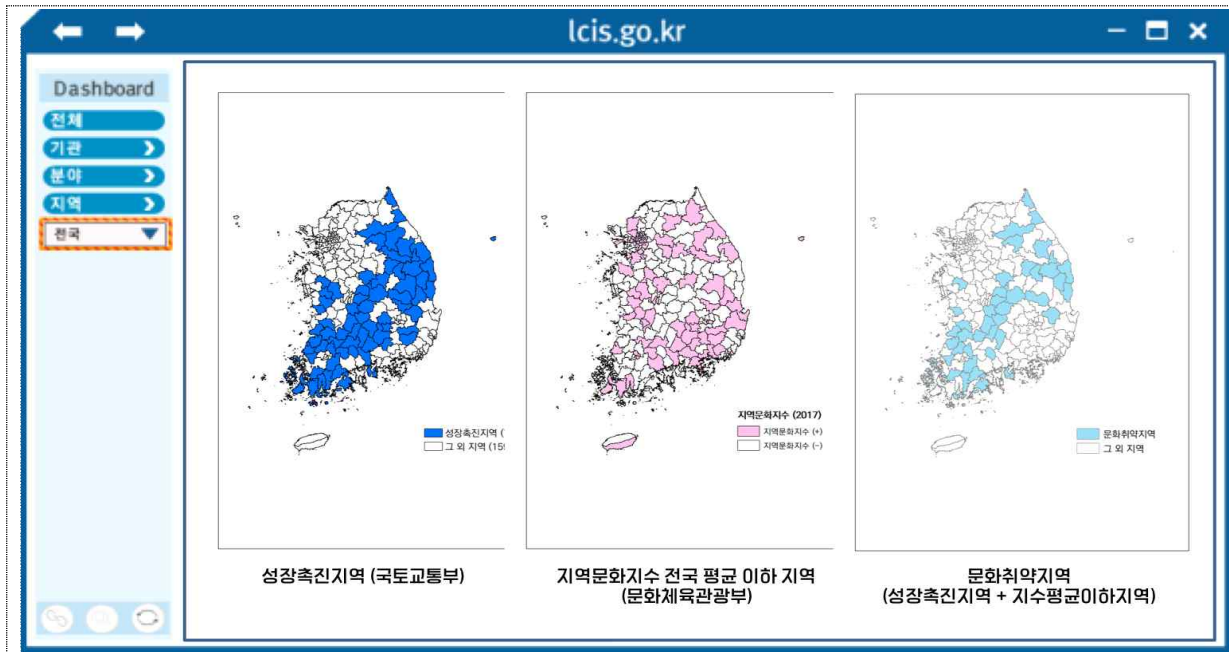


그림 7-6

문화취약지역(2017)과 지역문화지수(2017) 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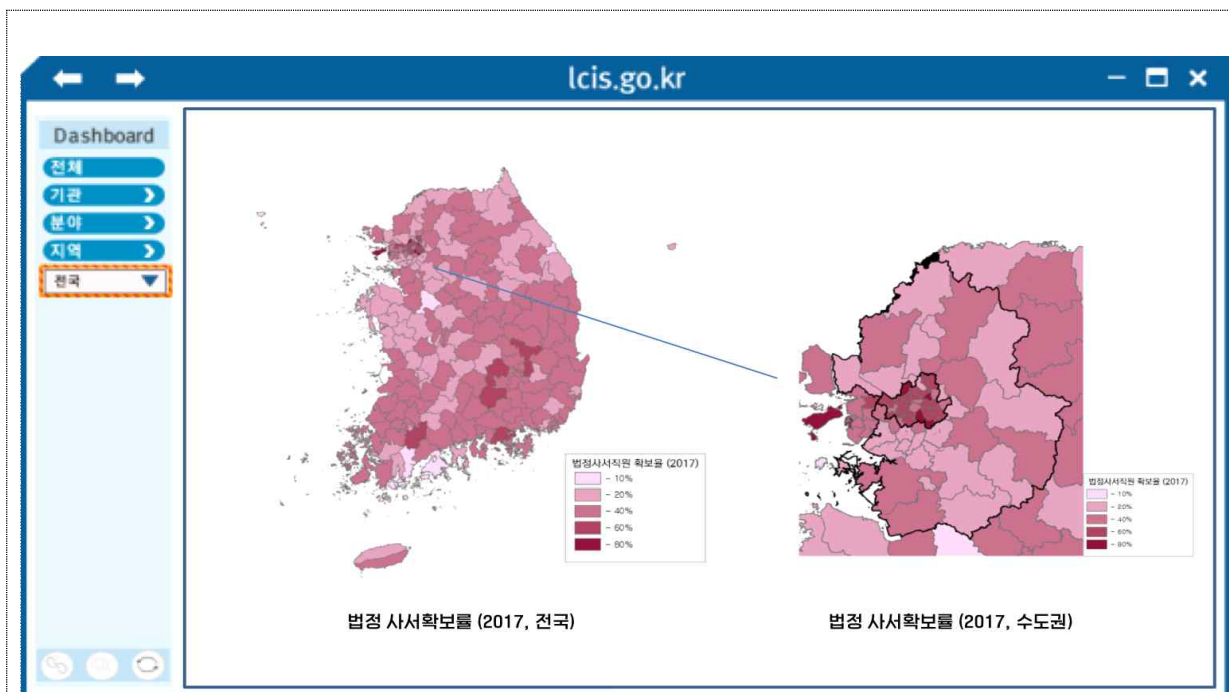


그림 7-7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2017)

■ 시계열 분석 지도

- 공간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 지도로서 시기별로 데이터 변화를 보여주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 지도가 의미 있음
- 공간적 범위 : 전국 혹은 주요 광역시 (시군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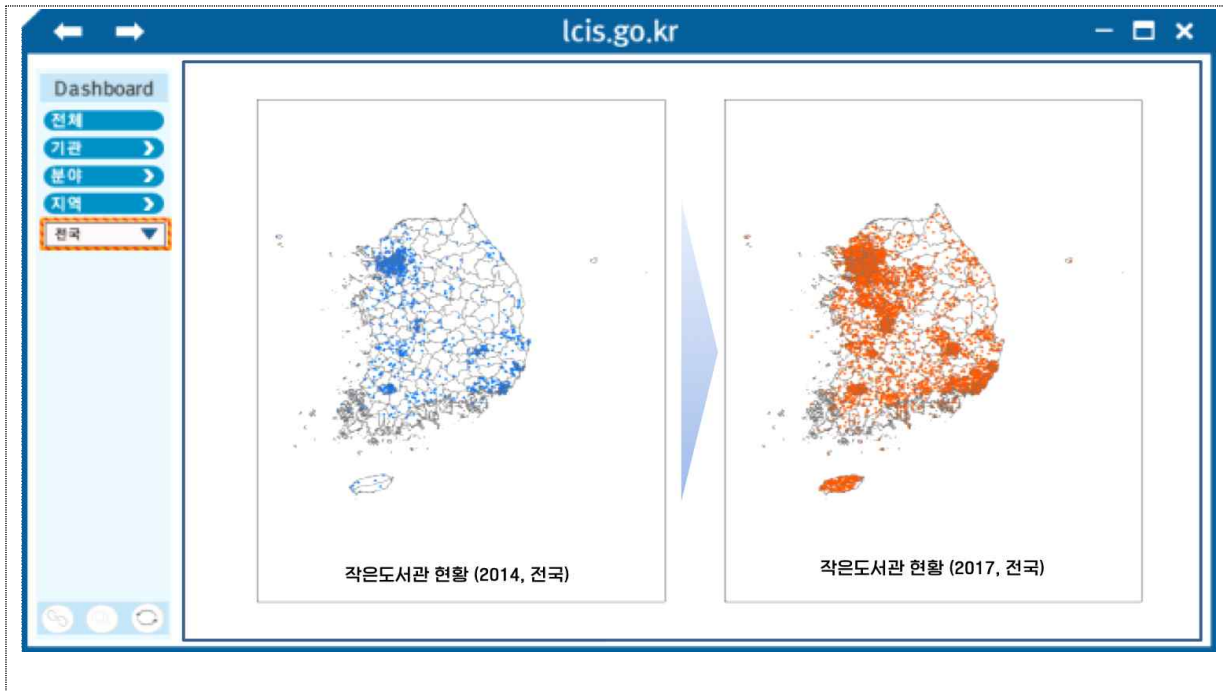


그림 7-8

국내 작은도서관 분포 비교 (좌-2014, 우-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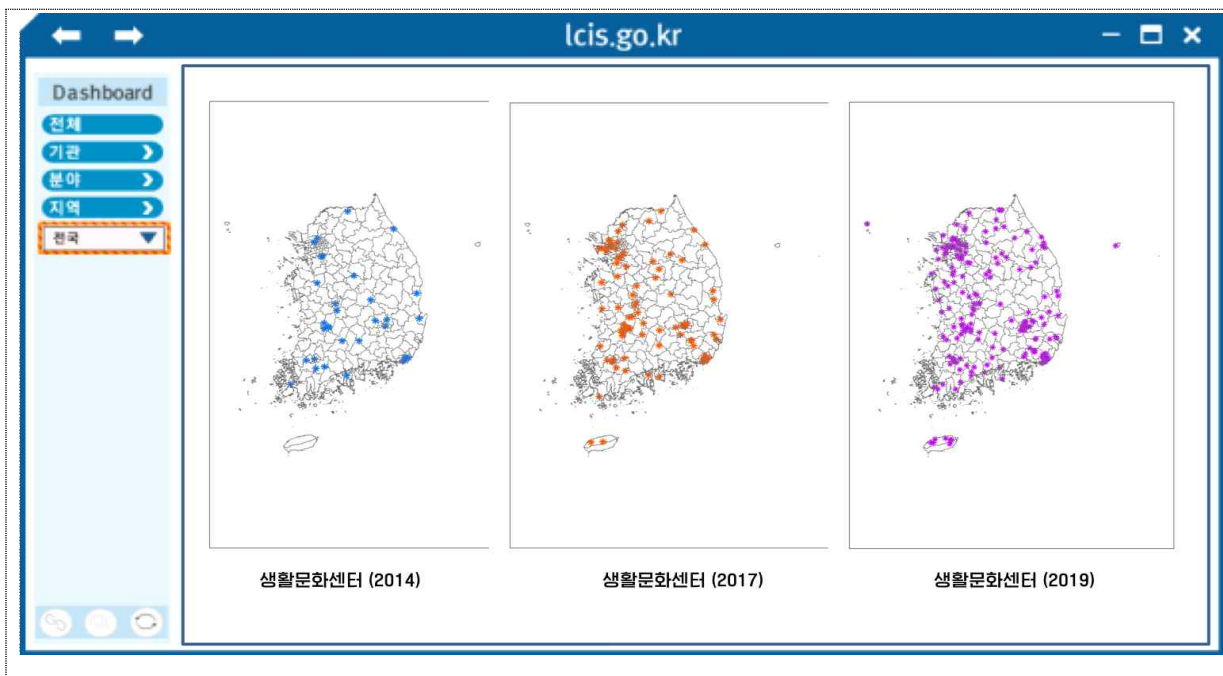


그림 7-9

전국 생활문화센터 (2014, 2017, 2019)

■ 2개 이상의 공간정보 연계분석

- 공간 분석도는 2개 이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로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지표를 시각적으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중첩하여 보여주는 기능
 - － 사례로서 지역문화지수 및 문화취약지역 등을 지도화하여 해당 지역이 어떠한 요소로 인해 문화취약지역이 되었으며, 향후 어떠한 조치를 통해 보완될 수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융복합적인 공간분석 지도를 제시
- 공간적 범위 : 전국 혹은 주요 광역시 (시군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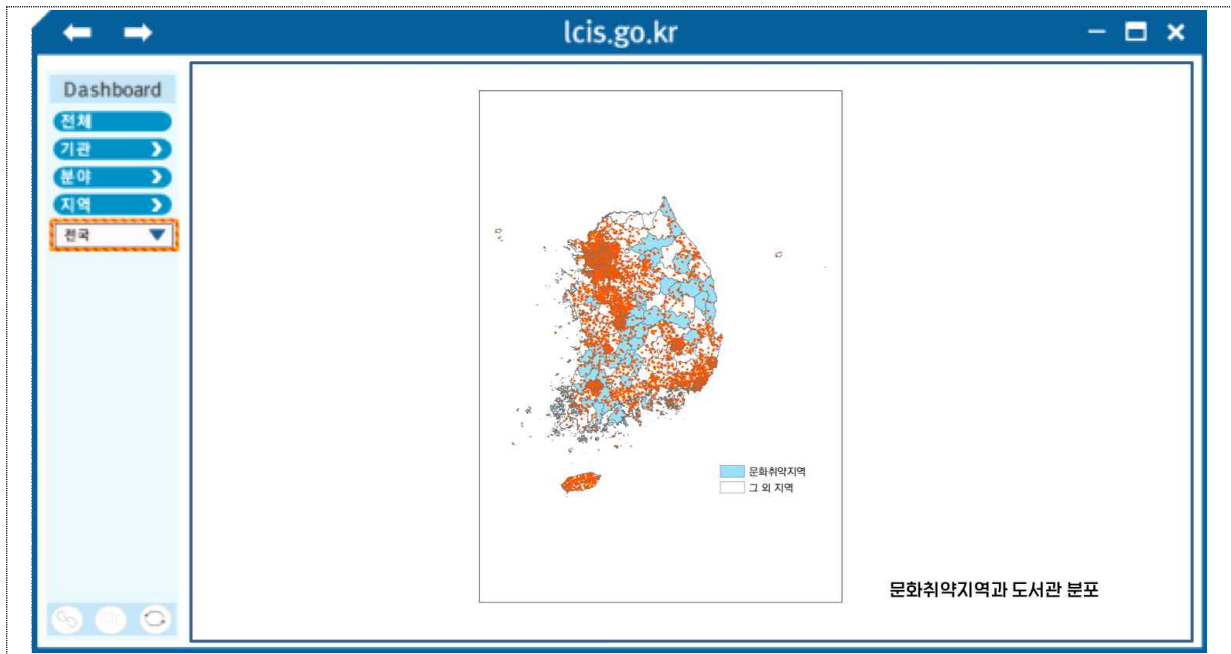


그림 7-10

문화취약지역과 작은 도서관(좌) 및 평생학습관(우)의 분포 상관 관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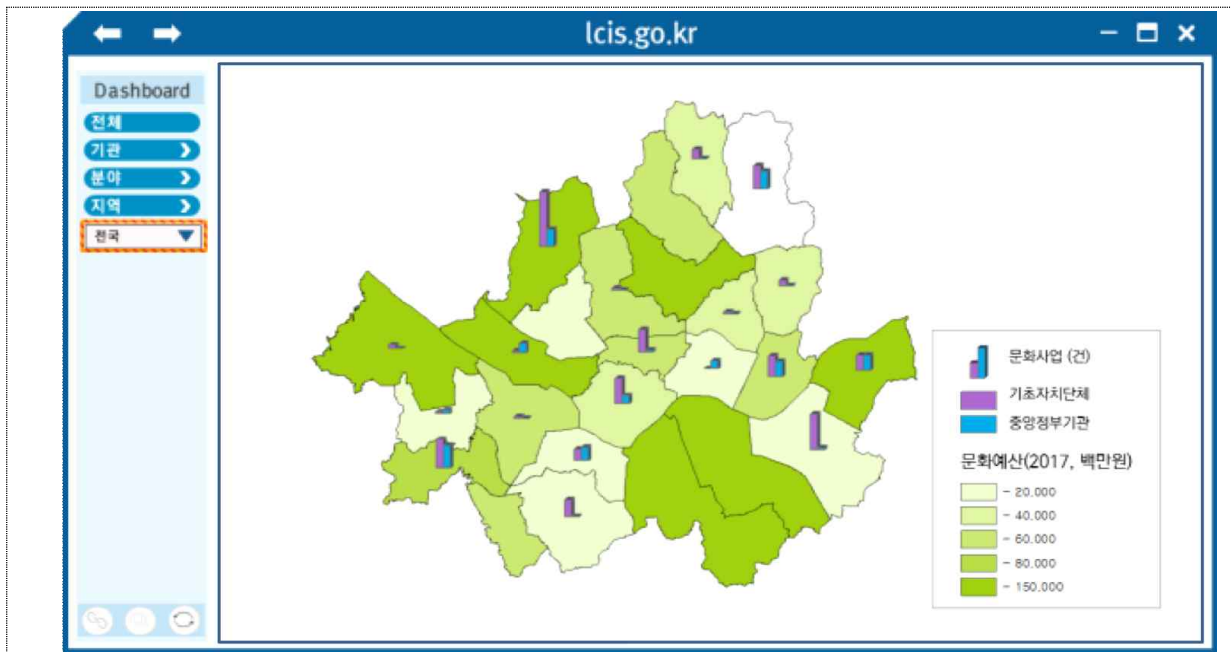


그림 7-11

서울지역 문화예산과 문화사업 건수 비교

2. 지역문화정보 분석전담조직 지정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 미흡

-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 정책 분야에서도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 확대
 - － 데이터 3법의 통과 등 데이터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 체계 부재

- 문화 분야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데이터는 파편적으로 저장관리 되고 있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은 한계
 - －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사업 등 파편화된 데이터의 통합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데이터 분석체계 미흡

- 문화 분야 사업의 복잡 다양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요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 요구 등 데이터의 관리·활용 필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담체계 구축이 시급
 - － 데이터 분석기관의 부재로 데이터의 종합적, 다각적 분석이 어려움
 - － 최적화된 분석의 부재로 데이터 기반 문화 정책수립 및 예산계획이 요원하고, 실시간 분석정보의 부재로 현안에 대한 원인분석, 문제해결의 지연이 지속되고 있음

(2) 추진방안

■ 전담조직

- 문화관련 연구기관 등에 지역문화정보 데이터 분석센터 설치(지정)

■ 주요기능

- 지역문화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및 학술연구 지원 기능
 - － 지역문화데이터 분석, 지역문화데이터 분석 모델링, 지역 데이터 연계·활용 사업 진행

표 7-8

지역문화정보 분석전담 조직의 주요 기능

기능	내용	목적
지역문화 시장 분석	공공/민간 문화예술 수요, 공급, 일자리 분석 예측, 실시간 분석 제공, 문화정보의 시각화	정책의사 결정지원
데이터 기반 지역문화정책 사전평가체계 개발 및 운영	지역별 인구, 유동인구, 특성 등을 예측 결과 도출, 중장기적으로 지능형 문화정책 시뮬레이터 모델 개발 및 관리))	정책의사 결정지원
지역문화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기반 관리	문화정보 분류항목에 대한 추가/수정/삭제 업무 문화데이터 분석모델 설계 및 개발 문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등	데이터 기반 체계 확립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및 활용	개인선호, 활동 이력 등을 개인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의 연계·활용한 빅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및 수요 맞춤형 서비스 기반 구축	정책 체감 확대
데이터 활용 협력	외부 보유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협력사업, 데이터 활용의 선순환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민관협력 정보공유

(3) 참고사례

■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S(National Health Insurance Sharing Service)

- NHISS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분석센터로 국민건강정보 자료를 활용한 정책 및 학술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NHISS를 통해 표본 연구 DB, 맞춤형 연구 DB, 의료이용 지표 등을 제공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및 학술 연구지원
 - －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자료 공개 처리 지원
 - － 근거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

■ (국외) 영국 ESRC(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 ESRC(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는 UK 연구회 산하 7개 기관 중 하나로 1965년 설립되었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기초, 전략,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공과 산업계의 빅데이터를 사회적 자원으로 주목하고 연구자들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 지역현안, 산업, 시민참여 분야 3개 데이터 분야 9개 센터를 대학, 연구원, 기업 등이 협력하여 운영
 - － (공공)영국 각 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대학교에 행정 데이터 연구 센터(ADRC)를 설치하고 통계청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제공·관리
 - － (산업) 산업니스·지자체 빅데이터 센터, 도시빅데이터센터 등을 설립을 지원하고 대학에서 가공하여 공공·민간에 제공하고 연구에 활용

－ (제 3섹터) 제3섹터(시민참여 분야) 데이터 및 소셜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시민 사회 파트너십 프로젝트 추진

 ESRC Business and Local Government Data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Essex 산업계와 지방정부 데이터 연구센터 • 목표 : 지역 경제 성장, 취약계층 지원, 환경 인프라 • 파트너 : University of East Anglia, Essex, Kent, London School
 Consumer Data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Leeds and University College London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소비자 데이터 연구센터 • 목표 : 소비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영국 연구의 미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 및 경제 성장 촉진 • 파트너 : 런던 대학 (UCL), 리즈 대학, 리버풀 대학 및 옥스퍼드 대학
 Urban Big Data Centre	University of Glasgow 교통, 주택, 교육, 건강 등 도시 관련 데이터 연구센터 • 목표 : 지역 및 세계의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 빅데이터 사용과 공유 솔루션 개발 • 파트너 : 글래스고 대학 및 7개 대학

그림 7-12

영국의 ESRC 데이터 연구 센터

제3절 지역문화정보 순환 기반 구축

1. 지역문화 정보거버넌스 체계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정보의 통합수집 및 연계를 위해 대상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 및 역할의 구체화 필요
 -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성패는 지역문화정보의 포괄성, 완결성과 직결되며 이는 지역문화정보관리 및 제공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
- 지역분권과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보거버넌스 체계 필요
 -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들)간의 협력체계 구체화 필요
 -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된 백오피스(back office)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연결된 조직으로 변화

(2) 추진 방안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관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의 직할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기관(주관기관) 지정 및 업무별 분업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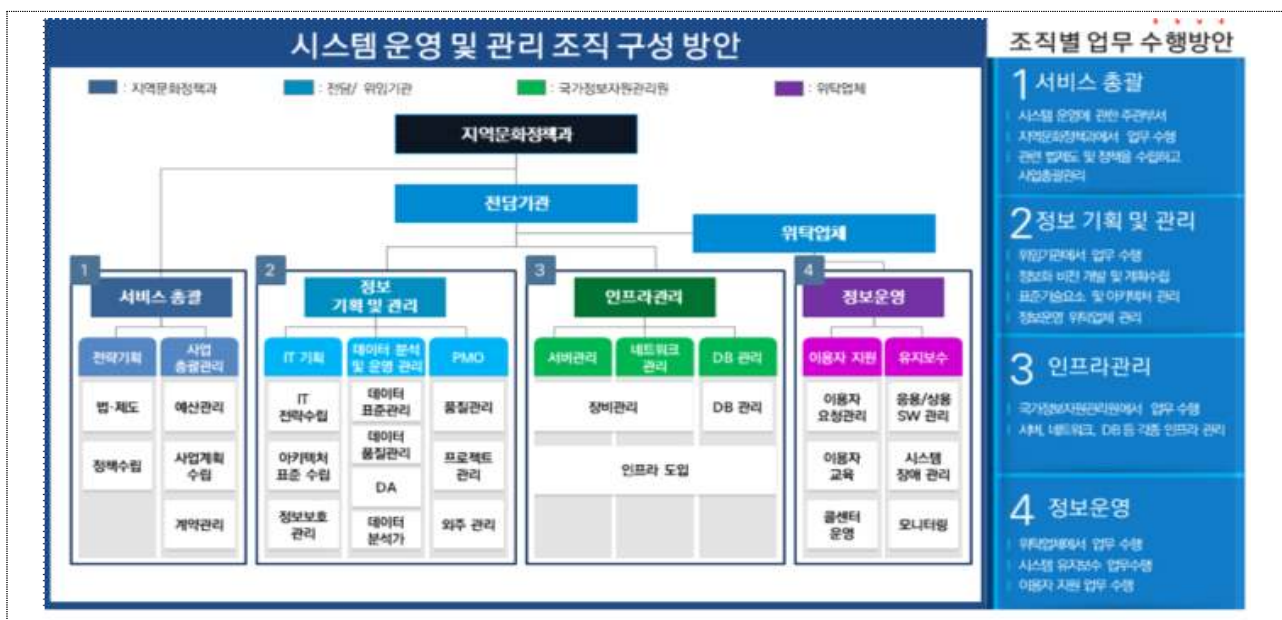


그림 7-13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조직 구성안

■ 조직 운영 검토

- (문체부 직접 운영) 문체부 내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운영비용이 없고 업무와의 연계성이 높은 장점은 있지만,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업무부담등이 높은 단점이 있음
- (소속기관 위탁운영)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중 정보화전담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기술적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 (별도 전담조직)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조직의 전문성이 가장 높아 운영의 효과가 높을 수 있지만, 기존 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관계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신규 조직 신설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표 7-9

시스템 관리운영조직 대안 검토 결과

구분	문체부 직접운영	소속기관 위탁운영	별도 전담조직 신설
운영비용	아주 적음	비교적 적음	아주 큼
운영 전문성	낮음	비교적 높음	높음
관리 효율성	낮음	비교적 높음	높음
기술 전문성	낮음	비교적 높음	높음
실행 가능성	낮음	아주 높음	비교적 낮음
채택 우선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 (중앙연계) 문화정보협력체계 구축

- (총괄 조정) 문화체육관광부,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 기관
- (전담인력 지정) 문체부 유관 단체·기관 내 문화정보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지정
 - － 지정대상(안):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관련 소속·산하기관
- (정보협의회 운영) 문화체육 산하기관 정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

표 7-10

사업별 문화정보협력체계 주요 내용

구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협력체계 구축 업무 총괄 - 법 제도 개선 (정보관리인력 및 전담기관 지정 등) - 협의회 구성, 포럼 운영 등 계획 수립 ☐ 정보화담당관실 업무협의 및 협력사업 추진
위탁기관(주관)	☐ 정보관리인력 및 전담기관 관리 ☐ 정보시스템 관리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발 ☐ 협의회, 포럼, 교육프로그램 실무 운영
지역문화통합정보 시스템 협의회 (기관별 정보화 담당자)	☐ 시스템 가이드라인 공유 ☐ 지역문화정보 공유 및 지원 관련 협의 ☐ 문체부 내 각 기관 담당자들간 교류 및 소통

■ (지역수집) 문화정보 연결체계 구축

- (총괄 조정) 문화체육관광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 (중간 조정) 광역자치단체, 필요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
- (전담인력 지정) 지역문화정보 표준 분류안을 기준으로 정보협력 기관 및 시설에 문화정보 전담인력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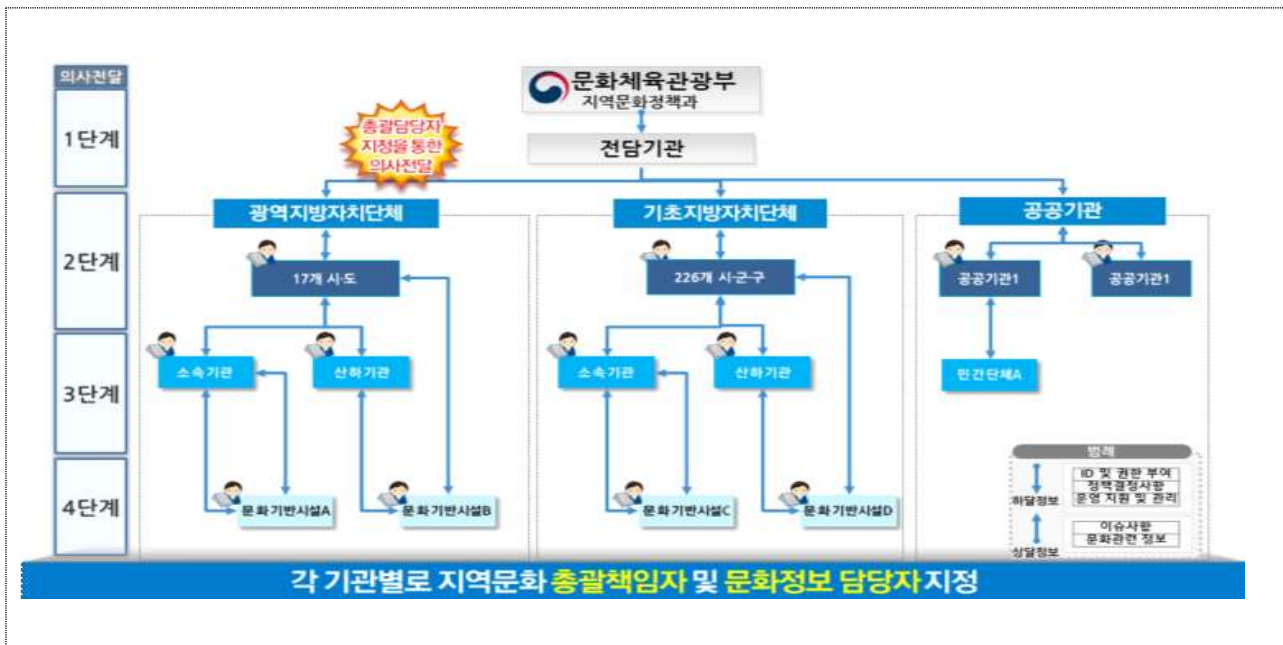


그림 7-14

지역문화정보 거버넌스 개념도

2. 지역문화 정보협약(계약) 시행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문화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거버넌스가 조직적 관점에서만 구성될 때 조직의 참여수준에 따라 지역문화정보가 누락되거나 품질이 보증이 안 될 가능성이 존재함
- 한편, 현재 문화관련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수집관리가 체계화 되지 않아 보조금 관련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성과관리 측면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조직적 관점의 정보거버넌스 체계와 더불어 ‘조정과 통제’가 가능한 제도적 측면이 더해지는 것이 필요함

(2) 추진방안

■ 지역문화정보협약(계약)제도 시행

- 지역문화정보의 수집과 관리의 상호협력사항에 대한 사항을 담아 보조금 제공자와 보조금 수혜자 등 정보관리 주체 간의 계약 체결
 - － 기존에 보조금 관련 지급 관련 계약을 진행시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 고려
- 지역문화정보의 원활한 수집과 공유를 위한 기본원칙, 대상사업, 정보수집 제공 항목, 계약추진절차, 계약의 변경과 해약 등을 규정
 - － (기본원칙) 협약의 당사자는 지역문화정보와 관련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함
 - － (계약대상) 우선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보조금을 활용한 문화사업을 대상으로 함

표 7-11

계약 대상별 추진 방안

구분	계약대상 유형	추진방안
중앙 보조금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지역문화정보협약을 진행 ☐ 계약의 기본절차를 따름
	중앙정부- 산하기관	☐ 지역문화정보협약 진행 ☐ 정보수집관리 의무사항 부여
	중앙정부 - 보조사업자	☐ 지역문화정보계약 진행 ☐ 정보제공항목 부여, 계약 불이행시 보조금 사업 참여 제한
지방 보조금	지방정부 - 산하기관	☐ 자율에 따라 진행, 제도 시행시 문체부 사업에 참여시 가점 부여
	지방정부 - 보조사업자	☐ 자율에 따라 진행, 제도 시행시 문체부 사업에 참여시 가점 부여

- (정보제공항목) 지역문화정보 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해당 유형의 사업의 정보항목(예산, 사업 내용, 참여인력, 수혜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을 계약사항에 포함
- (점검에 대한 사항) 보조금 제공자는 필요에 따라 정보의 품질과 관련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구성
- (계약의 변경과 해약) 지역문화정보 계약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제공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갱이 정한 심의 절차에 따라 계약의 변경과 해약이 가능하도록 구성

● 계약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통합·공유

- 각 지자체와 보조금 교부 기관의 문화정보담당자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공유

(3) 참고 사례

■ 영국의 문화 분야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협약 사항의 성과지표

- 영국의 박물관 극장 등 문화시설의 성과측정은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만 가능함

표 7-12 영국 문화부와 문화시설 협약시 성과지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지표
접근성	☐ 박물관/미술관 실제 관람자 수 ☐ 웹사이트 방문자 수
관람자 프로파일	☐ 16세 미만 영국 국적 어린이 관람자수 ☐ 16세 이상 영국 국적 관람자수 ☐ 16세 이상 영국 국적 소수민족 관람자 수 ☐ 16세 이상 장애가 있거나 만성 중증 질환이 있는 관람자 수 ☐ 해외 관람자 수
교육/원조	☐ 정규 교육 과정의 16세 미만 어린이 직접 방문수 ☐ 현장의 교육 및 참여 활동에 참여한 16세 미만 어린이 사례수 ☐ 외부 봉사 활동에 참여한 16세 미만 어린이 사례 수 ☐ 교육 및 참여 활동에 참여한 16세 이상의 성인수 ☐ 외부 봉사활동에 참여한 16세 이상의 성인 사례수
고객만족	☐ 몇 %의 방문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방문을 추천하는가
수입창출	☐ 관람티켓 수입 ☐ 기타 상품판매(대관, 라이선싱, 컨설팅, 머천다이징을 포함) ☐ 기부
지역관계	☐ 장소 대여 횟수

3. 지역의 문화정보역량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정보관련 중요성 인식과 정보관련 업무 실행의 괴리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 간 정보역량의 격차로 인한 업무격차 발생
 - －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정보의 수집관리와 관련된 역량 부족으로 인해 정보업무 수행을 미루는 경우 발생
- 정보역량 격차 완화와 더불어 향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지속성 담보, 정보 품질 관리, 지역의 정보 활용 능력 강화를 이해관계자별 교육 시행 필요

(2) 추진방안

- 지역 문화정보 단계별 추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발전단계에 따른 교육 실시

표 7-13

단계별 지역 문화정보 역량강화 전략

시스템 단계구분	단계별 문화정보 역량 강화 전략
구축단계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인식 공유 － 1차 대상: 중앙부처 사용자 그룹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활용방안 소개 －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제시 － 2차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기반 시설 사용자 그룹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책결정 사례 및 활용 방안 － 지역문화정보 입력 교육, 인센티브 제도 등 교육
고도화 단계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활용 확산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의사결정사례 － 지역문화정보 입력 교육, 정보목록 현행화 교육, 인센티브, 제도 교육
안정화 단계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 － 사용자 그룹 맞춤형 교육: 사용자 환경과 유사 기관의 우수활용 사례 공유

-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표 7-14

단계별 지역 문화정보 역량강화 전략

교육대상	역할	필요한 사항	교육목표	교육내용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 정보관리·활용 주체 문화서비스 기관 교육 총괄 －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담당직무 수행	－ 정보관리 능력 － 시스템 활용상 문제 발견시 해결 능력	－ 모니터링 및 이슈 사항 전파 － 문화관련 정책 기획 활용	－ 시스템 교육 － 기능 사용법 － 업무연관성 및 활용 방안
문화서비스 기관	－ 문화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 시스템 기본 기능 활용	－ 지속적인 문화관련 정보 현행화	－ 시스템 교육 － 기능 사용법 － 업무연관성 및 활용 방안

제4절 법·제도개선 방안

1. 법·제도개선 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화환경이 급속도로 변화 데이터의 수집 관리가 중요해지고 지고 있지만, 문화 관련 법률은 여전히 예전의 조사방식에 관한 근거만 제시하고 있어 정보화 정책의 추진의 근거가 미흡한 상태 지속
- 지역문화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문화정보화 사업이 지속, 안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 주요 부처의 성공적인 정보화사업에는 필수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수반되고 있음

(2) 추진 방안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1안)

- 근거 법률 신규제정 혹은 기존 법률 개정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타 부처 및 지자체 협조를 위해 필수적임. 별도의 신규 법률제정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는 한계를 가지므로, 기존 법령(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으로 사업추진 및 운영의 법적 근거 확보
- 개정안에는 ‘지역문화정보화’의 정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사업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

표 7-15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제2조(정의) 본문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이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생산		- 지역문화정보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기본 의미를 제시

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지역문화정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문화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정보 수집관리 2. 지역문화정보의 연계관리 3. 지역문화정보 통계관리 및 내부업무지원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역문화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보유·이용·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의 기본정보, 현황정보, 예산현황, 운영시설 현황, 운영현황, 인력현황, 프로그램현황 2. 그 밖에 지역문화정보 제공 및 관리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3. 제3호의 자료는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범위,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문화 관련 주요 법령에는 문화정보화에 관한 조항이 부재(「문화기본법」 제11조 3항에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조항이 있고, 문체부 장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이 있음).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 2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법 시행령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업무와 처리정보 범위를 명시함. - 덧붙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정보수집 및 제공 과정에서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제시.
	[시행령 별표1]지역문화정보시스템 정보 수집 대상 자료(제6조의2제2항 제4호 관련)	- 시행령 별표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정보수집대상을 상세히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혹은 국무총리 훈령 개정 후 추후 법률 개정(2안)

- 신규제정 혹은 기존 법률 개정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타 부처 및 지자체 협조를 위해 필수적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는 한계를 가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훈령은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정 부담을 덜하나 법률적 구속력이 약하고 타 부처 및 지자체 협력에 한계
- 따라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혹은 국무총리 훈령 제정*으로 사업추진 및 운영근거를 확보하고, 추후 기존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 확보 추진 (단계적 접근)

◆ (가칭) 지역문화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워 실시하는 각종 중소기업시책을 말한다.
2. “지역문화 정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정보 등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말한다.
3. “정보보유기관”이란 지역문화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4. “지역문화 통합정보 플랫폼”이란 정보보유기관의 지역문화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이용

제3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 통합정보 플랫폼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정보의 연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문화정책 정보

를 정보시스템에 연계하거나, 연계한 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계하는 정책 정보의 세부 내용
2. 연계의 시기 및 주기

3. 정보의 전자화의 용이 여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① 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당해 정보와 관련된 사업 부서(이하 "정보제공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이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000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0000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소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정보 제공 또는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문서를 정보제공 소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 소관 부서의 장은 제공요청 또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보유정보(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정보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보의 요청 근거 법령의 유무
3. 정보 요청 절차의 준수 여부
4.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
5.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여부
6. 그 밖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정보제공 소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들은 추후 제정안 수립 시 고려해야함

2. 법률안 종합 검토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① 별도 법령 제개정 ② 문체부 훈령 제개정)

표 7-16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

추진방안		신규 입법·법령 개정 추진의 취지 및 효과	관련사례
법 률 제 · 개 정	지역문화의 정보화를 규정하는 별도 법률 신규 제정	• 가칭 「지역문화통합정보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수집과 이를 통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근거 명시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의 목적과 기본원칙,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 의무, 정보수집 대상 등을 통일된 법체계로 구성 • 법률을 새로 신설함으로써 지역문화 및 통합정보화에 대한 다양하고 세밀한 법조항을 규정 • (단점) 별도 법 제정 형태로 인한 신규 입법의 부담 우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학교알리미 서비스 구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 등 문화 관련 일반법 개정을 통한 정보화사업 근거 마련	- 문화관련 일반법으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병존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상에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만 존재하나, 이를 개정 및 보완하여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문화관련 정보들을 아우르는 정보화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마련 (장점)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한 관련조항을 추가하는 등 정보화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특별법 제정의 부담 완화 가능 (장점) 타 기관 연계협의 시 법적근거 제시로 원활한 협의 가능 (단점) 기존 법령·제도와 조화를 이루는 개정안을 만들기 쉽지 않고, 구체성이 결여된 소극적 조항으로 개정할 우려	-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관련 개별법들의 일부조항 개정을 통해 정보화 관련 내용 선별적 수용	-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과 같이 지역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와 관련된 문화관련 개별법들을 각각 개정하는 방안 -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련기관의 관련자료 제출 의무 등 규정 - 신규 입법이나 일반법 개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관련 부처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단점) 각각의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으로 인해 일관된 기본 원칙 및 정책 추진체계의 미비 가능성 상존	영유아보육법 개정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구축)
훈령제·개정	지역문화 정보화를 규정하는 문체부장관 훈령 제정	-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은 제·개정안 발의부터 국회의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되는 부담이 발생 - 이에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근거와 관리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훈령을 제정하여 추진 (장점) 법률의 개정에 비해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음 (단점) 문체부 내부 훈령인 관계로 법률에 비해 강제력이 약하고, 타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 애로 상존	사회보장시스템 국무총리 훈령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1.9)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개정	- 문화정보화의 정의와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하여 문체부장관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개정으로 지역문화통합정보화의 설치 및 운영 근거 확보 (단점) 본 훈령은 문체부 전체 정보화업무 추진과 정보화책임관의 역할을 명시한 것으로, 정보화책임관의 소관 업무가 아닌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의 근거규정을 포함하기에 한계	

VIII

추진 계획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1. 추진 로드맵 (안)

(1) '21년부터 '24년까지 총 4년에 걸친 단계적 구축

- ('21.~'22)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및 DB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정보화협의체 및 전담기관 등) 마련 등 환경 조성
- ('22~)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 ('23~24)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2. 세부 추진 단계

(1) ('20) 사전 준비 단계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전 단계별 프로세스 및 통합정보시스템 주요 기능별 상세 개발요건을 정리하는 단계
- 기존 문체부 내 주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방지를 위한 차별화·단계별 전략 도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BPR / ISP 수립 (DB 구축방안, 데이터 연계방안, 관리·서비스 방안 등)

- 지역문화정보 표준 분류안에 따른 수집·연계 대상 정보영역의 구체화·세분화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근거와 더불어, 지역문화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향후 시스템 고도화 설계를 위한 정보화 관련 전담기관 지정 근거·업무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개정 추진(지역문화진흥법)
- 이해관계자(정부, 유관기관, 지자체) 대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진행되는 지역문화정보의 각 영역별 데이터 수집·연계작업을 현장에 맞게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매뉴얼 제작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부처 협의·협조 진행(사업예산 확보, 국가정보화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2) ('21~22) 시스템 구축 단계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실시 설계, 시스템 및 DB 구축 진행
- 법률안 개정 추진 및 상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 착수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방안 협의·협조 진행
- 지역문화통합정보화협의회 구축·운영(연 2회)
- 통합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전담기관 지정절차 진행 및 해당 전담기관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행
-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관 간 데이터 수집·연계 시 행정적 장애요인 제거 지원

(3) ('22~23) 시스템 완료 단계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연차별 운영 계획 수립·추진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및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고도화 작업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추가 발굴
- 지역문화통합정보화협의회 운영과 더불어 지역문화통합정보화포럼 개최

- 전담기관 지정 확대(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기관) 검토

(4) ('24~) 사후 확장 단계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연차별 운영 계획 수립·추진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 및 문화 빅데이터 분석모델 수립
- 전담기관 기능 고도화 과업 진행
- 유관기관 내 정보수요 상시 환류

참고문헌

1. 국내 문헌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문화체육관광부, 2019a,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연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각 년도
- 문화체육관광부, 2019b, 2019년 문화예술정책백서
- 손영일, 2003, 현대사회의 정보화 과정과 한국의 발전전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한민국정부, 2019, 2019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행정안전부, 2019, 2018-2019 지역정보화백서
- 교육부, 2019, 시도통합 e학습터 현황보고 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서도교육청 재정공시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국토교통부, 2018,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9,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착수보고회 자료
- 행정안전부, 2019,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보도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NILE 기관 소개 브로슈어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 사회보장정보원, 2019, 사회보장정보원 10년사
- 사회보장정보원, 2019,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급여보장단위 인적정보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9, 2018 지역정보화백서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 축진을 위한 가버넌스 모색: 영국의 ADRN 사례를 중심으로

2. 국내 웹사이트(website)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홈페이지 <http://www.kopis.or.kr>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https://www.dat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ncas.or.kr>
 국가정책연구포털 홈페이지 <http://www.nkis.re.kr>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know.tour.go.kr>
 경상북도 공공데이터포털시스템 <http://data.gb.go.kr>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홈페이지 <http://www.kopis.or.kr>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libsta.go.kr>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http://www.acc.go.kr>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nl.go.kr>
 네이버 DataLab 홈페이지 <https://datalab.naver.com>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dgarte.or.kr/sub3_2.asp
 대구문화재단 내 대구축제닷컴 홈페이지 <http://daegufestival.com>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kr/wday/index.do>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 <https://www.ctgs.kr>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시스템 <http://www.kctg.or.kr>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https://acei.arte.or.kr>
 문화예술정보시스템(Ackis) 홈페이지 <http://policydb.kcti.re.kr>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kr>
 문화빅데이터 마켓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kr>
 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stat.mcst.go.kr>
 문화N티켓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kr/ticket/main>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문화포털 홈페이지 www.culture.go.kr
 문화품앗이 홈페이지 csv.culture.go.kr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홈페이지 <https://data.kihasa.re.kr>

서울시 홈페이지 내 페스티벌인서울 <https://festival.seoul.go.kr>
서울문화재단 내 서울예술교육 홈페이지 <http://artseduta.sfac.or.kr>
서울문화재단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archive>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https://culture.seoul.go.kr>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 <https://data.seoul.go.kr>
아르떼 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hrd.arte.or.kr>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awfartist.kr>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okams.or.kr>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 <http://www.prism.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전문예술법인·단체 홈페이지 <http://www.gokams.or.kr>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rcda.or.kr/index.asp>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홈페이지 <http://www.mnuri.kr>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https://aschool.arte.or.kr>
학술정보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rinfo.kr>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https://korean.visitkorea.or.kr>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내 아르떼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lib.arte.or.kr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kocaca.or.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 www.kcti.re.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
e나라도움 홈페이지 <https://www.gosims.go.kr>
K-ICT 빅데이터 홈페이지 <https://kbig.kr/portal>

3. 해외 참조 웹사이트

<https://www.culturalpolicies.net/web/index.php>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Main_Page

<https://www.eunicglobal.eu/>

<https://www.egmus.eu/>

<https://www.europeana.eu/portal/en>

<https://pro.europeana.eu/services>

<https://www.interarts.net/>

<http://www.michael-culture.eu/>

<https://www.euromuse.net/>

<http://map.neisse-go.de/nisago/Map.aspx>

<https://www.culture.gouv.fr/>

<https://www.insee.fr/en/accueil>

<https://opendata.paris.fr/pages/home/>

<http://data.uis.unesco.org/>

<http://www.culturebase.org/>

<http://kulturportal.de/>

https://kulturserver-nrw.de/de_DE/

<http://berlin-programm.de/>

<https://www.geo.apps.be.ch/de>

<https://www.be.ch/kulturfoerderung-gesuchportal>

<https://www.bfs.admin.ch/bfs/en/home.html>

<https://www.bak.admin.ch/bak/en/home.html#>

<https://www.mkrf.ru/>

<https://www.culture.ru/>

<https://grants.culture.ru/>

<https://kulturasdati.lv/lv>

<http://www.kis.gov.lv/>

<https://data.gov.lv/lv>

부록

1. 데이터 입력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문화시설 표준 분류(안)

□ 도서 시설

● 도서시설 표준 분류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는 국립도서관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을 포함시키고 있음
- 또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는 기타도서관에 장애인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전문도서관을 포함시키고 있음
- 다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는 대학도서관 자료, 학교도서관 자료에 대해서는 주요 지표만 제공하고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학술정보 통계시스템 사이트(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통계서비스 사이트(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별도로 제공함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참조로 하여 작성한 도서시설 표준 분류 체계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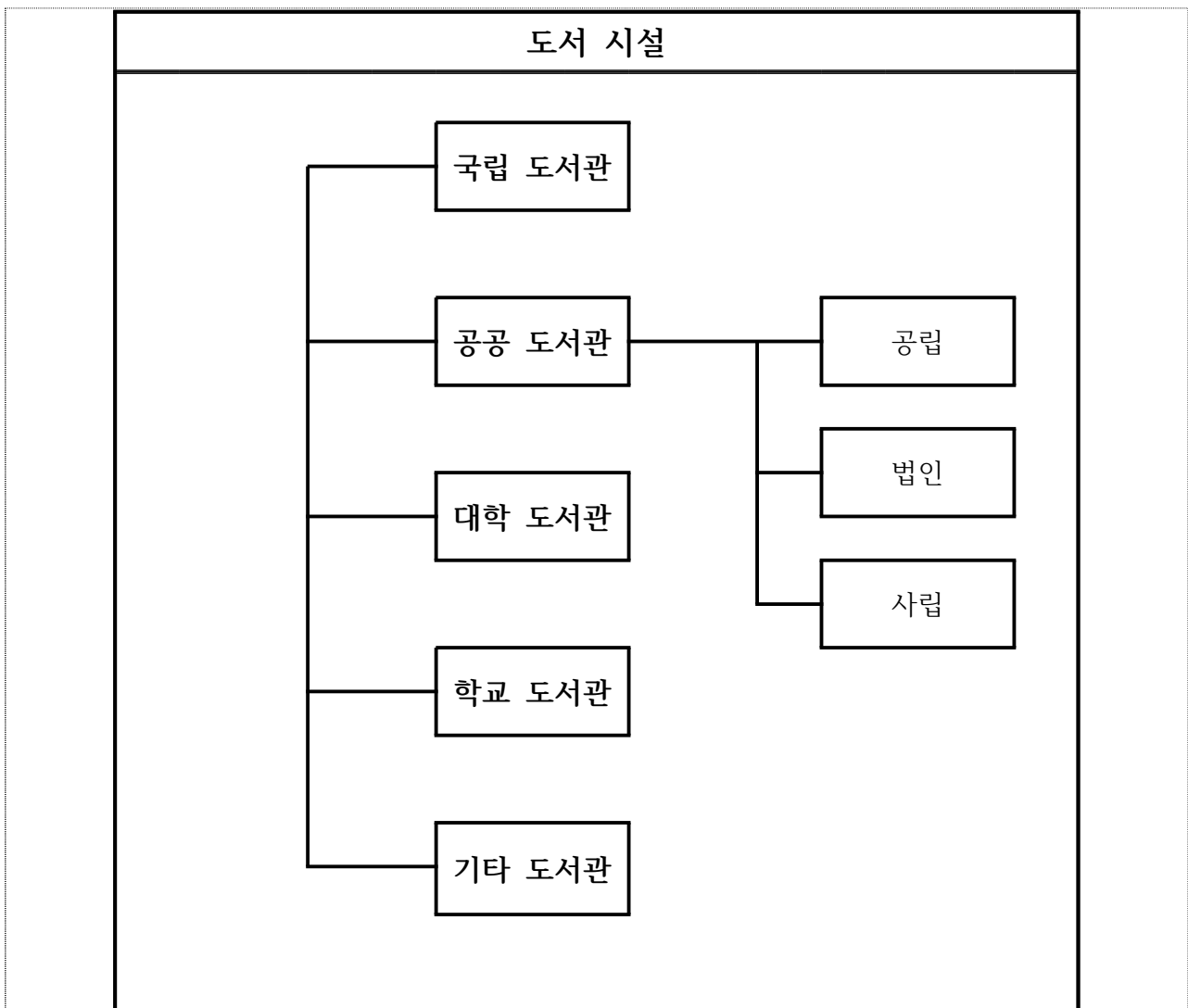


그림 1-1

문화시설 중 도서 시설 분류체계

□ 전시 시설

● 전시 시설 표준 분류 체계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는 전시 시설을 박물관과 미술관의 2종류로 분류하고 있음
- 한편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설립·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국립, 공립, 사립, 대학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으로서 본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표준 분류(안)에서는 제외하였음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참조로 하여 작성한 도서관시설 표준 분류 체계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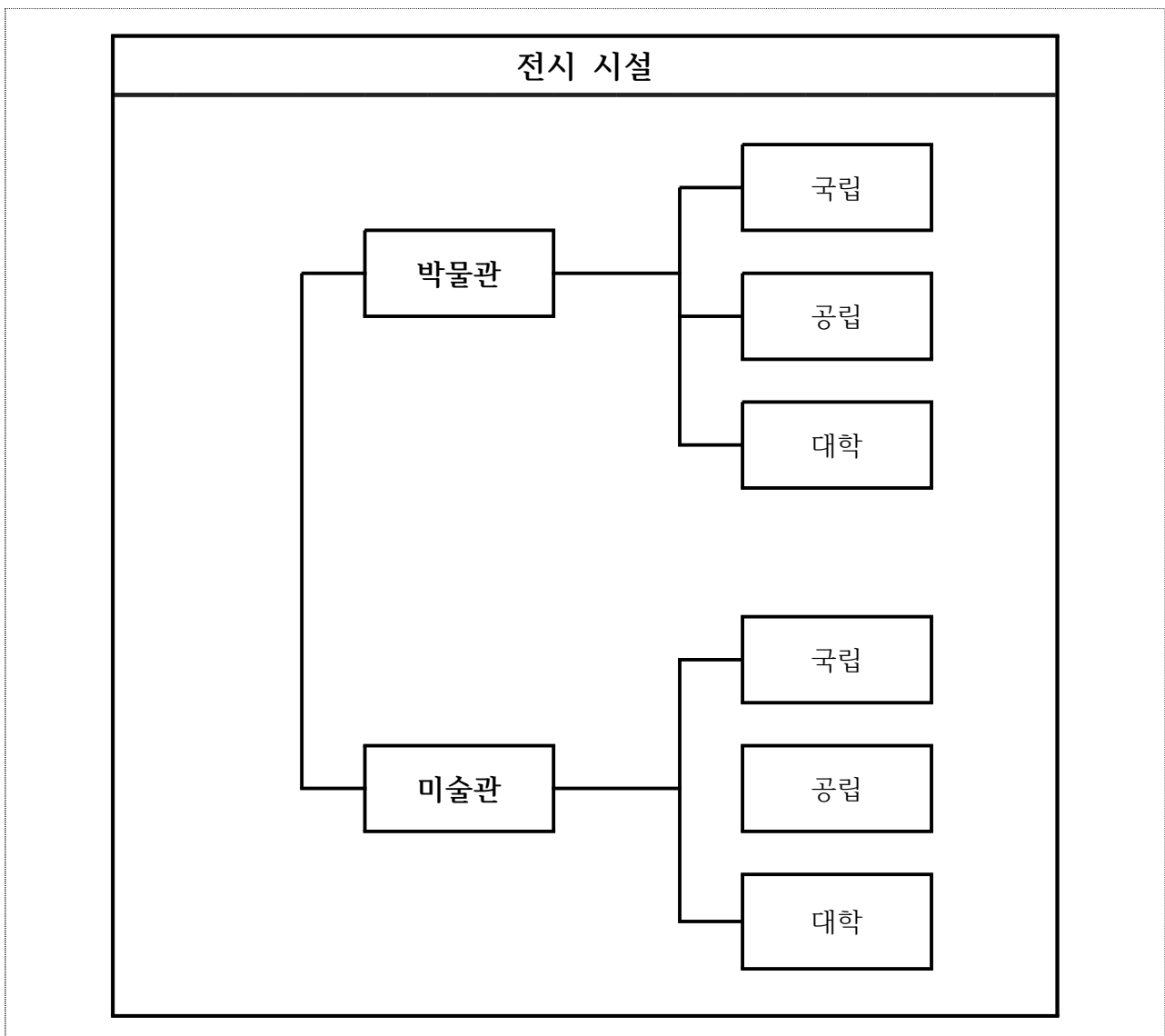


그림 1-2

문화시설 중 전시 시설 분류체계

□ 공연 시설

● 공연 시설 표준 분류 체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 제2항 관련)에서는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을 종합공연장으로, 시·군·구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을 일반공연장으로,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을 소공연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아울러 야외 음악당의 경우에는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영화상영관의 경우 민간분야의 영화상영관은 본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표준 분류(안)에서는 제외하였음
- 「문화예술진흥법」을 참조로 하여 작성한 공연 시설 표준 분류 체계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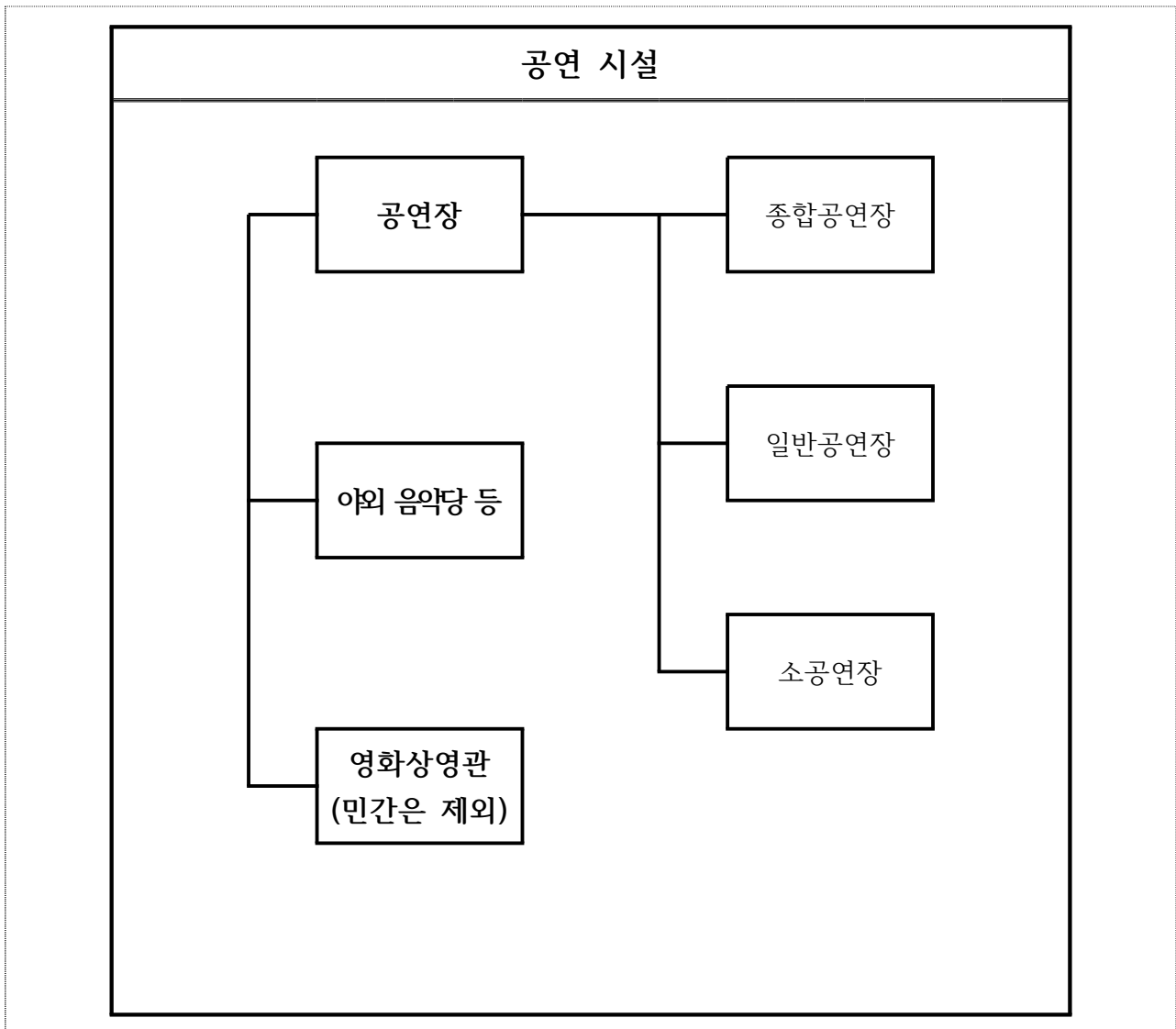


그림 1-3

문화시설 중 공연 시설 분류체계

□ 생활문화·근린 시설

● 생활문화·근린 시설 표준 분류 체계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 규정됨
-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는 생활문화센터·지역영상미디어센터·지역미디어시설·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등이 있음
- 본 표준 분류 체계에서는 지역별로 조성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에 대해 그 밖의 생활문화시설 중 생활문화센터에 포함하여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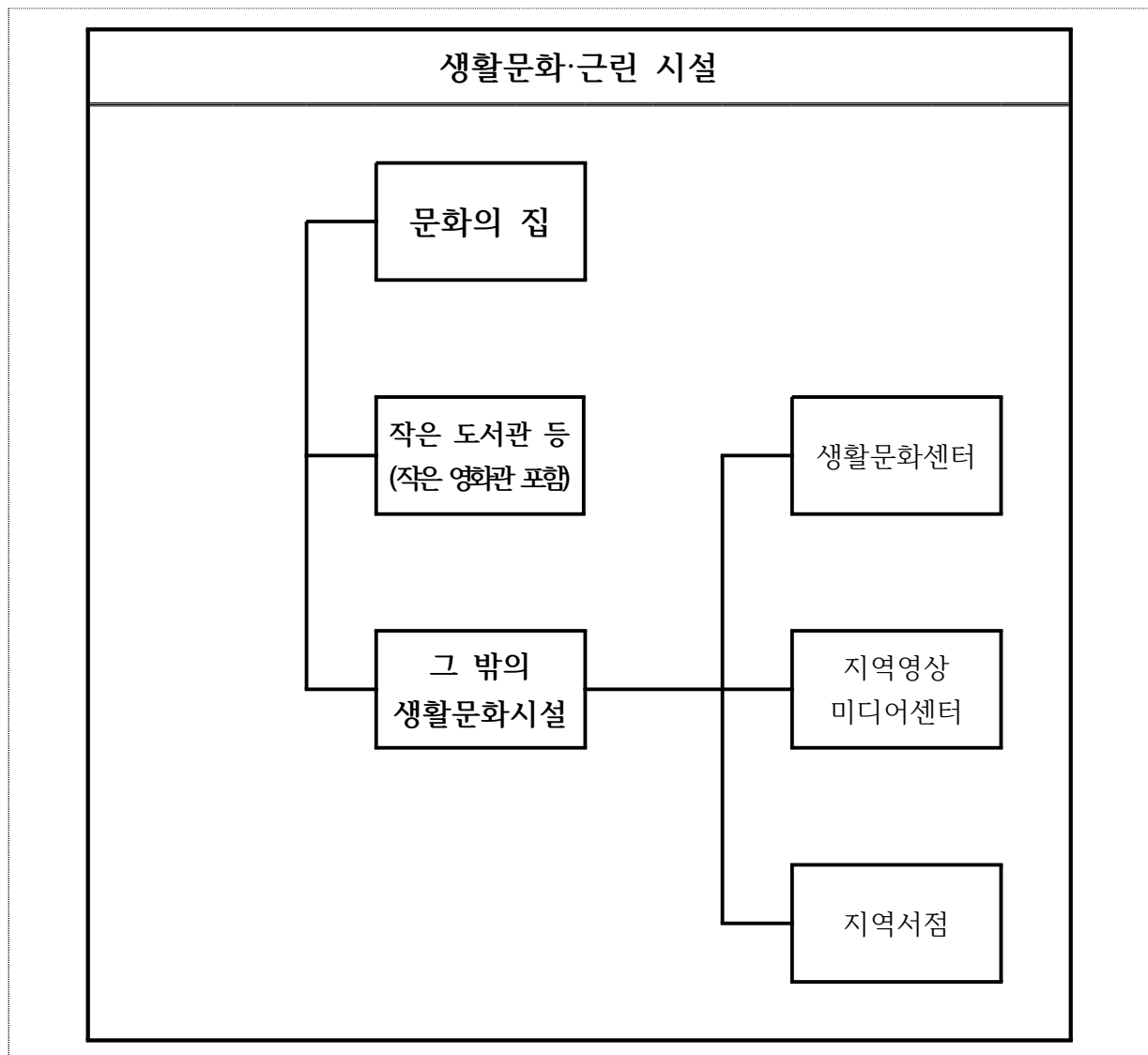


그림 1-4

문화시설 중 생활문화·근린 시설 분류체계

□ 문화보급·전수 시설

🌀 문화보급·전수 시설 표준 분류 체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에서는 제5호 문화 보급·전수 시설이라는 분류항목에 지방문화원·국악원·전수회관을 포함시키고 있음
- 한편 문학관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아닌 「문학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며 (2019년 4월 23일),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지역 공·사립 문학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문학관은 총 106개 (공립 66개, 사립 40개)로 조사된 바 있어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시설 중 하나임
- 문화재청의 2019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관련 홍보자료에는 전수교육관이라는 제목 아래 전수회관, 전수교육관, 가곡전수관, 민속예술관, 전수교육관, 전통나래관, 보존회교육관, 문화교육센터 등이 모두 포함되어 해당 사업대상으로 소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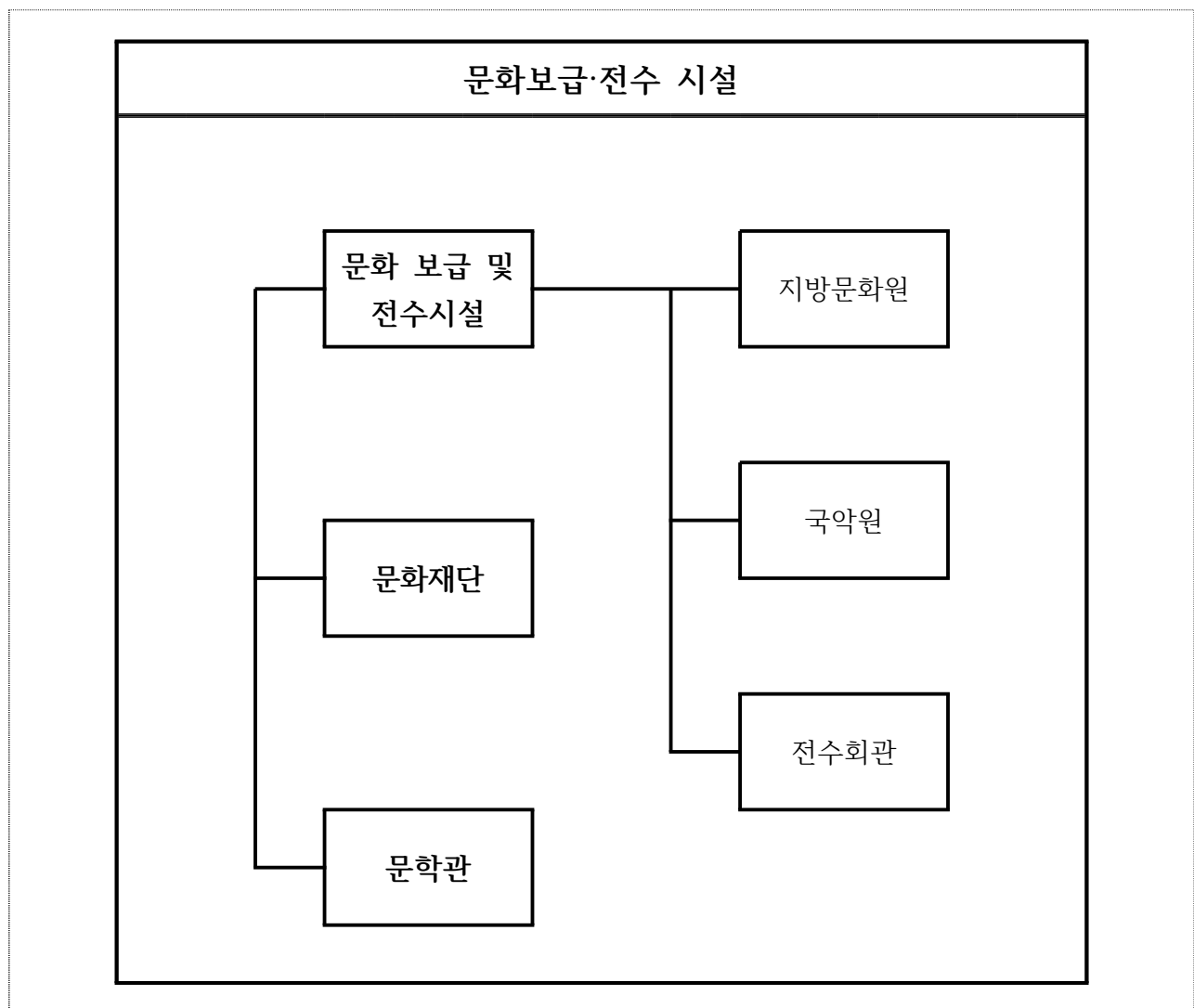


그림 1-5

문화시설 중 문화보급·전수 시설 분류체계

□ 기타 문화 시설

● 기타 문화 시설 표준 분류 체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 제2항 관련)에서는 제4호 다목에 문화체육센터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6호에는 종합시설을 제1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일상생활 시설을 한 공간에 복합 추진하는 것으로서 준공 이후 이용행태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일부가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종합시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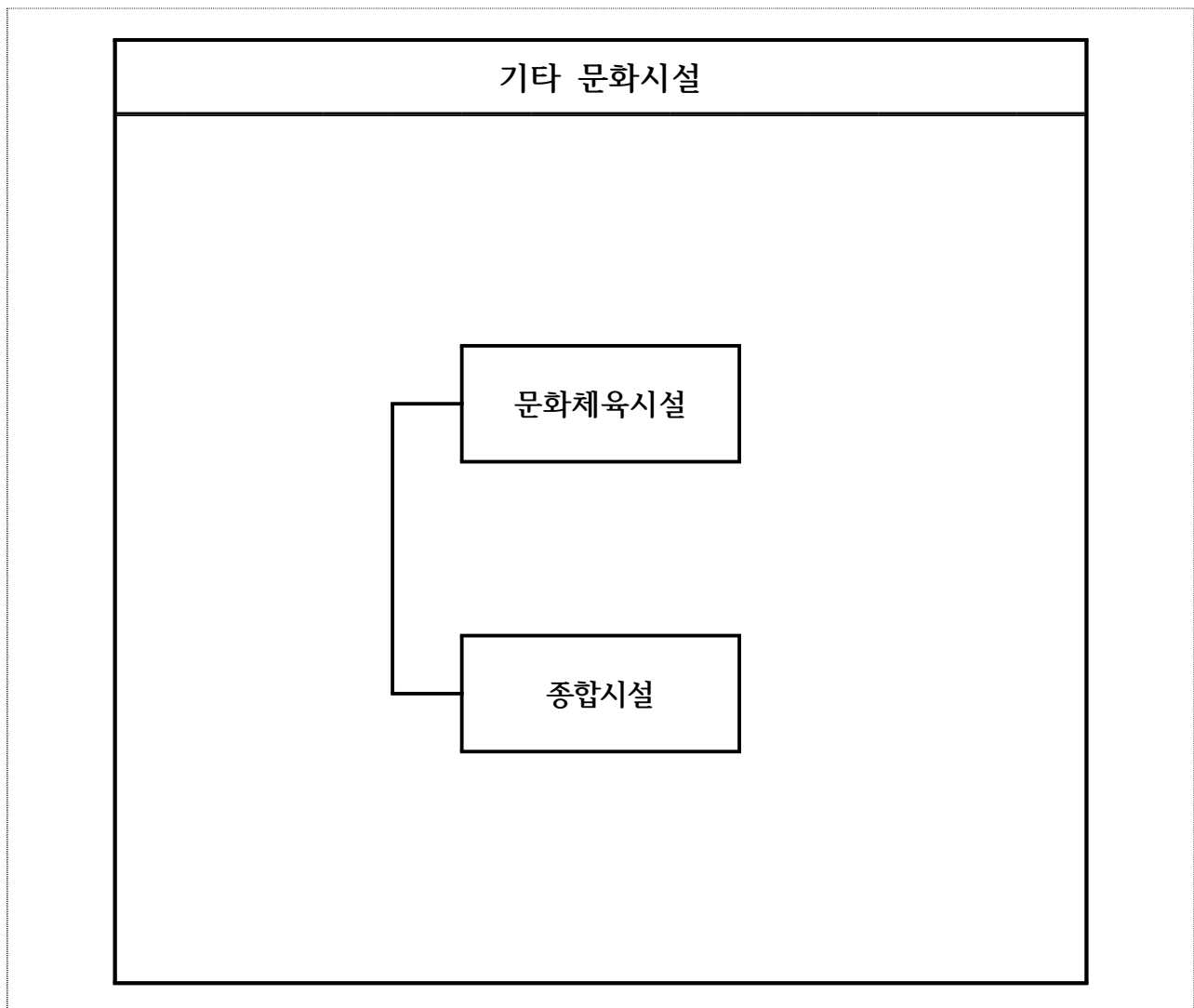


그림 1-6

문화시설 중 기타 문화 시설 분류체계

□ 데이터 수집 항목 총괄표 (문화시설)

●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될 문화시설 관련 데이터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핵심 지표의 경우 문화시설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에게 유용한 데이터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을 선정하였고, 추가 지표의 경우 문화시설 관계자,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유관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을 열거하였음

표 1-1

문화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 항목 총괄표

	핵심 지표	추가 지표
일반 현황	- 시설 명칭 - 시설 유형 - 주소 - 연락처 - 시설 개관년도 - 총 부지 면적 - 부지 내 건조물 수 - 건조물 명칭 - 건조물 연면적 - 건조물 건립년도	- 홈페이지 주소 -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 주소 - 등록년도 - 등록번호 - 법정 분류유형 (1종/2종, 박물관/미술관)
시설 현황	- 열람실 수/명칭/면적 - 열람실 좌석 수 - 부대시설 수/명칭/면적 - 부대시설 사용형태 - 공유공간 수/명칭/면적 - 공유공간 사용형태 - 도서자료 / 비도서자료 / 연속간행물 수 - 소화기 개수 - 주차장 면적/주차면수 - 화장실 (장애인용) 개수 - 무선인터넷 설치유무 - 내진설계 여부 - 전시실 수/명칭/면적 - 소장 유물 개수 - 공연시설 명/면적/객석 수	- 공간유형 (독립건물 사용 / 기존시설 부분 활용) - 지정(등록) 문화재 수 - 표준유물 관리시스템 활용 여부 - 수장고 수/명칭/면적 - 수장고 항온항습 유형 (개별 / 중앙) - 서고 면적 - 창고 면적 - 구내식당 면적
이용 현황	- 월간 시설이용자 수 - 월간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연간 개관일 수 - 전체 문화 프로그램 수 - 문화 프로그램 유형별 수 - 평일 운영시간 - 공휴일 운영시간 - 월간 이용객 수 - 연간 총 전시/기획 전시 수 - 연간 공연 건수	- 동아리 수 - 동아리 활동유형 - 동아리 가입 총 회원 수
인력 현황	- 전체 근로자 정원 수 - 전체 현직 근로자 수 - 정규직 근로자 수 - 자원봉사자 수 - 공무원 수 - 행정직 근로자 수 - 사서직 근로자 수 - 학예직 근로자 수 - 전산직 근로자 수 - 기타 업무 근로자 수	- 근로자 유형별 전문자격증 보유 비율 - 근로자 유형별 평균 재직연수 - 근로자 유형별 성비
예산 현황	- 연간 예산액 - 연간 인건비 - 연간 결산액 - 연간 국고보조금 - 연간 시도비보조금 - 연간 관람료 수입 - 연간 부대시설 수입 - 연간 공연사업 수입 - 연간 대관 수입 - 연간 자산 운용 수입	- 연간 지방교부세 - 연간 기부금 - 연간 출연금 - 연간 외부기부 / 기증

■ 일반현황

□ 핵심 지표

● 시설 명칭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해당 시설의 국문과 영문 명칭을 모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규 건립되는 시설은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 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직접 시스템에 관련데이터를 입력해야 함
- 시설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시설의 명칭이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새로이 변경된 명칭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1-2

시설 명칭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국문	영문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 시설 유형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앞서 소개한 문화시설 표준 분류(안)를 기준으로 하여 도서관, 전시시설, 공연시설, 생활문화·근린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기타 문화시설 등 총 6개의 대분류 및 각각의 중분류·소분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입력함
- 해당 시설이 2가지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우선 해당 활동과 관련된 공간의 면적, 활동시간,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판단한 용도를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만약 시설 본연의 설립목적으로서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정관 등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시설의 구조상 혹은 실제 운용상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기타 문화시설 중 종합시설로 분류하는 것을 권장함
-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분류에서는 도서관, 중분류에서는 공공도서관, 소분류에서는 사립을 선택하여 입력함

- 각 시설유형은 시설 1곳마다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수치를 산정함

표 1-3

시설 유형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법	(선택 입력)	(선택 입력)	(선택 입력)
예시	도서시설	국립도서관	공립
	전시시설	공공도서관	법인
	공연시설	대학도서관	사립
	생활문화·근린시설	학교도서관	
	문화보급·전수시설	기타도서관	
	기타 문화시설		

주소/연락처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해당 시설의 국문과 영문 주소 명을 모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소명은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함

표 1-4

주소 및 연락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주소		연락처
	국문	영문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201 Banpo-daero, Banpo-dong, Seocho-gu, Seoul	02-590-0500

시설 개관년도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해당 시설의 최초 개관년도를 기준으로 입력함

표 1-5

시설 개관년도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개관년도
방법	(직접 입력)
예시	1945 (년)

● 총 부지 면적 / 부지 내 건조물 수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표 1-6

총 부지 면적 / 부지 내 건조물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총 부지 면적	부지 내 건조물 수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32,232 (㎡)	5 (개)

● 건조물 명칭 / 건립년도 / 연면적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해당 시설의 국문과 영문 명칭을 모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건조물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시설의 명칭이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새로이 변경된 명칭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1-7

각 건조물 명칭 / 연면적 / 건립년도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건조물 명칭		건조물 연면적	건조물 건립년도
	국문	영문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사서연수관	Librarian Training Institute	8,199 (㎡)	1988 (년)

□ 추가 지표

🌀 홈페이지 주소/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 주소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웹사이트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새로이 변경된 웹사이트 주소를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1-8

시설 홈페이지 주소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홈페이지 주소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 주소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https://www.nl.go.kr/	

🌀 등록년도/ 등록번호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등록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등록번호를 수정하거나 0으로(취소시) 입력함

표 1-9

시설 등록년도 / 등록번호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등록년도	등록번호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2012 (년)	국립1-2012-04호

🌀 법정 분류유형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제1종, 제2종, 미등록으로 구분하여 등록되며, 등록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1-10

시설 법정 분류유형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법정 분류유형
방법	(선택 입력)
예시	제1종
	제2종
	미등록

■ 시설현황

□ 핵심 지표

● 열람실 수/명칭/면적/좌석 수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열람실 명칭이나 개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된 현황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1-11

열람실 수/명칭/면적/좌석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열람실 수	열람실 면적	열람실 명칭	좌석 수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2(개)	106.93 (㎡)	학습열람실	72 (석)
		439.49 (㎡)	종합자료실	163 (석)

● 부대시설 수/명칭/면적/좌석 수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부대시설의 사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 부대시설 내에 상시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공간 내에 이용 가능한 좌석 수를 측정하기 어려운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좌석 수를 0으로 입력함

표 1-12

부대시설 수/명칭/면적/좌석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부대시설 수	부대시설 명칭	부대시설 면적	좌석 수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5(개)	로비	136.2 (㎡)	22 (석)
		어린이 자료실	157.88 (㎡)	58 (석)
		유아 자료실	99.85 (㎡)	40 (석)
		제1 강의실	96.18 (㎡)	45 (석)
		제2 강의실	48.52 (㎡)	30 (석)

④ 공유공간 수/명칭/면적/이용형태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공유공간의 현 이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1-13

공유공간 수/명칭/면적/이용형태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공유공간 수	공유공간 명칭	공유공간 면적	이용형태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개)	메이커스페이스	330 (㎡)	

④ 도서자료 수/비도서자료 수/연속간행물 수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사서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매분기 마지막 주마다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표 1-14

도서자료 수/비도서자료 수/연속간행물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도서자료 수	비도서자료 수	연속 간행물 수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37,554 (건)	14,540 (건)	61 (종)

④ 소화기 수/주차장 면적/주차면수/일반화장실 수/장애인용 화장실 수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해당 항목 관련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1-15

소화기 수/주차장 면적/주차면수/화장실 수/장애인용 화장실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소화기 수	주차장 면적	주차면수	일반화장실 수	장애인용 화장실 수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0 (개)	928.78 (㎡)	100 (대)	6 (개)	2 (개)

④ 무선인터넷 설치유무/내진설계 유무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해당 항목 관련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1-16

무선인터넷 설치유무/내진설계 유무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무선인터넷 설치유무	내진설계 유무
방법	(선택 입력)	(선택 입력)
예시	있음	있음
	없음	없음

④ 공연시설 명/면적/객석 수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해당 항목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1-17

공연시설 명/면적/객석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공연시설 명	무대 면적	객석 수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세종M씨어터	3,140 (㎡)	609 (석)

④ 전시실 수/명칭/면적/소장유물 수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소장유물 수의 경우 매분기 마지막 주마다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표 1-18

전시실 수/명칭/면적/소장유물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전시실 수	전시실 명칭	전시실 면적	소장유물 수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3 (개)	상설전시장	3841.68 (㎡)	12,563 (건)
		기획전시실	1,221 (㎡)	
		기증유물전시실	844.8 (㎡)	

□ 추가 지표

④ 지정(등록) 문화재 수/표준유물 관리시스템 활용 여부

- 매년 1회(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학예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매분기 마지막 주마다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표준유물 관리시스템 활용 여부는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는 시설 1곳마다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수치를 산정함

표 1-19

지정(등록) 문화재 수/표준유물 관리시스템 활용 여부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지정(등록) 문화재 수	표준유물 관리시스템 활용 여부
방법	(직접 입력)	(선택 입력)
예시	262 (점)	활용함
		활용하지 않음

④ 서고 면적/창고 면적/구내식당 면적

- 매년 1회(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해당 항목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1-20

지정(등록) 문화재 수/표준유물 관리시스템 활용 여부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서고 면적	창고 면적	구내식당 면적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249.83 (㎡)	49.56 (㎡)	261.69 (㎡)

④ 수장고 수/면적/수장고 향온향습 유형

- 매년 1회(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해당 항목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장고 향온향습 유형은 수장고 1곳마다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수치를 산정함

표 1-21 지정 (등록) 문화재 수 / 표준유물 관리시스템 활용 여부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수장고 수	수장고 명칭	수장고 면적	수장고 향온향습 유형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선택 입력)
예시	3 (개)	1 수장고	509.20 (㎡)	개별
		2 수장고	350.38 (㎡)	중앙
		3 수장고	244.05 (㎡)	

■ 이용현황

□ 핵심 지표

- 월간 시설 이용자 수(유료·무료)/ 월간 프로그램 참여자 수(유료·무료)/ 연간 개관일 수
 - 월간 시설 이용자 수는 매 분기 마지막 주마다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연간 개관일 수는 매년 1회(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매 분기 마지막 주마다 해당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표 1-22

월간 시설 이용자 수 / 월간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연간 개관일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월간 시설 이용자 수		월간 프로그램 참여자 수		연간 개관일 수
	유료	무료	유료	무료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500 (명)	300 (명)	50 (명)	100 (명)	300 (일)

- 평일 개관시간/ 공휴일 개관시간
 - 매년 1회(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개관시간은 해당 문화시설 내의 소속 시설 중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늦게 운영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24시간제의 표기법으로 작성함
 - 해당 항목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원칙으로 함

표 1-23

개관시간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평일 운영시간	공휴일 운영시간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09:00	09:00
	22:00	18:00

- 전체 문화 프로그램 수(정기적·1회성) / 문화 프로그램 유형별 수(정기적·1회성)
 - 매년 1회(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매분기 마지막 주마다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일일 강좌, 주간 강좌 등 동일 강좌는 모두 1건의 프로그램으로 기재하며, 총 4회 미만의 강좌·전시회·강연회·대회·문화체험행사의 경우 1회성 프로그램 1건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 항목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화 프로그램 유형별 수는 프로그램 1개 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프로그램 수를 산정함

표 1-24

전체 문화 프로그램 수 / 문화 프로그램 유형별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전체 문화 프로그램 수 (정기적)	문화 프로그램 유형별 수 (정기적)	전체 문화 프로그램 수 (1회성)	문화 프로그램 유형별 수 (1회성)
방법	(직접 입력)	(선택 입력)	(직접 입력)	(선택 입력)
예시	5(개)	공연·전시	2(개)	공연·전시
		생활·취미·스포츠		생활·취미·스포츠
		교육·체험학습		교육·체험학습
		학술 행사·기념 행사		학술 행사·기념 행사
		축제·페스티벌		축제·페스티벌

④ 월간 이용객 수/연간 총 전시 프로그램 수/연간 기획 전시 프로그램 수/연간 총 공연 건수

- 이용객 수는 매 분기 마지막 주마다 해당 시설의 사서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총 전시 프로그램 수/기획 전시 프로그램 수는 매년 1회(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개관시간은 해당 문화시설 내의 소속 시설 중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늦게 운영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24시간제의 표기법으로 작성함
- 해당 항목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재입력하는 원칙으로 함

표 1-25

이용객 수/총 전시 프로그램 수/기획 전시 프로그램 수/공연 건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이용객 수 (월간)	총 전시 프로그램 수 (연간)	기획 전시 프로그램 수 (연간)	공연 건수 (연간)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3,000(권)	10(건)	7(건)	8(건)

□ 추가 지표

● 전체 동아리 수/ 동아리 활동유형별 수/ 동아리 가입 총 회원 수

- 해당 문화시설 내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활동 중인 전체 동아리 수, 활동유형별 동아리 수, 동아리 가입 총 회원 수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동아리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매분기 마지막 주마다 월별 수치를 입력함
- 정기적으로 활동 중인 동아리라 함은 월 1회 이상 해당 문화시설 내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자발적인 모임을 유지하는 집단 혹은 조직을 의미함
- 활동유형별 동아리 수는 동아리 1개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인원을 산정함

표 1-26

전체 동아리 수, 활동유형별 동아리 수, 동아리 가입 총 회원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전체 동아리 수 (월별)	활동유형별 동아리 수 (월별)	동아리 가입 총 회원 수 (월별)
방법	(직접 입력)	(선택 입력)	(직접 입력)
예시	20 (개)	공연 · 전시	300 (명)
		생활 · 취미 · 스포츠	
		교육 · 체험학습	
		학술 행사 · 기념 행사	
		축제 · 페스티벌	

인력현황

핵심 지표

- 전체 근로자 총 정원 수/ 전체 현직 근로자 수/ 정규직 근로자 수/ 자원봉사자 수/ 공무원 수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행정 또는 재무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매분기 마지막 주마다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 중 계약직·임시직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됨

표 1-27

전체 근로자 총 정원 수/ 전체 현직 근로자 수/ 정규직 근로자 수/ 자원봉사자 수/ 공무원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전체 근로자 총 정원 수	전체 현직 근로자 수	정규직 근로자 수	공무원 수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50 (명)	45 (명)	37 (명)	8 (명)

- 행정직 근로자 수/ 사서직 근로자 수/ 학예직 근로자 수/ 전산직 근로자 수/ 기타 업무 근로자 수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행정 또는 재무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매분기 마지막 주마다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이 항목을 통해 입력하는 근로자 수에는 계약직·임시직인지 여부 혹은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나 단, 자원봉사자 수는 제외됨

표 1-28

행정직 근로자 수/ 사서직 근로자 수/ 학예직 근로자 수/ 전산직 근로자 수/ 기타 업무 근로자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행정직 근로자 수	사서직 근로자 수	학예직 근로자 수	전산직 근로자 수	기타 업무 근로자 수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0 (명)	5 (명)	3 (명)	2 (명)	5 (명)

□ 추가 지표

● 근로자 유형별 전문자격증 보유 비율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행정 또는 재무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매분기 마지막 주마다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이 항목을 통해 입력하는 근로자 수에는 계약직·임시직인지 여부 혹은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나 단, 자원봉사자 수는 제외됨
- 이때 전문자격증은 사서자격증, 학예사자격증은 물론 국가공인자격증을 모두 포함함

표 1-29

근로자 유형별 전문자격증 보유비율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전문자격증 보유 비율 (행정직 근로자)	전문자격증 보유 비율 (사서직 근로자)	전문자격증 보유 비율 (학예직 근로자)	전문자격증 보유 비율 (전산직 근로자)	전문자격증 보유 비율 (기타 업무 근로자)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0 (%)	90 (%)	100 (%)	80 (%)	15 (%)

● 근로자 유형별 평균 재직연수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행정 또는 재무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산정하여 입력함
- 근로자 유형별 평균 재직연수는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임시직인지 여부 혹은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켜 산정함 (단, 자원봉사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표 1-30

근로자 유형별 평균 재직연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행정직 근로자	사서직 근로자	학예직 근로자	전산직 근로자	기타 업무 근로자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0 (년)	9 (년)	10 (년)	5 (년)	15 (년)

● 근로자 유형별 월 평균 근로시간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행정 또는 재무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산정하여 입력하며, 매분기 마지막 주마다 월별 수치를 입력함
- 근로자 유형별 월 평균 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임시직인지 여부 혹은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켜 산정함 (단, 자원봉사자는 제외함)

표 1-31

근로자 유형별 월 평균 근로시간 입력 예시

유형	행정직 근로자	사서직 근로자	학예직 근로자	전산직 근로자	기타 업무 근로자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83 (시간)	176 (시간)	195 (시간)	192 (시간)	182 (시간)

■ 예산현황

□ 핵심 지표

● 연간 예산액/ 연간 인건비/ 연간 결산액/ 연간 국고보조금/ 연간 시도비보조금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재무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매분기 마지막 주마다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인건비는 급여 지급 대상 근로자가 계약직 · 임시직인지 여부 혹은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켜 산정함
- 입력 시 금액의 최소단위는 천원으로 하며,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입력함

표 1-32

연간 예산액/ 연간 인건비/ 연간 결산액/ 연간 국고보조금/ 연간 시도비보조금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연간 예산액	연간 인건비	연간 결산액	연간 국고보조금	연간 시도비보조금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4,223,000 (천원)	950,000 (천원)	3,957,000 (천원)	200,000 (천원)	15,000 (천원)

● 연간 관람료 수입/ 연간 공연사업 수입/ 연간 대관 수입/ 연간 부대시설 수입/ 연간 자산운용 수입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재무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매분기 마지막 주마다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대관 수입은 해당 시설 내 유희 공간 혹은 공유 공간을 임대해주거나 시간당 사용료를 받는 형식을 통해 얻는 금액을 산정하여 입력하며, 부대시설 수입은 시설 내 매점 · 식당 · 기념품판매점 등의 운영을 통해 해당 시설 수입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입력함
- 자산운용 수입은 시설이 보유한 출연금 등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입을 입력함
- 입력 시 금액의 최소단위는 천원으로 하며,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입력함

표 1-33

연간 관람료 수입/연간 공연사업 수입/연간 대관 수입/연간 부대시설 수입/연간 자산운용 수입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연간 관람료 수입	연간 공연사업 수입	연간 대관 수입	연간 부대시설 수입	연간 자산운용 수입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752,000 (천원)	957,000 (천원)	351,000 (천원)	322,500 (천원)	70,150 (천원)

□ 추가 지표

🌀 연간 지방교부세/연간 기부금/연간 출연금/연간 외부기부·기증

- 매년 1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의 행정 또는 재무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매분기 마지막 주마다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표 1-34

연간 지방교부세/연간 기부금/연간 출연금/연간 외부기부·기증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연간 지방교부세	연간 기부금	연간 출연금	연간 외부기부·기증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241,000 (천원)	130,000 (천원)	157,000 (천원)	50,000 (천원)

□ 데이터 수집 항목 총괄표 (문화프로그램)

●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될 문화프로그램 관련 데이터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핵심 지표의 경우 문화프로그램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에게 유용한 데이터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을 선정하였으며, 추가 지표의 경우 주로 문화프로그램 공급자 혹은 지역 내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유관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표 1-35

문화프로그램 관련 데이터 수집 항목 총괄표

	핵심 지표	추가 지표
일반 정보	• 프로그램 명칭 • 프로그램 운영 장소 명칭 • 프로그램 유형 • 프로그램 정기시행 여부 (1회성 / 정기시행 / 상시) • 프로그램 시행주기 • 프로그램 이력 관리 여부 (신규 / 계속사업) • 프로그램 참여 가능 인원 수 • 프로그램 실제 참여 인원 수 • 프로그램 총 운영일수 / 일일 운영시간 / 회당 소요시간 • 프로그램 이용료 유형 (유료 / 무료 / 부분유료)	• 프로그램 운영 장소 (시설 내 / 야외 / 복합) • 프로그램 참여자 성별 현황 • 프로그램 참여자 연령별 현황 •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업 정보	• 프로그램 운영주체 현황 • 프로그램 총 사업비 규모 • 자체 조달재원 규모 • 국고보조금 규모 • 지방보조금 규모	• 기업지원금 규모 • 국외지원금 규모
고용 정보	• 프로그램 운영 인력 총 인원 수 (자원봉사자 수 제외) • 프로그램 운영 인력 성별 현황 (자원봉사자 수 제외) • 프로그램 운영 인력 중 자원봉사자 총 인원 수 • 프로그램 운영 인력 중 자원봉사자 성별 현황 • 프로그램 참여 강사 수 • 프로그램 참여 강사 성별 • 프로그램 참여 강사 경력 분야 • 프로그램 참여 강사 경력 기간	• 프로그램 운영 인력 보수 수준 • 프로그램 운영 인력 고용 형태 •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보수 수준 •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고용 형태 • 프로그램 참여 강사 보수 수준 • 프로그램 참여 강사 고용 형태

■ 일반정보

□ 핵심 지표

🔄 프로그램 명칭/ 프로그램 운영 장소 명칭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표 1-36

프로그램 명칭/ 프로그램 운영 장소 명칭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프로그램 명칭	프로그램 운영 장소 명칭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가야본성-칼(劒)과 현(絃)	국립중앙박물관

🔄 프로그램 유형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프로그램 유형은 프로그램 1개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수치를 산정함

표 1-37

프로그램 유형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프로그램 유형
방법	(선택 입력)
예시	공연 · 전시
	생활 · 취미 · 스포츠
	교육 · 체험학습
	학술 행사 · 기념 행사
	축제 · 페스티벌

④ 프로그램 정г시행 여부/ 정기 프로그램 시행주기/ 프로그램 이력관리 여부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1회성 프로그램을 문화프로그램의 유형 중 1회성 특강⁴⁹⁾이나 행사형⁵⁰⁾이라는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음
- 미국의 시카고 공립도서관 웹사이트에서는 1회성 문화행사(Event Type)와 정기 프로그램(Programs)을 구분하여 관내 모든 행사들을 분류하고 있음
-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되는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문화 프로그램 강좌 수와 1회성 문화 프로그램 강좌 수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음
- 보조금 지원 사업 경우 해당분야 경력이나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 보유 등이 사업선정의 판단기준 항목 중 하나로 명시⁵¹⁾될 가능성이 높음
- 정г시행 여부, 시행주기, 이력관리 여부는 프로그램 1개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수치를 산정함

표 1-38

프로그램 정г시행 여부/ 정기 프로그램 시행주기/ 프로그램 이력관리 여부 보조금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프로그램 정г시행 여부	정기 프로그램 시행주기	프로그램 이력관리 여부
방법	(선택 입력)	(선택 입력)	(선택 입력)
예시	1회성	매주(週)	없음 (신규)
	정г시행	매월(月)	있음
	상시	매 분기(分期)	
		매년	
		기타	

④ 프로그램 참여 가능 인원 수/ 프로그램 실제 참여 인원 수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 및 실제 참여 인원을 확인하고 수치를 수정함
- 참여 가능 인원 수는 프로그램 1개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수치를 산정함

49) 서울시 자치구 대표도서관 성인대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16

50)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유형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연구, 2018

51) 2020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중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신나는 예술여행) 공고문 참조

표 1-39

프로그램 참여 가능 인원 수/프로그램 실제 참여 인원 수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프로그램 참여 가능 인원 수	프로그램 실제 참여 인원 수
방법	(선택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0명 미만	35 (명)
	10명 이상 20명 미만	
	2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 프로그램 총 운영일수/ 일일 운영시간/ 회당 소요시간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프로그램 일일 운영시간, 회당 소요시간은 프로그램 1개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당 수치를 산정함

표 1-40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프로그램 총 운영일수	일일 운영시간	회당 소요시간
방법	(직접 입력)	(선택 입력)	(선택 입력)
예시	20 (일)	새벽	30분 미만
		오전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오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4시간	2시간 이상

🌀 프로그램 이용료 유형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이벤트 중개 플랫폼인 EventBrite 웹사이트의 경우 이용료를 기준으로 문화행사 (Event)의 종류를 2가지 (free / paid)로 분류하고 있음

- 프로그램 이용료 유형 중 부분 유료로 분류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축제장소로의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축제기간 중 이루어지는 각 프로그램들의 개별 서비스는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 프로그램 이용료 유형은 프로그램 1개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수치를 산정함

표 1-41 프로그램 이용료 유형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프로그램 이용료 유형
방법	(선택 입력)
예시	무료
	유료
	부분 유료

□ 추가 지표

● 프로그램 운영 장소

- 프로그램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프로그램 1개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수치를 산정함

표 1-42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별 현황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방법	(선택 입력)
예시	시설 내
	야외
	복합

● 프로그램 참여자 성별 현황

- 프로그램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표 1-43 프로그램 참여자 성별 현황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남성	여성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0 (명)	15 (명)

🔵 프로그램 참여자 연령별 현황

- 프로그램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함
- 기존의 유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을 연령에 따라 3가지⁵²⁾, 6가지⁵³⁾, 7가지⁵⁴⁾, 9가지⁵⁵⁾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류기준의 근거나 각 범주별 연령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뉴욕 공립도서관과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 웹사이트에서는 문화행사(Events)의 하위 검색 카테고리 중 하나로 50세 이상의 성인(50+)을 따로 설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5년에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통해 장년층(50플러스 세대)를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본 지표는 이를 일부 반영하여 작성되었음
- 한편,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1%가 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정년연장 시 가장 적절한 연령은 65세라는 의견이 61.2%로 가장 많았음⁵⁶⁾

표 1-44

프로그램 참여자 연령별 현황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영유아·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성인	5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5(명)	10(명)	11(명)	3(명)	9(명)

🔵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실제로 지역문화실태조사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련 부서 담당자를 통해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사업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있으며 본 지표도 이를 일부 반영하여 작성되었음
-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프로그램 1개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수치를 산정함

52) 성인·청소년·어린이의 3가지로 분류하였음,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매뉴얼에 관한 연구, 2009

53) 유아/어린이·청소년·주부·장년·노인·일반의 6가지로 분류하였음, 서울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실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08

54) 영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가족·기타의 7가지로 분류하였음,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연구, 2012

55) 가족·기타·성인·어르신·어린이·유아·전체·중고생·학부모의 9가지로 분류하였음, 서울시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유형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고찰, 2016

56)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9

표 1-45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방법	(선택 입력)
예시	장애인
	저소득층 · 위기청소년
	다문화 · 이주노동자
	새터민
	외국인 관광객
	성소수자
	누구나 참여가능

■ 사업정보

□ 핵심 지표

🌀 프로그램 운영 주체 현황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기타로 분류되는 운영 주체로는 개인이나 시민, 마을공동체 및 취향공동체, 임의단체 · 비영리법인 · 전문예술단체, 시민단체 · 활동가 등이 있음
- 운영주체 간 협력이라 함은 도서관-박물관, 도서관-미술관, 도서관-공연장, 도서관-문화유산기관과 같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들이 연계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 프로그램 운영 주체 현황은 각 프로그램 1개 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수치를 시스템 기능을 통해 산정함

표 1-46

프로그램 운영 주체 현황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프로그램 운영 주체
방법	(선택 입력)
예시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법인
	국외 기관 · 단체
	기타
	운영주체 간 협력

🌀 프로그램 총 사업비 규모/ 자체 조달재원 규모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입력 시 금액의 최소단위는 천원으로 하며,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입력함

표 1-47

프로그램 총 사업비 규모/ 자체 부담 규모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총 사업비 규모	자체 조달재원 규모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77,000 (천원)	35,000 (천원)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각 보조금은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시행을 위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의미함
- 입력 시 금액의 최소단위는 천원으로 하며,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입력함

표 1-48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41,000 (천원)	55,000 (천원)

□ 추가 지표

● 기업지원금 지원 규모/ 국외지원금 지원 규모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기업지원금은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시행을 위하여 국내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직접 지원금으로서 기업 출연 문화재단을 통한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단, 국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외됨
- 국외지원금은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시행을 위하여 국외의 정부·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의미함
- 입력 시 금액의 최소단위는 천원으로 하며,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입력함

표 1-49

기업지원금 지원 규모/ 국외지원금 지원 규모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기업지원금 지원 규모	국외지원금 지원 규모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29,000 (천원)	110,000 (천원)

■ 고용정보

□ 핵심 지표

● 프로그램 운영 인력 총 인원 수/ 성별 현황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아래 별도의 지표를 통해 자원봉사자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므로 해당 지표 산정 시 자원봉사자 수는 고려하지 않음
- 성별 현황과 관련하여 특정한 성별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실제 입력 시 0으로 입력함

표 1-50

프로그램 운영 인력 총 인원 수/ 성별 현황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운영 인력 총 인원 수	남성	여성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15(명)	10(명)	5(명)

● 프로그램 운영 인력 중 자원봉사자 총 인원 수/ 성별 현황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성별 현황과 관련하여 특정한 성별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실제 입력 시 0으로 입력함

표 1-51

프로그램 운영 인력 중 자원봉사자 수/ 성별 현황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자원봉사자 총 인원 수	남성	여성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시	9(명)	4(명)	5(명)

● 프로그램 참여 강사 수/ 성별 / 경력 분야/ 경력 기간 현황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성별 현황과 관련하여 특정한 성별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실제 입력 시 0으로 입력함

- 경력분야에 관하여 2018년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시각 및 공연예술, 문화예술 기획 및 경영, 인문 사회과학, 기타의 4가지 항목으로 지역문화시설 근무인력의 전공현황을 조사한 바 있음
- 한편 국외사례로 일본의 전국 극장·음악당 등 종합정보사이트(공익사단법인 전국공립문화시설협회가 운영하는 정보포털사이트)⁵⁷⁾의 전문인재정보 검색 메뉴는 전문분야를 대항목과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문화정책·제도, 경영관리, 운영업무, 시설관리, 기획제작, 무대기술, 무대예술지식이라는 7가지를 대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 경력기간과 관련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⁵⁸⁾에서 총 11개의 예술 분야⁵⁹⁾와 3개의 예술 활동 유형⁶⁰⁾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위 11개의 예술분야 중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중 일부(배우, 비평가), 연예 분야는 지난 3년 동안의 활동을 기준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며,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영화 중 일부(감독, 시나리오작가, 기획·기술지원 스태프), 만화는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을 기준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함.
-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1급 교육과정 이수과 더불어 2급 자격 취득 이후 문화예술교육 경력 5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⁶¹⁾
- 경력 분야 및 경력 기간은 강사 1인 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인원을 산정함

표 1-52

프로그램 참여 강사 수 / 성별 현황 / 경력분야 / 경력기간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프로그램 참여 강사 수	남성	여성	경력 분야	경력 기간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선택 입력)	(선택 입력)
예시	2(명)	2(명)	0(명)	음악·예술	없음(신입)
				전시·방송	1년 미만
				영상·출판	1년 이상 3년 미만
				인문·교육	3년 이상 5년 미만
				기타	5년 이상

57) <https://www.zenkoubun.jp/index.html>58) <https://www.kawfartist.kr/>

59) 11개 예술분야 :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60) 3개 예술 활동 유형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61) <https://www.arte.or.kr/business/professional/license/intro/index.do>

□ 추가 지표

●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보수 수준/고용 형태 현황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운영 인력 총 인원 수와 성비 현황은 핵심 지표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함
- 보수 수준 및 고용 형태는 인원 1인 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인원을 산정함
- 2018년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월급여와 연봉수준을 모두 조사하였으며, 연봉의 경우 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2,500만 원 미만, 2,5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상의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음
- 참고로 최저시급 8,590원, 하루 8시간, 월 209시간(1개월 평균 4.345주,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유급 주휴일 8시간 = 48시간, $48 \times 4.345 = 209$) 기준으로 2020년 현재 최저임금 연봉은 연 2,154만 3,720원임

표 1-53

프로그램 운영 인력 보수 수준/고용 형태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운영 인력 총 인원 수	남성	여성	보수 수준(연봉)	고용 형태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선택 입력)	(선택 입력)
예시	9(명)	4(명)	5(명)	1천만 원 미만	정규직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기간제·계약직· 임시직·촉탁직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자영업자
				5천만 원 이상	일용직

● 프로그램 운영 인력 중 자원봉사자 보수 수준/고용 형태 현황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자원봉사자 총 인원 수와 성비 현황은 핵심 지표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함
- 보수 수준·고용 형태는 인원 1인 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인원을 산정함

표 1-54

프로그램 운영 인력 중 자원봉사자 보수 수준/고용 형태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운영 인력 총 인원 수	남성	여성	보수 수준(연봉)	고용 형태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선택 입력)	(선택 입력)
예시	9(명)	4(명)	5(명)	1천만 원 미만	정규직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기간제 · 계약직 · 임시직 · 촉탁직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자영업자
				5천만 원 이상	일용직

🌀 프로그램 참여 강사 보수 수준/고용 형태 현황

- 각 프로그램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업무 담당자 중 1인이 입력하며, 프로그램의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입력된 데이터의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함
- 자원봉사자 총 인원 수와 성비 현황은 핵심 지표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함
- 보수 수준 · 고용 형태는 인원 1인 당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각 항목 당 인원을 산정함

표 1-55

프로그램 운영 인력 보수 수준/고용 형태 데이터 입력 예시

유형	운영 인력 총 인원 수	남성	여성	보수 수준(연봉)	고용 형태
방법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선택 입력)	(선택 입력)
예시	9(명)	4(명)	5(명)	1천만 원 미만	정규직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기간제 · 계약직 · 임시직 · 촉탁직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자영업자
				5천만 원 이상	일용직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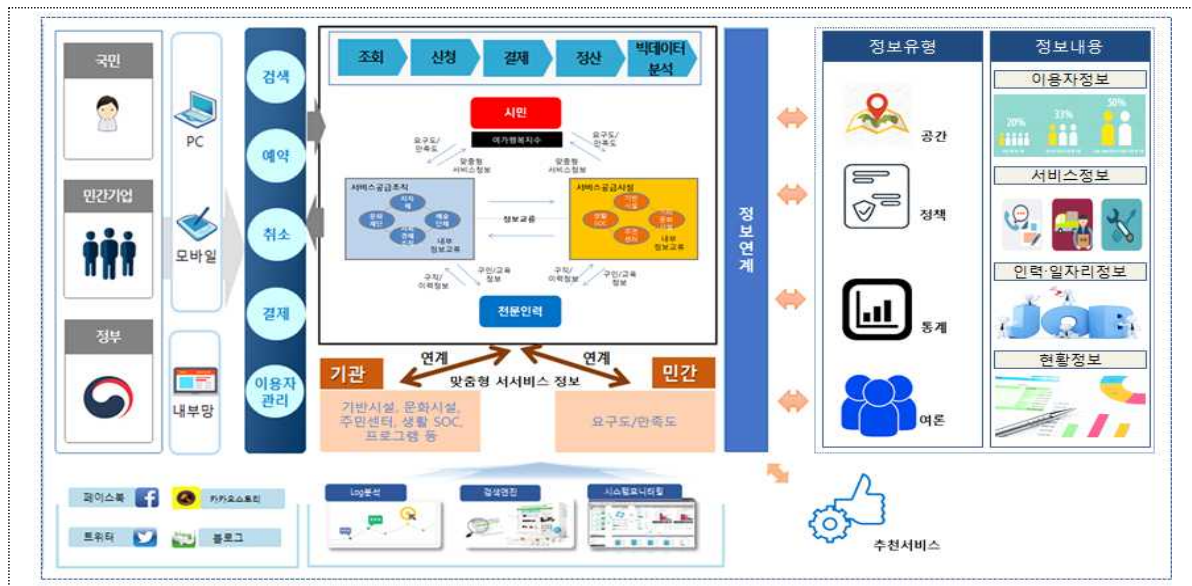
2.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BPR/ISP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

[부록]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BPR/ISP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

1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문화자치 및 분권을 위한 정확하고 시의적인 지역문화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가공·유통을 통해 문화자치 및 분권의 기반 구축
- 정확하고 적시적인 국민의 문화서비스정보 획득 보장과 지역 및 계층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포용적인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나.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CNR)	ConSulting Requirement	CSR - 001 ~ 014	14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 - 001 ~ 003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 001 ~ 005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 001 ~ 005	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 - 001 ~ 005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 - 001	1
합계			33

1)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 고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방향성 분석	CSR -001	사업추진 타당성 및 방향성 도출	사업 타당성 보고서		BPR
		○ 세부 현황 분석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정책, 시장, 사회 환경 및 유관 정보시스템 환경을 문헌과 인터뷰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 사업추진 타당성 및 방향성 도출 - 조기 예산 설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환경 분석 종합의 주요 방향성을 토대로 주요 마스터 플랜 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계획에서 추가 수정 보완			
현황 조사 분석	CSR -002	지역문화정보 현황 조사·분석	현황조사 보고서		BPR
		○ 지역문화 정보 자원 현황, 개방·공유현황, 이용자 현황 등 분석 ○ 민간 공유서비스 현황 조사·분석 - 지역문화정보 현황·속성, 서비스내역, 자원이용률, 주요 이용자현황 등 분석 및 공공자원 공유서비스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자원공유 서비스 미래동향 및 발전방안 검토·제시 ○ 이해관계자별 「지역문화정보통합시스템」요구사항 설문 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병행 실시 ○ 지역문화정보 및 서비스 분류체계 제시 - 정보의 종류, 소유자, 이용자, 이용목적, 서비스내용 등 ○ 지역문화정보 이용 시 시너지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 등 효율적인 자원 활용방안 수립 ○ 지역, 기관 등 지역문화정보 공유 현황조사 및 연계방안 검토·제시 ○ 지역문화정보별 지도서비스 방안 제시 ※ 지도서비스 구축 시에는 국토부의 V-world사용연계 방안 수립 ○ 현황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시범사업 적용 또는 확대방안 제시 ※ 시범사업 자원·지역 등 확대 방안 ○ 지역문화정보 이용 시의 이용자 태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의 자원 공유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시 ○ 기존 민간 영역의 시장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서비스 구현방안 제시 ○ 공공시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등 본시스템의 기관 활용률 제고 방안 제시			
선진 사례 조사 분석	CSR -003	지역문화정보 활용 선진사례 조사·분석	현황조사 보고서		BPR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례이외의 지역문화정보 활용 및 시스템구축 선진사례 조사 분석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 고
		세부내용			
법·제도 현황 조사 분석	CSR-004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법·제도 현황 보고서		BPR
		○ 기관별 자원별 시설별 등 정보 개방·공유·활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정보이용 사용료 부가, 면제 및 처리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제시 ○ 정보 개방·이용 시, 책임소재 등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제시 ○ 정보공유서비스를 위한 보험약관 등 관리표준(규약) 제시 ○ 민간 정보공유 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CSR-005	시스템 구축·연계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업무프로세스 정의서		BPR
		○ 민·관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 설계 - PC·모바일·지도서비스 기반의 통합 공유서비스 제공 - 국민 및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정보 제공자, 공유 정보, 이용자 범위 정의 ○ 기관간 연계·통합으로 인한 통합 데이터의 구축·운영 시 보안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기준 마련 및 적용 ○ 법령·규정상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반영			
시스템 모델 수립	CSR-006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모델 수립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모델 정의서		ISP
		○ 지역문화정보 및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을 통해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공유서비스 통합관리 목표모델 수립 - 서비스의 구현방법, 구현수준, 국민중심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 본 사업계획에서 제시 또는 본 사업에서 분석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반영 - 목표모델 수립시 기술적 대안검토 결과를 2개 이상 제출하고 복수대안에 대한 경제성 비교검토 결과 제출 ※ 모바일서비스 및 국토부의 V-world 연계방안을 포함한 지도서비스 구현방안 수립 ※ 모바일서비스 설계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9호, '18.11.15)를 반영하여야 함 ○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화면 인터페이스 설계 및 UI/UX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적용 ○ 자원관리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정부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해안) 이용 등 자원공유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정보수집·제공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 모델 수립시 기능내역에 대한 검토 및 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 고
		세부내용			
		용여부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산출물 작성 필요 ○ [붙임 3]의 기재부 ISP 수립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구성항목별 점검결과 제출			
자원 관리	CSR -007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자원 관리 ○ 지역문화정보 등록·관리 - 문화기반시설 및 생활문화시설, 지역 문화재단 등 기관 정보, 문화자원과 프로그램 등 정보수집의 체계화 방안 마련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문화포털'의 지역 행사 및 축제 등 관련하여 차별화 중복성 해소 및 차별화 전략 마련 ○ 자원 검색예약·예약취소·결제·정산이 용이한 시스템 모델 수립 - 지자체 등 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시에도 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 - 지역문화시설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약관련 시스템 현황 정리 및 민간 예약시스템 활용 현황 분석 - 민간 예약시스템 모델 및 본 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민간플랫폼 활용과 차별화 서비스 방안 분석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에 따르는 정보자원 현행화 방안 수립	지역문화 통합정보 시스템 자원관리 방안 보고서		ISP
타시스 템 연계 관리	CSR -008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 연계 관리 ○ 지자체 등 기존의 데이터 및 자원현황, 기술구조 등 시스템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기관연계 및 대국민 통합창구 구축방안 수립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기관을 조사하여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본 사업에서 제시하여 구축이나 연계가 예정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및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2019.3.20.)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16-42호, 2016.11.22.)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1월) ○ 개인정보, 민감정보외 데이터를 원천데이터 형태로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식별하여 개인정보는 별도 분리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표준화(용어, 도메인, 코드 등) 방안 등을 수립	지역문화 통합정보 시스템 연계관리 방안 보고서		ISP
민간플 랫폼 연계 관리	CSR -009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 민간플랫폼 연계 관리 ○ 민간의 대표적 공유경제 관련 시스템 및 플랫폼과 연계방안 수립 ○ 민간 플랫폼과 연계방안 수립 ○ 민간부분 서비스개발 지원 등을 위해 본 시스템에서	지역문화 통합정보 시스템연 계관리 방안	필요시	ISP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 고
		세부내용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방안(Open API 등)을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목록 및 API 내역을 등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	보고서		
이용자 관리	CSR-010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및 업무담당자 관리 ○ 국민 등 외부이용자 관리방안 수립 - 회원제 운영방안 제시 또는 기타 관리방안 마련 - 시스템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SSO: Single Sign On) 구축방안 수립 - 회원정보 중심의 선제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안 수립 ○ 공공기관 사용자 등 업무담당자 관리방안 수립 - 총괄관리자·기관별 관리자가 자체·하위부서 업무담당자를 관리하도록 권한부여 - 기관 내부망 시스템 연계자료 이용방안 마련 ○ 개인정보 통합관리 및 위험요소 도출·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대민서비스 중 회원기반 서비스 정보의 연계·통합 제공 시 회원정보 등 정보보안 및 보호 방안 수립 - 대국민 행정서비스 채널 통합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 및 대책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관리 방안 보고서 개인정보 보호방안 보고서		ISP
운영 관리	CSR-01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추진 체계 정립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체계 정의 ○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운영 및 확장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조직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성안 마련 ○ 구축 후 운영방안 정립 - 기준관리, 정보 연계관리 등 업무와 역할 정의 - 공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관 기관간 협업과 정보공유 방안 수립 - 콜센터 도입·운영 방안 및 제3섹터, 민간 등에 이관하는 방안 검토·수립 ○ 시스템(서비스) 구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성과지표와 목표 값 제시 ※ 성과는 정량적/정성적 부분으로 구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 보고서		BP R
법·제도 정비	CSR-012	법·제도 정비 방안 수립 ○ 지역문화정보 공유서비스 및 온라인 제공에 따르는 지역문화정보 이용 및 시스템 구축, 연계, 운영에 대한 법·제도 정비 ○ 개별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및 개인정보 연계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 기관간 시스템 연계 등 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에 관한 법·제도 개선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방안 수립	법제도 정비방안 보고서		BP R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이행 계획	CSR-013	시스템구축 이행로드맵 수립 및 이행과제별 소요예산·일정 수립	이행 계획서		ISP
		○ 시스템 구축 이행로드맵 수립 ○ 이행과제 구축에 필요한 응용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H/W, S/W, N/W) 구축, 기능점수 등 소요예산 제시 ○ 향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를 고려한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로 설계하여야 함 ○ 우선순위, 시급성, 가용자원을 고려한 이행 추진일정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구축전략 및 추진체계 제시 ○ 공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대효과 및 비용절감 효과 등을 산출			
변화 관리	CSR-014	변화관리 방안 및 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수립	변화관리 대응방안 보고서 및 RFP		ISP
		○ BPR/ISP 계획 추진을 위한 변화관리 방안 수립 - 변화요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약 사항 포함) 도출 -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단/사업단과의 검토를 통한 대응방안 제시 ○ 민·관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ISP)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계획(RFP) 작성			

2)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용역의 하도급 업무 처리	COR-001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주기적인 실태 점검·보고 ○ 주관사업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을 투입할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이행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 3 및「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하도급 준수 실태 보고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인력은 투입 제한 < 사업수행인력 참여 제한 > - 개인(프리랜서)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성과품의 소유권	COR-002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의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7조(계약목적물등의 귀속)에 의거 계약의 결과물(목적물)은 준공완료시부터 주관기관에 무상으로 양도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 처리	COR-003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유무형의 물품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사업수행 조직 관리	PMR-001	사업수행 조직 관리 요건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법제 관련 전문인력을 1명이상 투입하여야 함			
의사소통 관리	PMR-002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 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보고계획 수립.운영 ○ 필수 보고 사항(※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착 수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 간 보고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table><tr><th>구분</th><th>참석자</th><th>시기</th><th>내 용</th><th>보고서</th></tr><tr><td>착수 보고회</td><td>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td><td>계약 후 2주 이내</td><td>· 수행 조직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td><td>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td></tr><tr><td>중간 보고회</td><td>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td><td>착수후 4개월 이내</td><td>· 사업 수행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물</td><td>중간보고서</td></tr><tr><td>완료 보고회</td><td>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td><td>완료 시점</td><td>·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td><td>완료보고서</td></tr><tr><td>주간 회의</td><td>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td><td>주1회</td><td>· 수행 내역 점검 · 추진일정 수립 · 사업추진현황 관리</td><td>주간보고서</td></tr><tr><td>월간 회의</td><td>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td><td>월1회</td><td>· 사업수행 내역보고 (익월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td><td>월간보고서 월간인력투입 현황보고서</td></tr></table>	구분	참석자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회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	계약 후 2주 이내	· 수행 조직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 보고회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	착수후 4개월 이내	· 사업 수행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물	중간보고서	완료 보고회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	완료 시점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주간 회의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	주1회	· 수행 내역 점검 · 추진일정 수립 · 사업추진현황 관리	주간보고서	월간 회의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	월1회	· 사업수행 내역보고 (익월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월간보고서 월간인력투입 현황보고서	완 료 보 고서, 주 간 보 고서, 월 간 보 고서, 월 간 인 력 투 입 현 황 보 고서		
구분	참석자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회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	계약 후 2주 이내	· 수행 조직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 보고회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	착수후 4개월 이내	· 사업 수행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물	중간보고서																															
완료 보고회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	완료 시점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주간 회의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	주1회	· 수행 내역 점검 · 추진일정 수립 · 사업추진현황 관리	주간보고서																															
월간 회의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자 PMO	월1회	· 사업수행 내역보고 (익월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월간보고서 월간인력투입 현황보고서																															
프로젝트 인력 방안	PMR-003	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방안 제시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총책임자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 투입인력 및 기술인력경력증명 - 참여 인력의 근무 및 기술인력경력증명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인력경력증명 첨부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안서 등에 기술등급 표기 시에는 '별첨3. SW기술자등급분류기준표'를 준용하여 이에 따른 등급을 증명해야 하며, '별첨4. 기술등급판단 요약표'를 작성첨부하여 증빙서류와 같이 첨부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규 참여자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사업관리	PMR-004	사업관리 방안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사업관리	PMR-00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시 공공가이드 준수 ○ 사업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절차 및 검증방법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 산출물 점검가이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드(v1.0, 2015.7)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2018.3)를 만족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할 BPR/ISP 결과물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세분하여 기술 - 요구사항에 목표시스템 구축,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개선·고도화 등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대안(2개이상 검토)**, 타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 * 정보화 투자소요(총 소요비용)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완료 후 5년간 유지보수 비 및 추가구축비 등을 포함 ** 대안검토는 복수의 시스템 구축 규모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공통가이드[붙임3]기재부 ISP 수립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구성항목 준수 ○ 기능의 분할은 과업의 규모나 복잡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판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사업장 운영	PSR-001	사업장 운영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장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을 위한 직접비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포함			
지식재산권 소유	PSR-002	지식재산권 소유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6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에 의거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유. 단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유지보수	PSR-003	유지보수 요건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후 BPR/ISP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무상 하자보수로 함 ○ 하자보증 기간에 BPR/ISP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교육 지원	PSR-004	교육지원 요건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광부가 진행하는 설명회 등의 행사에 협조 ○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일정 및 수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정의하고 실시 ○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단계별 추진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추진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사업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기술 지원	PSR-005	기술지원 요건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성과진단 및 개선 관련 정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 제시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5)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관리적 보안	SER-001	관리적 보안 요건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후에도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 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보안 관리 점검표/ 점검 결과, 방문기록대장, 사무실 점검 대장, 자료반 출입대장, 전산장비반출입대장 등 보안관련서류		
물리적 보안	SER-002	물리적 보안 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행정망)을 분리 운영			
기술적 보안	SER-003	기술적 보안 요건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PC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참여인력보안	SER-004	참여인력 보안 요건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누출금지 정보 관리	SER-005	누출 금지 정보 정의 및 제재사항 요건 ○ 제재사항: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화업무규정」과 「개인정보보호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6)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품질 보증 계획 제시	QUR-001	품질보증 계획 제시 및 준수 ○ 본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조직, 인력,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 내역 등을 기술 ○ 제안사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품질 보증 계획서, 수행 및 결과물		

다. 특수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

- 본 사업은 감리가 적용되는 사업이므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사업자는 외부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호 사항은 감리의 검토의견을 받아 적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착수, 단계별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 보고 및 조정 등)
 - . 사업수행계획서, BRP/ISP 단계별 산출물
 - .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 . 검사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
 - .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본 사업이 PMO 정책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는 PMO 조직에서 수행하는 규정, 절차 등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반 비용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기타 조건

-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건표(3단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 사업 추진 중 쟁점사항의 해결을 위해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사업자는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경영 실태
4. 유사사업 실적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III. 사업 수행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IV. 품질 관리

1. 산출물 생성 및 관리
2. 품질관리

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VI.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보수
4. 기밀보안

VII. 하도급계약 계획

1. 하도급계약 계획

VIII. 기타사항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 4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경영실태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재무내역 및 주요사업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4. 유사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III. 사업 수행	
1. 기능 요구사항	현황 분석, 업무재설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관점에서 기능 요구사항의 구현을 위한 제안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품질관리 대상, 품질 목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IV. 품질 관리	
1. 산출물 생성 및 관리	이행하고자 하는 현황분석을 통해 산출물의 구체성과 적정성이 충족되도록 최적의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대상 기관의 조직, 인력 및 예산 등의 제약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 및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2. 품질 관리	적용 분석 도구, 수립 및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황 분석 및 전략계획 수립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검토 방안, 인력, 인터페이스 고려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V. 프로젝트 관리	

항 목	작 성 방 법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 V 1.0 -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붙임8 참고)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5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 비상주 인력의 상주일 제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 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VI.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VII. 하도급계약 계획	
1. 하도급계약 계획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계획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계획이 있는 경우 제안서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VIII.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3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2)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이어야 합니다.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②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 ② 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술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 내부 지침 등을 준용하여 실시합니다.
- ③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④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⑤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 ⑥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 개별 평가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단, 해당업체에서 개별 문의시 총점에 한해 나라장터에 공개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 ○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 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ISP사업)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용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가를 평가 한다	2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5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주]

1.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조달청 입찰 공고에 따름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문서의 효력을 가짐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 (044)203-2606, 2608
한국문화정보원 정책연구팀 ☎ (02)3153-2860
- 제출종류 및 부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③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 입찰관련서류(①~②)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필독) 단, 본 입찰은 입찰관련 서류(①-③)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건표 작성
 - 조건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건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e-발주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건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 (044)203-2606, 2608
한국문화정보원 정책연구팀 ☎ (02)3153-2860

사. 제안설명회 개최 : 추후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자.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가.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0.1%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붙임 3]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구성항목

분 야	구성항목	주요내용
사업 필요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 현행업무 수행 상에 문제점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 제시 · 법제도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을 제시 ·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근거나 개선과제를 기술 · 사업 추진목표를 현황분석결과와 일관성 있도록 작성
	시급성	· 차기년도에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유를 제시
사업내용 충실성	ISP 수행의 적절성	· ISP 수행단계별 과정 및 결과를 제시 · ISP 수행단계별 결과간의 연관성을 기술 · 사용자의 정보화 요구사항 반영 결과를 기술
		· 목표모델 수립단계에서 기술적 대안검토 결과를 제시 · 이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우선순위 검토 결과와 사유를 기술
		· 기관 내·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하고 통합·연계 검토 결과를 기술 · 민간시장 침해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중복성	· 기관 내·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하고 통합·연계 검토 결과를 기술 · 민간시장 침해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경제적 타당성	비용 산출	· 총사업비의 모든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산출하고, 모든 이행과 제들의 비용 합과 일치하도록 작성
	편익 산출	· 적절한 편익항목을 도출하고, 편익항목별 객관적 산출근거 제시
	대안별 경제성	· 2개 이상의 복수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로 비용 및 편익관점에서 비교 · 복수 대안에 대해 대안별 경제성을 비교 검토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여건	· 유관기관과 연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를 기술 · 신규 서비스 시행을 위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 사업 추진 및 신규 서비스 오픈 이후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방안을 기술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변화관리 방안과 단계별 확산 방안을 제시 · 사업에 특화된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술 및 적용가능성을 분석 · 적용된 정보기술이 업무요구사항의 충족에 필요한 성능(기능, 용량 등)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분석 · 내·외부적 정보 유출 및 해킹공격 등에 대비한 보안성 확보방안 기술 · 내외부 연계시스템과의 연계방식을 업무에 맞게 도출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을 준수하여 시스템 용량 산정
	기술적 구현성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u>주요연혁</u>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업명				구분	ISP/BPR () PMO/관리 () 시스템개발 () 운영 및 유지관리 () 기 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소 : (FAX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SW기술자 기준 ()				자 격 증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기타 ()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5호 서식]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장 비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 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PHP					
	- 기타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 Java	○				
	- C#					
	- 기타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o 국경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붙임 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¹⁾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²⁾	
공동수급체 대표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 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8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table><tr><td>100%이상</td><td>100%미만~ 80%이상</td><td>80%미만~ 60%이상</td><td>60%미만~ 50%이상</td><td>50%미만</td></tr><tr><td>30점</td><td>28점</td><td>26점</td><td>25~16점</td><td>15점</td></tr></table>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table><tr><td>70%이상</td><td>70%미만~ 60%이상</td><td>60%미만~ 50%이상</td><td>50%미만~ 40%이상</td><td>40%미만</td></tr><tr><td>30점</td><td>28점</td><td>26점</td><td>25~16점</td><td>15점</td></tr></table>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 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0점 처리																					

III.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 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table><tr><td>㉠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td><td>㉠, ㉡, ㉢ 전부 일치</td><td>㉠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td><td>㉠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td></tr><tr><td>0점</td><td>30점</td><td>15점</td><td>0점</td></tr></table>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 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 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table><tr><td>95%이상</td><td>95%미만~ 90%이상</td><td>90%미만~ 85%이상</td><td>85%미만~ 80%이상</td><td>80%미만~ 70%이상</td><td>70%미만</td></tr><tr><td>30점</td><td>25점</td><td>20점</td><td>15점</td><td>10점</td><td>5점</td></tr></table>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 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 (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 의 명시된 계약금액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IV.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 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 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 (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 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부록

3.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1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지역문화통합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보서비스 구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

2. 조사 설계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 지자체, 문화시설, 문화재단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 2020년 01월 04일 ~ 02월 12일			
조사 완료 표본				
	지자체	문화재단	문화시설	
	79개 지자체	32개 문화재단	199개 문화시설	- 도서관 81개 - 박물관 46개 - 미술관 27개 - 공연장 45개
조사 내용				
	일반현황	문화정보 관리 현황		문화정보시스템 구축
- 성별 - 연령 - 직종 - 지역 - 소재지역 규모	- 문화정보 수집·관리 현황 - 수집관리 정보 종류 및 주기 - 문화정보 수집·관리 불편사항 - 문화정보 수집·관리 목적 - 문화정보 미 수집 이유 - 문화정보 내/외부 활용 현황 등	- 시스템 구축 동의 정도 - 관리 주체 - 시스템 자료 입력자 - 구축시 우선 고려사항 - 구축 효과 등		



2장. 조사결과(지자체)

1. 문화정보 수집·관리 현황

<표 II-386> 문화정보 수집·관리 현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수집·관리하고 있다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다
전 체		79	40.5	59.5
지역 규모	대도시	50	36.0	64.0
	중소도시	24	54.2	45.8
	읍면지역 이하	5	20.0	80.0

2. 수집·관리하는 문화정보

<표 II-387> 수집·관리하는 문화정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지역 내 공공문화 시설 현황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현황	지역 주요 문화통계	지역 내 문화단체 및 인력 현황	기타
전 체		32	65.6	50.0	43.8	40.6	9.4
지역 규모	대도시	18	66.7	55.6	55.6	22.2	11.1
	중소도시	13	61.5	38.5	23.1	61.5	7.7
	읍면지역 이하	1	100.0	100.0	100.0	100.0	0.0

3. 수집·관리 방법 및 주기

가. 문화관련 사업정보

1)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표 II-388>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관요청
전 체		16	56.3	50.0
지역 규모	대도시	10	50.0	50.0
	중소도시	5	60.0	6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표 II-389>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6	62.5	6.3	6.3	18.8	6.3
직종	행정직	10	60.0	10.0	10.0	20.0	0.0
	기술직	1	100.0	0.0	0.0	0.0	0.0
	전산/통신직	1	0.0	0.0	0.0	0.0	100.0
	기타	4	75.0	0.0	0.0	25.0	0.0
지역 규모	대도시	10	50.0	10.0	10.0	30.0	0.0
	중소도시	5	80.0	0.0	0.0	0.0	2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0.0	0.0

2) 문화관련 사업 예산정보

<표 II-390> 문화관련 사업 예산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관요청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16	50.0	31.3	18.8
지역 규모	대도시	10	40.0	40.0	20.0
	중소도시	5	60.0	20.0	2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표 II-391> 문화관련 사업 예산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3	61.5	7.7	23.1	7.7
지역 규모	대도시	8	50.0	12.5	37.5	0.0
	중소도시	4	75.0	0.0	0.0	25.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0.0

3) 문화 채용정보

<표 Ⅱ-392> 문화 채용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관요청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16	43.8	18.8	43.8
지역 규모	대도시	10	30.0	20.0	50.0
	중소도시	5	60.0	20.0	4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표 Ⅱ-393> 문화 채용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9	55.6	11.1	33.3
지역 규모	대도시	5	40.0	20.0	40.0
	중소도시	3	100.0	0.0	0.0
	읍면지역 이하	1	0.0	0.0	100.0

나. 지역 내 문화단체 및 인력정보

1) 지역 내 문화단체 정보

<표 Ⅱ-394>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관요청
전 체		13	53.8	53.8
지역 규모	대도시	4	50.0	50.0
	중소도시	8	50.0	62.5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표 Ⅱ-395>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13	38.5	23.1	38.5
지역 규모	대도시	4	0.0	0.0	100.0
	중소도시	8	50.0	37.5	12.5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2)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정보

<표 II-396>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관요청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13	46.2	46.2	15.4
지역 규모	대도시	4	50.0	50.0	0.0
	중소도시	8	37.5	50.0	25.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표 II-397>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11	27.3	18.2	54.5
지역 규모	대도시	4	0.0	0.0	100.0
	중소도시	6	50.0	33.3	16.7
	읍면지역 이하	1	0.0	0.0	100.0

3)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정보

<표 II-398>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관요청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13	61.5	46.2	7.7
지역 규모	대도시	4	50.0	50.0	0.0
	중소도시	8	62.5	50.0	12.5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표 II-399>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2	33.3	16.7	41.7	8.3
지역 규모	대도시	4	0.0	0.0	100.0	0.0
	중소도시	7	57.1	28.6	0.0	14.3
	읍면지역 이하	1	0.0	0.0	100.0	0.0

다.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정보

1)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표 Ⅱ-400>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관요청
전 체		21	76.2	33.3
지역 규모	대도시	12	66.7	41.7
	중소도시	8	87.5	25.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표 Ⅱ-401>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21	38.1	14.3	14.3	23.8	9.5
지역 규모	대도시	12	25.0	16.7	8.3	33.3	16.7
	중소도시	8	62.5	12.5	25.0	0.0	0.0
	읍면지역 이하	1	0.0	0.0	0.0	100.0	0.0

2)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정보

<표 Ⅱ-402>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관요청	기타	수집·관리 하지 않음
전 체		21	66.7	33.3	4.8	9.5
지역 규모	대도시	12	58.3	41.7	8.3	0.0
	중소도시	8	75.0	25.0	0.0	25.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0.0

<표 Ⅱ-403>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9	42.1	5.3	10.5	10.5	21.1	10.5
지역 규모	대도시	12	25.0	0.0	8.3	16.7	33.3	16.7
	중소도시	6	66.7	16.7	16.7	0.0	0.0	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0.0	0.0	0.0

3)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표 II-404>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관요청	기타	수집·관리 하지 않음
전 체		21	52.4	42.9	4.8	14.3
지역 규모	대도시	12	33.3	50.0	8.3	16.7
	중소도시	8	75.0	37.5	0.0	12.5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0.0

<표 II-405>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8	38.9	11.1	16.7	11.1	16.7	5.6
지역 규모	대도시	10	20.0	0.0	20.0	20.0	30.0	10.0
	중소도시	7	57.1	28.6	14.3	0.0	0.0	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0.0	0.0	0.0

라. 지역 주요 문화통계

1) 지역민 문화통계

<표 II-406> 지역민 문화통계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관요청	기타	수집·관리 하지 않음
전 체		14	57.1	28.6	7.1	14.3
지역 규모	대도시	10	70.0	20.0	0.0	20.0
	중소도시	3	33.3	33.3	33.3	0.0
	읍면지역 이하	1	0.0	100.0	0.0	0.0

<표 II-407> 지역민 문화통계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2	33.3	16.7	41.7	8.3
지역 규모	대도시	8	25.0	25.0	37.5	12.5
	중소도시	3	66.7	0.0	33.3	0.0
	읍면지역 이하	1	0.0	0.0	100.0	0.0

2) 지역 문화통계

<표 II-408> 지역 문화통계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관 요청	수집 · 관리하지 않음
전 체		14	57.1	35.7	14.3
지역 규모	대도시	10	50.0	40.0	20.0
	중소도시	3	66.7	33.3	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표 II-409> 지역 문화통계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2	41.7	8.3	33.3	16.7
지역 규모	대도시	8	37.5	12.5	37.5	12.5
	중소도시	3	66.7	0.0	0.0	33.3
	읍면지역 이하	1	0.0	0.0	100.0	0.0

마. 기타 정보

<표 II-410> 기타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전 체		3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2	100.0
	중소도시	1	100.0

<표 II-411> 기타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전 체		3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2	100.0
	중소도시	1	100.0

4. 수집·관리하는 주체

<표 II-412> 수집·관리하는 문화정보 관리 주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해당부서 사업 관리자	문화부서 총 책임자	시스템(홈페이지 등) 운영자	기타
전 체		32	78.1	9.4	6.3	6.3
지역 규모	대도시	18	88.9	5.6	5.6	0.0
	중소도시	13	69.2	7.7	7.7	15.4
	읍면지역 이하	1	0.0	100.0	0.0	0.0

5. 수집·관리 애로사항

<표 II-413> 문화정보 수집·관리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사례수	관련 기관의 정보관리 미흡	인력부족	관련부서와 협력 미흡	예산부 족	기타	없음
전 체		32	46.9	15.6	15.6	3.1	6.3	12.5
지역 규모	대도시	18	44.4	11.1	11.1	5.6	11.1	16.7
	중소도시	13	53.8	15.4	23.1	0.0	0.0	7.7
	읍면지역 이하	1	0.0	100.0	0.0	0.0	0.0	0.0

6. 문화정보 관리 방법

<표 II-414> 문화정보 수집·관리 방법

(단위 : %)

구 분		사례수	내부 문서로 관리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	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리
전 체		32	71.9	15.6	12.5
지역 규모	대도시	18	61.1	16.7	22.2
	중소도시	13	84.6	15.4	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7. 문화정보 수집·관리 목적

<표 II-415> 문화정보 수집·관리 목적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관련 자료의 단순 파악 및 정리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업 시행	문화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확보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지역문화 발전 기반 마련	기타
전 체		32	31.3	25.0	18.8	15.6	9.4
지역 규모	대도시	18	22.2	27.8	16.7	16.7	16.7
	중소도시	13	46.2	15.4	23.1	15.4	0.0
	읍면지역 이하	1	0.0	100.0	0.0	0.0	0.0

8.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는 이유

<표 II-416>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료 수집 및 전달 수단이 부족함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정보가 많아 관리하기 어려움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 가 부족함	기타
전 체		47	34.0	34.0	17.0	6.4	8.5
지역 규모	대도시	32	37.5	28.1	25.0	3.1	6.3
	중소도시	11	36.4	45.5	0.0	18.2	0.0
	읍면지역 이하	4	0.0	50.0	0.0	0.0	50.0

9. 문화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외부기관 정보시스템 활용

<표 II-417> 문화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외부기관 정보시스템 활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외부기관 정보 참조	참조하지 않음
전 체		79	16.5	83.5
지역 규모	대도시	50	16.0	84.0
	중소도시	24	16.7	83.3
	읍면지역 이하	5	20.0	80.0

10. 문화정보의 내부 활용 현황 및 활용 정보

<표 II-418> 문화정보의 내부 활용 현황

(단위 : %)

구 분		사례수	내부 활용	내부 활용 없음
전 체		79	55.7	44.3
지역 규모	대도시	50	54.0	46.0
	중소도시	24	66.7	33.3
	읍면지역 이하	5	20.0	80.0

<표 II-419> 문화정보의 내부 활용 정보 -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현황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지역 내 공공 문화시설 수
전 체		44	81.8	59.1	59.1	54.5	54.5
지역 규모	대도시	27	81.5	48.1	55.6	48.1	44.4
	중소도시	16	81.3	75.0	62.5	62.5	68.8
	읍면지역 이하	1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420> 문화정보의 내부 활용 정보 -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문화관련 사업 예산	지역 문화통계	지역민 문화통계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문화 채용정보
전 체		44	45.5	43.2	34.1	27.3	25.0	11.4
지역 규모	대도시	27	51.9	33.3	25.9	22.2	18.5	3.7
	중소도시	16	31.3	56.3	43.8	37.5	31.3	25.0
	읍면지역 이하	1	100.0	100.0	100.0	0.0	100.0	0.0

11. 문화정보의 내부 활용 목적

<표 Ⅱ-421> 문화정보의 내부 활용 목적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정책 및 사업 개발	업무보고 (참고 등)	외부 (시민 등)에 정보 제공	단순 정보 파악
전 체		44	43.2	38.6	11.4	6.8
지역 규모	대도시	27	48.1	37.0	11.1	3.7
	중소도시	16	31.3	43.8	12.5	12.5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0.0

12. 문화정보를 내부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

<표 Ⅱ-422> 문화정보를 내부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수집/관리된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와의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기타
전 체		35	45.7	42.9	8.6	2.9
지역 규모	대도시	23	34.8	56.5	4.3	4.3
	중소도시	8	62.5	25.0	12.5	0.0
	읍면지역 이하	4	75.0	0.0	25.0	0.0

13. 문화정보의 외부 제공 현황

<표 II-423> 문화정보의 외부 제공 현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외부 미제공	외부 제공
전 체		79	77.2	22.8
지역 규모	대도시	50	80.0	20.0
	중소도시	24	70.8	29.2
	읍면지역 이하	5	80.0	20.0

14. 외부에 제공하는 문화정보

<표 II-424> 외부에 제공하는 문화정보(중복응답) -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현황	문화관련 사업 예산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지역 내 공공문화 시설 수
전 체		18	61.1	44.4	38.9	33.3	33.3
지역 규모	대도시	10	60.0	50.0	30.0	40.0	20.0
	중소도시	7	57.1	42.9	42.9	14.3	57.1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100.0	100.0	0.0

<표 II-425> 외부에 제공하는 문화정보(중복응답) -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지역 문화통계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지역민 문화통계	문화 채용정보
전 체		18	27.8	27.8	27.8	16.7	16.7	5.6
지역 규모	대도시	10	20.0	20.0	10.0	10.0	10.0	0.0
	중소도시	7	28.6	42.9	42.9	28.6	28.6	14.3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100.0	0.0	0.0	0.0

15. 문화정보 외부 제공 방법

<표 II-426> 문화정보 외부 제공 방법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서비스	외부에서 요청 시 문서 제공	기타
전 체		18	55.6	38.9	5.6
지역 규모	대도시	10	80.0	20.0	0.0
	중소도시	7	28.6	57.1	14.3
	읍면지역 이하	1	0.0	100.0	0.0

16. 문화정보 외부 제공 시 정보 입력자

<표 II-427> 문화정보 외부 제공 시 정보 입력자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담당자가 입력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입력
전 체		18	94.4	5.6
지역 규모	대도시	10	90.0	10.0
	중소도시	7	100.0	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17. 문화정보 외부 미제공 이유

<표 II-428> 문화정보 외부 미제공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보 제공 시스템 미구축	필요성을 못 느낌	정보내용 부족	타 문화기관 에서 제공	시간 및 예산 부족	기타
전 체		61	34.4	24.6	16.4	9.8	8.2	6.6
지역 규모	대도시	40	35.0	22.5	20.0	12.5	5.0	5.0
	중소도시	17	41.2	23.5	11.8	5.9	11.8	5.9
	읍면지역 이하	4	0.0	50.0	0.0	0.0	25.0	25.0

18.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동의여부

<표 II-429>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의견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반대한 다	반대한 다	보통이 다	찬성한 다	매우 찬성한 다	[100점 평균]	[5점 평균]
전 체		79	2.5	6.3	48.1	29.1	13.9	61.4	3.46
지역 규모	대도시	50	2.0	4.0	46.0	32.0	16.0	64.0	3.56
	중소도시	24	4.2	8.3	50.0	25.0	12.5	58.3	3.33
	읍면지역 이하	5	0.0	20.0	60.0	20.0	0.0	50.0	3.00

19.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반대 이유

<표 II-430>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반대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필요성 부족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과다	기타
전 체		7	42.9	42.9	14.3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33.3	0.0
	중소도시	3	0.0	66.7	33.3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20.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찬성 이유

<표 II-431>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찬성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료요구에 대응 및 사업개발에 활용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사업정보 획득에 사용	문화사업 총괄 관리·조정 등 근거 자료로 활용	중앙/자치단체 및 기관의 예산확보, 사업확장 등 업무에 활용	지역 간 비교분석 에 활용
전 체		72	40.3	23.6	19.4	11.1	5.6
지역 규모	대도시	47	38.3	23.4	19.1	10.6	8.5
	중소도시	21	42.9	19.0	23.8	14.3	0.0
	읍면지역 이하	4	50.0	50.0	0.0	0.0	0.0

21.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관리 주체

<표 II-432>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관리 주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광역 자치단체	중앙부처	중앙부처 산하 전문기관	기초 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전 체		79	38.0	27.8	16.5	8.9	8.9
지역 규모	대도시	50	44.0	30.0	14.0	6.0	6.0
	중소도시	24	29.2	20.8	25.0	12.5	12.5
	읍면지역 이하	5	20.0	40.0	0.0	20.0	20.0

22.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자료입력 주체

<표 II-433>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자료입력 주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별 문화시설 및 기관 담당자	시스템 운영기관	기초지자체 담당자	기타
전 체		79	64.6	20.3	13.9	1.3
지역 규모	대도시	50	56.0	28.0	14.0	2.0
	중소도시	24	79.2	8.3	12.5	0.0
	읍면지역 이하	5	80.0	0.0	20.0	0.0

23.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자료입력 의향

<표 II-434>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자료입력 의향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79	73.4	26.6
지역 규모	대도시	50	74.0	26.0
	중소도시	24	75.0	25.0
	읍면지역 이하	5	60.0	40.0

<표 II-435>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자료입력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함	자료제출 및 입력의 법적근거가 미흡함	중앙정부 사업으로 데이터입력과 관리의 주체가 중앙정부임
전 체		21	57.1	23.8	19.0
지역 규모	대도시	13	69.2	15.4	15.4
	중소도시	6	33.3	50.0	16.7
	읍면지역 이하	2	50.0	0.0	50.0

24.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고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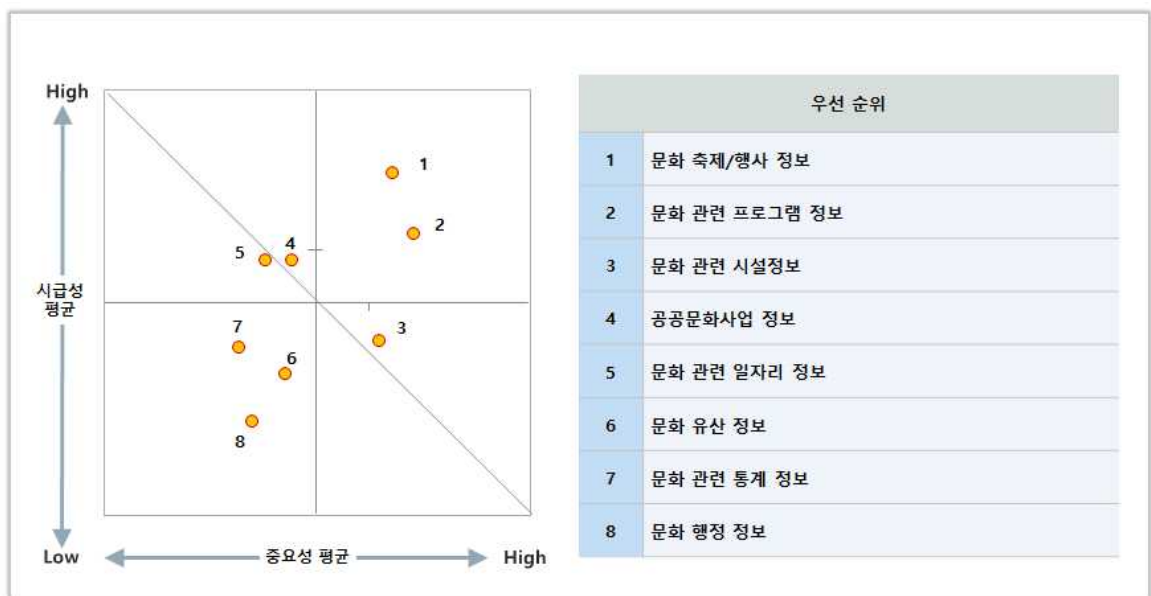
<표 II-436>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고려 요인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시스템 사용 매뉴얼 단순화	타 지역과의 정보공유 가능	대인서비스 향상	업무처리 속도 증가	기타
전 체		79	51.9	35.4	8.9	2.5	1.3
지역 규모	대도시	50	58.0	30.0	8.0	2.0	2.0
	중소도시	24	37.5	50.0	8.3	4.2	0.0
	읍면지역 이하	5	60.0	20.0	20.0	0.0	0.0

25. 지역문화문화정보 우선순위

[그림 II-237] 지역문화정보의 중요도 및 시급성



<표 II-437> 지역문화정보 중요도 -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시설 정보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정보	문화 행정 정보	문화 유산 정보
전 체		79	71.8	73.4	65.8	67.4
지역 규모	대도시	50	74.0	77.5	64.5	69.0
	중소도시	24	69.8	67.7	69.8	63.5
	읍면지역 이하	5	60.0	60.0	60.0	70.0

<표 II-438> 지역문화정보 중요도 -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공공문화사업 정보	문화 축제/행사 정보	문화 관련 통계 정보
전 체		79	66.5	67.7	72.5	65.2
지역 규모	대도시	50	66.0	68.5	75.0	63.5
	중소도시	24	69.8	68.8	69.8	71.9
	읍면지역 이하	5	55.0	55.0	60.0	50.0

<표 II-439> 지역문화정보 시급성 -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시설 정보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정보	문화 행정 정보	문화 유산 정보
전 체		79	53.5	58.5	49.7	51.9
지역 규모	대도시	50	53.5	62.0	47.0	53.5
	중소도시	24	57.3	56.3	58.3	52.1
	읍면지역 이하	5	35.0	35.0	35.0	35.0

<표 II-440> 지역문화정보 시급성 -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공공문화사업 정보	문화 축제/행사 정보	문화 관련 통계 정보
전 체		79	57.3	57.3	61.4	53.2
지역 규모	대도시	50	58.0	58.5	65.0	48.5
	중소도시	24	61.5	60.4	60.4	65.6
	읍면지역 이하	5	30.0	30.0	30.0	40.0

26. 지역문화정보 활용 우선 순위

<표 II-441> 지역문화정보 도움수준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프로그램 정보	축제/행사 정보	관련 통계 정보	공공문화사업 정보	시설정보	문화유산 정보	행정정보	일자리 정보
전 체		79	75.9	73.1	72.5	71.8	67.7	66.1	63.0	60.4
지역 규모	대도시	50	78.0	73.5	71.5	72.0	68.0	65.0	60.0	58.0
	중소도시	24	72.9	74.0	77.1	71.9	69.8	67.7	70.8	66.7
	읍면지역 이하	5	70.0	65.0	60.0	70.0	55.0	70.0	55.0	55.0



3장. 조사결과(문화재단)

1. 문화정보 수집·관리 현황

<표 Ⅲ-442> 문화정보 수집·관리 현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수집 · 관리하고 있다	수집 · 관리하고 있지 않다
전 체		32	59.4	40.6
지역 규모	대도시	15	53.3	46.7
	중소도시	12	66.7	33.3
	읍면지역 이하	5	60.0	40.0

2. 수집·관리하는 문화정보

<표 Ⅲ-443> 수집·관리하는 문화정보 총괄(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재단 문화관련 정보 (사업, 인력, 예산, 프로그램, 축제 등)	지역 내 문화관련 정보	관리 문화시설 정보
전 체		19	100.0	52.6	52.6
지역 규모	대도시	8	100.0	37.5	37.5
	중소도시	8	100.0	75.0	87.5
	읍면지역 이하	3	100.0	33.3	0.0

2. 수집·관리 방법 및 주기

가. 재단 문화관련 정보

1) 기관 내 문화관련 사업현황

<표 Ⅲ-444> 기관 내 문화관련 사업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기타
전 체		19	84.2	15.8	5.3
지역 규모	대도시	8	100.0	0.0	0.0
	중소도시	8	62.5	37.5	12.5
	읍면지역 이하	3	100.0	0.0	0.0

<표 Ⅲ-445> 기관 내 문화관련 사업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9	63.2	5.3	5.3	10.5	10.5	5.3
지역 규모	대도시	8	50.0	0.0	12.5	12.5	25.0	0.0
	중소도시	8	75.0	12.5	0.0	12.5	0.0	0.0
	읍면지역 이하	3	66.7	0.0	0.0	0.0	0.0	33.3

2) 기관 내 문화예산

<표 Ⅲ-446> 기관 내 문화예산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기타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19	78.9	10.5	5.3	10.5
지역 규모	대도시	8	87.5	0.0	0.0	12.5
	중소도시	8	62.5	25.0	12.5	12.5
	읍면지역 이하	3	100.0	0.0	0.0	0.0

<표 Ⅲ-447> 기관 내 문화예산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7	64.7	23.5	5.9	5.9
지역 규모	대도시	7	57.1	28.6	14.3	0.0
	중소도시	7	71.4	28.6	0.0	0.0
	읍면지역 이하	3	66.7	0.0	0.0	33.3

3) 기관 내 문화관련 인력현황

<표 Ⅲ-448> 기관 내 문화관련 인력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기타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19	78.9	15.8	10.5	5.3
지역 규모	대도시	8	87.5	0.0	0.0	12.5
	중소도시	8	62.5	37.5	25.0	0.0
	읍면지역 이하	3	100.0	0.0	0.0	0.0

<표 Ⅲ-449> 기관 내 문화관련 인력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8	66.7	5.6	16.7	5.6	5.6
지역 규모	대도시	7	57.1	14.3	14.3	14.3	0.0
	중소도시	8	75.0	0.0	25.0	0.0	0.0
	읍면지역 이하	3	66.7	0.0	0.0	0.0	33.3

4) 기관 내 문화행사 및 축제

<표 Ⅲ-450> 기관 내 문화행사 및 축제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수집 · 관리하지 않음
전 체		19	84.2	26.3	5.3
지역 규모	대도시	8	100.0	0.0	0.0
	중소도시	8	62.5	50.0	12.5
	읍면지역 이하	3	100.0	33.3	0.0

<표 Ⅲ-451> 기관 내 문화행사 및 축제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8	72.2	5.6	5.6	11.1	5.6
지역 규모	대도시	8	62.5	12.5	0.0	25.0	0.0
	중소도시	7	85.7	0.0	14.3	0.0	0.0
	읍면지역 이하	3	66.7	0.0	0.0	0.0	33.3

5) 문화 채용정보

<표 Ⅲ-452> 문화 채용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기타	수집 · 관리하지 않음
전 체		19	73.7	10.5	10.5	10.5
지역 규모	대도시	8	87.5	0.0	0.0	12.5
	중소도시	8	50.0	25.0	25.0	12.5
	읍면지역 이하	3	100.0	0.0	0.0	0.0

<표 Ⅲ-453> 문화 채용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7	70.6	5.9	5.9	5.9	5.9	5.9
지역 규모	대도시	7	71.4	0.0	14.3	0.0	14.3	0.0
	중소도시	7	71.4	14.3	0.0	14.3	0.0	0.0
	읍면지역 이하	3	66.7	0.0	0.0	0.0	0.0	33.3

6)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표 Ⅲ-454>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전 체		19	94.7	15.8
지역 규모	대도시	8	100.0	0.0
	중소도시	8	87.5	37.5
	읍면지역 이하	3	100.0	0.0

<표 Ⅲ-455>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9	68.4	5.3	10.5	10.5	5.3
지역 규모	대도시	8	62.5	12.5	0.0	25.0	0.0
	중소도시	8	75.0	0.0	25.0	0.0	0.0
	읍면지역 이하	3	66.7	0.0	0.0	0.0	33.3

나. 지역 내 문화관련 정보

1) 문화사업 정보

<표 Ⅲ-456>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수집 · 관리하지 않음
전 체		10	80.0	1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0.0
	중소도시	6	66.7	16.7	16.7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표 Ⅲ-457>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9	66.7	11.1	11.1	11.1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0.0	0.0	33.3
	중소도시	5	60.0	20.0	20.0	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0.0

2)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예산

<표 Ⅲ-458>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예산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수집 · 관리하지 않음
전 체		10	80.0	2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0.0
	중소도시	6	66.7	16.7	16.7
	읍면지역 이하	1	100.0	100.0	0.0

<표 Ⅲ-459>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예산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9	55.6	11.1	11.1	22.2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0.0	0.0	33.3
	중소도시	5	40.0	20.0	20.0	2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0.0

3)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표 Ⅲ-460>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10	70.0	2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0.0
	중소도시	6	50.0	33.3	16.7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표 Ⅲ-461>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9	77.8	11.1	11.1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0.0	33.3
	중소도시	5	80.0	20.0	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4)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표 Ⅲ-462>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수집 · 관리하지 않음
전 체		10	80.0	2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0.0
	중소도시	6	66.7	33.3	16.7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표 Ⅲ-463>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9	55.6	22.2	22.2
지역 규모	대도시	3	33.3	33.3	33.3
	중소도시	5	60.0	20.0	2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5)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표 Ⅲ-464>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전 체		10	80.0	3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중소도시	6	66.7	5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표 Ⅲ-465>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10	70.0	10.0	2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0.0	33.3
	중소도시	6	66.7	16.7	16.7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6)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표 Ⅲ-466>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전 체		10	70.0	5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33.3
	중소도시	6	66.7	5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100.0

<표 Ⅲ-467>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10	70.0	10.0	2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0.0	33.3
	중소도시	6	66.7	16.7	16.7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7)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표 Ⅲ-468>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기타
전 체		10	70.0	3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0.0
	중소도시	6	50.0	50.0	16.7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표 Ⅲ-469>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10	80.0	1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0.0	33.3
	중소도시	6	83.3	16.7	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8) 지역민 문화통계

<표 Ⅲ-470> 지역민 문화통계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전 체		10	80.0	4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중소도시	6	66.7	66.7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표 Ⅲ-471> 지역민 문화통계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0	40.0	10.0	10.0	20.0	20.0
지역 규모	대도시	3	33.3	33.3	0.0	33.3	0.0
	중소도시	6	33.3	0.0	16.7	16.7	33.3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0.0	0.0

9) 지역 문화통계

<표 Ⅲ-472> 지역 문화통계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10	60.0	4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0.0
	중소도시	6	33.3	66.7	16.7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표 Ⅲ-473> 지역 문화통계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10	60.0	10.0	10.0	2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0.0	0.0	33.3
	중소도시	6	50.0	16.7	16.7	16.7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0.0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표 Ⅲ-47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전 체		10	80.0	3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중소도시	6	66.7	5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표 Ⅲ-475>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10	70.0	10.0	1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0.0	0.0	33.3
	중소도시	6	66.7	16.7	16.7	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0.0

다. 관리 문화시설 정보

1)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정보

<표 Ⅲ-476>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전 체		10	90.0	3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중소도시	7	85.7	42.9

<표 Ⅲ-477>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10	60.0	10.0	10.0	2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0.0	0.0	33.3
	중소도시	7	57.1	14.3	14.3	14.3

2)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인력

<표 Ⅲ-478>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인력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전 체		10	90.0	2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중소도시	7	85.7	28.6

<표 Ⅲ-479>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인력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10	70.0	10.0	2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0.0	33.3
	중소도시	7	71.4	14.3	14.3

3)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예산

<표 Ⅲ-480>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예산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전 체		10	90.0	2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중소도시	7	85.7	28.6

<표 Ⅲ-481>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예산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10	60.0	20.0	20.0
지역 규모	대도시	3	33.3	33.3	33.3
	중소도시	7	71.4	14.3	14.3

4)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표 Ⅲ-482>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전 체		10	80.0	3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33.3
	중소도시	7	85.7	28.6

<표 Ⅲ-483>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10	80.0	1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0.0	33.3
	중소도시	7	85.7	14.3	0.0

5)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표 Ⅲ-484>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수집 · 관리하지 않음
전 체		10	70.0	2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33.3	0.0
	중소도시	7	71.4	14.3	14.3

<표 Ⅲ-485>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2개월 미만
전 체		9	77.8	22.2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33.3
	중소도시	6	83.3	16.7

6)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표 Ⅲ-486>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기타
전 체		10	70.0	2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33.3	0.0
	중소도시	7	71.4	14.3	14.3

<표 Ⅲ-487>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0	70.0	2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33.3	33.3	33.3
	중소도시	7	85.7	14.3	0.0

7)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표 Ⅲ-488>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시설 요청	기타
전 체		10	70.0	2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33.3	0.0
	중소도시	7	71.4	14.3	14.3

<표 Ⅲ-489>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전 체		10	80.0	10.0	10.0
지역 규모	대도시	3	66.7	0.0	33.3
	중소도시	7	85.7	14.3	0.0

4. 수집·관리하는 주체

<표 Ⅲ-490> 수집·관리하는 문화정보 관리 주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해당부서 사업 관리자	기타
전 체		19	94.7	5.3
지역 규모	대도시	8	87.5	12.5
	중소도시	8	100.0	0.0
	읍면지역 이하	3	100.0	0.0

5. 수집·관리 애로사항

<표 Ⅲ-491> 문화정보 수집·관리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보관리 미흡	인력부족	관련부서와 협력 미흡	예산부족	없음
전 체		19	42.1	26.3	15.8	5.3	10.5
지역 규모	대도시	8	25.0	37.5	25.0	12.5	0.0
	중소도시	8	62.5	25.0	0.0	0.0	12.5
	읍면지역 이하	3	33.3	0.0	33.3	0.0	33.3

6. 문화정보 관리 방법

<표 Ⅲ-492> 문화정보 수집·관리 방법

(단위 : %)

구 분		사례수	내부 문서로 관리	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리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	기타
전 체		19	57.9	21.1	10.5	10.5
지역 규모	대도시	8	75.0	12.5	12.5	0.0
	중소도시	8	62.5	0.0	12.5	25.0
	읍면지역 이하	3	0.0	100.0	0.0	0.0

7. 문화정보 수집·관리 목적

<표 Ⅲ-493> 문화정보 수집·관리 목적(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관련 자료의 단순 파악 및 정리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지역문화발 전 기반 마련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업 시행	문화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	문화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확보
전 체		19	26.3	21.1	21.1	21.1	10.5
지역 규모	대도시	8	25.0	0.0	37.5	25.0	12.5
	중소도시	8	25.0	25.0	12.5	25.0	12.5
	읍면지역 이하	3	33.3	66.7	0.0	0.0	0.0

<표 Ⅲ-494> 문화정보 수집·관리 목적(1+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관련 자료의 단순 파악 및 정리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지역문화발 전 기반 마련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업 시행	문화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	문화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확보
전 체		19	36.8	42.1	57.9	26.3	36.8
지역 규모	대도시	8	37.5	37.5	37.5	37.5	50.0
	중소도시	8	37.5	37.5	75.0	25.0	25.0
	읍면지역 이하	3	33.3	66.7	66.7	0.0	33.3

8. 지자체 제공 정보

<표 Ⅲ-495> 지자체 제공 정보(1순위)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기관 내 문화관련 사업현황	기관 내 문화예산	기관 내 문화관련 인력현황	기관 내 문화행사 및 축제
전 체		19	36.8	15.8	10.5	10.5
지역 규모	대도시	8	0.0	12.5	25.0	12.5
	중소도시	8	62.5	12.5	0.0	12.5
	읍면지역 이하	3	66.7	33.3	0.0	0.0

<표 Ⅲ-496> 지자체 제공 정보(1순위)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문화 채용정보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예산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인력
전 체		19	10.5	5.3	5.3	5.3
지역 규모	대도시	8	25.0	12.5	12.5	0.0
	중소도시	8	0.0	0.0	0.0	12.5
	읍면지역 이하	3	0.0	0.0	0.0	0.0

<표 Ⅲ-497> 지자체 제공 정보(1+2+3순위)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기관 내 문화관련 사업현황	기관 내 문화예산	기관 내 문화관련 인력현황	기관 내 문화행사 및 축제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전 체		19	73.7	21.1	42.1	26.3	21.1
지역 규모	대도시	8	50.0	12.5	25.0	12.5	37.5
	중소도시	8	87.5	12.5	62.5	25.0	12.5
	읍면지역 이하	3	100.0	66.7	33.3	66.7	0.0

<표 Ⅲ-498> 지자체 제공 정보(1+2+3순위)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 채용정보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예산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인력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기관 내 문화예술 교육프로 그램
전 체		19	15.8	5.3	5.3	31.6	15.8
지역 규모	대도시	8	25.0	12.5	0.0	25.0	25.0
	중소도시	8	12.5	0.0	12.5	50.0	12.5
	읍면지역 이하	3	0.0	0.0	0.0	0.0	0.0

<표 Ⅲ-499> 지자체 제공 정보(1+2+3순위) -3

(단위 : %)

구 분		사례수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프로 그램 현황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정보(면적, 위치, 이용시간 등)	관리하 고 있는 문화시 설 내 보유자 료
전 체		19	10.5	10.5	5.3	5.3	5.3	5.3
지역 규모	대도시	8	25.0	25.0	0.0	12.5	0.0	12.5
	중소도시	8	0.0	0.0	12.5	0.0	0.0	0.0
	읍면지역 이하	3	0.0	0.0	0.0	0.0	33.3	0.0

9.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는 이유

<표 Ⅲ-500>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료 수집 및 전달 수단이 부족함 (시스템 등 정보부족)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정보가 많아 관리하기 어려움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가 부족함	기타
전 체		13	30.8	30.8	7.7	7.7	23.1
지역 규모	대도시	7	28.6	28.6	0	14.3	28.6
	중소도시	4	0	50	25	0	25
	읍면지역 이하	2	100	0	0	0	0

10. 문화정보의 외부 제공 현황

<표 Ⅲ-501> 문화정보의 외부 제공 현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2	34.4	65.6
지역 규모	대도시	15	33.3	66.7
	중소도시	12	41.7	58.3
	읍면지역 이하	5	20.0	80.0

11. 외부에 제공하는 문화정보

<표 Ⅲ-502> 외부에 제공하는 문화정보(중복응답)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기관 내 문화관련 사업현황	기관 내 문화행사 및 축제	기관 내 문화예술교 육프로그램	문화 채용정보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정보 (면적, 위치, 이용시간 등)
전 체		11	81.8	81.8	81.8	72.7	72.7
지역 규모	대도시	5	60.0	80.0	80.0	80.0	60.0
	중소도시	5	100.0	80.0	80.0	60.0	10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100.0	100.0	100.0	0.0

<표 Ⅲ-503> 외부에 제공하는 문화정보(중복응답)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기관 내 문화관련 인력현황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인력
전 체		11	72.7	63.6	63.6	36.4	36.4
지역 규모	대도시	5	60.0	40.0	60.0	40.0	40.0
	중소도시	5	100.0	80.0	80.0	40.0	40.0
	읍면지역 이하	1	0.0	100.0	0.0	0.0	0.0

<표 Ⅲ-504> 외부에 제공하는 문화정보(중복응답) -3

(단위 : %)

구 분		사례수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기관 내 문화예산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지역 내 공공문화 시설 수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예산
전 체		11	36.4	27.3	18.2	18.2	18.2	18.2
지역 규모	대도시	5	40.0	0.0	40.0	40.0	40.0	20.0
	중소도시	5	40.0	40.0	0.0	0.0	0.0	20.0
	읍면지역 이하	1	0.0	100.0	0.0	0.0	0.0	0.0

<표 Ⅲ-505> 외부에 제공하는 문화정보(중복응답) -4

(단위 : %)

구 분		사례수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예산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지역민 문화통계 (문화 향유율, 만족도 등)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현황
전 체		11	18.2	9.1	9.1	9.1	9.1	9.1
지역 규모	대도시	5	20.0	20.0	20.0	20.0	20.0	20.0
	중소도시	5	20.0	0.0	0.0	0.0	0.0	0.0
	읍면지역 이하	1	0.0	0.0	0.0	0.0	0.0	0.0

12. 문화정보 외부 제공 방법

<표 Ⅲ-506> 문화정보 외부 제공 방법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체 홈페이지(또는 블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외부에서 요청시 문서 제공	기타
전 체		11	54.5	36.4	9.1
지역 규모	대도시	5	40.0	60.0	0.0
	중소도시	5	60.0	20.0	20.0
	읍면지역 이하	1	100.0	0.0	0.0

13. 문화정보 외부 제공 시 정보 입력자

<표 Ⅲ-507> 문화정보 외부 제공 시 정보 입력자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각 사업별 담당자가 입력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입력
전 체		11	81.8	18.2
지역 규모	대도시	5	100.0	0.0
	중소도시	5	80.0	20.0
	읍면지역 이하	1	0.0	100.0

14. 문화정보 외부 미제공 이유

<표 Ⅲ-508> 문화정보 외부 미제공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보 제공 시스템 미구축	정보내용 부족	시간 및 예산 부족	필요성을 못 느낌	타 문화기관 에서 제공	기타
전 체		21	38.1	19.0	19.0	9.5	9.5	4.8
지역 규모	대도시	10	40.0	20.0	20.0	10.0	0.0	10.0
	중소도시	7	14.3	14.3	28.6	14.3	28.6	0.0
	읍면지역 이하	4	75.0	25.0	0.0	0.0	0.0	0.0

15.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동의 여부

<표 Ⅲ-509>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의견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매우 반대 한다	보통	찬성 한다	매우 찬성 한다	[100점 평균]	[5점 평균]
전 체		32	6.3	40.6	28.1	25.0	66.4	3.66
지역 규모	대도시	15	6.7	40.0	26.7	26.7	66.7	3.67
	중소도시	12	8.3	33.3	33.3	25.0	66.7	3.67
	읍면지역 이하	5	0.0	60.0	20.0	20.0	65.0	3.60

16.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반대 이유

<표 Ⅲ-510>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반대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과다
전 체		2	100.0
연령	30대	1	100.0
	40대	1	100.0
직종	행정직	2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1	100.0
	중소도시	1	100.0

17.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찬성 이유

<표 Ⅲ-511>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찬성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사업 총괄 관리·조정 등 근거 자료로 활용	자료요구에 대응 (통계자료, 현황자료 등) 및 사업개발에 활용	중앙/자치 단체 및 기관의 예산확보, 사업 확장 등 업무에 활용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정보 획득에 사용	지역 간 비교분석에 활용	기타
전 체	30	36.7	30.0	13.3	13.3	3.3	3.3
지역 규모							
대도시	14	35.7	21.4	21.4	7.1	7.1	7.1
중소도시	11	45.5	36.4	0.0	18.2	0.0	0.0
읍면지역 이하	5	20.0	40.0	20.0	20.0	0.0	0.0

18.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관리 주체

<표 Ⅲ-512>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관리 주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광역 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문 화예술위원 회 등)	중앙부처	중앙부처 산하 전문기관	기초 자치단체
전 체	32	25.0	25.0	21.9	15.6	12.5
지역 규모						
대도시	15	20.0	40.0	13.3	13.3	13.3
중소도시	12	33.3	8.3	25.0	25.0	8.3
읍면지역 이하	5	20.0	20.0	40.0	0.0	20.0

19.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자료입력 주체

<표 Ⅲ-513>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자료입력 주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시스템 운영기관	개별 문화시설 및 기관 담당자	기초지자체 담당자	기타
전 체	32	46.9	37.5	12.5	3.1
지역 규모					
대도시	15	46.7	53.3	0.0	0.0
중소도시	12	50.0	25.0	16.7	8.3
읍면지역 이하	5	40.0	20.0	40.0	0.0

20.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자료입력 의향

<표 Ⅲ-514>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자료입력 의향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32	50.0	50.0
지역 규모	대도시	15	66.7	33.3
	중소도시	12	33.3	66.7
	읍면지역 이하	5	40.0	60.0

<표 Ⅲ-515>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자료입력 의향 및 입력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중앙정부 사업으로 데이터입력과 관리의 주체가 중앙정부임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함	자료제출 및 입력의 법적근거가 미흡함	기타
전 체		16	43.8	31.3	12.5	12.5
지역 규모	대도시	5	60.0	20.0	20.0	0.0
	중소도시	8	25.0	37.5	12.5	25.0
	읍면지역 이하	3	66.7	33.3	0.0	0.0

21.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고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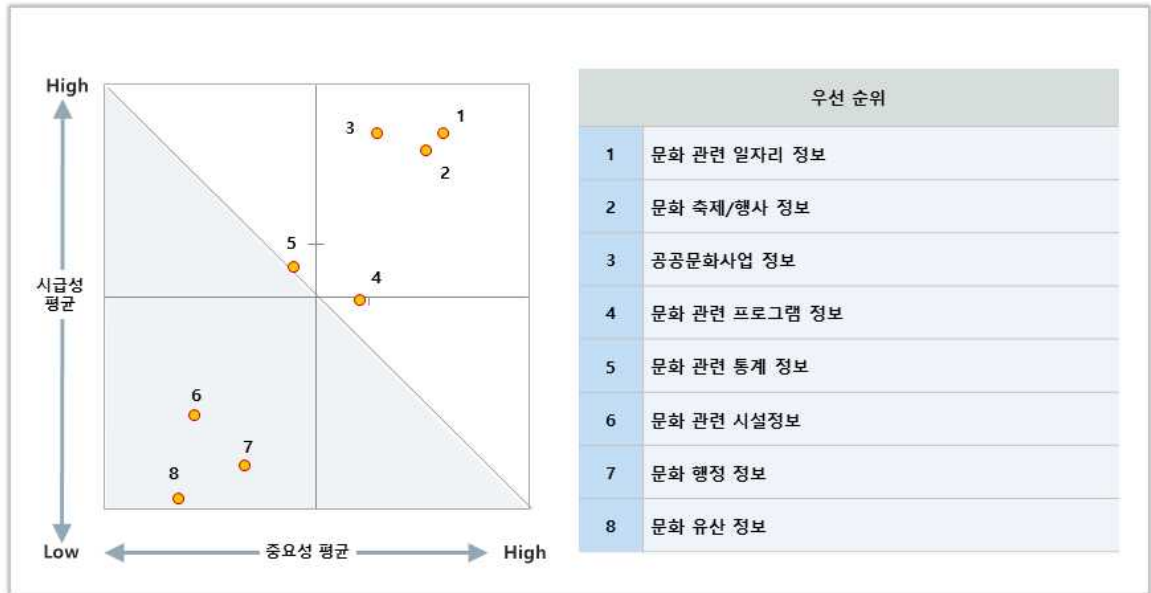
<표 Ⅲ-516>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고려 요인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시스템 사용 매뉴얼 단순화	타 지역과의 정보공유 가능	대인서비스 향상	업무처리 속도 증가	기타
전 체		32	46.9	37.5	6.3	6.3	3.1
지역 규모	대도시	15	53.3	26.7	6.7	6.7	6.7
	중소도시	12	41.7	41.7	8.3	8.3	0.0
	읍면지역 이하	5	40.0	60.0	0.0	0.0	0.0

20. 지역문화정보 우선순위

[그림 Ⅲ-238]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중요도 및 시급성



<표 Ⅲ-517>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정보 중요도 -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문화 축제/행사 정보	공공문화사업 정보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정보
전 체		32	72.7	71.9	69.5	68.8
지역 규모	대도시	15	73.3	68.3	76.7	71.7
	중소도시	12	72.9	72.9	62.5	64.6
	읍면지역 이하	5	70.0	80.0	65.0	70.0

<표 Ⅲ-518>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정보 중요도 -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통계 정보	문화 관련 시설 정보	문화 행정 정보	문화 유산 정보
전 체		32	65.6	63.3	60.9	60.2
지역 규모	대도시	15	73.3	66.7	68.3	61.7
	중소도시	12	58.3	56.3	50.0	58.3
	읍면지역 이하	5	60.0	70.0	65.0	60.0

<표 Ⅲ-519>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정보 시급성 -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문화 축제/행사 정보	공공문화사업 정보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정보
전 체		32	64.1	63.3	64.1	56.3
지역 규모	대도시	15	63.3	60.0	70.0	53.3
	중소도시	12	64.6	64.6	58.3	58.3
	읍면지역 이하	5	65.0	70.0	60.0	60.0

<표 Ⅲ-520>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정보 시급성 -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통계 정보	문화 관련 시설 정보	문화 행정 정보	문화 유산 정보
전 체		32	57.8	48.4	50.8	46.9
지역 규모	대도시	15	63.3	51.7	58.3	46.7
	중소도시	12	54.2	41.7	39.6	45.8
	읍면지역 이하	5	50.0	55.0	55.0	50.0

21. 지역문화정보 활용 우선순위

<표 Ⅲ-521> 지역문화정보 도움 수준

(단위 : %)

구 분		사례수	관련 통계 정보	축제/행사 정보	프로그램 정보	공공 문화사업 정보
전 체		32	76.6	74.2	71.1	71.1
지역 규모	대도시	15	80.0	73.3	70.0	73.3
	중소도시	12	70.8	72.9	70.8	66.7
	읍면지역 이하	5	80.0	80.0	75.0	75.0



4장. 조사결과(문화시설)

1. 문화정보 수집·관리 현황

<표 IV-522> 문화정보 수집·관리 현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수집·관리하고 있다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다
전 체		199	59.3	40.7
기관유형	도서관	81	51.9	48.1
	박물관	46	69.6	30.4
	미술관	27	74.1	25.9
	공연장(문예회관)	45	53.3	46.7
지역 규모	대도시	59	59.3	40.7
	중소도시	80	61.3	38.8
	읍면지역 이하	60	56.7	43.3

2. 수집·관리하는 문화정보

<표 IV-523> 수집·관리하는 문화정보(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시설 운영현황	문화시설 정보	문화시설 내 인력 현황	문화시설 이용자 통계	기타
전 체		118	89.0	75.4	69.5	69.5	4.2
기관유형	도서관	42	95.2	85.7	76.2	76.2	2.4
	박물관	32	81.3	71.9	65.6	65.6	6.3
	미술관	20	90.0	70.0	70.0	70.0	5.0
	공연장(문예회관)	24	87.5	66.7	62.5	62.5	4.2
지역 규모	대도시	35	91.4	74.3	77.1	71.4	8.6
	중소도시	49	85.7	75.5	65.3	67.3	4.1
	읍면지역 이하	34	91.2	76.5	67.6	70.6	0.0

3. 수집·관리 방법 및 주기

가. 문화시설 정보

1) 문화시설 정보(면적, 위치, 이용시간 등)

<표 IV-524> 문화시설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타
전 체		89	94.4	9.0
기관유형	도서관	36	100.0	2.8
	박물관	23	91.3	8.7
	미술관	14	100.0	14.3
	공연장(문예회관)	16	81.3	18.8
지역 규모	대도시	26	92.3	7.7
	중소도시	37	94.6	10.8
	읍면지역 이하	26	96.2	7.7

<표 IV-525> 문화시설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89	49.4	5.6	5.6	6.7	13.5	19.1
기관유형	도서관	36	47.2	2.8	8.3	5.6	19.4	16.7
	박물관	23	43.5	8.7	4.3	0.0	8.7	34.8
	미술관	14	57.1	7.1	0.0	14.3	7.1	14.3
	공연장(문예회관)	16	56.3	6.3	6.3	12.5	12.5	6.3
지역 규모	대도시	26	53.8	0.0	3.8	7.7	3.8	30.8
	중소도시	37	45.9	10.8	8.1	5.4	18.9	10.8
	읍면지역 이하	26	50.0	3.8	3.8	7.7	15.4	19.2

2) 문화시설 예산

<표 IV-526> 문화시설 예산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타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89	84.3	12.4	4.5
기관유형	도서관	36	97.2	5.6	0.0
	박물관	23	73.9	13.0	13.0
	미술관	14	78.6	14.3	7.1
	공연장(문예회관)	16	75.0	25.0	0.0
지역 규모	대도시	26	84.6	15.4	0.0
	중소도시	37	78.4	13.5	10.8
	읍면지역 이하	26	92.3	7.7	0.0

<표 IV-527> 문화시설 예산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85	57.6	2.4	7.1	2.4	15.3	15.3
기관유형	도서관	36	47.2	5.6	5.6	5.6	25.0	11.1
	박물관	20	60.0	0.0	5.0	0.0	5.0	30.0
	미술관	13	69.2	0.0	7.7	0.0	15.4	7.7
	공연장(문예회관)	16	68.8	0.0	12.5	0.0	6.3	12.5
지역 규모	대도시	26	69.2	0.0	3.8	0.0	7.7	19.2
	중소도시	33	51.5	3.0	12.1	3.0	15.2	15.2
	읍면지역 이하	26	53.8	3.8	3.8	3.8	23.1	11.5

나. 문화시설 내 인력

1) 문화시설 종사자

<표 IV-528> 문화시설 내 종사자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타	수집 · 관리하지 않음
전 체		82	90.2	11.0	1.2
기관유형	도서관	32	96.9	9.4	0.0
	박물관	21	81.0	14.3	4.8
	미술관	14	92.9	7.1	0.0
	공연장(문예회관)	15	86.7	13.3	0.0
지역 규모	대도시	27	88.9	11.1	0.0
	중소도시	32	90.6	9.4	3.1
	읍면지역 이하	23	91.3	13.0	0.0

<표 IV-529> 지역 내 내 종사자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81	64.2	1.2	7.4	6.2	11.1	9.9
기관유형	도서관	32	56.3	0.0	6.3	6.3	21.9	9.4
	박물관	20	65.0	0.0	5.0	5.0	5.0	20.0
	미술관	14	64.3	0.0	14.3	7.1	7.1	7.1
	공연장(문예회관)	15	80.0	6.7	6.7	6.7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27	63.0	0.0	7.4	11.1	3.7	14.8
	중소도시	31	64.5	3.2	12.9	0.0	12.9	6.5
	읍면지역 이하	23	65.2	0.0	0.0	8.7	17.4	8.7

2) 문화시설 내 전문직 현황

<표 IV-530> 문화시설 내 전문직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타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82	89.0	9.8	2.4
기관유형	도서관	32	90.6	6.3	3.1
	박물관	21	85.7	14.3	0.0
	미술관	14	92.9	7.1	7.1
	공연장(문예회관)	15	86.7	13.3	0.0
지역 규모	대도시	27	85.2	11.1	3.7
	중소도시	32	90.6	6.3	3.1
	읍면지역 이하	23	91.3	13.0	0.0

<표 IV-531> 문화시설 내 전문직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80	62.5	7.5	6.3	12.5	11.3
기관유형	도서관	31	51.6	6.5	6.5	22.6	12.9
	박물관	21	66.7	4.8	4.8	4.8	19.0
	미술관	13	61.5	15.4	7.7	7.7	7.7
	공연장(문예회관)	15	80.0	6.7	6.7	6.7	0.0
지역 규모	대도시	26	61.5	7.7	11.5	3.8	15.4
	중소도시	31	61.3	12.9	0.0	16.1	9.7
	읍면지역 이하	23	65.2	0.0	8.7	17.4	8.7

다. 문화시설 운영현황

1)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표 IV-532>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타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105	92.4	7.6	2.9
기관유형	도서관	40	95.0	5.0	2.5
	박물관	26	92.3	0.0	7.7
	미술관	18	94.4	16.7	0.0
	공연장(문예회관)	21	85.7	14.3	0.0
지역 규모	대도시	32	96.9	0.0	3.1
	중소도시	42	85.7	14.3	4.8
	읍면지역 이하	31	96.8	6.5	0.0

<표 IV-533>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102	62.7	8.8	6.9	7.8	7.8	5.9
기관유형	도서관	39	61.5	7.7	5.1	7.7	12.8	5.1
	박물관	24	66.7	8.3	4.2	12.5	4.2	4.2
	미술관	18	50.0	16.7	11.1	5.6	5.6	11.1
	공연장(문예회관)	21	71.4	4.8	9.5	4.8	4.8	4.8
지역 규모	대도시	31	67.7	6.5	9.7	3.2	3.2	9.7
	중소도시	40	62.5	12.5	7.5	5.0	10.0	2.5
	읍면지역 이하	31	58.1	6.5	3.2	16.1	9.7	6.5

2)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현황

<표 IV-534>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타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105	91.4	4.8	5.7
기관유형	도서관	40	97.5	2.5	2.5
	박물관	26	96.2	0.0	3.8
	미술관	18	88.9	5.6	11.1
	공연장(문예회관)	21	76.2	14.3	9.5
지역 규모	대도시	32	96.9	0.0	3.1
	중소도시	42	88.1	9.5	4.8
	읍면지역 이하	31	90.3	3.2	9.7

<표 IV-535>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99	62.6	7.1	6.1	4.0	11.1	9.1
기관유형	도서관	39	51.3	10.3	5.1	2.6	17.9	12.8
	박물관	25	68.0	8.0	0.0	12.0	8.0	4.0
	미술관	16	68.8	0.0	12.5	0.0	6.3	12.5
	공연장(문예회관)	19	73.7	5.3	10.5	0.0	5.3	5.3
지역 규모	대도시	31	64.5	6.5	9.7	3.2	3.2	12.9
	중소도시	40	62.5	10.0	5.0	2.5	15.0	5.0
	읍면지역 이하	28	60.7	3.6	3.6	7.1	14.3	10.7

3)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현황

<표 IV-536>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현황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타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105	91.4	4.8	5.7
기관유형	도서관	40	97.5	2.5	2.5
	박물관	26	96.2	3.8	0.0
	미술관	18	94.4	5.6	5.6
	공연장(문예회관)	21	71.4	9.5	19.0
지역 규모	대도시	32	96.9	3.1	0.0
	중소도시	42	85.7	7.1	9.5
	읍면지역 이하	31	93.5	3.2	6.5

<표 IV-537>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현황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99	60.6	8.1	5.1	8.1	10.1	8.1
기관유형	도서관	39	59.0	7.7	5.1	7.7	10.3	10.3
	박물관	26	65.4	7.7	0.0	11.5	11.5	3.8
	미술관	17	52.9	11.8	5.9	11.8	5.9	11.8
	공연장(문예회관)	17	64.7	5.9	11.8	0.0	11.8	5.9
지역 규모	대도시	32	65.6	6.3	6.3	6.3	6.3	9.4
	중소도시	38	57.9	13.2	5.3	2.6	15.8	5.3
	읍면지역 이하	29	58.6	3.4	3.4	17.2	6.9	10.3

라. 문화시설 이용자 통계

<표 IV-538> 문화시설 이용자 통계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수집	기타	수집·관리하지 않음
전 체		82	96.3	2.4	1.2
기관유형	도서관	32	100.0	0.0	0.0
	박물관	21	100.0	0.0	0.0
	미술관	14	100.0	0.0	0.0
	공연장(문예회관)	15	80.0	13.3	6.7
지역 규모	대도시	25	100.0	0.0	0.0
	중소도시	33	90.9	6.1	3.0
	읍면지역 이하	24	100.0	0.0	0.0

<표 IV-539> 문화시설 이용자 통계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전 체		81	70.4	11.1	2.5	2.5	6.2	7.4
기관유형	도서관	32	59.4	12.5	3.1	3.1	12.5	9.4
	박물관	21	90.5	9.5	0.0	0.0	0.0	0.0
	미술관	14	64.3	14.3	7.1	0.0	7.1	7.1
	공연장(문예회관)	14	71.4	7.1	0.0	7.1	0.0	14.3
지역 규모	대도시	25	72.0	8.0	8.0	0.0	0.0	12.0
	중소도시	32	65.6	15.6	0.0	3.1	9.4	6.3
	읍면지역 이하	24	75.0	8.3	0.0	4.2	8.3	4.2

마. 기타 문화정보

<표 IV-540> 기타 정보 수집·관리 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접 수집
전 체		5	100.0
기관유형	도서관	1	100.0
	박물관	2	100.0
	미술관	1	100.0
	공연장(문예회관)	1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중소도시	2	100.0

<표 IV-541> 기타 정보 수집·관리 주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시	12개월 이상
전 체		5	80.0	20.0
기관유형	도서관	1	0.0	100.0
	박물관	2	100.0	0.0
	미술관	1	100.0	0.0
	공연장(문예회관)	1	10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3	100.0	0.0
	중소도시	2	50.0	50.0

4. 수집·관리하는 주체

<표 IV-542> 수집·관리하는 문화정보 관리 주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해당부서 사업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총 책임자	기타
전 체		118	91.5	5.1	2.5	0.8
기관유형	도서관	42	90.5	7.1	2.4	0.0
	박물관	32	96.9	3.1	0.0	0.0
	미술관	20	90.0	0.0	10.0	0.0
	공연장(문예회관)	24	87.5	8.3	0.0	4.2
지역 규모	대도시	35	97.1	2.9	0.0	0.0
	중소도시	49	89.8	8.2	0.0	2.0
	읍면지역 이하	34	88.2	2.9	8.8	0.0

5. 수집·관리 애로사항

<표 IV-543> 문화정보 수집·관리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인력부족	정보관리 미흡	예산부족	관련부서와 협력 미흡	기타	없음
전 체		118	32.2	19.5	9.3	6.8	4.2	28.0
기관유형	도서관	42	26.2	14.3	16.7	7.1	2.4	33.3
	박물관	32	40.6	18.8	0.0	9.4	3.1	28.1
	미술관	20	35.0	15.0	20.0	10.0	5.0	15.0
	공연장(문예회관)	24	29.2	33.3	0.0	0.0	8.3	29.2
지역 규모	대도시	35	40.0	17.1	11.4	5.7	2.9	22.9
	중소도시	49	32.7	28.6	4.1	6.1	6.1	22.4
	읍면지역 이하	34	23.5	8.8	14.7	8.8	2.9	41.2

6. 문화정보 관리 방법

<표 IV-544> 문화정보 수집·관리 방법

(단위 : %)

구 분		사례수	내부 문서로 관리	내부 정보시스템 으로 관리	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리	기타
전 체		118	62.7	22.9	6.8	7.6
기관유형	도서관	42	50.0	40.5	7.1	2.4
	박물관	32	68.8	12.5	9.4	9.4
	미술관	20	60.0	25.0	0.0	15.0
	공연장(문예회관)	24	79.2	4.2	8.3	8.3
지역 규모	대도시	35	68.6	8.6	8.6	14.3
	중소도시	49	73.5	18.4	6.1	2.0
	읍면지역 이하	34	41.2	44.1	5.9	8.8

7. 문화정보 수집·관리 목적

<표 IV-545> 문화정보 수집·관리 목적(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확보	문화관련 자료의 단순 파악 및 정리	문화관련 정보를 상위기관 에 제공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지역문화 발전 기반 마련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업 시행	기타
전 체	118	36.4	24.6	14.4	12.7	11.0	0.8
기관유형	도서관	42	47.6	23.8	11.9	9.5	2.4
	박물관	32	40.6	15.6	25.0	3.1	0.0
	미술관	20	40.0	20.0	15.0	15.0	0.0
	공연장(문예회관)	24	8.3	41.7	4.2	29.2	0.0
지역 규모	대도시	35	48.6	20.0	14.3	5.7	0.0
	중소도시	49	22.4	34.7	10.2	18.4	2.0
	읍면지역 이하	34	44.1	14.7	20.6	11.8	0.0

8. 상위기관 제공 정보

<표 IV-546> 상위기관 제공 정보(1순위) -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현황	문화시설 정보	문화시설 예산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전 체	118	32.2	22.9	17.8	12.7
기관유형	도서관	42	35.7	23.8	14.3
	박물관	32	18.8	25.0	15.6
	미술관	20	25.0	30.0	15.0
	공연장(문예회관)	24	50.0	12.5	16.7
지역 규모	대도시	35	40.0	28.6	14.3
	중소도시	49	32.7	28.6	18.4
	읍면지역 이하	34	23.5	8.8	20.6

<표 IV-547> 상위기관 제공 정보(1순위) -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현황	문화시설 내 인력 현황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현황	기타	없음
전 체	118	7.6	1.7	1.7	0.8	2.5
기관유형	도서관	42	9.5	2.4	2.4	0.0
	박물관	32	9.4	0.0	3.1	0.0
	미술관	20	10.0	5.0	0.0	5.0
	공연장(문예회관)	24	0.0	0.0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35	11.4	0.0	2.9	0.0
	중소도시	49	4.1	0.0	0.0	2.0
	읍면지역 이하	34	8.8	5.9	2.9	0.0

<표 IV-548> 상위기관 제공 정보(1+2+3순위) -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현황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현황	문화시설 예산
전 체		118	68.6	54.2	51.7	33.9
기관유형	도서관	42	71.4	50.0	59.5	23.8
	박물관	32	65.6	53.1	53.1	34.4
	미술관	20	50.0	60.0	45.0	35.0
	공연장(문예회관)	24	83.3	58.3	41.7	50.0
지역 규모	대도시	35	60.0	54.3	54.3	34.3
	중소도시	49	75.5	55.1	46.9	32.7
	읍면지역 이하	34	67.6	52.9	55.9	35.3

<표 IV-549> <표 IV-549> 상위기관 제공 정보(1+2+3순위) -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시설 정보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현황	문화시설 내 인력 현황	문화시설 내 전문직 현황	기타	없음
전 체		118	33.1	24.6	23.7	1.7	0.8	2.5
기관유형	도서관	42	26.2	38.1	23.8	0.0	0.0	2.4
	박물관	32	37.5	18.8	28.1	0.0	0.0	3.1
	미술관	20	35.0	25.0	25.0	5.0	5.0	5.0
	공연장(문예회관)	24	37.5	8.3	16.7	4.2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35	40.0	25.7	28.6	2.9	0.0	0.0
	중소도시	49	40.8	16.3	18.4	0.0	2.0	4.1
	읍면지역 이하	34	14.7	35.3	26.5	2.9	0.0	2.9

<표 IV-550> 문화정보 수집·관리 목적(1+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확보	문화관련 정보를 상위기관 에 제공	문화관련 자료의 단순 파악 정리	문화관련 자료 활용 사업 문화행사	문화관련 자료 활용 지역문화 발전기 마련	기타
전 체		118	54.2	42.4	34.7	34.7	30.5	3.4
기관유형	도서관	42	66.7	52.4	31.0	21.4	26.2	2.4
	박물관	32	56.3	56.3	37.5	37.5	12.5	0.0
	미술관	20	65.0	25.0	25.0	35.0	45.0	5.0
	공연장(문예회관)	24	20.8	20.8	45.8	54.2	50.0	8.3
지역 규모	대도시	35	68.6	34.3	28.6	40.0	28.6	0.0
	중소도시	49	36.7	36.7	44.9	40.8	32.7	8.2
	읍면지역 이하	34	64.7	58.8	26.5	20.6	29.4	0.0

9.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는 이유

<표 IV-551>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료 수집 및 전달 수단이 부족함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정보가 많아 관리하기 어려움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가 부족함	기타
전 체		81	32.1	32.1	11.1	7.4	17.3
기관유형	도서관	39	35.9	30.8	10.3	10.3	12.8
	박물관	14	14.3	42.9	21.4	7.1	14.3
	미술관	7	14.3	14.3	28.6	0.0	42.9
	공연장(문예회관)	21	42.9	33.3	0.0	4.8	19.0
지역 규모	대도시	24	29.2	37.5	20.8	0.0	12.5
	중소도시	31	29.0	32.3	9.7	3.2	25.8
	읍면지역 이하	26	38.5	26.9	3.8	19.2	11.5

10. 문화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외부기관 정보시스템 활용

<표 IV-552> 문화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외부기관 정보시스템 활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 체		199	16.1	83.9
기관유형	도서관	81	13.6	86.4
	박물관	46	15.2	84.8
	미술관	27	18.5	81.5
	공연장(문예회관)	45	20.0	80.0
지역 규모	대도시	59	13.6	86.4
	중소도시	80	15.0	85.0
	읍면지역 이하	60	20.0	80.0

11. 문화정보의 외부 제공 현황

<표 IV-553> 문화정보의 외부 제공 현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99	38.7	61.3
기관유형	도서관	81	34.6	65.4
	박물관	46	45.7	54.3
	미술관	27	44.4	55.6
	공연장(문예회관)	45	35.6	64.4
지역 규모	대도시	59	37.3	62.7
	중소도시	80	38.8	61.3
	읍면지역 이하	60	40.0	60.0

12. 외부에 제공하는 문화정보

<표 IV-554> 외부에 제공하는 문화정보(중복응답) -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시설 정보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현황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현황	문화시설 내 인력현황
전 체		77	83.1	81.8	77.9	66.2
기관유형	도서관	28	78.6	75.0	78.6	67.9
	박물관	21	81.0	85.7	85.7	66.7
	미술관	12	100.0	83.3	91.7	83.3
	공연장(문예회관)	16	81.3	87.5	56.3	50.0
지역 규모	대도시	22	90.9	81.8	81.8	72.7
	중소도시	31	80.6	80.6	74.2	58.1
	읍면지역 이하	24	79.2	83.3	79.2	70.8

<표 IV-555> 외부에 제공하는 문화정보(중복응답) -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시설 보유자료 현황	문화시설 예산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문화시설 내 전문직 현황	기타
전 체		77	62.3	50.6	49.4	42.9	3.9
기관유형	도서관	28	75.0	46.4	50.0	32.1	7.1
	박물관	21	76.2	57.1	71.4	57.1	0.0
	미술관	12	75.0	58.3	50.0	50.0	0.0
	공연장(문예회관)	16	12.5	43.8	18.8	37.5	6.3
지역 규모	대도시	22	72.7	59.1	45.5	45.5	0.0
	중소도시	31	48.4	54.8	54.8	38.7	6.5
	읍면지역 이하	24	70.8	37.5	45.8	45.8	4.2

13. 문화정보 외부 제공 방법

<표 IV-556> 문화정보 외부 제공 방법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서비스	외부에서 요청 시 문서 제공	자체로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기타
전 체		77	49.4	36.4	6.5	7.8
기관유형	도서관	28	46.4	32.1	7.1	14.3
	박물관	21	47.6	33.3	9.5	9.5
	미술관	12	58.3	41.7	0.0	0.0
	공연장(문예회관)	16	50.0	43.8	6.3	0.0
지역 규모	대도시	22	50.0	27.3	4.5	18.2
	중소도시	31	45.2	48.4	6.5	0.0
	읍면지역 이하	24	54.2	29.2	8.3	8.3

14. 문화정보 외부 제공 시 정보 입력자

<표 IV-557> 문화정보 외부 제공 시 정보 입력자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각 사업별 담당자가 입력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입력	기타
전 체		77	85.7	11.7	2.6
기관유형	도서관	28	78.6	14.3	7.1
	박물관	21	95.2	4.8	0.0
	미술관	12	91.7	8.3	0.0
	공연장(문예회관)	16	81.3	18.8	0.0
지역 규모	대도시	22	86.4	13.6	0.0
	중소도시	31	87.1	12.9	0.0
	읍면지역 이하	24	83.3	8.3	8.3

15. 문화정보 외부 미제공 이유

<표 IV-558> 문화정보 외부 미제공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보 제공 시스템 미구축	필요성을 못 느낌	타 문화기관 에서 제공	정보내용 부족	시간 및 예산 부족	기타
전 체		122	32.0	27.0	10.7	9.8	9.0	11.5
기관유형	도서관	53	30.2	32.1	11.3	5.7	11.3	9.4
	박물관	25	36.0	36.0	4.0	12.0	8.0	4.0
	미술관	15	26.7	13.3	13.3	13.3	13.3	20.0
	공연장(문예회관)	29	34.5	17.2	13.8	13.8	3.4	17.2
지역 규모	대도시	37	32.4	29.7	5.4	10.8	8.1	13.5
	중소도시	49	28.6	22.4	14.3	8.2	14.3	12.2
	읍면지역 이하	36	36.1	30.6	11.1	11.1	2.8	8.3

16.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동의 여부

<표 IV-559>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의견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보통이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100점 평균]	[5점 평균]
전 체		199	1.0	8.5	51.3	27.6	11.6	60.1	3.40
기관유형	도서관	81	0.0	8.6	51.9	33.3	6.2	59.3	3.37
	박물관	46	4.3	10.9	56.5	15.2	13.0	55.4	3.22
	미술관	27	0.0	3.7	51.9	33.3	11.1	63.0	3.52
	공연장(문예회관)	45	0.0	8.9	44.4	26.7	20.0	64.4	3.58
지역 규모	대도시	59	3.4	11.9	57.6	22.0	5.1	53.4	3.14
	중소도시	80	0.0	8.8	50.0	27.5	13.8	61.6	3.46
	읍면지역 이하	60	0.0	5.0	46.7	33.3	15.0	64.6	3.58

17.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반대 이유

<표 IV-560>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반대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지역 간 비교에 따른 업무 과중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과다	필요성 부족	기타
전 체		19	36.8	36.8	15.8	10.5
기관유형	도서관	7	42.9	42.9	14.3	0.0
	박물관	7	42.9	28.6	14.3	14.3
	미술관	1	0.0	0.0	100.0	0.0
	공연장(문예회관)	4	25.0	50.0	0.0	25.0
지역 규모	대도시	9	66.7	11.1	11.1	11.1
	중소도시	7	14.3	57.1	14.3	14.3
	읍면지역 이하	3	0.0	66.7	33.3	0.0

18.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찬성 이유

<표 IV-561>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찬성 이유 -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문화사업 총괄 관리·조정 등 근거 자료로 활용	자료요구에 대응 및 사업개발에 활용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정보 획득에 사용
전 체		180	27.2	25.0	22.2
기관유형	도서관	74	28.4	27.0	27.0
	박물관	39	28.2	17.9	20.5
	미술관	26	11.5	30.8	19.2
	공연장(문예회관)	41	34.1	24.4	17.1
지역 규모	대도시	50	30.0	26.0	30.0
	중소도시	73	27.4	21.9	15.1
	읍면지역 이하	57	24.6	28.1	24.6

<표 IV-562>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찬성 이유 -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중앙/자치단체 및 기관의 예산확보, 사업확장 등 업무에 활용	지역 간 비교분석에 활용	기타
전 체		180	17.2	5.6	2.8
기관유형	도서관	74	12.2	4.1	1.4
	박물관	39	20.5	7.7	5.1
	미술관	26	30.8	7.7	0.0
	공연장(문예회관)	41	14.6	4.9	4.9
지역 규모	대도시	50	10.0	4.0	0.0
	중소도시	73	21.9	6.8	6.8
	읍면지역 이하	57	17.5	5.3	0.0

19.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관리 주체

<표 IV-563>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관리 주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중앙부처	중앙부처 산하 전문기관	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 단체	소속 공공기관	기타
전 체		199	32.2	23.6	16.1	13.6	13.6	1.0
기관유형	도서관	81	29.6	27.2	19.8	14.8	8.6	0.0
	박물관	46	47.8	15.2	15.2	10.9	8.7	2.2
	미술관	27	37.0	25.9	11.1	11.1	11.1	3.7
	공연장(문예회관)	45	17.8	24.4	13.3	15.6	28.9	0.0
지역 규모	대도시	59	32.2	23.7	22.0	1.7	18.6	1.7
	중소도시	80	40.0	15.0	10.0	20.0	13.8	1.3
	읍면지역 이하	60	21.7	35.0	18.3	16.7	8.3	0.0

20.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자료입력 주체

<표 IV-564>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자료입력 주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별 문화시설 및 기관 담당자	시스템 운영기관	기초지자체 담당자	기타
전 체		199	52.8	33.2	13.1	1.0
기관유형	도서관	81	59.3	28.4	12.3	0.0
	박물관	46	47.8	32.6	17.4	2.2
	미술관	27	48.1	40.7	7.4	3.7
	공연장(문예회관)	45	48.9	37.8	13.3	0.0
지역 규모	대도시	59	44.1	37.3	16.9	1.7
	중소도시	80	57.5	32.5	8.8	1.3
	읍면지역 이하	60	55.0	30.0	15.0	0.0

21.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자료입력 의향

<표 IV-565>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자료입력 의향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99	64.3	35.7
기관유형	도서관	81	56.8	43.2
	박물관	46	69.6	30.4
	미술관	27	70.4	29.6
	공연장(문예회관)	45	68.9	31.1
지역 규모	대도시	59	55.9	44.1
	중소도시	80	66.3	33.8
	읍면지역 이하	60	70.0	30.0

<표 IV-566>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자료입력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함	자료제출 및 입력의 법적근거가 미흡함	중앙정부 사업으로 데이터입력과 관리의 주체가 중앙정부임	기타
전 체		71	56.3	23.9	15.5	4.2
기관유형	도서관	35	57.1	25.7	11.4	5.7
	박물관	14	57.1	28.6	14.3	0.0
	미술관	8	62.5	12.5	25.0	0.0
	공연장(문예회관)	14	50.0	21.4	21.4	7.1
지역 규모	대도시	26	57.7	11.5	26.9	3.8
	중소도시	27	55.6	29.6	11.1	3.7
	읍면지역 이하	18	55.6	33.3	5.6	5.6

22.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고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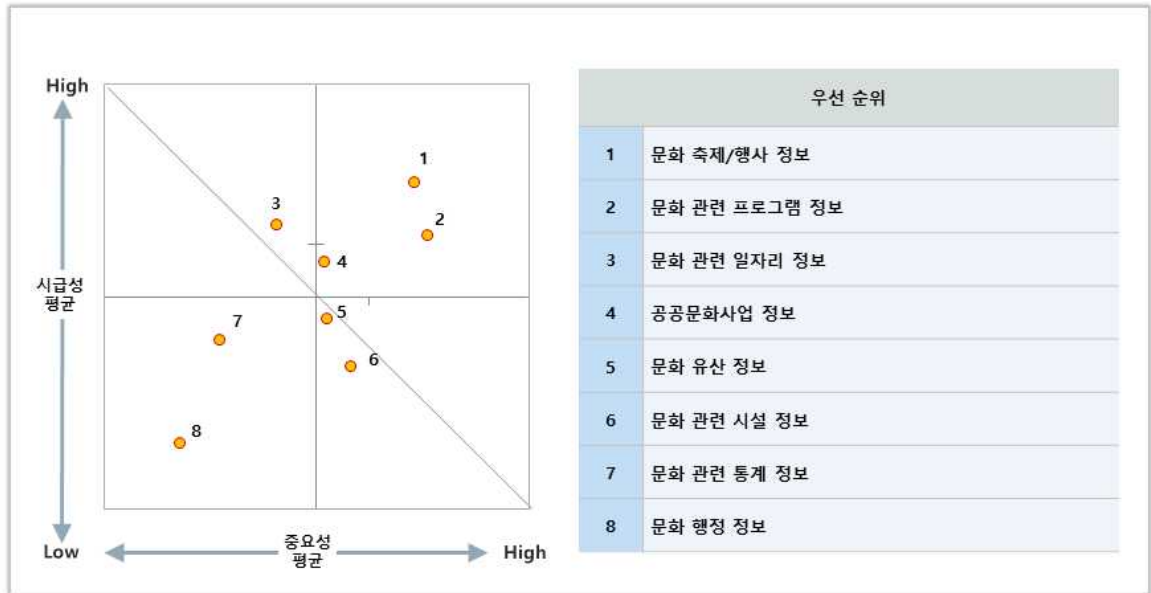
<표 IV-567>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고려 요인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시스템 사용 매뉴얼 단순화	타 지역과의 정보공유 가능	업무처리 속도 증가	대인서비스 향상	기타
전 체		199	45.7	33.2	11.1	6.0	4.0
기관유형	도서관	81	44.4	30.9	13.6	9.9	1.2
	박물관	46	47.8	30.4	8.7	4.3	8.7
	미술관	27	51.9	40.7	3.7	3.7	0.0
	공연장(문예회관)	45	42.2	35.6	13.3	2.2	6.7
지역 규모	대도시	59	39.0	37.3	13.6	5.1	5.1
	중소도시	80	45.0	30.0	10.0	8.8	6.3
	읍면지역 이하	60	53.3	33.3	10.0	3.3	0.0

21. 지역문화정보 우선순위

[그림 IV-239] 지역문화정보 중요도 및 시급성



<표 IV-568> 지역문화정보 중요도 - 1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시설 정보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정보	문화 행정 정보	문화 유산 정보
전 체		199	66.7	70.4	58.7	65.6
기관유형	도서관	81	66.4	69.4	56.5	65.7
	박물관	46	65.8	69.6	57.6	71.7
	미술관	27	69.4	72.2	61.1	71.3
	공연장(문예회관)	45	66.7	71.7	62.2	55.6
지역 규모	대도시	59	66.1	68.2	57.6	62.7
	중소도시	80	64.4	70.0	57.8	66.9
	읍면지역 이하	60	70.4	72.9	60.8	66.7

<표 IV-569> 지역문화정보 중요도 - 2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공공문화사업 정보	문화 축제/행사 정보	문화 관련 통계 정보
전 체		199	63.2	65.5	69.7	60.6
기관유형	도서관	81	60.8	65.1	68.5	59.6
	박물관	46	64.1	63.0	68.5	58.2
	미술관	27	63.0	65.7	67.6	59.3
	공연장(문예회관)	45	66.7	68.3	74.4	65.6
지역 규모	대도시	59	61.0	61.9	68.2	58.9
	중소도시	80	64.4	65.6	69.4	60.6
	읍면지역 이하	60	63.8	68.8	71.7	62.1

<표 IV-570> 지역문화정보 시급성 - 1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시설 정보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정보	문화 행정 정보	문화 유산 정보
전 체		199	52.6	58.8	49.0	54.9
기관유형	도서관	81	49.7	57.4	46.6	52.5
	박물관	46	50.0	55.4	46.2	58.2
	미술관	27	62.0	62.0	54.6	63.0
	공연장(문예회관)	45	55.0	62.8	52.8	51.1
지역 규모	대도시	59	53.0	55.9	48.3	52.1
	중소도시	80	50.6	57.2	50.9	57.5
	읍면지역 이하	60	55.0	63.8	47.1	54.2

<표 IV-571> 지역문화정보 시급성 - 2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공공문화사업 정보	문화 축제/행사 정보	문화 관련 통계 정보
전 체		199	59.3	57.5	61.3	53.9
기관유형	도서관	81	57.1	56.2	58.3	50.3
	박물관	46	59.8	53.3	60.3	53.3
	미술관	27	57.4	59.3	62.0	54.6
	공연장(문예회관)	45	63.9	63.3	67.2	60.6
지역 규모	대도시	59	55.5	54.2	58.1	53.0
	중소도시	80	60.9	58.1	61.6	54.1
	읍면지역 이하	60	60.8	60.0	64.2	54.6

22. 지역문화정보 활용 우선순위

<표 IV-572> 지역문화정보 도움 수준 - 1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시설 정보	문화관련 프로그램 정보	문화 행정 정보	문화 유산 정보
전 체		199	62.3	72.1	61.9	63.3
기관유형	도서관	81	62.7	71.6	59.3	61.1
	박물관	46	60.9	72.8	62.5	69.0
	미술관	27	61.1	71.3	68.5	70.4
	공연장(문예회관)	45	63.9	72.8	62.2	57.2
지역 규모	대도시	59	59.7	70.3	60.2	58.9
	중소도시	80	60.9	68.1	61.9	65.6
	읍면지역 이하	60	66.7	79.2	63.8	64.6

<표 IV-573> 지역문화정보 도움 수준 - 2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공공문화사업 정보	문화 축제/행사 정보	문화관련 통계 정보
전 체		199	62.4	65.8	69.8	64.8
기관유형	도서관	81	59.9	66.4	69.1	63.3
	박물관	46	64.1	64.7	69.6	62.5
	미술관	27	60.2	65.7	63.0	66.7
	공연장(문예회관)	45	66.7	66.1	75.6	68.9
지역 규모	대도시	59	58.5	64.0	67.8	65.3
	중소도시	80	62.5	64.7	68.1	64.7
	읍면지역 이하	60	66.3	69.2	74.2	64.6



부록. 조사표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조사_문화시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 체제 구축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오니 성심 성의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세

SQ3. 귀하의 직종은?

- ① 행정직 ② 기술직 ③ 전산/통신직 ④ 기타()

SQ4. 귀 기관의 유형은?

- ① 도서관 ② 박물관 ③ 미술관 ④ 공연장(문예회관)

SQ5.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세종 ⑨경기
⑩강원 ⑪충북 ⑫충남 ⑬전북 ⑭전남 ⑮경북 ⑯경남 ⑰제주

SQ6. 귀 기관의 소재지 규모는 어떠합니까?

- ①대도시(서울시, 광역시) ②중소도시 ③읍면지역 이하

A. 문화정보 수집·관리 현황

- 문화관련 정보란, 지역 내 문화시설 및 자원, 문화프로그램, 문화정책, 문화인력, 문화 관련 통계, 문화 관련 사업 등을 의미함

문1. 귀 시설에서는 문화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까?

- ① 수집·관리하고 있다 ☞문 1-1로 ②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다 ☞문 1-9로

문1-1. 귀 시설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문화 관련 정보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문화시설 정보(위치, 면적, 이용시간, 예산 등)
 ② 문화시설 내 인력 현황
 ③ 문화시설 운영현황(프로그램, 행사, 보유자료 등)
 ④ 문화시설 이용자 통계
 ⑤ 기타(_____)

문1-2. 귀 시설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문화정보의 수집·관리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수집·관리방법
문1-1.① 응답 자	문화시설 정보(면적, 위치, 이용시간 등)	☐ 직접수집 ☐ 기타()
	문화시설 예산	☐ 직접수집 ☐ 기타()
문1-1.② 응답 자	문화시설 내 인력 현황	☐ 직접수집 ☐ 기타()
	문화시설 내 전문직 현황	☐ 직접수집 ☐ 기타()
문1-1.③ 응답 자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현황	☐ 직접수집 ☐ 기타()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현황	☐ 직접수집 ☐ 기타()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현황	☐ 직접수집 ☐ 기타()
문1-1.④ 응답 자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 직접수집 ☐ 기타()
문1-1.⑤ 응답 자	기타(_____)	☐ 직접수집 ☐ 기타()

문1-3. 귀 시설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수집·관리하고 있는 문화정보의 수집·관리 주기를 응답해 주십시오.

		수집·관리주기
문 1-1. ① 응 답자	문화시설 정보(면적, 위치, 이용시간 등)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화시설 예산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1. ② 응답자	문화시설 내 인력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화시설 내 전문직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1. ③ 응답자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1. ④ 응답자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1. ⑤ 응답자	기타(_____)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4. 문화관련 정보를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① 내부 문서로 관리(hwp, xls, pdf 등)
- ②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
- ③ 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리
- ④ 기타(_____)

문1-5.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한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요한 목적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 두 번째 ()

- ① 문화관련 자료의 단순 파악 및 정리
- ② 문화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확보
- ③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지역문화발전 기반 마련
- ④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업 시행
- ⑤ 문화관련 정보를 상위기관에 제공
- ⑤ 기타(_____)

문1-6. 귀 시설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 중 상위기관에 정보 중 가장 많이 제공하는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 두 번째 (), 세 번째 ()

- ① 없음
- ② 문화시설 정보(면적, 위치, 이용시간 등)
- ③ 문화시설 내 인력 현황
- ④ 문화시설 내 전문직 현황
- ⑤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현황
- ⑥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현황
- ⑦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현황
- ⑧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 ⑨ 기타(_____)

문1-7. 귀 시설에서 수집·관리된 자료의 관리 주체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해당부서 사업 관리자
- ② 총 책임자
- ③ 시스템(홈페이지 등) 운영자
- ④ 기타(_____)

문1-8. 귀 시설에서 문화정보 수집·관리 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없음
- ② 예산부족
- ③ 인력부족
- ④ 관련부서와 협력 미흡
- ⑤ 정보관리 미흡
- ⑥ 기타(_____)

문1-9.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보가 많아 관리하기 어려움
- ②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가 부족함
- ③ 자료 수집 및 전달 수단이 부족함(시스템 등 정보부족)
- ④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 ⑤ 기타(_____)

문1-10. 귀 시설이 문화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참조하는 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있습니까?

- ① 있음 →문 1-11로
- ② 없음 →문 2로

문1-11. 귀 시설이 문화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참조하는 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정보시스템 명칭	참조하는 정보
예)나라지표	문화 통계

D. 문화정보 제공 현황

문2. 귀 시설에서는 수집·관리된 문화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계십니까?

- ① 예  문2-1 ② 아니오  문2-4

문2-1. 다음 중 외부(대외 정보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는 문화정보를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② 문화시설 정보(면적, 위치, 이용시간 등) | ② 문화시설 예산 |
| ③ 문화시설 내 인력 현황 | ④ 문화시설 내 전문직 현황 |
| ⑤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현황 | ⑥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현황 |
| ⑦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현황 | ⑧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
| ⑨ 기타(_____) | |

문2-2. 귀 시설에서는 문화정보를 외부제공 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공하십니까?

- ① 자체 홈페이지(또는 블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② 자체로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③ 외부에서 요청 시 문서 제공
 ④ 기타(_____)

문2-3. 귀 시설에서 외부제공 시 정보에 대한 입력은 주로 누가합니까?

- ① 각 사업별 담당자가 입력
 ②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입력
 ③ 타 기관에서 입력
 ④ 기타(_____)

문2-4. 귀 시설에서는 외부에 문화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정보내용 부족 | ② 시간 및 예산 부족 |
| ③ 정보 제공 시스템 미구축 | ④ 필요성을 못 느낌 |
| ⑤ 타 문화기관에서 제공 | ⑥ 기타(_____) |

C. 문화정보시스템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자치분권을 위해 지역문화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가공·유통을 위해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문3. 귀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보통이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1. (문3 '①, ②')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 부족
- ② 지역 간 비교에 따른 업무 과중
- ③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과다
- ④ 기타(_____)

문3-2. (문3 '③, ④, ⑤')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앙/자치단체 및 기관의 예산확보, 사업확장 등 업무에 활용
- ② 자료요구에 대응(통계자료, 현황자료 등) 및 사업개발에 활용
- ③ 문화사업 총괄 관리·조정 등 근거 자료로 활용
- ④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정보 획득에 사용
- ⑤ 지역 간 비교분석에 활용
- ⑥ 기타(_____)

문4. 귀 기관은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구축할 경우 관리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초자치단체
- ② 광역자치단체
- ③ 중앙부처
- ④ 중앙부처 산하 전문기관
- ⑤ 소속 공공기관(문화예술위원회 등)
- ⑥ 기타(_____)

문5.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에 누가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별 문화시설 및 기관 담당자
- ② 기초지자체 담당자
- ③ 시스템 운영기관
- ④ 기타(_____)

문6.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후 귀하에게 자료입력을 요청할 경우 입력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7 ② 없다 ➡ 문6-1

문6-1.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에 자료를 입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함
 ② 자료제출 및 입력의 법적근거가 미흡함
 ③ 중앙정부 사업으로 데이터입력과 관리의 주체가 중앙정부임
 ④ 기타(_____)

문7. 만약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타 지역과의 정보공유 가능 ② 대인서비스 향상
 ③ 업무처리 속도 증가 ④ 시스템 사용 매뉴얼 단순화
 ⑤ 기타(_____)

문8.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그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기능	시급성				
전혀 중요하 지 않음	중요하 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시급하 지 않음	시급하 지 않음	보통	시급함	매우 시급함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시설정보 (위치, 운영시간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행정 정보 (시설, 인력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유산 정보 (문화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공공문화사업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축제/행사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통계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9.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된다면 업무 및 정책활용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기능	전혀 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	매우 도움
문화 관련 시설정보 (위치, 운영시간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화 행정 정보 (시설, 인력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 유산 정보 (문화재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①	②	③	④	⑤
공공문화사업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화 축제/행사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통계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10.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응답자 정보	
소속 시설(기관)명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조사_지자체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 체제 구축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오니 성심 성의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세

SQ3. 귀하의 직종은?

- ① 행정직 ② 기술직 ③ 전산/통신직 ④ 기타()

SQ4.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세종 ⑨경기
⑩강원 ⑪충북 ⑫충남 ⑬전북 ⑭전남 ⑮경북 ⑯경남 ⑰제주

SQ5. 귀 기관의 소재지 규모는 어떠합니까?

- ①대도시(서울시, 광역시) ②중소도시 ③읍면지역 이하

A. 문화정보 관리 및 운영 현황

■ 문화정보란, 지역 내 문화시설 및 자원, 문화프로그램, 문화정책, 문화인력, 문화 관련 통계, 문화 관련 사업 등을 의미함

문1. 귀 지자체에서는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수집·관리하고 있다 ☞ 문 1-1로

②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다 ☞ 문 1-8로

문1-1. 귀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문화정보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현황
- ② 지역 내 문화단체 및 인력 현황
- ③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현황
- ④ 지역 주요 문화통계(설문조사 등)
- ⑤ 기타(_____)

문1-2. 귀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문화정보의 수집·관리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수집·관리방법
문1-1.① 응답자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 직접수집 ☐ 기관 요청 ☐ 기타()
	문화관련 사업 예산	☐ 직접수집 ☐ 기관 요청 ☐ 기타()
	문화 채용정보	☐ 직접수집 ☐ 기관 요청 ☐ 기타()
문1-1.② 응답자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 직접수집 ☐ 기관 요청 ☐ 기타()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 직접수집 ☐ 기관 요청 ☐ 기타()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 직접수집 ☐ 기관 요청 ☐ 기타()
문1-1.③ 응답자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 직접수집 ☐ 기관 요청 ☐ 기타()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 직접수집 ☐ 기관 요청 ☐ 기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 직접수집 ☐ 기관 요청 ☐ 기타()
문1-1.④ 응답자	지역민 문화통계 (문화향유율, 만족도 등)	☐ 직접수집 ☐ 기관 요청 ☐ 기타()
	지역 문화통계(문화유산 등)	☐ 직접수집 ☐ 기관 요청 ☐ 기타()
문1-1.⑤ 응답자	기타(_____)	☐ 직접수집 ☐ 기관 요청 ☐ 기타()

문1-3. 귀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문화정보의 수집·관리 주기를 응답해 주십시오.

		수집·관리주기
문1-1. ① 응답자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화관련 사업 예산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화 채용정보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1. ② 응답자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1. ③ 응답자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1. ④ 응답자	지역민 문화통계 (문화향유율, 만족도 등)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역 문화통계(문화유산 등)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1. ⑤ 응답자	기타(_____)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4. 귀 기관에서 수집·관리된 자료의 관리 주체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해당부서 사업 관리자 ② 문화부서 총 책임자
③ 시스템(홈페이지 등) 운영자 ④ 기타(_____)

문1-5. 귀 기관에서 문화정보 수집·관리 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없음 ② 예산부족
③ 인력부족 ④ 관련부서와 협력 미흡
⑤ 관련 기관의 정보관리 미흡 ⑥ 기타(_____)

문1-6. 문화정보를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① 내부 문서로 관리(hwp, xls, pdf 등) ②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
③ 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리 ④ 기타(_____)

문1-7.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한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문화관련 자료의 단순 파악 및 정리
- ② 문화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확보
- ③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지역문화발전 기반 마련
- ④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업 시행
- ⑤ 기타(_____)

문1-8.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보가 많아 관리하기 어려움
- ②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가 부족함
- ③ 자료 수집 및 전달 수단이 부족함(시스템 등 정보부족)
- ④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 ⑤ 기타(_____)

문1-9. 귀 시설이 문화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참조하는 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 2로
- ② 없음 → 문 3으로

문2. 귀 기관이 문화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참조하는 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정보시스템 명칭	참조하는 정보
예) e나라지표	문화 통계

문3. 귀 기관에서는 문화정보를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문3-1
- ② 아니오 → 문3-3

문3-1. 다음 중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문화정보를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 ② 문화관련 사업 예산
- ③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 ④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 ⑤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 ⑥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 ⑦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 ⑧ 지역민 문화통계(문화향유율, 만족도 등)
- ⑨ 지역 문화통계(문화유산 등)
- ⑩ 문화 채용정보
- ⑪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 ⑫ 기타(_____)

문3-2. 다음 중 수집·관리된 문화정보를 내부적으로 활용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문화정책 및 사업 개발
- ② 업무보고(참고 등)
- ③ 단순 정보 파악
- ④ 외부(시민 등)에 정보 제공
- 5. 기타(_____)

문3-3. 다음 중 수집·관리된 문화정보를 내부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업무와의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어서
- ②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 ③ 수집·관리된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④ 기타(_____)

문4. 귀 기관에서는 수집·관리된 문화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계십니까?

- ① 예  문4-1 ② 아니오  문4-4

문4-1. 다음 중 외부에 제공하고 있는 문화정보를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 ② 문화관련 사업 예산 |
| ③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 ④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
| ⑤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 ⑥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
| ⑦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 ⑧ 지역민 문화통계(문화향유율, 만족도 등) |
| ⑨ 지역 문화통계(문화유산 등) | ⑩ 문화 채용정보 |
| ⑪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 ⑫ 기타(_____) |

문4-2. 귀 기관에서는 문화정보를 외부제공 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공하십니까?

- ① 자체 홈페이지(또는 블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② 자체로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③ 외부에서 요청시 문서 제공
 ④ 기타(_____)

문4-3. 귀 기관에서 외부제공 시 정보에 대한 입력은 주로 누가합니까?

- ① 문화 관련 담당자가 입력
 ②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입력
 ③ 타 기관에서 입력
 ④ 기타(_____)

문4-4. 귀 기관에서는 외부에 문화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정보내용 부족 | ② 시간 및 예산 부족 |
| ③ 정보 제공 시스템 미구축 | ④ 필요성을 못 느낌 |
| ⑤ 타 문화기관에서 제공 | ⑥ 기타(_____) |

B. 문화정보시스템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자치분권을 위해 지역문화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가공·유통을 위해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문5. 귀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보통이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5-1. (문5 '①, ②')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 부족
- ② 지역 간 비교에 따른 업무 과중
- ③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과다
- ④ 기타(_____)

문5-2. (문5 '③, ④, ⑤')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앙/자치단체 및 기관의 예산확보, 사업확장 등 업무에 활용
- ② 자료요구에 대응(통계자료, 현황자료 등) 및 사업개발에 활용
- ③ 문화사업 총괄 관리·조정 등 근거 자료로 활용
- ④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정보 획득에 사용
- ⑤ 지역 간 비교분석에 활용
- ⑥ 기타(_____)

문6. 귀 기관은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구축할 경우 관리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초자치단체
- ② 광역자치단체
- ③ 중앙부처
- ④ 중앙부처 산하 전문기관
- ⑤ 소속 공공기관(문화예술위원회 등)
- ⑥ 기타(_____)

문7.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에 누가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별 문화시설 및 기관 담당자
- ② 기초지자체 담당자
- ③ 시스템 운영기관
- ④ 기타(_____)

문8.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후 귀하에게 자료입력을 요청할 경우 입력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9
- ② 없다 ☞ 문8-1

문8-1.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에 자료를 입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함
- ② 자료제출 및 입력의 법적근거가 미흡함
- ③ 중앙정부 사업으로 데이터입력과 관리의 주체가 중앙정부임
- ④ 기타(_____)

문9. 만약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타 지역과의 정보공유 가능
- ② 대인서비스 향상
- ③ 업무처리 속도 증가
- ④ 시스템 사용 매뉴얼 단순화
- ⑤ 기타(_____)

문10.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그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기능	시급성				
전혀 중요하 지 않음	중요하 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시급하 지 않음	시급하 지 않음	보통	시급함	매우 시급함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시설정보 (위치, 운영시간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행정 정보 (시설, 인력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유산 정보 (문화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공공문화사업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축제/행사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통계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11.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된다면 업무 및 정책활용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기능	전혀 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	매우 도움
문화 관련 시설정보 (위치, 운영시간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화 행정 정보 (시설, 인력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 유산 정보 (문화재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①	②	③	④	⑤
공공문화사업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화 축제/행사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통계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12.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응답자 정보	
소속 지자체명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조사_문화재단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지역문화 통합 정보서비스 체제 구축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오니 성심 성의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세

SQ3. 귀하의 직종은?

- ① 행정직 ② 기술직 ③ 전산/통신직 ④ 기타()

SQ4.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세종 ⑨경기
⑩강원 ⑪충북 ⑫충남 ⑬전북 ⑭전남 ⑮경북 ⑯경남 ⑰제주

SQ5. 귀 기관의 소재지 규모는 어떠합니까?

- ①대도시(서울시, 광역시) ②중소도시 ③읍면지역 이하

A. 문화재단 정보 관리 현황

■ 문화정보란, 지역 내 문화시설 및 자원, 문화프로그램, 문화정책, 문화인력, 문화 관련 통계, 문화 관련 사업 등을 의미함

문1. 귀 기관에서는 기관정보와 관련된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수집·관리하고 있다 ☞문 1-1로

②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다 ☞문 1-9로

문1-1. 귀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문화정보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재단 문화관련 정보(사업, 인력, 예산, 프로그램, 축제 등)
 ② 지역 내 문화관련 정보
 ③ 관리 문화시설 정보
 ④ 기타()

문1-2. 귀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수집·관리 방법
문1-1. ① 응답자	기관 내 문화관련 사업현황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기관 내 문화예산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기관 내 문화관련 인력현황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기관 내 문화행사 및 축제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문화 채용정보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문1-1. ② 응답자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예산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지역민 문화통계(문화향유율, 만족도 등)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문1-1. ③ 응답자	지역 문화통계(문화유산 등)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정보(면적, 위치, 이용시간 등)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인력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예산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문1-1. ④ 응답자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문1-1. ④ 응답자	기타()	☐ 직접수집 ☐ 시설 요청 ☐ 기타()

문1-3. 귀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문화정보의 수집·관리 주기를 응답해 주십시오.

		수집·관리주기
문1-1. ① 응답자	기관 내 문화관련 사업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기관 내 문화예산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기관 내 문화관련 인력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기관 내 문화행사 및 축제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화 채용정보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1. ② 응답자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예산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역민 문화통계(문화향유율, 만족도 등)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역 문화통계(문화유산 등)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수집·관리주기
문1-1. ③ 응답자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정보(면적, 위치, 이용시간 등)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인력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예산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1. ④ 응답자	기타(_____)	☐ 상시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문1-4. 문화정보를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① 내부 문서로 관리(hwp, xls, pdf 등)
- ②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
- ③ 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리
- ④ 기타(_____)

문1-5.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한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요한 목적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 두 번째 ()

- ① 문화관련 자료의 단순 파악 및 정리
- ② 문화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확보
- ③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지역문화발전 기반 마련
- ④ 문화관련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업 시행
- ⑤ 문화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
- ⑥ 기타(_____)

문1-6. 귀 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 중 지자체에 가장 많이 제공하는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 두 번째 (), 세 번째 ()

- | | |
|-----------------------------------|--------------------------|
| ① 없음 | |
| ② 기관 내 문화관련 사업현황 | ② 기관 내 문화예산 |
| ③ 기관 내 문화관련 인력현황 | ④ 기관 내 문화행사 및 축제 |
| ⑤ 문화 채용정보 | ⑥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 ⑦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 ⑧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예산 |
| ⑨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 ⑩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
| ⑪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 ⑫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
| ⑬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 ⑭ 지역민 문화통계(문화향유율, 만족도 등) |
| ⑮ 지역 문화통계(문화유산 등) | ⑯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
| ⑰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정보(면적, 위치, 이용시간 등) | |
| ⑱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인력 | |
| ⑲ 문화시설 예산 | ⑲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
| ⑳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 |
| ㉑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 |
| ㉒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 |
| ㉓ 기타(_____) | |

문1-7. 귀 기관에서 수집·관리된 자료의 관리 주체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해당부서 사업 관리자 | ② 총 책임자 |
| ③ 시스템(홈페이지 등) 운영자 | ④ 기타(_____) |

문1-8. 귀 기관에서 문화정보 수집·관리 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없음 | ② 예산부족 |
| ③ 인력부족 | ④ 관련부서와 협력 미흡 |
| ⑤ 정보관리 미흡 | ⑥ 기타(_____) |

문1-9. 문화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① 정보가 많아 관리하기 어려움 |
| ②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가 부족함 |
| ③ 자료 수집 및 전달 수단이 부족함(시스템 등 정보부족) |
| ④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
| ⑤ 기타(_____) |

B. 문화정보 제공 현황

문2. 귀 기관에서는 수집·관리된 문화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문2-1 ② 아니오 ☞ 문2-5

문2-1. 다음 중 외부(대외 정보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는 문화정보를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② 기관 내 문화관련 사업현황 | ② 기관 내 문화예산 |
| ③ 기관 내 문화관련 인력현황 | ④ 기관 내 문화행사 및 축제 |
| ⑤ 문화 채용정보 | ⑥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 ⑦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 ⑧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 예산 |
| ⑨ 지역 내 문화단체 현황 | ⑩ 지역 내 문화활동 인력 현황 |
| ⑪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 현황 | ⑫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수 |
| ⑬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축제 | ⑭ 지역민 문화통계(문화향유율, 만족도 등) |
| ⑮ 지역 문화통계(문화유산 등) | ⑯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
| ⑯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정보(면적, 위치, 이용시간 등) | |
| ⑰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인력 | |
| ⑱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예산 | ⑲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문화행사 |
| ⑳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이용자 현황 | |
| ㉑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보유자료 | |
| ㉒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 |
| ㉓ 기타(_____) | |

문2-2. 귀 기관에서는 문화정보를 외부제공 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공하십니까?

- ① 자체 홈페이지(또는 블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② 자체로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③ 외부에서 요청 시 문서 제공
 ④ 기타(_____)

문2-3. 귀 기관에서 외부제공 시 정보에 대한 입력은 주로 누가합니까?

- ① 각 사업별 담당자가 입력
 ②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입력
 ③ 타 기관에서 입력
 ④ 기타(_____)

문2-5. 귀 기관에서는 외부에 문화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정보내용 부족 | ② 시간 및 예산 부족 |
| ③ 정보 제공 시스템 미구축 | ④ 필요성을 못 느낌 |
| ⑤ 타 문화기관에서 제공 | ⑥ 기타(_____) |

C. 문화정보시스템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자치분권을 위해 지역문화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가공·유통을 위해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문3. 귀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보통이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1. (문3 '①, ②')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 부족
- ② 지역 간 비교에 따른 업무 과중
- ③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과다
- ④ 기타(_____)

문3-1. (문3 '③, ④, ⑤')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앙/자치단체 및 기관의 예산확보, 사업확장 등 업무에 활용
- ② 자료요구에 대응(통계자료, 현황자료 등) 및 사업개발에 활용
- ③ 문화사업 총괄 관리·조정 등 근거 자료로 활용
- ④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정보 획득에 사용
- ⑤ 지역 간 비교분석에 활용
- ⑥ 기타(_____)

문4. 귀 기관은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구축할 경우 관리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초자치단체
- ② 광역자치단체
- ③ 중앙부처
- ④ 중앙부처 산하 전문기관
- ⑤ 소속 공공기관(문화예술위원회 등)
- ⑥ 기타(_____)

문5.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에 누가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별 문화시설 및 기관 담당자
- ② 기초지자체 담당자
- ③ 시스템 운영기관
- ④ 기타(_____)

문6.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후 귀하에게 자료입력을 요청할 경우 입력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7
- ② 없다 ☞ 문6-1

문6-1.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화에 자료를 입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함
- ② 자료제출 및 입력의 법적근거가 미흡함
- ③ 중앙정부 사업으로 데이터입력과 관리의 주체가 중앙정부임
- ④ 기타(_____)

문7. 만약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타 지역과의 정보공유 가능
- ② 대인서비스 향상
- ③ 업무처리 속도 증가
- ④ 시스템 사용 매뉴얼 단순화
- ⑤ 기타(_____)

문8.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그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기능	시급성				
전혀 중요하 지 않음	중요하 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시급하 지 않음	시급하 지 않음	보통	시급함	매우 시급함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시설정보 (위치, 운영시간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행정 정보 (시설, 인력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유산 정보 (문화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공공문화사업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축제/행사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통계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9. 귀하께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된다면 업무 및 정책활용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기능	전혀 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	매우 도움
문화 관련 시설정보 (위치, 운영시간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화 행정 정보 (시설, 인력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 유산 정보 (문화재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일자리 정보	①	②	③	④	⑤
공공문화사업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화 축제/행사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화 관련 통계 정보	①	②	③	④	⑤

문10.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응답자 정보	
소속 시설(기관)명	

<경품 제공을 위한 정보>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신 모든 응답자분을 대상으로 감사의 표시로 모바일 음료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수령 받으실 연락처(핸드폰)를 기재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핸드폰 연락처 : () - () - ()

부록

4. 해외출장보고서

[부록] 해외출장보고서

작성자 : 이충희 책임전문위원 (정책정보센터 정보사업팀)
전 응 위촉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정책연구실)

1. 출장 목적

□ 개요

- 현재 본 보고서에서 문화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국외 사례에 대하여 각 기관·국가별 공식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기초자료들을 구성한 바 있으나, 사례로 조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배경, 기존 지리정보시스템(GIS)과의 연동·활용 방안,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조직의 구성 여부 및 타 기관과의 연계체계 등에 대해 방문대상 기관 실무자의 인터뷰 및 제공자료 등을 근거로 본 종합연구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었음
- 아울러 해당 방문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 각 지역에 산재한 각종 문화 분야 데이터를 어떠한 기준·범위에 따라 분류하고 수집하고 있는지, 데이터의 수집주기는 얼마나 되는지,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 혹은 지역 단위의 근거법령이나 지원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각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각종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개별 사례기관의 방문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

□ 방문 국가의 문화적 특성 및 문화정책 현황

○ 프랑스 공화국

- 프랑스 문화부는 국가가 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 주도형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프랑스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프랑스 내 주요 지역별로 지역문화사무국(DRAC)를 설치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프랑스 전역의 도서관 현황, 지역 축제 현황 등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음
- 아울러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포털 사이트·플랫폼 개발, 가상현실·증강현실 등과 같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문화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상호작용 가능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음

○ 스위스 연방

- 스위스는 연방국가로서 4개의 언어와 그에 따른 문화권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다중 언어정책,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여 다채로운 문화가 형성된 역사를 갖고 있음. 예를 들어 베른 주가 연방정부와 더불어 독일어권의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제네바는 프랑스어권, 루가노는 이탈리아권, 상트 모리츠는 로만슈문화권에 속해있음
- 스위스 내 총 26개의 연방 주(Kanton)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문화정책과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개별 연방 주(Kanton)들의 문화 활동들을 조율하는 한편 연방헌법에 의거하여 연방 내 문화 및 언어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의 보전 및 보호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베른 시는 스위스의 수도 역할을 하면서 베른 연방 주(Kanton)의 주도로, 연방정부의 문화정책의 설립 및 지원을 총괄하며 한편으로 독립된 베른 주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에 따른 독립적인 문화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음

2. 출장 개요

- 출 장 자 : 이충희 책임전문위원(정보사업팀), 전용 위촉연구원(문화정책연구실)
- 출장기간 : 2020년 1월 27일~2월 2일 (5박 7일)
- 출장지역 : 프랑스(파리), 스위스(베른 주, 뇌샤텔 주)
-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 수행 내용
1/27 (월)	인천	프랑스 (파리)	-	인천 출국(09:55) → 드골 국제공항 도착(14:20, 대한항공)
1/28 (화)	프랑스 (파리)		일드프랑스 DRAC	Jean-Marc Dos Santos Malhado 면담
1/29 (수)	파리 → 베른		-	TGV 고속철도 이용
1/30 (목)	스위스 (베른)		지리정보국	Jonas Schmid, Judith Hinger 면담
	베른 ↔ 뇌샤텔		-	스위스 트래블패스 이용 (1개월 내 3일 이용권 이용)
	스위스 (뇌샤텔)		연방통계청	Olivier Moeschler, Alan Herzig 면담
	스위스 (베른)		연방문화청	Solange Michel, Myriam schleiss 면담
1/31 (금)	스위스 (베른)		문화국	Alessa Panayiotou, Anne Jäggi 면담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 수행 내용
2/1 (토)	베른 → 취리히		-	스위스 트래블패스 이용 (1개월 내 3일 이용권 이용)
	스위스 (취리히)	영국 (히드로)	-	취리히 국제공항 출국 (12:05, 스위스에어라인) →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 (13:00)
2/2 (일)	영국 (히드로)	인천	-	히드로 출발 (2/1, 20:10), 인천 도착 (2/2, 16:05)

3. 출장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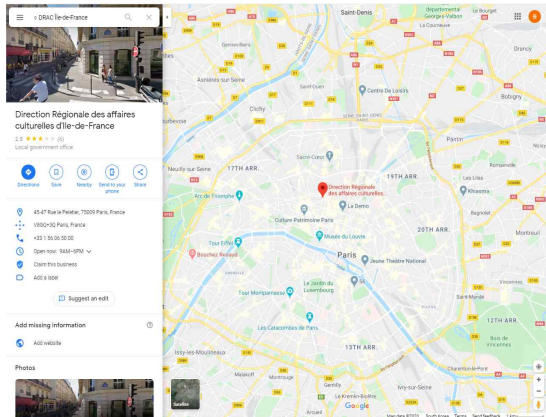
(1)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

□ 개요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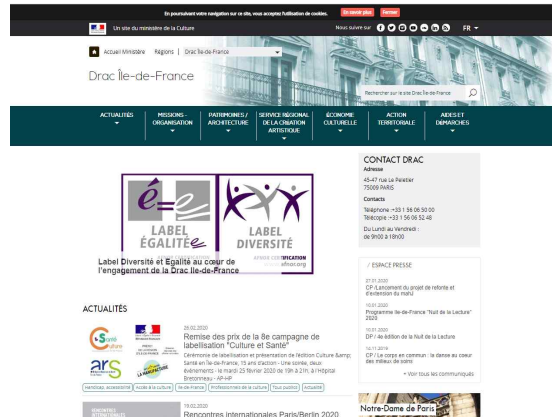
○ 프랑스의 지역문화사무국 (DRAC,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 지역문화사무국은 프랑스 문화부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프랑스 정부의 행정지방 분산 (déconcentration) 정책에 따라 각 지역에 설치하여 국가차원의 문화정책을 지방 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하는 기관임
- 대부분의 지역문화사무국은 지역청(préfecture de région) 소재지에 위치하나 지역청 소속이 아닌 문화부 직속 산하기관으로 지역 문화사업의 총 경영권을 가짐
- 각 지역문화사무국은 그 운영에 있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할지역장 (préfet de région) 감독 하에 있는 한편,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와 협의 관계에 있음
- 문화부(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는 지역문화사무국을 매개로 문화예술 정책 실행에 있어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가주도 문화정책의 전국적 일관성을 추구하고 있음
- 지역문화사무국은 문화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사무국을 통해 중앙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자문을 획득함

62) 주프랑스한국문화원(2017), <프랑스 문화지방분산정책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역문화사무국>을 발췌·요약함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 위치63)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 홈페이지64)

○ 지역문화사무국의 주요 연혁

- 1959년 제5공화국인 샤를 드골 (Charles de Gaulle)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 관련 행정 공공 기관인 문화부를 창설되었으며, 1960년대 초에는 프랑스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가 프랑스 여러 지방에 ‘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과 ‘지역 문화 위원회(CRAC)’를 설립하였음
- 이후 앙드레 말로는 장관 퇴임 전 프랑스 내 총 다섯 개의 지역에 지역문화사무국(DRAC) 설립을 발표하고 문화부의 지방 분권화를 추진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22개의 지부가 신설되어 운영되었음
- 2010년에는 지역문화사무국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시행령 2010-633에 따라 지역문화사무국이 각 데파르트망65)의 건축·문화재 관련 업무도 되었고, 프랑스 본토는 지역문화사무국(DRAC,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해외 영토는 문화사무국(DAC, Direction des affaires culturelles)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2020년 현재 프랑스 본토 내 13개 지역과 해외 영토의 7개 지역 등 총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사무국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63) Google Maps, Google,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google.com/maps/place/Direction+R%C3%A9gionale+des+affaires+culturelles+d'Ile-de-France/@48.8751717,2.3372018,17z/data=!3m1!4b1!4m5!3m4!1s0x47e66e38c77db671e:0x31505a459371e3bc!8m2!3d48.8751717!4d2.3393905>

64) Un site du ministère de la Culture (Drac Île-de-France),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culture.gouv.fr/Regions/Drac-Ile-de-France>

65) 프랑스의 지방 행정 구역 단위 중 하나로 법인격을 갖춘 자치단체인 동시에 국가의 지방행정 기본단위 중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중간자치단체

샤를 드골 대통령(좌)와 앙드레 말로 문화부 장관(우)⁶⁶⁾DRAC 설립지역 현황⁶⁷⁾

□ 방문기관 특이사항

○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DRAC Île-de-France)의 역할

- 일드 프랑스 (파리 수도권)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레지옹⁶⁸⁾으로 중심 도시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이며 면적은 12,065km², 인구는 2019년 기준 1221만 여명으로 프랑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레지옹임
- 현재 일드 프랑스는 총 8개의 데파르트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2018년·2019년 2년 연속으로 한 해 5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여행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음
-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의 주요 역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 정책과 유기적인 사회 결합을 위한 정책 참여, 경쟁력 있는 문화 소재 개발과 학술적 연구에 기여, 지역 및 도의 시민들에게 문화 정보 공유와 소식 전달, 국가 정책 및 산업 지원 및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과의 협력 발전 도모 등이 있음

○ CARTOVIZ : 파리 지역 연구소(L'INSTITUT PARIS REGION)와의 협업

- 프랑스 문화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문화지도 (Atlas régional de la culture) 프로젝트를 통해 프랑스 전역의 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 문화 분야 지출액 및 고용현황 등 각종 문화 관련 데이터들을 각 지역문화사무국별로 수집·가공·분석하여 지도 및 그래프의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음
-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은 2017년부터 지역문화지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파리 지역 연구소 (구 일드 프랑스 도시계획·개발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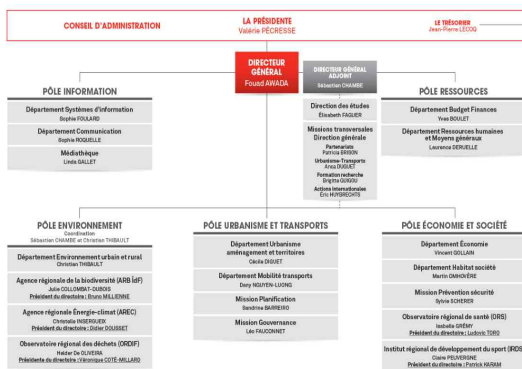
66) France Culture,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franceculture.fr/emissions/fictions-theatre-et-cie/le-s-chenes-quon-abat-de-andre-malraux>

67) Ministère de la Culture,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culture.gouv.fr/Reg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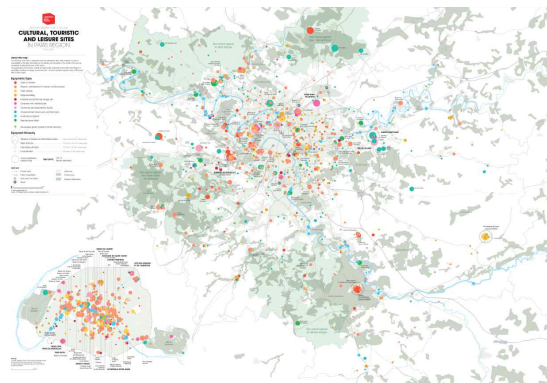
68) 프랑스의 지방 행정 구역 단위 중 하나로 법인격을 보유한 자치단체인 동시에 국가의 지방행정 단위로 한국의 도(道)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프랑스 내 각종 문화시설·문화유산·여가·관광시설 데이터를 해당 연구소가 운영하는 대화형 지도 서비스인 CARTOVIZ에 탑재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디지털 데이터 축적을 진행하고 있음⁶⁹⁾

- 파리 지역 연구소는 파리 및 일드 프랑스 레지옹을 대상으로 한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지난 1960년 창설된 후 1976년 IAURP (Institut d'Aménagement et d'Urbanisme de la Région Parisienne), 2008년 IAU îdF (Institut d'Aménagement et d'Urbanisme de la région Île de France) 등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9년 6월 파리 지역 연구소 (L'INSTITUT PARIS REGION)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음



파리 지역 연구소의 조직도⁷⁰⁾



일드 프랑스 내 문화·관광·여가시설 안내도⁷¹⁾

- 파리 지역 연구소는 정보센터 (pôle information), 자원센터 (pôle ressources), 환경센터 (pôle environnement), 도시계획 및 교통센터 (pôle urbanisme et transports), 경제 및 사회 센터 (pôle économie et société) 등 5개의 일반부서와 지역 생물다양성 기구(Agence Régionale de la Biodiversité), 지역 폐기물 관측소 (Observatoire Régional des Déchets), 지역 에너지·기후 기구 (Agence Régionale énergie-climat), 지역 건강 관측소 (Observatoire régional de santé), 지역 스포츠개발 연구소 (L'Institut régional de développement du sport) 등 5개의 전담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파리 지역 연구소는 문화 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경제, 관광·레저, 스포츠 등 각종 테마별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맵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일드 프랑스 지역의 지리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와 제휴하여 CARTOVIZ라는 대화형 지도 서비스 (Interaction Map Service)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이 자체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보다는 파리 지역

69) L'INSTITUT PARIS REGION,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institutparisregion.fr/cartographies-interactives-cartoviz.html>

70) L'INSTITUT PARIS REGION,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institutparisregion.fr/institutparisregion.html>

71) L'INSTITUT PARIS REGION,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institutparisregion.fr/fileadmin/DataStorage/IauEtVous/CartesEtDonnees/cartesetdonnees/cartes_telecharge/thema/CE_18_Tourisme_2019.pdf

연구소라는 타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일드 프랑스 지역의 문화자원 분포현황을 지도서비스로 구현하고 있음

□ 인터뷰 개요

○ 기본 정보

- 방문지 :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 건물 내 3층 사무실
- 방문일시 : 2020년 1월 28일 14:00 ~ 16:30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의 Jean-Marc Dos Santos Malhado⁷²⁾

○ 방문기관 인터뷰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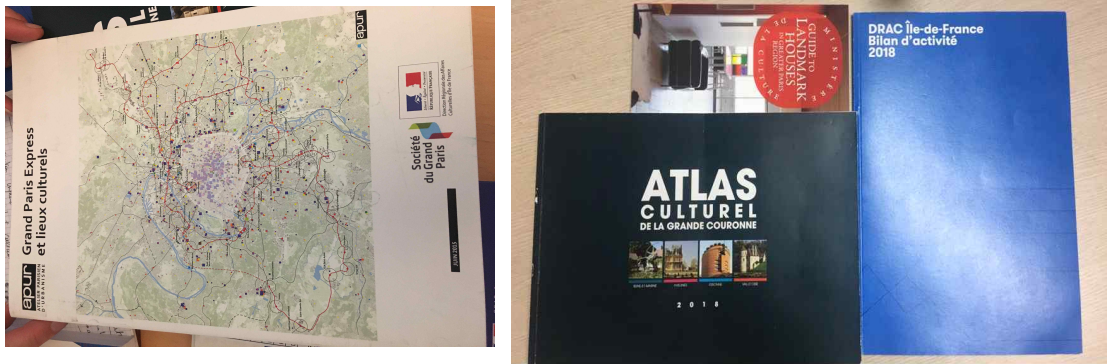
- Jean-Marc Dos Santos Malhado (Chef de service Développement et Action territoriale)

○ 인터뷰 주제

-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의 역할·기능, 지방자치단체·시의회와의 관계
- 지역문화사무국의 문화 데이터 수집·관리·공개 구조, 문화통계 작성업무
- 파리 지역 연구소와 지역문화사무국의 협업체계
- Département des études de la prospective et des statistiques (DEPS)에서 매년 조사하는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 Grand Paris Express 프로젝트, CATROVIZ 서비스, Pass Culture 현황 등

72) 작성자가 직접 촬영함

○ 인터뷰 관련자료



지역문화사무국에서 매년 발간하는 각종 통계자료 및 지역문화지도⁷³⁾

□ 주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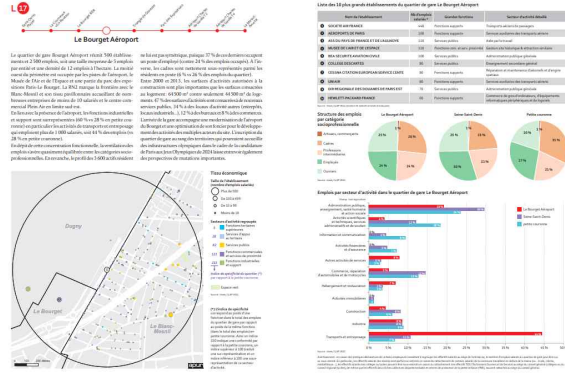
○ 지역문화사무국의 협업 프로젝트

-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예산지원 업무, 프랑스 내 문화향유 실태조사, 문화 관련 공공·민간 재정에 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업무 등임
-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에서는 일드 프랑스 내 문화시설의 현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파리 도시계획연구소 (apur ; L'Atelier parisien d'urbanisme), 그랑 파리 공사(SOCIÉTÉ DU GRAND PARIS)⁷⁴⁾와 협업하여 Grand Paris Express et lieux culturels라는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 (Grand Paris Express)⁷⁵⁾ 사업구간에 해당하는 파리의 11·14·15·16·17·18호선 지하철 역 주변에 위치해있거나 혹은 향후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 추가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프랑스 문화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기 시작한 놀라운 정원(jardins remarquables) 등에 대한 현황 정보를 대화형 지도와 디지털 맵 자료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음

73) 작성자가 직접 촬영함

74)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 2010년에 설립한 공공 기관

75) 2007년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에 의해 제창된 그랑 파리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존 교외선 철도의 보완책으로서 파리의 인근 도시들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단일 교외 순환선을 만드는 사업임

Grand Paris Express 노선도⁷⁶⁾파리 르부르제 공항역 주변의 문화시설 현황⁷⁷⁾

○ 지역문화사무국에서의 데이터 수집현황

- 2019년부터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에서는 지역관측사무소를 기관 내에 새로 설립하여 일드 프랑스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내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향후 지역문화 정책 수립 시 참고사항이 될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시설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이는 2017년부터 프랑스 문화부가 각 지역의 지역문화사무국을 통해 진행 중인 지역문화지도 프로젝트에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해당 지역 관측사무소에 소속된 담당자 1명이 지역문화지도 프로젝트 수행, 관련 예산업무, 프로젝트 평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수집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오류점검 혹은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보다 심층적인 현황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지역문화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학교·병원·교도소 등 민간시설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경우 매년 1,000여 개의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 그중 평균적으로 500개 프로젝트 정도가 선정되어 진행됨
-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됨과 동시에 프로젝트 참여자 수, 기금 사용처 등의 정보를 프로젝트 시행자가 직접 기입하는 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0여명의 사무국 내 인원으로 500개에 달하는 평가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평가서 작성을 온라인으로 기입하게 하고 그 결과 수치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문화예술인력 데이터의 경우 지역문화사무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별도로 없으며, 보조금 사업이나 축제운영 등 개별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인력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극·무용·영화 등 각종 문화예술분야별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회원정보를 요청하여 대조·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76) Observatoire des quartiers de gare du Grand Paris (Atelier parisien d'urbanisme),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apur.org/dataviz/observatoire_des_gares/index.html

77) 위와 동일함

○ 지역문화사무국의 데이터 수집활동과 Pass Culture 프로젝트와의 관계

- 2018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 문화부의 Pass Culture 프로젝트는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프랑스 내 18세 청소년들에게 연간 500유로를 지원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음⁷⁸⁾
- 2020년 현재 Pass Culture 프로젝트는 Ardennes이나 Bas-Rhin 등 프랑스 본토는 물론 Guyane과 같은 해외 영토에 소재한 데파르트망을 포함한 총 14개 데파르트망에서 약 150,0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치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022년부터 매년 약 800,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될 예정임
-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한 시범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31,031개의 사용자 계정과 2,662개의 문화예술 활동가 계정이 생성되어 실 사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사용자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한 86,765건의 서비스 중 45% 이상이 도서구매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13%는 콘서트·축제 예매, 11%가 온라인 음악플랫폼 이용 등으로 나타났음⁷⁹⁾
- 이 Pass Culture 프로젝트는 자신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홍보·공유하고 싶어 하는 이해당사자들이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여 직접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중앙정부에서는 가입자들이 자율적으로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독려할 뿐 직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음

78) Pass Culture,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pass.culture.fr/>

79) Lemonde,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lemonde.fr/culture/article/2019/11/13/le-pass-culture-tarde-a-decoller_6019030_3246.html

un dispositif accessible à t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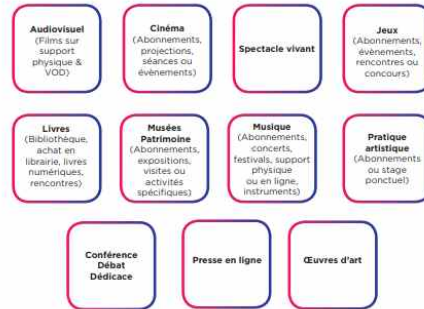
L'accueil et la prise en compte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est une priorité pour l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c'est pour cette raison que l'application du pass Culture est pensée pour être accessible techniquement aux jeunes en situation de handicap et qu'elle comporte un nombre significatif de propositions qui leur soient ouvertes. Le ministère est pleinement mobilisé... pour inclure et accompagner les jeunes en situation de handicap tout au long du processus de création de l'application.

L'interface du pass Culture, qui sera généralisée à terme, devra être pleinement accessible et prendre en compte toutes les formes de handicap. Le pass Culture devra également donner accès à des propositions d'activités artistiques et culturelles inclusives, et mentionner systématiquement la capacité des lieux à accueillir l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Pour permettre à tous les jeunes, quelle que soit leur situation, de bénéficier de toute la richesse et la diversité de l'offre artistique et culturelle, l'équipe en charge du développement du pass Culture associe les jeunes en situation de handicap dans les territoires concernés par l'expérimentation en cours. Un nombre significatif de jeunes en situation de handicap feront part, dans les mois à venir, de leurs retours d'expérience.

Les acteurs souhaitent s'investir dans ce développement à nos côtés sont invités à se signaler en envoyant un e-mail à l'adresse : support@passculture.app. En parallèle, les structures culturelles participant à l'expérimentation sont sensibilisées par le ministère de la Culture à la nécessité de nommer un référent handicap et d'intégrer un objectif spécifique handicap dans leurs contrats d'objectifs et de moyens. Le ministère a par ailleurs créé un fonds dédié permettant l'équipement des salles en matériel d'accessibilité (audiodescription, sous-titrage, boucle magnétique) et le développement de la programmation d'œuvres accessibles. En 2018, 82 salles de spectacle réparties sur le territoire, dont 2 salles en Océanie, se sont ainsi engagées et ont été soutenues.

Pass Culture의 모바일서비스⁸⁰⁾**Comment ça marche ?**

Concrètement, le pass Culture prend la forme d'une application web et mobile téléchargeable gratuitement, qui révèle et relaie les possibilités culturelles et artistiques accessibles à proximité. Grâce à un dispositif de géolocalisation, les usagers peuvent repérer, choisir et réserver une grande diversité de propositions et biens culturels, du concert au théâtre en passant par le livre, la pratique artistique et les jeux vidéo.

Pass Cultur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⁸¹⁾

- 이러한 데이터 수집방식은 각 지역문화사무국이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데이터를 수집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Pass Culture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문화예술 활동가 및 소비자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상세한 기관·프로그램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 문화예술 분야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문화부와 같은 중앙정부 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 부서를 통한 기존의 하향식 방식 (Top-down)에 비해 이해당사자의 자율적 참여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향식 방식 (Bottom-up)은 서비스 초기 참여자의 수가 적고 표준화된 데이터 입력기준의 부재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제공 참여자의 수가 점차 늘어날수록 자발적인 데이터 입력을 유도할 수 있어 각 이해당사자별로 보다 상세한 데이터를 실시간 현황에 보다 가까운 형태로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영화관·문화센터 등과 같은 문화시설 현황 데이터의 경우 기존의 하향식 방식 (Top-down)을 통해서 대부분 수집 가능하였으나, 시설별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데이터의 경우 관할권·사업운영 주체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통합적인 데이터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80) Pass Culture,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pass.culture.fr/assets/docs/communication/190704-pass_culture-brochur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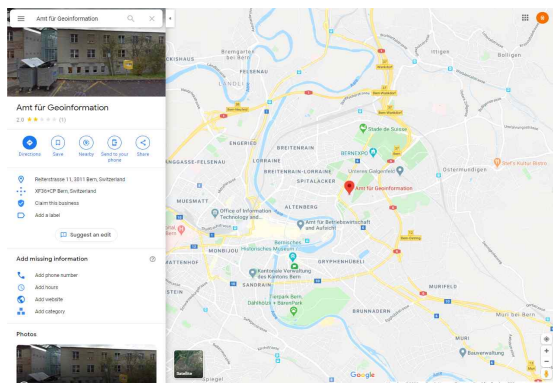
81) 위와 동일함

- Pass Culture 프로젝트는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직접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활동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상향식 방식 (Bottom-up)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혹은 복잡·다양하며 일부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지역 내 광범위한 문화예술 활동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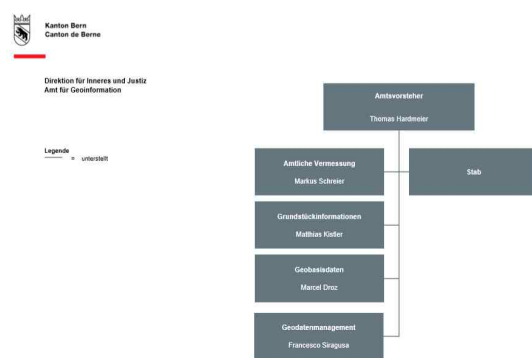
(2) 스위스 베른 주 지리정보국⁸²⁾

□ 개요

- 베른 주의 내무부 (Direktion für Inneres und Justiz) 내 14개 부서 중 하나인 베른 주 지리정보국(Amt für Geoinformation)은 베른 주의 공간지리 데이터의 구축 및 관리 전담부서로서 탁 부서, 지자체, 사기업, 연구소, 개인들이 이용 가능한 각종 지리데이터를 생산하며, 데이터의 표준화·정규화를 통해 공간정보의 명확하고 단일화된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2020년 1월 1일 베른 주 정부 내 부처 개편으로 기존 건설, 교통 및 에너지 관리부 (Bau-, Verkehrs- und Energiedirektion des Kantons Bern)에서 내무부 (Direktion für Inneres und Justiz des Kantons Bern) 산하 기관으로 지리정보국의 소속과 Geo portal 서비스의 관리체계가 변경되었음



베른 주 지리정보국 위치⁸³⁾



베른 주 지리정보국 조직도⁸⁴⁾

82) Amt für Geoinformation,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geo.apps.be.ch/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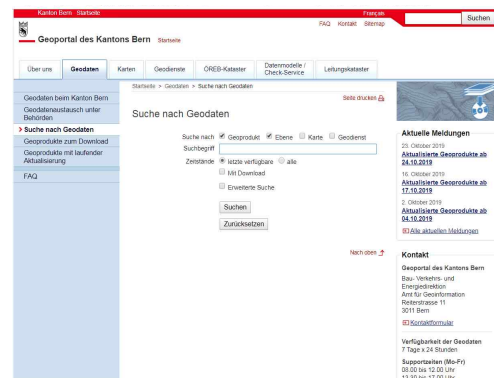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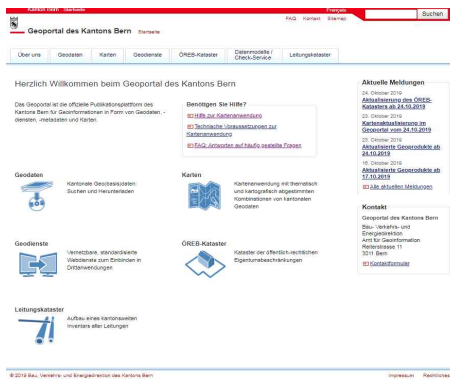
83) Google Maps, Google,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google.co.kr/maps/place/Amt+f%C3%BCr+Geoinformation/@46.9536,7.4596284,17z/data=!3m1!4b1!4m5!3m4!1s0x478e39e0d0693873:0x61083262b8bc8c09!8m2!3d46.9535964!4d7.4618171?hl=ko>

84) Amt für Geoinformation,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jgk.be.ch/jgk/de/index/direktion/organisation/agi/organigramm.assetref/dam/documents/JGK/AGI/de/AGI_Organigramm_de.pdf

□ 방문기관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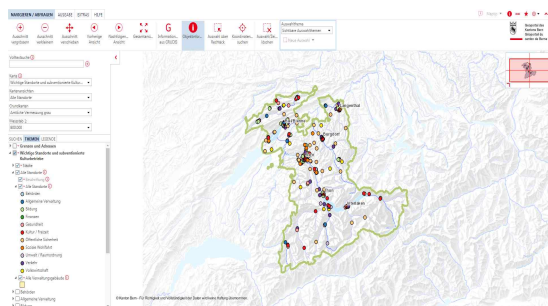
○ Geoportal 플랫폼 운영 및 관리

- Geoportal은 지리정보국(Amt für Geoinformation)에서 운영·관리하는 베른 주 공식 지리정보 플랫폼으로 베른 주 행정구역 내의 다양한 지리정보, 메타 데이터를 웹 맵 서비스(Web Map Service, WMS)⁸⁵⁾의 형태로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지리 관련 정보를 웹상에 개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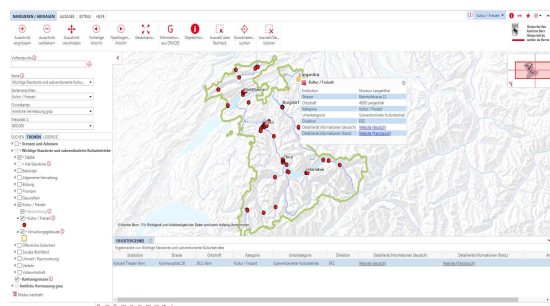


스위스 베른 주 'Geoportal' 사이트의 주요 메뉴⁸⁶⁾

- 베른 주의 자연환경 데이터, 게마인데 / 코뮌⁸⁷⁾ 현황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 행정 구역, 교구의 행정 구역 등의 기본적인 행정정보는 물론 대중교통 담당구역 표시, 어업면허 구역 표시, 공사 구역표시, 각 지자체별 세율 현황, 대중교통 지도, 베른 주 내의 AED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책 관련 위치정보 등 베른 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별 위치정보 데이터 및 지도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베른 주 주요 공공기관들의 위치정보⁸⁸⁾



문화시설 (란겐탈 박물관) 정보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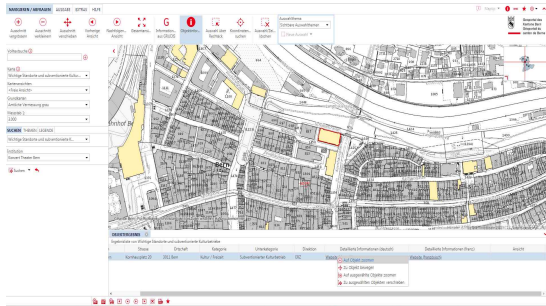
85) GIS(지리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맵 서버에서 생성된 지도 이미지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

86) Geoportal (Amt für Geoinformation),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geo.apps.be.ch/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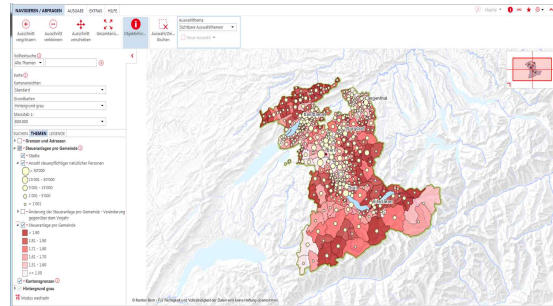
87) Gemeinde / Commune : 스위스 연방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

88) Geoportal (Amt für Geoinformation),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map.apps.be.ch/pub/synserver?project=a42pub_stobe&userprofile=geo&client=core&language=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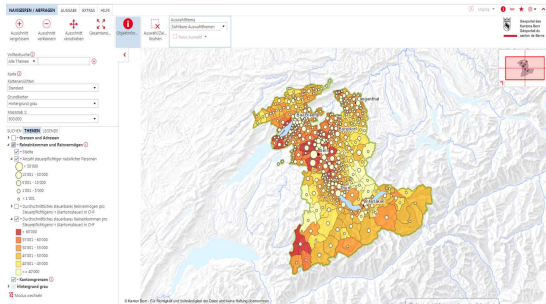
89) 위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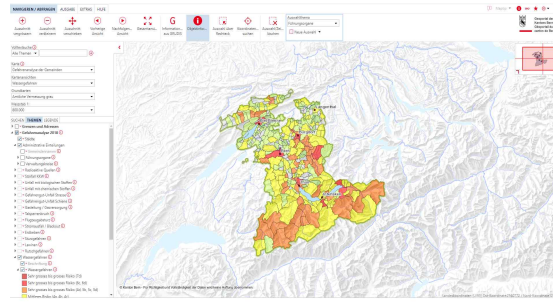
문화시설 (베른 극장) 정보⁹⁰⁾



베른 주 내의 지역별 세울 현황⁹¹⁾



CHF (스위스프랑)기준 베른 주 내 지역별 순소득⁹²⁾



베른 주 내 게마인데별 위험성평가 결과치⁹³⁾

- 주 (Kanton)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는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위치정보, 베른 주 내의 고고학 유적지 위치정보, 베른 주 역사지도 및 자연보호 지도 서비스 등 베른 주 내 문화관련 지리데이터도 여타 다른 행정기관 데이터와 같이 Geoportal 플랫폼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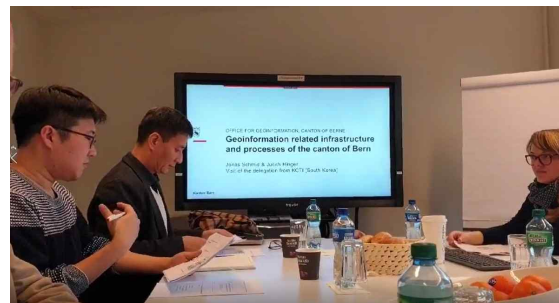
□ 인터뷰 개요

○ 기본 정보

- 방문지 : 베른 주 지리정보국 건물 내 1층 회의실
- 방문일시 : 2020년 1월 30일 09:00 ~ 11:00



베른 주 지리정보국 사무실 입구⁹⁴⁾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개요 및 취지 소개⁹⁵⁾

90) 위와 동일함. 문화시설을 선택하면 하단의 메뉴를 통해 해당 시설 명칭과 주소 및 우편 번호, 기본 카테고리 명칭 및 세부 카테고리 명칭, 관리주체, 각 언어별 (독일어·프랑스어) 관련 웹사이트 정보, 기타정보가 공개되어 있음

91) 위와 동일함

92) 위와 동일함

93) 위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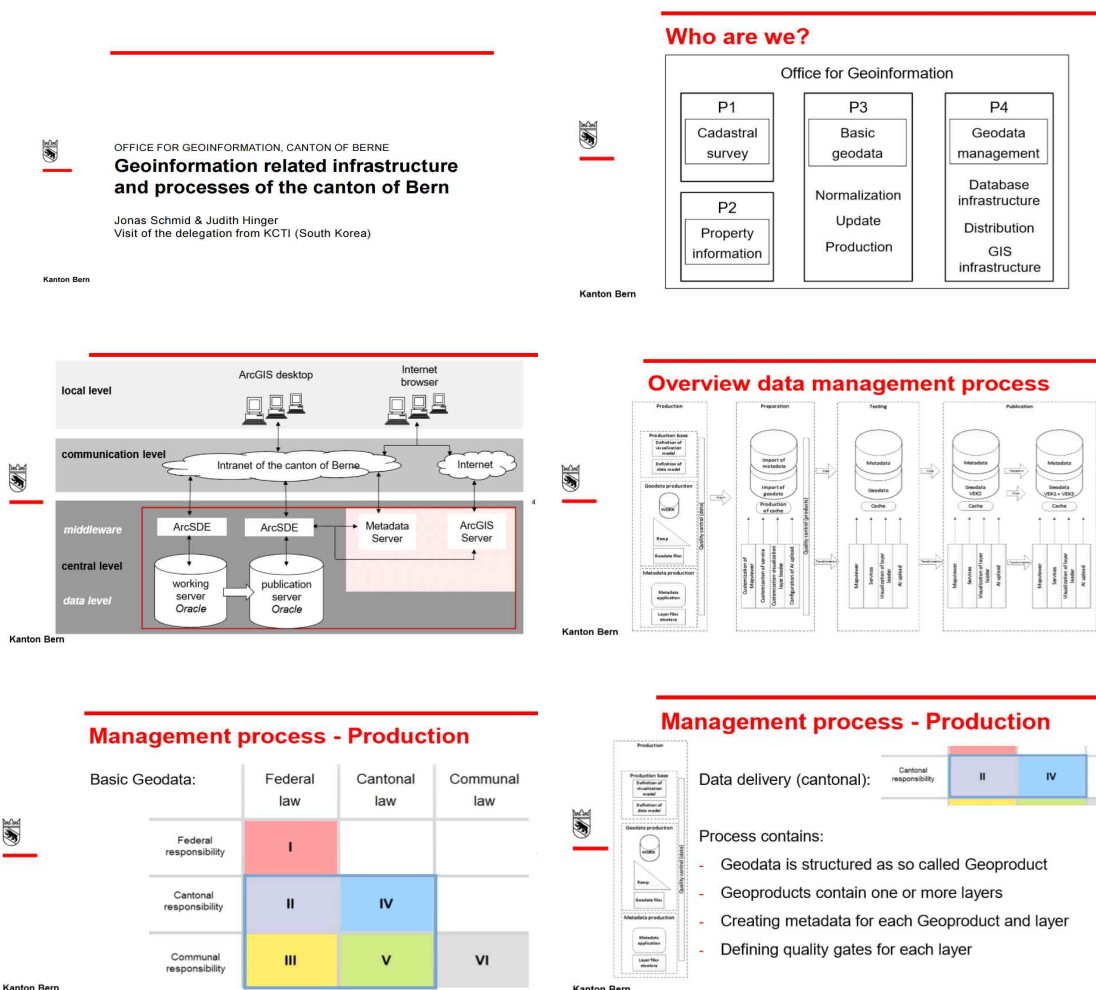
○ 방문기관 인터뷰 대상

- Jonas Schmid (Development Geodata infrastructure, Geodata, Geodatabase)
- Judith Hinger (Geoportal Geoservice Maps Server Infrastructure)

○ 인터뷰 주제

- 베른 주 지리정보국의 주요 업무 및 Geoportal 시스템 오버뷰
- Geoportal 시스템 내 데이터 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
- Geoportal MapViewer 시현, Geoportal 이용자 및 고객, 향후 발전방안 등

○ 인터뷰 관련 자료(베른 주 지리정보국 소개)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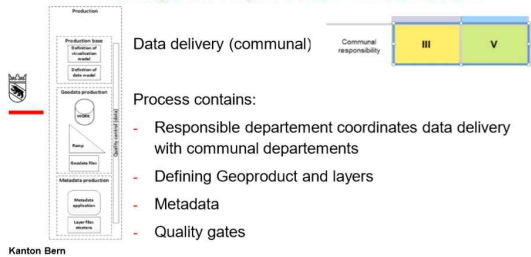


94) 작성자가 직접 촬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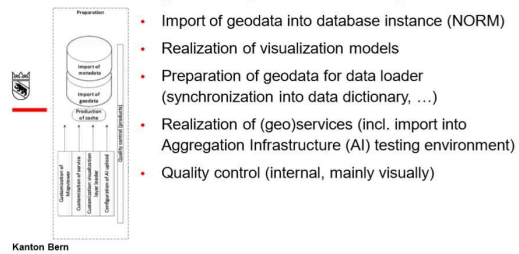
95) 위와 동일함

96) 베른 주 지리정보국에서 직접 제작하여 인터뷰 당시 공개한 자료이며 귀국 후 이메일로 제공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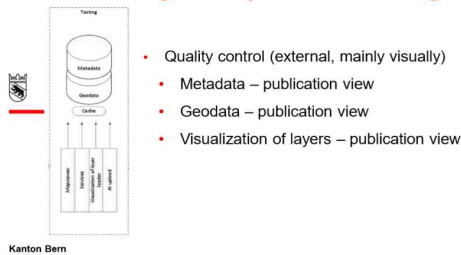
Management process -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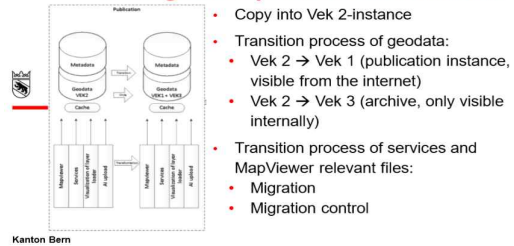
Management process - Prepa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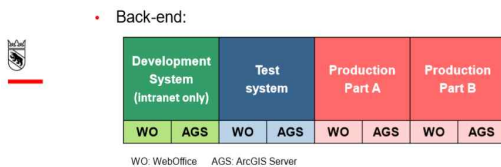
Management process - Testing



Management process - Publication



Geoportal



Users and customers

- Users:
 - members of the cantonal administration
 - Need a working environment → Software package, licenses
 - Customers:
 - private persons, public services, members the official administration
 - Usage of [Geoportal](#) (MapViewer, geoservices, data download, meta data information)
 - Possibility to order geodata
- Kanton Bern

Users and customers

Number of server requests	Number of map projects	Requests per map project and working day*
~ 11.5 million	94	~ 480

* 2019: 251 official working day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Dependencies in the management process
- Dependencies in software and hardware
- User / customer groups and management
- Automation

□ 주요 시사점

- 베른 주 내 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관련 위치데이터를 지리정보국에서 운영하는 Geoportal 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이원화 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음
- 베른 주 문화국이 직접 자체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보다는 타 부처의 지리정보 시스템에 문화 관련 정보를 탑재하여 기본적인 문화자원 분포현황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음
- 각 행정기관을 통해 수집된 각종 데이터들은 생산 (Production), 준비 (Preparation), 검사 (Testing), 공개 (Publication)의 4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 품질이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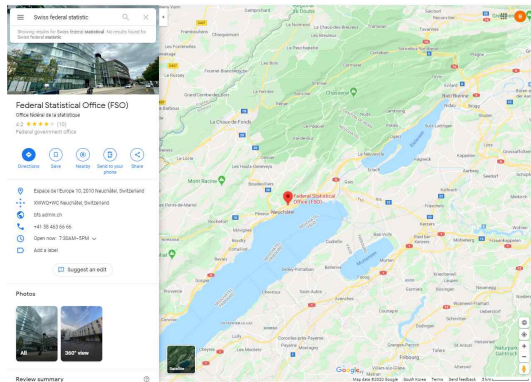
관리되고 있음

- 지리정보국의 경우 행정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데이터 관리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가공이나 분석능력에 있어서는 전담부서와 담당자 부재로 인해 미약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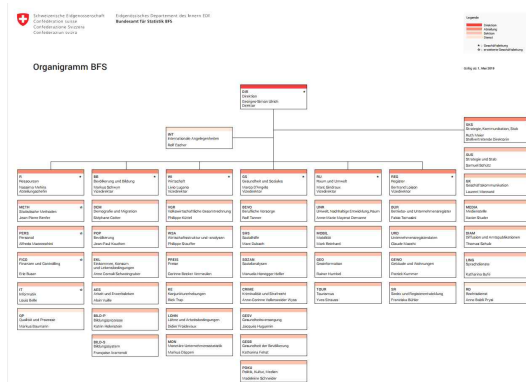
(3) 스위스 연방 통계청⁹⁷⁾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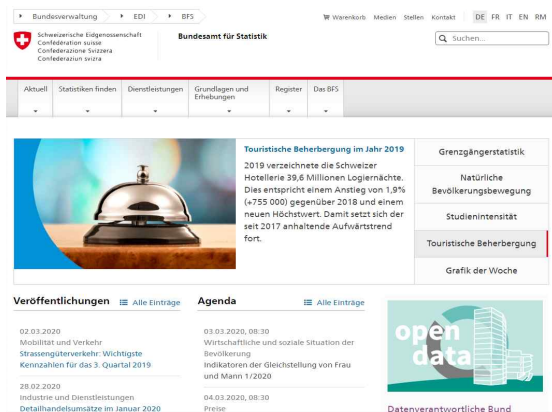
- 스위스 연방 통계청(Bundesamt für Statistik)은 연방 통계법(Federal Statistics Act)에 의거, 스위스 연방의 각종 통계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공식 연방기관으로 스위스 연방 내무부 소속이며 유럽 연합의 통계 기구인 Eurostat(European Statistical Office)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를 생산·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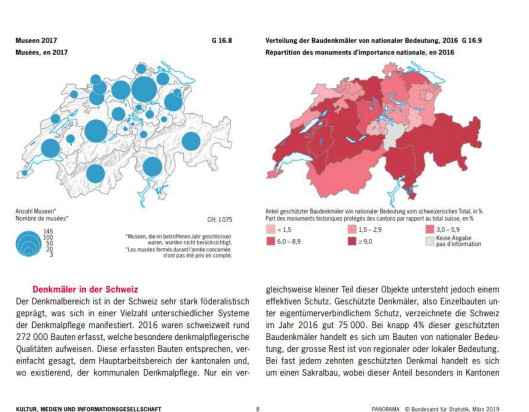
스위스 연방 통계청 위치⁹⁸⁾



스위스 연방 통계청 조직도⁹⁹⁾



스위스 연방 통계청 홈페이지 메인화면¹⁰⁰⁾



박물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분포 현황¹⁰¹⁾

97) Bundesamt für Statistik,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bfs.admin.ch/bfs/de/>

98) Google Maps, Google,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google.com/maps?xsrf=ALeKk03RGM9FzrzlOL06739BV9C1snEjXQ:1583139418880&q=swiss+federal+statistics+office&um=1&ie=UTF-8&sa=X&ved=2ahUKEwiUiqOjt_vnAhWGdXAKHcKEAOuQ_AUoAXoECBMQAw

99) Bundesamt für Statistik,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bfs.admin.ch/bfsstatic/dam/assets/8206959/master>

100) Bundesamt für Statistik,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bfs.admin.ch/bfs/de/home.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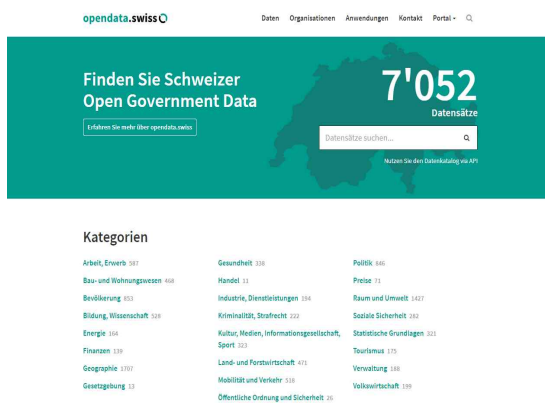
101) Bundesamt für Statistik,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bfs.admin.ch/bfsstatic/dam/assets/784662>

- 인구, 영토와 환경, 국가경제, 농업 및 임업, 에너지, 건설 및 주택, 교통, 안보, 건강, 교육 및 과학, 정책, 범죄 및 사법시스템, 지속가능 발전 등 21개 분야의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횡단면 주제 (Cross sectional topics), 지역 통계 (Regional statistics)에 관한 통계자료도 공개하고 있으며 주요 통계자료에 대해 메타 데이터와 더불어 그래프 자료, 지도서비스 연동기능도 제공함
- 연방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문화 분야와 관련하여 수집·생산한 각종 통계자료는 부처 홈페이지 내 여행 (Tourism), 문화, 미디어, 정보사회, 스포츠 (Culture, media, Information society, sport) 카테고리에 공개되어 있음¹⁰²⁾

□ 방문기관 특이사항

○ Opendata.Swiss 운영 및 관리

- 정부기관의 공개데이터에 대한 공공기관 거점포털¹⁰³⁾을 통해 오픈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기준 73개의 기관과 관련한 총 7,052개에 이르는 각종 오픈데이터를 API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 175개의 여행 (Tourism)분야 관련 오픈데이터, 329개의 문화, 미디어, 정보사회, 스포츠 (Culture, media, Information society, sport)분야 관련 오픈데이터를 제공함



‘OpenData.Swiss’ 사이트 메인화면¹⁰⁴⁾



각종 문화 분야 오픈데이터 내역¹⁰⁵⁾

- 문화 분야와 관련하여 공개된 오픈데이터의 주요 사례로 바젤 박물관의 이벤트 정보, 취리히 시의 예술품 목록 및 역사적 기념물 목록과 박물관 정보, 스위스 연방의 공공 문화지출액 내역 등이 있음

7/master

102) Bundesamt für Statistik,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bfs.admin.ch/bfs/de/home/statistiken/kultur-mediainformationsgesellschaft-spor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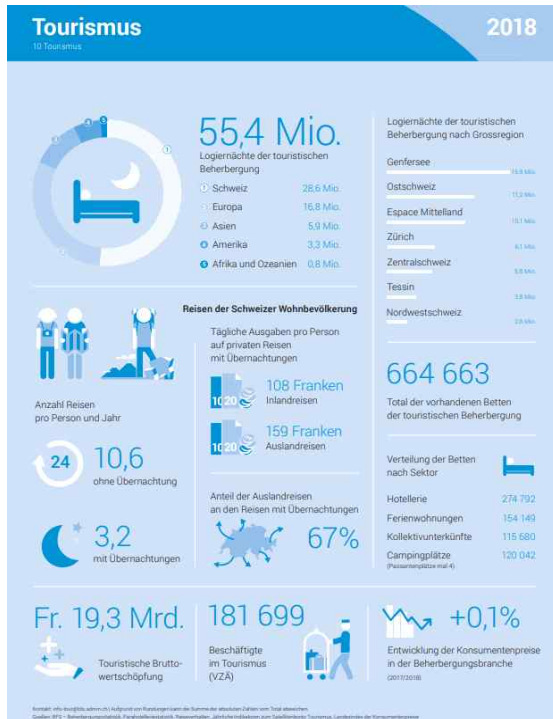
103) Bundesamt für Statistik,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opendata.swiss/de/>

104) Bundesamt für Statistik,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opendata.swiss/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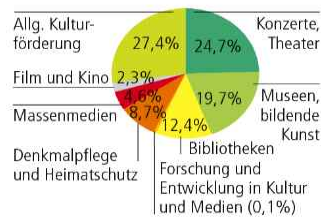
105) Bundesamt für Statistik,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opendata.swiss/de/group/culture>

○ 데이터의 시각화 분석자료 제공

- 공공부문에서 생산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스위스 연방 헌법 제65조 및 연방 통계법, 연방 데이터 보호법 등에 따라 연방 통계청에 의해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의 통계업무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의 수집·생산·공유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2018년 스위스 관광산업 현황 인포그래픽¹⁰⁶⁾**Verwendung der öffentlichen Ausgaben nach Kulturbereich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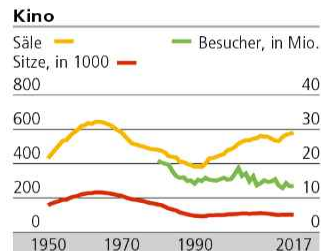
Gemeinden, Kantone und Bund



Quelle: BFS/Eidgenössische Finanzverwaltung (EFV)

Die Schweizer Film- und Kinoland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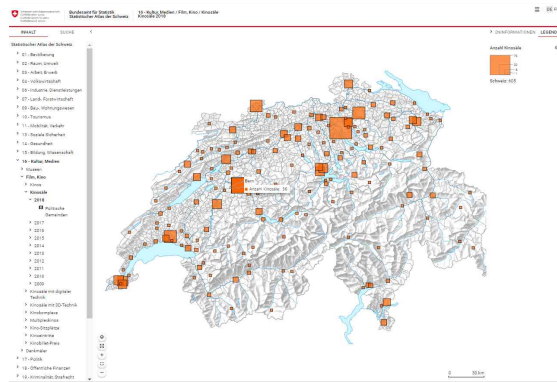
Zu Beginn der 2000er Jahre wurden in der Schweiz jährlich gegen 1300 Filme vorgeführt, heute bewegt sich diese Zahl um 1900. Der Anteil an Schweizer Filmen ist dabei von rund 10% auf knapp 15% angestiegen. Der Marktanteil der Schweizer Filme beträgt im Durchschnitt seit 2000 rund 5%.

2019 포켓통계북 (보조금 지원분야, 영화산업 동향)¹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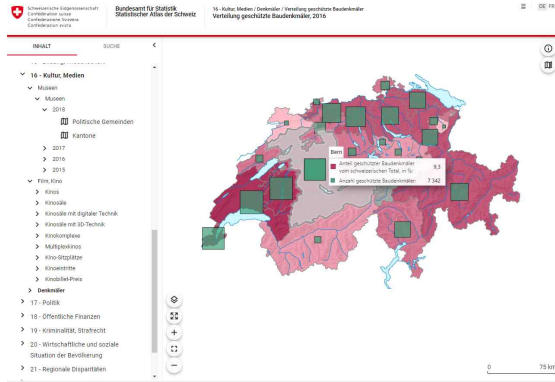
- 아울러 연방 통계청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들의 지리적 분포와 지역별 수준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대화형 지도플랫폼을 통해 나타난 스위스 통계지도 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자료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통계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106) Bundesamt für Statistik,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bfs.admin.ch/bfs/de/home/statistiken/tourismus.assetdetail.11507546.html>

107) Bundesamt für Statistik,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swissstats.bfs.admin.ch/collection/ch.admin.bfs.swissstat.de.issue19000211900/article/issue19000211900-20>



베른 주 및 스위스 연방 내 극장 수¹⁰⁸⁾



베른 주 및 스위스 연방 내 역사적 기념물 분포 현황¹⁰⁹⁾

□ 인터뷰 개요

○ 기본 정보

- 방문지 : 뇌샤텔 주 연방 통계청 건물 내 11층 회의실
- 방문일시 : 2020년 1월 30일 13:00 ~ 15:00



스위스 연방 통계청의 Olivier Moeschler(좌측 두 번째)¹¹⁰⁾



인터뷰 및 간담회 진행¹¹¹⁾

○ 방문기관 인터뷰 대상

- Olivier Moeschler (Head of culture domain)
- Alan Herzig (Statistics on culture expenditure)

○ 인터뷰 주제

- 스위스 연방 통계청의 문화관련 통계 생산 및 서비스 현황
- 문화소비 관련 스위스 연방 통계내역 분석
- 도서관 및 박물관 통계 상세내역, 향후 도서관 통계 관련 주요 개정사항

108) Bundesamt für Statistik,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atlas.bfs.admin.ch/maps/13/map/mapIdOnly/0_de.html

109) 위와 동일함

110) 작성자가 직접 촬영함

111) 위와 동일함

-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툴 (Tool), 데이터 재사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 인터뷰 관련 자료(스위스 연방 통계청 소개자료)¹¹²⁾



Visit of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CTI (Cultural Policy Research Divis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Neuchâtel, 30.01.2020, room T1403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FSO): Cultural Statistics

Olivier Moeschler, head of culture domain
Alain Herzig, statistics on cultural expenditure
Section POKU Politics, Culture and Media

Program

- Arrival, welcome and tour of the FSO** 13:30-13:50
- Meeting** 13:50-15:00
 - KCTI: a short presentation 13:50-14:00
 - FSO Cultural statistics: an overview 14:00-14:05
 - Statistics on cultural expenditure 14:05-14:15
 - Library and museum statistics 14:15-14:30
 - Interactive tools for data visualization 14:30-14:50
 - On the 'reuse of data': discussion 14:50-15:00
- Tea & Coffee** 15:00-15:25

Cultural statistics – visit of the KCTI at the FSO (O. Moeschler, Alain Herzig, Section POKU)



FSO Cultural statistics: an overview

Cultural statistics: [Link](#)

- Libraries (since 1868)
- Film/cinema (2003-), Museums (2015-), Monuments (2018-)
- Cultural activities (2008-)
- Cultural expenditure – public, private (2008-)
- Cultural economy – companies, employees (2020)

Media statistics: [Link](#)

- Supply/demand, economical/legal aspects of classical media

Information society (Internet): [Link](#)

- Households/population, Education/science/health...
- National strategy „Digital Switzerland“

Cultural statistics – visit of the KCTI at the FSO (O. Moeschler, Alain Herzig, Section POKU)



FSO Cultural statistics: an overview

Drivers for development/continuation:

- Legal basis (f.e. film policy, cultural expenditure)
- National cultural policies (f.e. museums, monuments)
- External financing (f.e. libraries: Cantons)

National cultural policy in Switzerland

- First constitutional article on culture (2000)
- First federal law on culture (2009/2012)

→ *Need for statistics on cultural domain*

Cultural statistics – visit of the KCTI at the FSO (O. Moeschler, Alain Herzig, Section POKU)



I. Statistics on cultural expenditure

- Statistics on public cultural funding (implemented)
- Statistics on cultural expenditure by private households in Switzerland (implemented)

No statistics available:

- on expenditure by private enterprises (pilot study 2001)
- on expenditure by foundations (project for 2021-2024)

Cultural statistics – visit of the KCTI at the FSO (O. Moeschler, Alain Herzig, Section POKU)



Cultural expenditure by private households

Data source: Household Budget Survey (HBS)

- Periodicity: annual (monthly: updates on commodities listed in the consumer Price Index)
- Regionalisation: mayor regions
- Survey unit: private household
- Sample size 2017: 3217 households
- Pooled samples of 3 years for more detailed analysis
- degree of detail: over 800 expenditure positions

Cultural statistics – visit of the KCTI at the FSO (O. Moeschler, Alain Herzig, Section POKU)



Cultural expenditure by private households

Implications of using HBS data

- + existing survey:
 - cost efficient
 - internationally comparable
 - proven methodology
- limited detail (number of cultural indicators/positions)
- limited number of observations
 - quality issues for some culture related positions
 - 59 «cultural» expenditure positions in survey
 - aggregated into 21 categories for cultural statistics
 - pooled data from 3 years for subgroup analysis

Cultural statistics – visit of the KCTI at the FSO (O. Moeschler, Alain Herzig, Section POKU)



Cultural expenditure by private households

Annual cultural (and media) expenditure of all private households, 2017 in CHF

Annual cultural expenditure of all private households in million CHF, estimated	15'939
of which: content and services (e.g. audiovisual or printed content, museums, libraries, theatre and concerts)	13'458
of which: equipment and goods (e.g. players and receivers, goods for creative activities)	2'231
Monthly expenditure per private household in CHF, estimated	354
of which: content and services	301
of which: equipment and goods	53

Source: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Content and services: Museums, exhibitions, libraries, zoological gardens, etc., Theatres and concerts, Music and dance courses, contributions to cultural associations, Other cultural and entertainment services.

Equipment and goods: Computer and modem, Television and video equipment, including accessories, Radio and audio equipment, Photo and film cameras, incl. accessories, Musical instruments, Writing and drawing materials, Repairs, Works of art.

Cultural statistics – visit of the KCTI at the FSO (O. Moeschler, Alain Herzig, Section POKU)

112) 스위스 연방 통계청에서 직접 제작하여 인터뷰 당시 공개한 자료이며 귀국 후 이메일로 제공받았음

Public cultural funding

Context: strong federalism in Switzerland

- Public funding of culture takes place at all three levels of government (Confederation, cantons, municipalities)
- Complicated and fractured governmental structures
- Large number of municipalities (01.01.2020: 2002 municipalities)
- Considerable fiscal autonomy of cantons and municipalities

Consequences for FSO-statistics

- Own data collection too resource intensive
- Use of already existing data (→ Finance Administration)
 - + existing common methodological framework
 - limited level of detail of the data

Cultural statistics – visit of the KCTI at the FSO (© Moeschler, Alain Herzog, Section POKU)

Public cultural funding

Main data source: Swiss Federal Finance Administration

- Data: annual accounts of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municipalities: partial projections)
- Periodicity: annual
- Regionalisation: Confederation, cantons, municipalities
- Main data structure: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more detailed compared to COFOG)

Cultural statistics – visit of the KCTI at the FSO (© Moeschler, Alain Herzog, Section POKU)

Public cultural funding

Cultural expenditure: composed of 8 cultural domains (functions)

Code	Cultural domain	Code	Cultural domain
311	Museums and fine arts	329	General promotion of culture
312	Preservation of monuments and cultural heritage	331	Film and cinema
321	Libraries and literature	332	Mass media
322	Music and theatre	381	R&D in culture and media

Challenges:

- Reducing "domain" 329
- Handling of lottery contributions
- Identification of "subsidies" (transfers)

Cultural statistics – visit of the KCTI at the FSO (© Moeschler, Alain Herzog, Section POKU)

Any questions?

oliver.moeschler@bfs.admin.ch
alain.herzig@bfs.admin.ch

Cultural statistics – visit of the KCTI at the FSO (© Moeschler, Alain Herzog, Section POKU)

□ 주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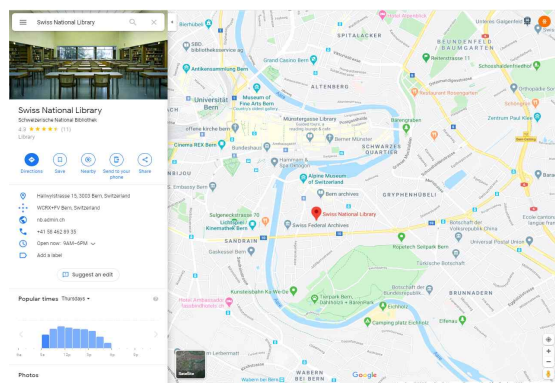
- 도서관 통계의 경우 1868년부터 시작되어 문화시설 관련 데이터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꾸준히 데이터가 축적된 분야인 반면, 박물관은 2015년, 역사적 기념물은 2018년부터 연방단위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음
- 연방 통계청에서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 설문결과 데이터는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도 문제로 인해 비공개가 원칙이며 해당 문화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주 정부에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음
- 2003년에 표준화했던 도서관 통계의 경우 조사문항수가 너무 많고 스위스 내 도서관 전수가 아닌 1/3 정도에 해당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2021년까지 스위스 전역의 도서관 전수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문항수도 기존의 70~80여개에서 20~30여개로 조정하고 수기로 작성하던 설문지 작성방식을 온라인 작성으로 변경할 예정임
- 스위스 통계지도서비스 내 문화 카테고리에서 수록된 통계자료는 현재 박물관, 역사적 기념물, 영화산업 현황 등 3가지에 불과하지만 향후 스위스 전역의 도서관 전수를 대상으로 도서관 통계가 갖추어지면 해당 통계조사 결과를 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
-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예술 재단들의 예산 및 보조금 지출현황에 대한 통계작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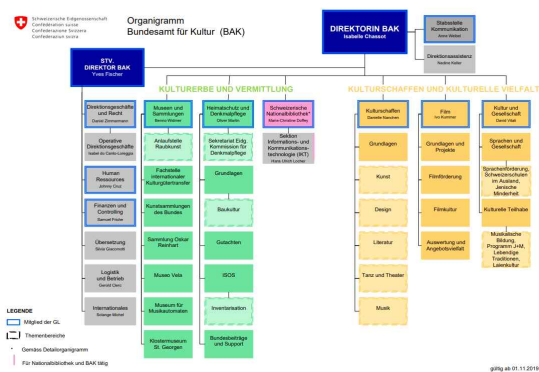
(4) 스위스 연방 문화청¹¹³⁾

□ 개요

- 스위스 연방 문화청 (Bundesamt für Kultur)은 연방 내무부 (EDI: Eidgenössisches Departement des Innern /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소속 하부기관이며 스위스 국립도서관 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음
- 연방 문화청은 스위스 연방의 문화 정책을 총괄하고 문화 다양성의 촉진, 유지 및 조정을 담당하는 한편, 스위스 내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영화산업 등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은 물론 각종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을 장려하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현황을 관리하고 역사적 기념물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스위스 연방 문화청은 연방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매년 연방 문화 통계(Taschenstatistik Kultur)를 작성하여 스위스 연방의 각 문화부문에 대한 각종 통계 정보를 조사·수집·공개하고 있음



스위스 연방 문화청 위치¹¹⁴⁾



스위스 연방 문화청 조직도¹¹⁵⁾

□ 방문기관 특이사항

○ 문화 선언 (Kulturbotschaft)¹¹⁶⁾

113) Bundesamt für Kultur,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bak.admin.ch/bak/de/>

114) Google Maps, Google,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google.com/maps/place/Bundesamt+f%C3%BCr+Kultur/@46.9414806,7.4476252,744m/data=!3m1!1e3!4m8!1m2!2m1!1samst+f%C3%BCr+kultur+bern!3m4!1s0x478e39cfa3a2c191:0x536780643f268369!8m2!3d46.941201!4d7.449745>

115) Bundesamt für Kultur,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bak.admin.ch/dam/bak/de/dokumente/bak/organigramm/organigramm_bak.pdf.download.pdf/organigramm_bak.pdf

116) Bundesamt für Kultur,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bak.admin.ch/bak/de/home/themen/kulturbotschaft.html>

- 한편 스위스는 2012년부터 문화진흥법에 의해 Cultural Message라고 하는 연방문화 정책에 대한 전략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스위스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예산조달 방안, 연방 문화청·국가예술위원회(Pro Helvetia)·스위스 국립 박물관 등 문화분야 공공기관의 재정계획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지난 2012년부터 매 4년을 주기로 작성하여 스위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2월 26일에는 2021-2024 Cultural Message가 스위스 연방 의회에서 승인되었음

○ 문화예술 펀딩 플랫폼 (Förderplattform FPF)¹¹⁷⁾

- 이 플랫폼은 스위스의 문화기관 및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스위스 연방 문화청이 관리하는 문화기금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
- 스위스 국적을 가진 자 혹은 스위스에 5년 이상 거주했거나 스위스 시민권자와 결혼한 자에 한하여 자금지원이 이루어짐.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프로젝트 당 2,000~10,000 스위스 프랑이며, 해당 문화예술 서비스의 내용과 더불어 지원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짐
- 해당 플랫폼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명칭, 주소 및 연락처, 은행계좌 등 기본적인 식별 정보와 더불어 재정지원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각종 문화예술 활동 이력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으로 지원가능하나 동일 프로젝트 중복지원은 불가

○ Federal Art Collections 온라인 서비스¹¹⁸⁾

- 1887년부터 수집된 22,000점에 달하는 Swiss Federal Art Collection 및 6,500점의 Collection of the Gottfried Keller Foundation¹¹⁹⁾의 2가지 수집품들 중 일부의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공개하는 서비스로 해당 데이터는 취리히 공과대학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e-pics 플랫폼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 스위스의 예술 및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회화, 사진, 조각, 유리세공 제품 등의 다양한 예술품들을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117) Bundesamt für Kultur,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gate.bak.admin.ch/fpf/public/home?execution=els1>

118) Bundesamt für Kultur,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kdb.e-pics.ethz.ch/index.jsp?category=998>

119) 스위스의 정치가이자 사업가였던 Alfred Escher의 딸이자 상속인인 Lydia Welti-Escher에 의해 설립된 고트프리트 켈러(Gottfried Keller) 재단이 보유하다가 스위스 연방정부에 기증한 미술작품들로 현재 스위스 전역의 박물관에 영구 대여되어 전시되고 있음. 당시 고트프리트 켈러는 당대 유명한 스위스 시인이자 화가로 Alfred Escher와 막역한 사이였음

○ 스위스 연방정부 보호지구 목록(VISOS: das Bundesinventar der schutzenswerten Ortsbilder der Schweiz) 관리

- 연방정부 보호지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스위스의 건축학적·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각 연방 주(Kanton)와 협의하여 목록을 평가·수정하고 있음
- 해당 목록에 대한 데이터는 스위스 연방 지리청이 구축 및 관리하고 있는 스위스 지리정보 플랫폼인 federal geoportal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음¹²⁰⁾

□ 인터뷰 개요

○ 기본 정보

- 방문지 : 스위스 국립도서관 건물 내 1층 회의실
- 방문일시 : 2020년 1월 30일 16:30 ~ 18:00



스위스 국립도서관 출입구¹²¹⁾



인터뷰 및 간담회 진행¹²²⁾

○ 방문기관 인터뷰 대상

- Solange Michel (Head of international Affairs)
- Myriam schleiss (Head of the Cultural Participation Service)

○ 인터뷰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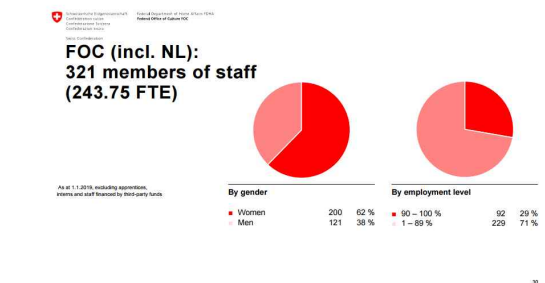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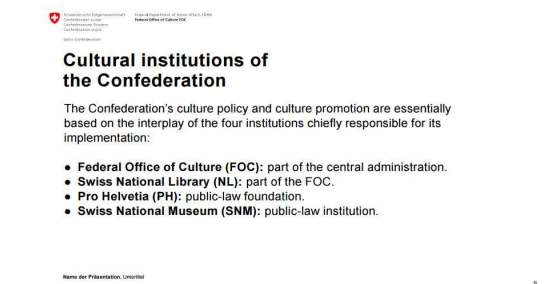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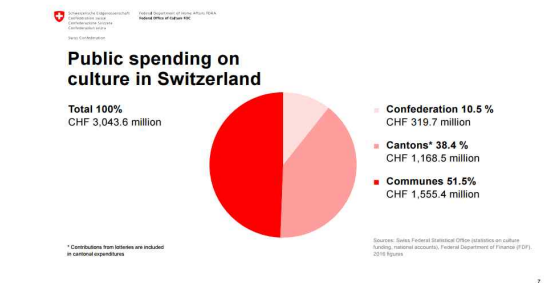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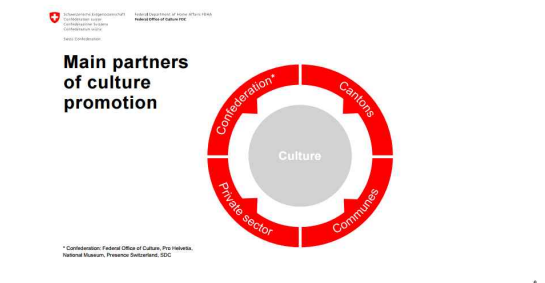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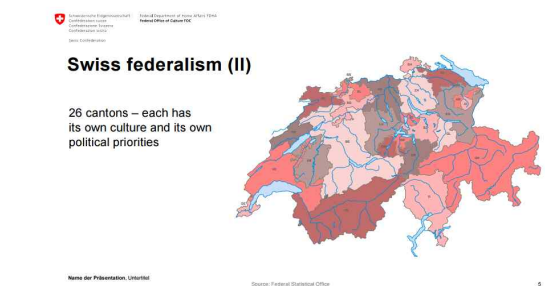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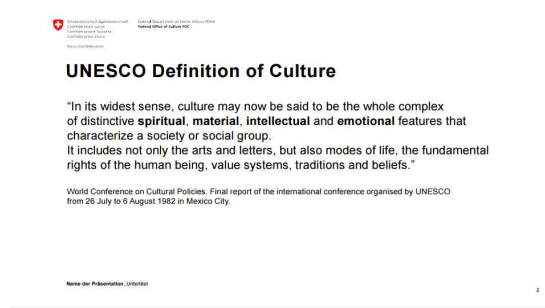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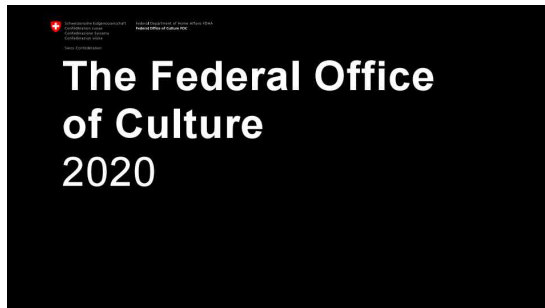
- 스위스 연방 문화청의 역할 및 주요 업무
- 연방 문화청 소관 하에 수집되고 있는 문화 관련 데이터 현황
-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의 주 정부 내 문화국과 연방 문화청과의 관계
- 연방 통계청과의 통계업무 협력구조 및 주요 성과물 등

120) Bundesamt für Kultur,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map.geo.admin.ch/?selectedNode=node_ch.bak.bundesinventar-schuetzenswerte-ortsbilder1&Y=660000&X=190000&zoom=1&bgLayer=ch.swisstopo.pixelkarte-farbe&layers=ch.bak.bundesinventar-schuetzenswerte-ortsbilder&layers_opacity=1&layers_visibility=true&lang=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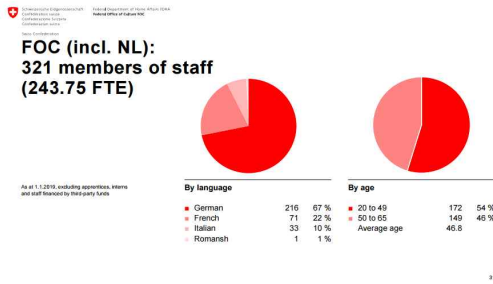
121) Twitter,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twitter.com/clefni/status/1176065026500780032>

122) 작성자가 직접 촬영함

○ 인터뷰 관련 자료(스위스 연방 문화청 소개 및 문화통계 포켓북 주요내용)¹²³⁾



123) 스위스 연방 문화청에서 직접 제작하여 인터뷰 당시 공개한 자료이며 귀국 후 이메일로 제공받았음



Why cultural statistics?

Cultur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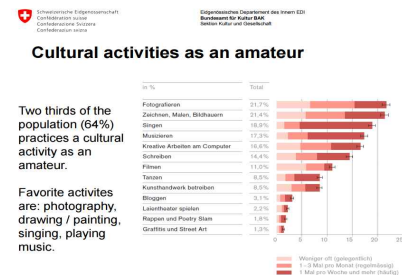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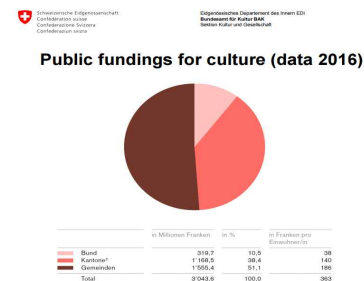
- give a solid basis for political discussion
- show the social and economic importance of culture
- illustrate changes in the cultural landscape
- contribute to gaining competence and knowledge for cultural policies
- generate reference points for future decisions in policy making

**New data in the «Pocket Statistics» 2019
(online update)**

- Historic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sites in Switzerland

Probable new data in the «Pocket Statistics» 2019 (online update)

- Gender statistics in the Swiss film industry



□ 주요 시사점

- 연방 문화청의 업무는 주로 스위스 연방 내 문화예술교육, 언어 사용, 영화,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기념물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짐
- 현재 연방 문화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업무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연방 통계청 및 스위스 국립 박물관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매 2년마다 스위스 연방 내의 각종 문화 분야의 통계정보를 포켓북 형식으로 작성·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음
- 문화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연방 문화청과 타 연방 부처, 각 연방 주 및 주요도시의 문화예술 관련 실무자들이 모여문화정책과 문화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인 National Cultural Dialogue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거나 각 지역별 문화정책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연방 문화청의 각종 문화통계 포켓북¹²⁴⁾

스위스 연방 문화청의 2018년도 연차 보고서¹²⁵⁾

- 또한 연방 문화청에서는 문화 선언 (Kulturbotschaft)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타 연방정부 부처나 개별 연방 주의 문화국 등 관련기관들의 건의사항을 조사·취합하고 그중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5) 스위스 베른 주 문화국¹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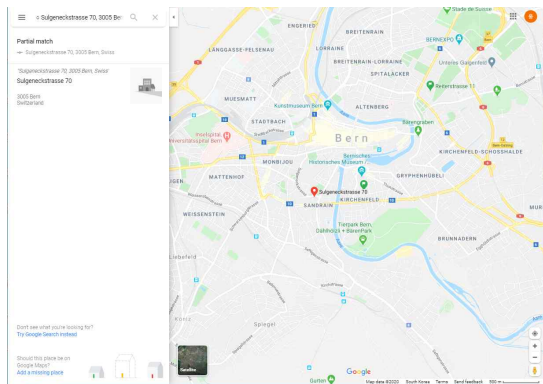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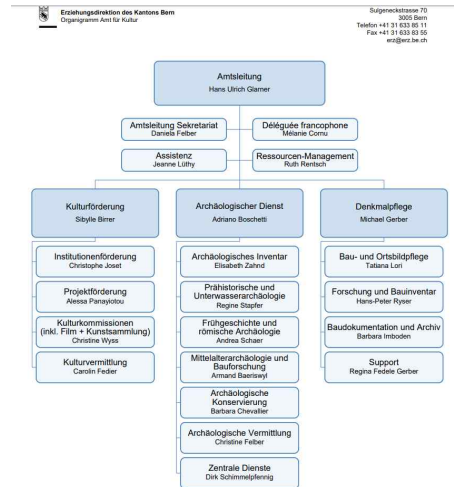
□ 개요

- 베른 주 교육문화부(Bildungs-und Kulturdirektion)의 하위기관인 문화국(Amt für Kultur)에서는 베른 주의 문화진흥·문화교육·고고학·기념물 보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제별로 문화진흥, 고고학, 문화유산 3가지 분야의 하위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진흥 부서에서는 베른 주 내 각종 문화기관 현황, 문화교육 분야의 활동, 베른 주 예술 컬렉션 관리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함
- 고고학 부서에서는 베른 주 내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문서화·보존 업무,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지역 내 관광명소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함
- 문화유산 부서에서는 역사적 건축물의 유지·보수·현황 관리, 기념물에 대한 연구 및 보존, 각종 문화유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업무 등을 수행함

124) 작성자가 직접 촬영함

125) Bundesamt für Kultur,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bak.admin.ch/dam/bak/de/dokumente/bak/jahresberichte/BAK_Jahresbericht_2018.pdf.download.pdf/BAK_JB2018_DT_Online.pdf

126) Amt für Kultur,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erz.be.ch/erz/de/index/direktion/organisation/amt_fuer_kultur.html

베른 주 문화국 위치¹²⁷⁾베른 주 문화국 조직도¹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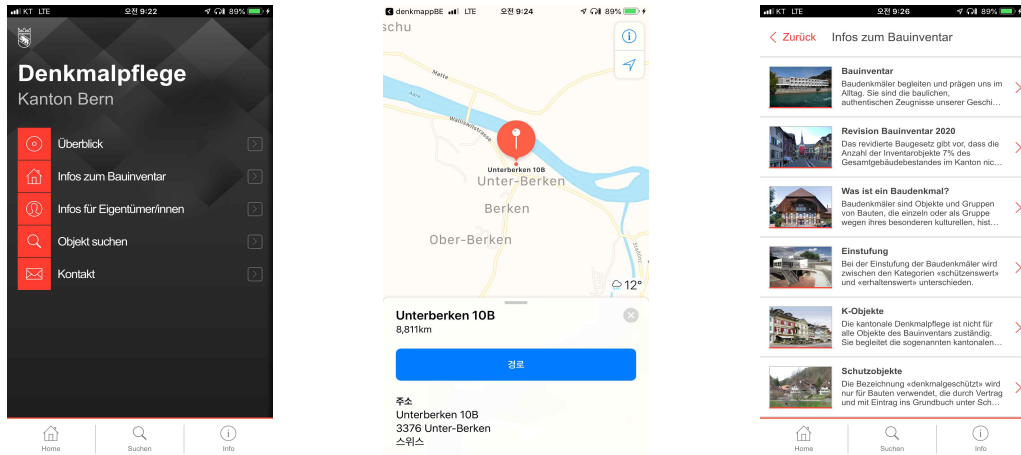
□ 방문기관 특이사항

○ Bauinventar online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베른 주 각지의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프로젝트 기념물 2020 (Projektes Bauinventar 2020)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베른 주 교육부 (Erziehungsdirektion des Kantons Bern) 내 문화국(Amt für Kultur)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음
- 각각의 기념물이 위치한 게마인데 / 코뮌 (Gemeinde / Commune : 스위스 연방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치단체)의 명칭 및 주소, 주요 사항, 건축 형태, 지번, 주 지정 보존대상 (Kantonale Objekte)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공개하고 있음
- 베른 주의 지리정보 플랫폼인 지오 포털 (Geoportal),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DenkmappBE)을 통해서도 관련 데이터 이용가능하나 2020년 1월 현재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2017년 6월 26일 기준 보호 대상인 기념물들의 목록과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확인 가능

127) Google Maps, Google,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google.com/maps/place/Culture+Office+de+la+culture+du+canton+de+Berne/@46.940807,7.4398145,16z/data=!4m8!1m2!2m1!1samst+f%3BCr+kultur+bern!3m4!1s0x0:0xadf08e3bc0c53e4a!8m2!3d46.9405225!4d7.4406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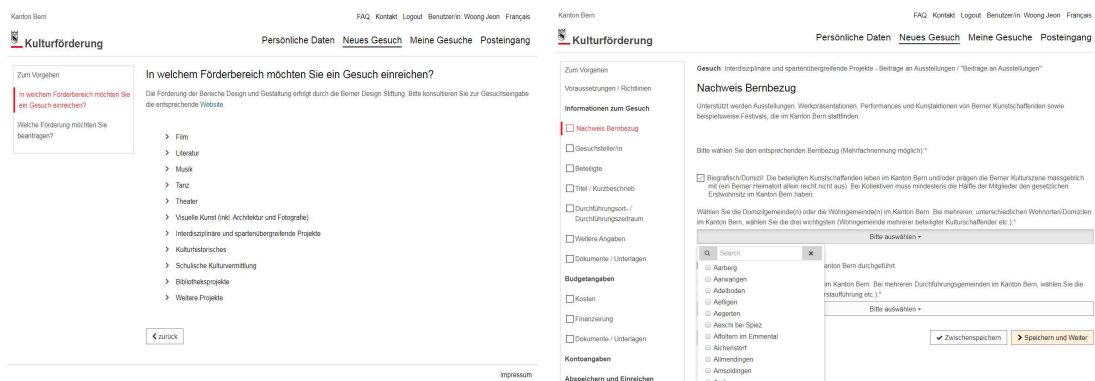
128) Amt für Kultur,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erz.be.ch/erz/de/index/kultur/kulturfoerderung/ueber_uns/organigramm.assetref/dam/documents/ERZ/GS/de/Organigramme/Organigramm%20Kultur%3CB6rderung%20deutsch.pdf



문화유산 정보제공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DenkmappBE)¹²⁹⁾

○ 문화진흥 포털 (Gesuchsportal des Amt für Kultur des Kantons Bern)¹³⁰⁾ 구축

- 베른 주 내 각종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프로젝트 지원금 신청을 온라인 포털로 접수하는 서비스로서 베른 주의 교육부 (Erziehungsdirektion des Kantons Bern) 내 문화국(Amt für Kultur)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음
- 분야별 차이는 있으나 보통 해당 문화프로젝트 시행 2개월 전까지 지원 요청을 해야 하며, 지원요청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체 예산규모, 자금 조달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포털사이트를 통해 문화국에 제공하여야 함



포털에서 지원 가능한 분야 (영화, 문학, 음악 등 11개)¹³¹⁾ 신청 예시 (신청자 거주지 및 프로젝트 시행지 선택)¹³²⁾

- 다만 이 포털을 통해 베른 주 문화국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베른 주 내의 거주자이거나 해당 단체의 회원 절반 이상이 베른 주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자체도 베른 주에서 이루어져야 함

129) 작성자가 직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촬영함

130) Amt für Kultur, 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www.be.ch/kulturfoerderung-gesuchsportal>

131) 위와 동일함

132) 위와 동일함

□ 인터뷰 개요

○ 기본 정보

- 방문지 : 베른 주 문화국 건물 내 1층 회의실
- 방문일시 : 2020년 1월 31일 09:00 ~ 10:30



베른 주 문화국 사무실 입구¹³³⁾

○ 방문기관 인터뷰 대상

- Alessa Panayiotou (Head of Project funding department)
- Anne Jäggi (Department of Cultural Promotion)

○ 인터뷰 주제

- 베른 주 문화국의 주요 업무, 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조 및 관련데이터 수집
- 문화진흥 포털의 구축사유와 온라인 신청서 데이터 수집여부
- 타 부처 및 타 연방 주와의 교류 현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등

□ 주요 시사점

- 베른 주 문화국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서비스를 선별하고 제공하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문화진흥 포털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자신들의 기초 정보 및 지원받고자하는 활동에 대한 관련 데이터들을 입력하게 되어있음
- 문화진흥 포털 메뉴에서 지원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은 영화, 문학, 음악 등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분류는 주 법률이나 시 조례에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국 내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임

133) 작성자가 직접 촬영함

- 문화진흥 포털을 통해 문화국 담당자들은 기존 수기자료들로 처리하던 보조금 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자들도 표준화된 정보 입력과정과 온라인포털 내의 표준화된 정보입력 과정을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졌음
- 다만 문화국에서는 보조금 신청자들이 입력한 각종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시에도 보조금을 신청한 개별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해당 사업을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의 과거 이력을 참고하여 선정하지 않음
- 아울러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을 시행한 후 별도의 감사를 통해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는 스위스 연방 내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적 구조 및 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조에 기반한 것임
- 스위스는 연방이 언어와 문화가 각각 다른 주의 자치권을 인정함으로써 연방과 주 간 권력공유가 가능한 구조가 형성됨. 크게 연방(Bund)-주(Kanton)-게마인데(Gemeinde)의 3단계의 의사결정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게마인데는 연방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고 스위스 연방헌법 제50조에 따르면 게마인데의 독립성은 주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방주의, 협의민주주의(Konkordanzdemokratie) 및 보충성 원칙에 의거하여 주와 게마인데의 자치권이 고도로 보장되는 스위스와 같은 연방국가에서는 주와 게마인데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만 연방이 수행한다는 연방의 최소개입 원칙을 바탕으로 주와 게마인데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은 차원에서 연방사무 수행이 가능함
-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어떠한 문화예술 활동이던 간에 우선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게마인데 내에서 보조를 받은 이후에 부족한 예산의 일부를 다시 주 정부 혹은 연방 정부를 통해 지원받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중첩적 지원구조로 인해 보조금 중복수령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음
- 한편 매년 비정기적으로 각 연방 주의 문화국 소속 실무자들이 한데모여 지역별 문화예술 정책 현황에 관하여 각자 발표하고 토론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현황은 물론 시민들이 어떠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음

4. 연구보고서 반영 및 활용

- 중앙집권적 문화행정체계를 가진 프랑스와 지역분권적 문화행정체계를 가진 스위스에서 각 지역별 문화예술 분야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관리·활용하는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지 비교·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향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예를 들어 프랑스 문화부 산하 일드 프랑스 지역문화사무국의 지역문화지도 제작사업 및 파리 지역 연구소의 CARTOVIZ 서비스, 스위스 베른 주 지리정보국의 Geoportail 등 실제 문화예술 분야 데이터와 공간지리데이터를 결합하여 시각화한 사례들의 현황 및 주요 특징, 실제 운영 시 애로사항이나 향후 개선사항 등을 담당 실무자 면담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향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의 시각화 구현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스위스 연방 문화청과 베른 주 문화국에서 참여하는 문화 거버넌스 사례들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구성원 간 관계설정 및 상호 신뢰 증진 등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설계함
- 아울러 문화예술 데이터와 타 영역 데이터 간의 교차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의 경우 향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제공 서비스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각 방문기관의 사례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바, 데이터 분석기법 및 시각화 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방안들이 별도로 연구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별첨]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소개자료134)

Introduce to Our research project

Chung Hee Lee (chlee@kcti.re.kr)
Woong Jeon (pennil08@kcti.re.kr)

Our research project

- Project name : Total Research for Local Culture & Art Information System
- **Object** : The construc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o collect data for cultural facilities and activities in a local area
- **Vision** : Enhance, develop and spread the values of culture & art
- **Exclusion** : Information or data about Sports, Tourism, and Cultural heritage
- **System construction Timeline** : A 5-year plan, from 2021 to 2025.

To whom

• The main question : Who really wants to know about the cultur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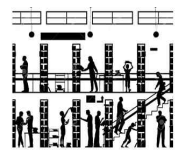
Primary target



- Government officer
- Civil servant
- Research worker

➡

Secondary tar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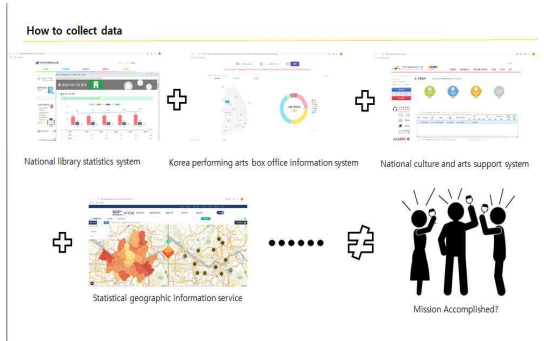


- Every people in the country

How to collect data

- South Kore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 has already been operating a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systems. For example,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 managed by Library Policy Division of MCST (government organization)
 - Korea performing arts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 : managed by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incorporated foundation)
 - Culture and sports volunteering management system : managed by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aggregate corporation)
 - National culture and arts support system : managed by Arts council Korea (aggregate corporation)
-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also have a several information system for our project goal. Such as,
 -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 managed by Statistics Korea (government organization)
 - Korea National spatial infrastructure portal : manag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overnment organization)

134) 작성자가 직접 제작하여 국외출장 방문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에 대해 소개한 자료임



How to collect data

- To accomplish our project goal, we are also researching examples of case studies.
- In particular, we are focusing on several topics,
 - A **data collecting method** to enrich our own data.
 - A **formal feedback process** to ensure that all collected data is accurate, complete, and reliable
 - A **data analysis** to provide a unique insight in creating cultural policies
- Also we are specially interested to know about,
 - A **various types of data visualization design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for cultural facilities and activities in local area
 - **Interactive map service**: specially operated by government department or public organization

How to service

- Dash Board Service

Dash Board service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outh Korea)

How to service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Service

All cultural offers (Zurich) Art and Culture (google)

How to service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ervice

Geoportal (kanton Bern) Integration Hub (Illustris)

Vielen Dank! / Merci beaucoup!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책임	이충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전문위원)
연구보조	전 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이솔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일	2020년 3월
인쇄처	AMC+
ISBN	비매품
